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발 간 사

최근 우리 사회는 인터넷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논의가 거둔 결실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8월 7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언론사닷컴이나 인터넷포털 등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조정이나 중재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편리해졌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원회로서는 끊임없이 진화중인 인터넷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양 법익을 조화롭게 공존케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위원회가 이러한 과제를 보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터넷포털 등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언론소송의 현황과 판례의 경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위원회가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언론관련 판결은 언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갈등과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풍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결은 개별 사건마다 독립적 색채를 띠며 그 자체가 훌륭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낱낱의 판결만으로는 이들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미 지난 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선고된 3년간의 인격권 침해관련 판결을 분석하여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연구의 후속 분석에 해당합니다. 즉, 대법원을 위시해 각급 법원이 2008년 한 해 선고한 언론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언론소송 제기현황, 소송 처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 법원의 판결 비교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분석대상이 된 2008년도 선고 판결 중 판시내용 등에 있어 수록가치가 있는 판결문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별도로 발간되던 '언론소송 판결분석'과 '국내언론관계 판결집'을 합본호로 발행하여 이용자가 판결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분석대상 주요판결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이 분석보고서가 일선의 언론종사자들이 취재 및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언론소송의 실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풍부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의본부

목 차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1. 분석목적 18

2. 분석과제 18

3. 분석방법 19

1) 분석대상 19
2) 자료수집 방법 20
3) 분석항목 21
4) 코딩방법 22

제2장 분 석 결 과

1. 소송제기 현황 25

1) 법원별 소송빈도 25
2) 심급별 소송빈도 26
3) 상소율 26
4) 청구별 소송빈도 27
5)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28
6)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29
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30
8) 사건 피고구성 31
9) 매체별 피고구성 32

2. 재판 결과 ····· 34

1) 심급별 처리결과 ····· 34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 34
3) 청구별 처리결과 ····· 35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 37
5)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 39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 40
7)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 42

3. 손해배상사건 ····· 44

1) 처리결과 ····· 44
2) 청구액 ····· 44
3) 인용액 ····· 45
4) 인용액 분포 ····· 46
5) 침해유형별 인용액 ····· 46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47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 48
8)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 49
9) 손해배상 기각 사유 ····· 50

4.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 51

1)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급별 처리결과 ····· 51
2)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급별 처리결과 ····· 51
3)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 52

5.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 53

1) 조정신청 비율 ····· 53
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 53

3) 조정을 거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 비교 ····· 54
4)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 비교 ····· 54
5) 조정을 거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 비교 ····· 55
6)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 56

6. 판결에 나타난 사건의 특성 ····· 57

표 목 차

〈표 1-1〉 법원별 소송빈도 ····· 25
〈표 1-2〉 심급별 빈도 ····· 26
〈표 1-3〉 상 소 율 ····· 26
〈표 1-4〉 청구별 빈도 ····· 27
〈표 1-5〉 청구별 빈도(각 청구별 합산) ····· 28
〈표 1-6〉 침해유형별 빈도 ····· 28
〈표 1-7〉 매체유형별 빈도 ····· 29
〈표 1-8〉 일간지 종별 빈도 ····· 29
〈표 1-9〉 방송유형별 빈도 ····· 30
〈표 1-10〉 인터넷매체유형별 빈도 ····· 30
〈표 1-11〉 보도유형별 빈도(방송 외) ····· 30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빈도 ····· 31
〈표 1-13〉 사건 피고 구성 ····· 31
〈표 1-14〉 매체별 피고 구성 ····· 32
〈표 1-15〉 매체별 피고 구성(직위별 합산) ····· 33

〈표 2-1〉 심급별 처리결과 ····· 34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 35
〈표 2-3〉 청구별 처리결과 ····· 37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 38
〈표 2-5〉 대표 원고 유형별 처리결과 ····· 40

〈표 2-6〉 공적 인물에 대한 처리결과 ····· 40
〈표 2-7〉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 41
〈표 2-8〉 일간지 처리결과 ····· 41
〈표 2-9〉 방송 처리결과 ····· 41
〈표 2-10〉 인터넷매체 처리결과 ····· 42
〈표 2-11〉 보도유형별 처리결과(방송 외) ····· 43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 43

〈표 3-1〉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 44
〈표 3-2〉 청 구 액 ····· 45
〈표 3-3〉 인 용 액 ····· 46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 46
〈표 3-5〉 손해배상사건 침해유형별 인용액 ····· 47
〈표 3-6〉 손해배상사건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48
〈표 3-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 48
〈표 3-8〉 손해배상사건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 49
〈표 3-9〉 손해배상사건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 49
〈표 3-10〉 손해배상 기각사유 ····· 50

〈표 4-1〉 정정보도청구사건 심급별 처리결과 ····· 51
〈표 4-2〉 반론보도청구사건 심급별 처리결과 ····· 51

〈표 5-1〉 언론조정신청 비율 ····· 53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결과 비교 ····· 54
〈표 5-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조정처리결과별 법원처리결과 ····· 54
〈표 5-4〉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조정처리결과별 법원처리결과 ····· 55
〈표 5-5〉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법원 인용액과 위원회 조정액 및 중재액 비교 ····· 56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96건) ····· 59

제2부 언론관련판결 사례

제1장 반론보도청구 사례

1. 이 사건 기사로 인해 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악화되거나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라 볼 수 없다
대한민국 對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기5982) (확정) ····· *64*

2.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후 맥락, 화면의 구성방식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방송이 일반적인 주의를 가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신청인이 돈으로 상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식회사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기1197) ····· *69*

3. 신청인이 "교감과 교장을 모두 자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반론보도하라
정청래 對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967) ····· *77*

제2장 정정보도청구 사례

1.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문화관광부 對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고등법원 2007나41852) ····· *83*

2. 황토팩 가루 중 자석에 반응한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볼밀이 마모되면서 유입된 탄소강 하이망간(방송상 '쇳가루')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Fe3O4) 등 산화철이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주식회사 ○○○ 對 한국방송공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4153) (확정) ····· *93*

3. 원고에 대하여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는 등 원고가 평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김○○ 對 ○○신문 ○○회사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4775) (확정) ····· *102*

4.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 등에 의하면 방송의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이다
농림수산식품부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0694) ····· *107*

제3장 손해배상청구 사례

1.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구○○ 외 2인 對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48780) ····· *129*

2. 제주4 · 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의 경우, 그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제주4 · 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외 345인 對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외 2인 (제주지방법원 2002가합560) (확정) ····· *141*

3.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전여옥 對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외 1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92006) (확정) *154*

4.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가 방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립적 판단하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외 2인 對 한국방송공사 외 2인 (대법원 2007다59912) (확정) *164*

5. 원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제한 채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범인이라는 인상을 줄 단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를 게재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이○○ 외 2인 對 주식회사 연합뉴스 외 1인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5109) (확정) *168*

6.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진실상당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 외 3인 對 한국방송공사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4910) (확정) *178*

7. 기자가 검찰에 고발사실 등을 확인한 바는 있으나 정작 고발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취재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진실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對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외 2인
(창원지방법원 2006가합4359, 부산고등법원 2007나11033) *184*

8.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세무소송 대리인과 함께 조정에 의한 이 사건 세무소송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조○○ 對 정연주 외 1인
(대법원 2007다81032, 서울고등법원 2008나44186, 대법원 2008다64447) (확정) *201*

9.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對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인
(대법원 2006다53214, 서울고등법원 2008나43008) (확정) ····· *218*

10. 원고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이 사건 구인광고의 게재여부와 광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다 하지 않는 등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없다
송○○ 對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030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9484) (확정) ····· *229*

11. 피고는 경찰청의 설명 및 수사결과만을 믿고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였을 뿐, 달리 피고가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신○○ 외 5인 對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3884) (확정) ····· *242*

12.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단골고객 등 적어도 이 사건 홍삼원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홍삼원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유○○ 對 한국방송공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가합1170) (확정) ····· *249*

13. 드라마 전개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촬영의 의도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하고, 이후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편집 · 방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를 지급하라
박○○ 외 3인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11059, 대법원 2008다42201) (확정) ····· *257*

14. 공적 존재인 원고의 보도성향을 '친북적', '좌익적'이라고 평가한 것 등은 다소의 수사적 과장은 있지만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對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외 4인 (대법원 2007다35695) ····· *262*

15. 원고 일행이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원고 측 해명을 들었음에도 제대로 취재를 하지도 않은 채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
이해찬 對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서울고등법원 2007나61870, 대법원 2008다53805) (확정) ····· *268*

16. 피고들은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 및 부작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삭제 또는 검색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뉴스기사나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김○○ 對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외 3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60990) ····· *277*

17. 원고는 자신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날에야 피고의 보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의 장애가 아니므로 이유 없다
신○○ 對 주식회사 강원민방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300) (확정) ····· *302*

18. 사건의 진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고소인이나 진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다
김○○ 외 3인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8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0956) ····· *307*

19. 원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지 못하는 한 제3자로서는 '중국교포 조모(53,여)' 정도의 표현으로는 원고를 지칭한다고 인식하기 불가능하다
조○○ 對 한국방송공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174816) ····· *315*

20. 원고는 다수의 교인들이 속해있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적 인물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원고의 얼굴이 방송되도록 한 것에는 위법성이 없다
○○교회 외 1인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419) ····· *319*

21. 보도내용이 검찰의 기소사실이기는 하나, "검찰은……사실을 밝혀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사실이 확연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김○○ 對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5443) ····· *338*

22. 간호사에 대한 인터뷰 장면을 몰래 촬영 · 방송했다 하더라도 성형수술의 의료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나 원고 병원, 인터뷰 장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정○○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83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24356) ····· *341*

23. 원고에 대하여 '독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여 총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축약한 것으로서 원고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중앙회 외 1인 對 주식회사 피쉬어리뉴스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2799) (확정) ····· *347*

24. 원고의 알몸 사진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알몸 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 對 주식회사 문화일보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6787) ····· *356*

25. 여론조사 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김○○ 對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8297) ····· *367*

제4장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에 의해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5헌마506) ····· *373*

2.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 방안에 따른 정책이 모두 폐지되고 종전의 상태로 환원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고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헌마775) ····· *399*

제5장 기타사례

1.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으며,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 역시 폭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교회 외 1인 對 재단법인 씨비에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합415) ····· *410*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1. 분석목적

위원회는 그동안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관련 판결문을 수집해왔다. 물론 이렇게 집적된 판결문은 그 자체로 훌륭한 참고자료이다. 그러나 낱낱의 판결문으로는 이들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선고된 3년간의 인격권 침해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소송형태, 판결경향, 주요 쟁점별 설시내용 등을 분석하여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을 발간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 연구의 후속 분석에 해당한다. 즉, 대법원을 위시해 각급 법원이 2008년 한 해 선고한 언론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소송형태와 판결경향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 해 평균 1,000여건에 이르는 위원회의 언론분쟁사건 처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선의 언론종사자들이 취재 및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소송의 실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분석을 통해 연구를 위한 풍부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과제

1)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제기현황

2008년도 소송 제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법원별 소제기빈도, 심급별 소송빈도, 상소율, 청구별 소송빈도,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소송사건의 피고 구성, 매체별 피고 구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2)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처리결과

2008년 소송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심급별 처리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처리결과,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와 관련해서는 2008년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결과 비교, 조정을 거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비교,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비교, 조정을 거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비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4) 판결문에 나타난 사건의 특성

판결문에 언급된 몇몇 표현들은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사건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공익부정', '공인', '피의사실', '단정표현', '의혹제기', '인신공격', '악의성'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3. 분석방법

1) 분석대상

⑴ 분석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이다.

⑵ 판결 분석은 확정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1심 사건과 그 상소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경우 위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이 기간 동안에 수집된 모든 언론소송 판결을 대상으로 했다. 이는 분석대상 판결들이 심급에 관계없이 모두 개별사건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분석의 대상에는 위 기간 중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⑶ 판결이 대부분이고 결정(방송금지가처분 신청사건 등)도 포함시켰으나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⑷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방송 ·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가 법 소정의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은 모두 분석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언론사 또는 언론인과 함께 공동으로 피소된 포털사이트나 언론사닷컴(홈페이지)은 언론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2009년 8월 시행예정인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어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⑸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을 구하는 청구와 배포나 방영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 그리고 이들 청구나 신청과 병합된 청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⑹ 이상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판결을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 결과 수집된 판결은 총 106건이다. 이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과 언론인이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건, 그리고 언론인이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사건이 아닌 경우를 모두 제외한 결과 96건이 남았다.

⑺ 위 96건의 판결 중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언론사별로 보도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 인용내용,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소송사건을 피소된 언론사별로 각각을 나누었다. 그 결과 얻어진 분석대상판결의 총 빈도는 116건이었다. 이 116건이 통계적 분석의 기본적인 모수이다.

⑻ 한편, 위 116건은 정정 ·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여러 건의 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 청구권별 처리결과를 집계하거나,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116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178건이 모수가 된다.

⑼ 손해배상청구만을 대상으로 처리결과나 청구액, 인용액, 기각사유 등을 분석할 경우에는 청구권별로 환산한 위 178건의 빈도 중 손해배상청구의 빈도인 96건이 모수가 된다.

2) 자료수집 방법

법원은 2006. 5. 1.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 ·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의 수집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 · 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된 판

결을 대상으로 했다.

판결에 관한 검색어는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권 ⑥보도&성명권 ⑦보도&음성권 ⑧보도&사생활 ⑨보도&프라이버시 ⑩보도&퍼블리시티'로 했다. 판결문 수집은 검색 후 법원의 판결문 제공신청제도를 이용했고 판결 검색의 최종일은 2009. 2. 24.이다.

3) 분석항목

분 석 목 록	구체적 분석 항목	
일 반 사 항	01. 판결번호 02. 선고일자 03. 법 원 명 04. 심 급	05. 청구의 종류 06. 청구취지상의 침해유형 07. 인용된 침해유형
원 고	08. 원 고 명 09. 대표 원고 분류 10. 공적인물 분류	
피 고	11. 사건 피고명 12. 사건 피고구성 13. 매 체 명	14. 매체별 피고구성 15.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매 체 분 류	16. 대 분 류 17. 세부분류 17-1. 일간지 종별 분류	17-2. 방송 분류 17-3. 인터넷매체 분류
보도내용 분류	18. 보도내용 분류 18-1. 방송 외 기사유형	18-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구별 처리결과	19. 청구별 처리결과 19-1. 정정보도 19-2. 반론보도	19-3. 손해배상 19-4. 기 타
원·상고심 결과	20. 심급별 결과 20-1. 1심 20-2. 항소심	20-3. 상고심 20-4. 파기환송심
기 타	21. 원고 원심유지 여부 22. 사건 특성 23. 조정신청 여부	24. 조정신청 결과 25. 보도일자(언론중재법 시행 기준)
손 해 배 상	26. 사건 청구액 27. 사건 인용액 28. 매체별 청구액	29. 매체별 인용액 30. 손해배상 기각사유
반 론 보 도	31. 반론 기각사유	32. 반론 각하사유

4) 코딩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 코딩의 기본 단위는 언론매체별이다. 즉, 1개의 소송 사건에서 피고가 다수인 경우 이를 매체별로 구분, 각 코딩하여 소송에 연루되는 매체별 현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⑴ 대표 원고 분류

① 원고가 다수인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청구한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지 않고 단체로 분류했다. 단, 사건의 특성상 개인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분류했다.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③ 일반인과 공인이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했다.

④ 공인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했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사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⑤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제3조 상의 공직자를 말한다.

예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⑵ 공적 인물 분류

공적 인물이란 연예인 · 정치인 · 기업가 · 언론인 등 저명성 있는 인물이거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인 사람을 말한다.

⑶ 매체명

① 청구취지에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는 경우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하였다.

예 사건 피고가 ○○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신문, ○○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청구를 하였다면 2개의 매체로 각 코딩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언론인 소속 매체명을 기재했다.

⑷ 사건 피고 구성

① 사건을 매체별로 분류하지 않은 96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공동 피소된 피고의 구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인 원고는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소송하기도 하지만 관련 언론인을 함께 제소

하기도 한다. 또한 언론보도의 속성상 한 사안은 여러 언론에 걸쳐 동시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수의 언론사가 공동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잦다. 이에 본 분석유목을 통해 피고가 어떠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② 사건 피고구성은 언론사, 언론인, 언론사 다수, 언론인 다수, '비언론' 간의 다양한 조합이다.

③ '비언론'이란 언론인이 아닌 제보자, 투고자, 기고자, 보도자료 배포자 또는 언론사가 아닌 단체 등을 말한다. '비언론'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한 사건에서 '비언론'이 언론사나 언론인과 공동으로 피소된 경우나 포털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사건의 경우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피고구성을 '비언론'으로 분류했다.

⑸ 매체별 피고 구성

① 매체별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기사를 직접 작성 · 편집한 기자나 프로듀서, 감독책임자 등으로 분류했다. 그 외 언론인(행정업무자 등)과 외주 제작사 및 소속 직원 등은 기타로 분류했다.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했다.

⑹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⑺ 방송 분류

① 중앙방송의 지역권 뉴스는 지방방송으로 분류했다.

②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 · 고발로 분류했다.

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뉴스 후 등

③「9시 뉴스」내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했다.

④「KBS스페셜」,「미디어 비평」등은 교양 · 정보로 분류했다.

⑻ 청구별 처리결과

① 원고 일부승소라 함은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와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를 말한다.

② 항소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고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했다.

(9) 원고 원심유지 여부

항소심의 원심은 1심, 상고심의 원심은 항소심을 말한다. 환송후심의 경우는 제외했다.

(10) 기타 사건의 특성

① 기타 사건의 특성은 대표 원고 분류(구체적 분석항목상의 변수 09번)와 달리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에만 조사한 것이다.

② '원고를 공직자 또는 공적 인물로 판단', '보도의 공익성 부정', '모멸적 의견으로서 그 표현의 한계를 일탈'로 분류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재판부가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경우이다.

(11)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동일 매체에 해당하는 청구액(인용액)을 기재하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했다.

②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인용액)에 합산하였다.

③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제2장 분석결과

1. 소송제기현황

1) 법원별 소송빈도

수집된 민사 언론소송판결 96건을 피고 언론사별로 분리한 매체별 빈도는 116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빈도가 이후의 분석에 있어 기본적인 통계적 모수이다. 이 116건을 대상으로 법원별 소송빈도를 살펴보았다.

〈표 1-1〉 법원별 소송빈도

법원		빈도	비율(%)
대 법 원(10.3%)		12	100.0
고등법원(19.8%)	서울고등법원	21	91.3
	대구고등법원	1	4.3
	부산고등법원	1	4.3
	소 계	23	100.0
지방법원(69.8%)	서울중앙지방법원	39	48.1
	서울남부지방법원	25	30.9
	서울동부지방법원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	1	1.2
	수원지방법원	3	3.7
	의정부지방법원	1	1.2
	대전지방법원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	1.2
	광주지방법원	1	1.2
	전주지방법원	1	1.2
	제주지방법원	1	1.2
	창원지방법원	3	3.7
	춘천지방법원	1	1.2
	소 계	81	100.0
합계		116	100.0

법원별로는 대법원이 12건(10.3%), 고등법원이 23건(19.8%), 지방법원이 81건(69.8%)이었다.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처리한 사건이 21건(91.3%)으로 대부분이었고, 대구와 부산고등법원이 각 1건이었다. 고등법원이 처리한 사건 중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한 사건에 대한 환송후심 판결도 2건 있었다.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이 39건(48.1%)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5건(30.9%), 수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그리고 대전지방법원(관할 시법원 포함)이 각 3건(3.7%) 등이었다.

2) 심급별 소송빈도

분석대상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로 빈도를 살펴보았다. 심급별 빈도는 1심이 79건(68.1%), 항소심이 23건(19.8%), 상고심이 12건(10.3%), 대법원의 원심파기에 따른 환송후심이 2건(1.7%)으로 각각 나타났다. 항소심은 고등법원 판결이 21건,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이 2건 있었다.

〈표 1-2〉 심급별 빈도

심 급		빈 도	비 율(%)
1심		79	68.1
항 소 심	고등법원	21	18.1
	지방법원 항소부	2	1.7
	소 계	23	19.8
상 고 심		12	10.3
환송후심		2	1.7
합 계		116	100.0

3) 상소율

1심 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대상으로 이후에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79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52건으로 항소율은 65.8%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항소하지 않고 종결된 사건은 27건으로 34.2%였다. 항소심 판결 23건 중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원고 또는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12건으로 상고율은 52.2%로 나타났다.

〈표 1-3〉 상소율

심 급		빈 도	상소건수	상소율(%)
1심		79	52	65.8
항소심	고등법원	21	11	52.4
	지방법원 항소부	2	1	50.0
	소 계	23	12	52.2

4) 청구별 소송빈도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내용을 통해 이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48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42건(36.2%)으로 다음이었다. 이어 반론보도청구 6건(5.2%), 기타 손해배상청구[1] 5건(4.3%), 정정 · 반론보도청구 4건(3.4%), 정정보도청구 3건(2.6%), 정정 · 반론 · 손해배상 · 기사삭제청구와 금지가처분이 각 2건(1.7%) 등의 순이었다.

참고로, 2008년 한 해 수집된 기타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모두 인터넷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기타 청구로는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청구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관련 사안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었다.

정정 · 손배청구와 같이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이를 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 96건(53.9%), 정정보도청구 58건(32.6%), 반론보도청구 13건(7.3%), 기타 손해배상청구 5건(2.8%), 추후보도청구 2건(1.1%), 금지가처분 2건(1.1%), 기타청구(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피해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가장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청구별 빈도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 정	3	2.6
정 정 / 반 론	4	3.4
정정/반론/손해배상	1	0.9
정정/반론/손해배상/기사삭제	2	1.7
정정/손해배상	48	41.4
반 론	6	5.2
추후/손해배상	2	1.7
손 해 배 상	42	36.2
손해배상/기타	1	0.9
기타 손해배상	5	4.3
금 지 가 처 분	2	1.7
합 계	116	100.0

1) 기타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란 현행법상 언론매체로 분류되지 않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포털사이트나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말한다. 2009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언론중재법은 이런 매체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표 1-5〉 청구별 빈도(각 청구권별 합산)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 정 보 도	58	32.6
반 론 보 도	13	7.3
추 후 보 도	2	1.1
손 해 배 상	96	53.9
기 사 삭 제	1	0.6
금 지 가 처 분	2	1.1
기타 손해배상	5	2.8
기 타	1	0.6
합 계	178	100.0

5)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격권을 기준으로 침해유형을 분류해보았다. 그 결과, 명예훼손이 93건(8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5건(4.3%), 명예 · 초상권 · 성명권 침해 3건(2.6%), 명예 · 사생활 침해, 명예 · 상호권[2] 침해, 명예 · 초상권 · 상호권 침해, 초상권 침해가 각각 2건(1.7%) 등이었다.

침해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 이를 분리하여 각각의 침해유형별로 단순빈도를 구해본 결과, 명예훼손이 110건, 초상권 침해가 15건, 사생활 침해가 6건, 성명권 침해가 4건, 상호권 침해가 4건 등이었다.

〈표 1-6〉 침해유형별 빈도

청 구 명	빈 도	비 율(%)
명 예	93	80.2
명 예 / 신 용	1	0.9
명 예 / 사 생 활	2	1.7
명 예 / 상 호	2	1.7
명 예 / 초 상	5	4.3
명예/초상/사생활	1	0.9
명예/초상/성명	3	2.6
명예/초상/상호	2	1.7
명예/초상/성명/사생활	1	0.9

2) 상호권이란 상인이 적법하게 선점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기업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성명과 같은 인격권적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호권은 기업에 고착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재산권적 성질도 갖는다.

사생활/기타	1	0.9
초 상	2	1.7
초상/사생활	1	0.9
기 타	2	1.7
합 계	116	100.0

6)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소송 당사자인 피고 언론사의 매체유형을 분류해보았다. 그 결과 방송이 38건(32.8%)으로 가장 높았고, 일간신문이 32건(27.6%)으로 그 다음이었다. 인터넷매체도 21건(18.1%)으로 적지 않았다. 주간신문은 14건(12.1%), 뉴스통신은 6건(5.2%), 월간지는 5건(4.3%)이었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21건(65.6%)으로 소송 빈도가 가장 높았고,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이 30건(7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터넷 매체 중에는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이 9건(42.9%)이었고, 언론사닷컴이 7건(33.3%), 포털사이트가 5건(23.8%)이었다.

〈표 1-7〉 매체유형별 빈도

매체유형	빈 도	비 율(%)
일 간	32	27.6
주 간	14	12.1
월 간	5	4.3
방 송	38	32.8
뉴스통신	6	5.2
인 터 넷	21	18.1
합 계	116	100.0

〈표 1-8〉 일간지 종별 빈도

일간지종별	빈 도	비 율(%)
중앙종합	21	65.6
지역종합	8	25.0
일반경제	1	3.1
외 국 어	2	6.2
합 계	32	100.0

〈표 1-9〉 방송유형별 빈도

방송유형	빈 도	비 율(%)
중 앙	30	78.9
지 방	4	10.5
민 방	1	2.6
라 디 오	1	2.6
케 이 블	2	5.3
합 계	38	100.0

〈표 1-10〉 인터넷매체유형별 빈도

인터넷매체유형	빈 도	비 율(%)
인터넷신문	9	42.9
언론사닷컴	7	33.3
포털사이트	5	23.8
계	21	100.0

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방송매체 38건을 제외한 나머지 78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촉발시킨 보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66건(84.6%)으로 대부분이었고, 스트레이트/기타가 4건(5.1%), 스트레이트/칼럼기사가 3건(3.8%), 스트레이트/사설기사가 2건(2.6%) 등이었다.

소위 의견성 기사라 할 수 있는 사설이나 칼럼, 만평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의 빈도를 모두 합산해본 결과 8건이었다.

한편, 피소된 방송매체 38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시사 · 고발프로그램이 14건(36.8%), 뉴스가 13건(34.2%), 교양 · 정보는 8건(21.0%)이었으며 드라마도 2건 있었다.

〈표 1-11〉 보도유형별 빈도(방송 외)

보도유형	빈 도	비 율(%)
스트레이트	66	84.6
스트레이트 /만평	1	1.3
스트레이트/사설	2	2.6
스트레이트/사설/만평	1	1.3
스트레이트/기타	4	5.1
스트레이트/칼럼	3	3.8
칼 럼	1	1.3
합 계	78	100.0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빈도

방송유형	빈 도	비 율(%)
뉴 스	13	34.2
시사 · 고발	14	36.8
교양 · 정보	8	21.0
드 라 마	2	5.3
기 타	1	2.6
합 계	38	100.0

8) 사건 피고구성

사건을 언론사별로 나누기 전인 각 사건(총 96건)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공동으로 피소된 피고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보도가 잘못되었을 경우 해당 언론사 또는 담당 기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구성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건의 피고는 언론사 단독이 44건(45.8%)으로 가장 많았으나, 언론사+언론인 다수 17건(17.7%), 언론사+언론인 12건(12.5%), 언론사 다수+비언론[3]이 6건(6.3%), 언론사 다수+언론인이 4건(4.2%), 언론사 다수와 언론인 단독이 각 3건(3.1%) 등이었다.

〈표 1-13〉 사건 피고 구성

사건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 론 사	44	45.8
언론사/언론인	12	12.5
언론사/언론인/비언론	1	1.0
언론사/언론인 다수	17	17.7
언론사/언론인 다수/비언론	2	2.1
언론사/비언론	6	6.3
언론사 다수	3	3.1
언론사 다수/언론인	4	4.2
언론사 다수/비언론	1	1.0
언 론 인	3	3.1
언론인/비언론	1	1.0
언론인 다수	1	1.0
비 언 론	1	1.0
합 계	96	100.0

3) '비언론'이란 언론인이 아닌 제보자, 투고자, 기고자, 보도자료 배포자 또는 언론사가 아닌 단체 등을 말하는데 '비언론'이 각 사건의 피고에 포함된 경우를 별도로 합산해 보면 12건으로 적지 않았다.

9) 매체별 피고구성

각 사건의 피고를 언론사별로 나눈 116건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피소된 피고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언론사 단독이 60건(51.7%)으로 절반을 넘어서 두 건 중 한 건은 언론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었다. 언론사+담당(담당기자나 담당PD)은 24건(20.6%)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비언론이 5건(4.3%),[4] 담당 단독과 언론사+대표+담당, 언론사+국장+담당이 각 3건(2.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언론사가 소송에 포함된 빈도를 별도로 합산해본 결과 105건(54.1%)이었다. 또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을 직위별로 나누어 각각을 합산해 보니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가 44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 대표는 12건(6.2%), 편집국장은 11건(5.7%), 부장이나 차장 등 데스크는 8건(4.1%)이었다.

원고들은 언론사 대표의 경우 매체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편집인이나 부장 · 차장 등의 경우 기사의 취사선택이나 편집에 관여한 책임을 각각 물어 담당 기자나 프로듀서와 함께 제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4〉 매체별 피고 구성

매체별 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 론 사	60	51.7
언론사/대표/국장/부장/담당	1	0.9
언론사/대표/논설/편집인/부장/담당	1	0.9
언론사/대표/본부장/국장/부장/담당	1	0.9
언론사/대표/부장/담당	1	0.9
언론사/대표/편집인/국장/담당	1	0.9
언론사/대표/편집인	1	0.9
언론사/대표/편집인/담당	1	0.9
언론사/대표/담당	3	2.6
언론사/국장	2	1.7
언론사/국장/부장/담당	2	1.7
언론사/국장/담당	3	2.6
언론사/부장/담당	2	1.7
언론사/편집장/편집인	1	0.9
언론사/담당	24	20.6
언론사/기타	1	0.9
대 표	2	1.7
국장/담당	1	0.9
담 당	3	2.6
비 언 론	5	4.3
합 계	116	100.0

4) 이 5건 모두 인터넷포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표 1-15〉 매체별 피고구성(직위별 합산)

매체별 피고구성	빈도	비율(%)
언 론 사	105	54.1
대 표 이 사	12	6.2
편 집 인	5	2.6
편 집 장	1	0.5
논 설 위 원	1	0.5
본 부 장	1	0.5
편 집 국 장	11	5.7
부장, 차장(데스크)	8	4.1
담당(기자 · PD)	44	22.7
기 타	1	0.5
비 언 론	5	2.6
계	194	100.0

2. 재판 결과

1) 심급별 처리결과

재판 결과에 따른 원고 승소율(원고 일부 승소 포함)을 산정해 본 결과, 원고승소율은 60.3%, 원고 패소율은 39.7%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20.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의 인용정도를 살펴보면, 무변론 판결로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한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원고의 청구(항소) 취지를 감축 또는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판결들의 심급별 원고 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1심 사건들의 경우 58.2%, 항소심 사건들의 경우 82.6%, 상고심 사건들의 경우 41.7%로 각각 조사되었다. 항소심 사건들의 원고 승소율이 80%대를 넘은 점이 다소 특이하다.

<표 2-1> 심급별 처리결과

심 급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1심	46(58.2)	33(41.8)	79(100.0)
항소심	19(82.6)	4(17.4)	23(100.0)
상고심	5(41.7)	7(58.3)	12(100.0)
환송후심	0(0.0)	2(100.0)	2(100.0)
합계	70(60.3)	46(39.7)	116(100.0)

※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항소심 23건과 상고심 12건을 합산한 35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여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20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9건인 것으로 나타나 상소심 82.9%가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과 원고가 패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우는 각각 3건으로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17.1%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경우 23건 중 15건은 원고 1심 승소판결을 유지했고, 5건은 패소판결을 유지했으며 나머지 3건의 경우에 있어서만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의 원심 번복비율은 13.0%였다.

상고심의 경우, 12건 중 5건은 원고승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고, 4건은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으

며, 나머지 3건의 경우에 있어서만 원고승소 판결을 번복했다. 따라서 상고심 판결의 원심 번복비율은 25.0%였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구 분	빈 도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항소심	23(100.0)	15(65.2)	5(21.7)	0(0.0)	3(13.0)
상고심	12(100.0)	5(41.7)	4(33.3)	3(25.0)	0(0.0)
계	35(100.0)	20(57.1)	9(25.7)	3(8.6)	3(8.6)
		29(82.9)		6(17.1)	

※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처리결과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들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처리결과를 조사해 보았다. 청구별 원고 승소율은 기타 손해배상사건과 기타사건을 제외하면 반론보도가 76.9%로 가장 높았고, 손해배상사건이 그 뒤를 이은 52.1%를 나타냈으며, 정정보도사건이 46.6%로 비교적 낮았다.

정정보도청구의 원고 패소율은 53.4%로 손해배상의 경우보다 5.5%p, 반론보도청구보다는 30.3%p 높았다. 정정보도 기각사유 중에는 보도내용에 진실성 및 진실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가장 많았다. 기각 사유 중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측의 반론이 게재된 바 있으므로 위자료의 지급 이외에 정정보도까지 명할 필요는 없다"[5]거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방송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 할 수 없고, 정정보도가 원고의 명예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준다고 볼 수 없다"[6]고 판시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삭제 청구는 방송사 홈페이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 한 건 있었다. 원고는 재판부에 피고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게시된 문제의 방송내용을 전부 삭제해달라는 청구를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내용 전부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므로 게시물 삭제 등은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다시보기'란에 원보도에 덧붙여 정정방송을 함께 게시하라"고 판시했다.[7]

5) 서울고등법원 2008. 2. 13. 선고 2007나217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가합23884 판결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419 판결

금지가처분이란 침해가 예견되는 보도에 대해 보도 전에 신청하는 예방차원의 조치를 말하는데 분석대상 금지가처분 판결 2건의 경우 모두 기각되었다.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를 통해 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지가처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배포금지 또는 방송금지를 명할 만큼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함이 아닌 것이 명백해야 한다. 또 법관이 볼 때 신청인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한다.[8] 그밖에 배포금지 혹은 방송금지를 제외한, 대체적인 구제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그 요건이라 할 수 있다.[9] 재판부는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해서 비교적 엄격하게 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기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5건 모두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제기된 것으로 모두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주요 언론사의 보도를 매개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용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실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0]

한편, 법원은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등록된 불법 게시물의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인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확산에 관하여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또 그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시했다.[11]

기타 사건으로는 추후보도청구 2건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위반 확인 및 조정금 지급청구'가 1건이 있었다.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2건 모두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제기되어 두 건 모두 인용되었다.[12]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위반 확인 및 조정금 지급청구사건의 경우,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확보한 원고는 집행문부여의 소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하면 될 것이므로 소를 제기할 별도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13]

---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2. 14. 결정 2008카합415 판결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9. 16. 결정 2008카합1501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7. 선고 2007가합1046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7가합90956 판결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가합57072 판결

〈표 2-3〉 청구별 처리결과

청 구 명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정정보도	27(46.6)	31(53.4)	58(100.0)
반론보도	10(76.9)	3(23.1)	13(100.0)
손해배상	50(52.1)	46(47.9)	96(100.0)
기사삭제		1(100.0)	1(100.0)
금지가처분		2(100.0)	2(100.0)
기타 손해배상	5(100.0)		5(100.0)
기타(추후청구 등)	2(66.7)	1(33.3)	3(100.0)
합 계	94(52.8)	84(47.2)	178(100.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을 집계한 결과, 명예훼손 단독의 경우 절반보다 조금 높은 53.8%였고, 명예와 초상권이 동시에 침해된 경우는 80.0%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명예와 초상권 그리고 성명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나 초상권 단독 침해의 경우 등은 100.0%의 원고 승소율을 나타냈지만 빈도수가 너무 적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초상권침해가 인정된 사례로는, 뉴스에서 경찰의 공식 브리핑을 토대로 범죄 혐의자의 초상 등을 공개했으나 허위사실로 밝혀진 사건,[14] 공개수배 방송 프로그램에서 피의자의 초상 등을 공개했으나 피해자가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15] 단지 드라마 전개상 연주회 장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주회 장면에 대한 촬영 의도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실연과정을 촬영하고, 이후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편집 · 방송한 사건[16] 등이 있었다.

반면, 법원은 소위 '386 간첩단 일심회' 사건관련 피의자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이 보도된 사안에서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라는 의미에서의 공적인물로 볼 수 있어 얼굴사진 게재 등에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17]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7가합14910 판결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가합23884 판결
16)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11059 판결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4. 선고 2006가단448780 판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는 이성교제중 발생한 폭력문제에 대해 방송하면서 동거남에 의해 전신화상을 입은 원고의 화상부위 사진을 원고의 동의 없이 공표한 사건,[18] 경찰의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문서를 기초로 기사의 제목을 '내연녀'로 표기한 사건,[19] 대학생시절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한 것 외에는 대외적으로 아무런 공적 활동을 한 바 없는 원고의 실명과 직장사진 및 영업활동을 보도한 사건[20] 등이 있었다.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원고 회사의 상호, 상품포장용 박스, 출입구, 내부전경, 상점 주변의 지형지물 등을 방영하여 오인케 한 보도도 있었는데 이 경우 판결은 상호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하지는 않았고 명예 또는 신용훼손의 일환으로 판단하였다.[21]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명 예	50(53.8)	43(46.2)	93(100.0)
명예/신용	1(100.0)		1(100.0)
명예/사생활	1(50.0)	1(50.0)	2(100.0)
명예/상호	2(100.0)		2(100.0)
명예/초상	4(80.0)	1(20.0)	5(100.0)
명예/초상/사생활	1(100.0)		1(100.0)
명예/초상/성명	3(100.0)		3(100.0)
명예/초상/상호	2(100.0)		2(100.0)
명예/초상/성명/사생활	1(100.0)		1(100.0)
사생활/기타		1(100.0)	1(100.0)
초 상	2(100.0)		2(100.0)
초상/사생활	1(100.0)		1(100.0)
기 타	2(100.0)		2(100.0)
합 계	70(60.3)	46(39.7)	116(100.0)

※ ( )안의 숫자는 %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7가단40534 판결
19) 서울고등법원 2008. 3. 26. 선고 2007나71266 판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4. 선고 2006가단448780 판결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5. 23. 선고 2007가합117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4798 판결

5) 원고 유형별 처리결과

10건 이상의 빈도를 보인 사건 중 원고 유형별 승소율을 살펴보면, 공직자와 기업이 각 80.0%로 가장 높았고 일반인이 65.3%였으며, 공적인물과 언론사의 경우 각각 33.3%와 20.0%로 낮게 나타났다. 그 외의 원고 유형들은 빈도가 낮아 원고 승소율이 높거나 낮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직자의 승소율이 일반인에 비해 14.7%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산한 공인 원고의 승소율은 56.7%에 그쳐 일반인보다 8.6%p 낮았다.[22]

재판부는 경찰관의 범죄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관을 포함한 국가 공무원에 대한 언론매체의 감시 및 비판기능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될 수 없다"[23]거나 "보도의 대상자가 공직자이거나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어떤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공적인물인 경우에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예외적으로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4]고 판시하여 위법성의 조각사유 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혹은 공적인물인지 사적인물인지에 따라 그 심사를 달리 할 것임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한편, 법원은 언론사가 정치강연회에서 초청연사가 한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비록 위 발언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제반 사정상 그 명예훼손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25] 이처럼 언론사가 원고인 언론사간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은 보도내용의 진실 상당성을 부인하면서도 앞서 살펴본 공직자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부정하기도 했다.[26]

공적인물만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면, 대형교회의 대표자, 사단법인 스포츠위원회의 전임 회장, 유명 변호사 등과 같은 기타 공적인물의 승소율이 비교적 높은데 반해, 언론인의 경우 모두 패소해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

22) 참고로, 2005~2007년도 선고대상 언론소송 판결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3년간 공직자 승소율은 51.9%로 일반인의 승소율 55.9%보다 4.0%p 낮았다. 또한, 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한 공인의 원고 승소율은 35.7%에 그쳐 일반인에 비해 20.2%p 낮았다. 언론중재위원회(2007).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36면 참조.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8가합52401 판결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4. 선고 2006가단448780 판결
2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26)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나43008 판결

〈표 2-5〉 대표 원고 유형별 처리결과

대표원고 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공 직 자	12(80.0)	3(20.0)	15(100.0)
공적인물	5(33.3)	10(66.7)	15(100.0)
일 반 인	32(65.3)	17(34.7)	49(100.0)
공공단체	1(100.0)		1(100.0)
교육기관	1(100.0)		1(100.0)
국가기관	3(75.0)	1(25.0)	4(100.0)
기 업	8(80.0)	2(20.0)	10(100.0)
일반단체	2(40.0)	3(60.0)	5(100.0)
언 론 사	2(20.0)	8(80.0)	10(100.0)
종교단체	1(33.3)	2(66.7)	3(100.0)
지 자 체	2(100.0)		2(100.0)
기 타	1(100.0)		1(100.0)
합 계	70(60.3)	46(39.7)	116(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6〉 공적 인물에 대한 처리결과

공적인물 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정치인	1(50.0)	1(50.0)	2(100.0)
언론인		7(100.0)	7(100.0)
기업가		1(100.0)	1(100.0)
기 타	4(80.0)	1(20.0)	5(100.0)
합 계	5(33.3)	10(66.7)	15(100.0)

※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율이 76.2%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이어 일간신문과 방송매체 상대 원고 승소율이 각각 68.8%와 57.9%를 나타내 비교적 높은 원고 승소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주간신문은 35.7%에 그쳤다. 그밖에 월간지와 뉴스통신의 경우 각각 60.0%와 33.3%의 원고 승소율을 나타냈으나 두 매체 모두 빈도가 너무 낮아 별 의미는 없다.

일간지 중에는 지방종합일간지(87.5%)가 중앙종합일간지(61.9%)보다 원고 승소율이 25.6%p 높았다. 방

송의 경우, 중앙방송의 원고 승소율이 70.0%로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지방방송의 경우 25.0%에 머물렀다. 인터넷 매체 중에는 포털사이트의 경우 모두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신문이 77.8%, 언론사닷컴이 57.1%의 원고 승소율을 각각 나타냈다. 그러나 빈도가 낮아 역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표 2-7〉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일 간	22(68.8)	10(31.2)	32(100.0)
주 간	5(35.7)	9(64.3)	14(100.0)
월 간	3(60.0)	2(40.0)	5(100.0)
방 송	22(57.9)	16(42.1)	38(100.0)
뉴스통신	2(33.3)	4(66.7)	6(100.0)
인 터 넷	16(76.2)	5(23.8)	21(100.0)
합 계	70(60.3)	46(39.7)	116(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8〉 일간지 처리결과

일간지종별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중앙종합	13(61.9)	8(38.1)	21(100.0)
지역종합	7(87.5)	1(12.5)	8(100.0)
일반경제	1(100.0)		1(100.0)
외 국 어	1(50.0)	1(50.0)	2(100.0)
합계	22(68.8)	10(31.2)	32(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9〉 방송 처리결과

방송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중 앙	21(70.0)	9(30.0)	30(100.0)
지 방	1(25.0)	3(75.0)	4(100.0)
민 방		1(100.0)	1(100.0)
라 디 오		1(100.0)	1(100.0)
케 이 블		2(100.0)	2(100.0)
합 계	22(57.9)	16(42.1)	38(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처리결과

방송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인터넷신문	7(77.8)	2(22.2)	9(100.0)
언론사닷컴	4(57.1)	3(42.9)	7(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계	16(76.2)	5(23.8)	21(100.0)

※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소제기 대상기사의 보도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보도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스트레이트 기사 대상 원고승소율이 62.1%로 방송외 매체 보도유형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방송매체 보도유형 중에서는 시사 · 고발프로그램(78.6%) 대상 원고 승소율이 뉴스 프로그램(46.2%)보다 32.4%p나 높았다. 이에 비해 교양 · 정보 프로그램 대상 원고승소율은 25.0%에 그쳤다.

사설이나 칼럼 등 이른바 의견성 기사가 인용된 사례로는 화장장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전속된 것이라는 전제사실에 근거해 원고 기초자치단체의 시장이 자치조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사설기사에 대해 의견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명한 사건,[27] 한 대학의 총장이자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인 원고가 연구조사의 결과물을 출판함에 있어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원고의 이름을 올려 출판했다며 원고 소속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비판한 기고기사에 대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28] 등이 있었다.

드라마에 대한 판결 중에는 드라마 전개상 연주회 장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을 촬영하여 드라마에 내보낸 사안에서 "원고들의 연주행위가 공연으로서 갖는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 일체성이 해체되어 단지 드라마의 시각적 효과만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29]이 있었다.

27) 수원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가합7709 판결
28)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나66769 판결
29)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1105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42201 판결

〈표 2-11〉 보도유형별 처리결과(방송 외)

보도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스트레이트	41(62.1)	25(37.9)	66(100.0)
스트레이트/만평		1(100.0)	1(100.0)
스트레이트/사설	2(100.0)		2(100.0)
스트레이트/사설/만평		1(100.0)	1(100.0)
스트레이트/칼럼		3(100.0)	3(100.0)
스트레이트/기타	4(100.0)		4(100.0)
칼 럼	1(100.0)		1(100.0)
합 계	48(61.5)	30(38.5)	78(100.0)

※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방송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뉴 스	6(46.2)	7(53.8)	13(100.0)
시사 · 고발	11(78.6)	3(21.4)	14(100.0)
교양 · 정보	2(25.0)	6(75.0)	8(100.0)
드 라 마	2(100.0)		2(100.0)
기 타	1(100.0)		1(100.0)
합 계	22(57.9)	16(42.1)	38(100.0)

※ ( )안의 숫자는 %

3. 손해배상청구사건

매체별 소송건수 116건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눌 경우 178건의 청구로 환산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30] 이중 손해배상청구 96건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1)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 96건 중 원고 일부승소한 사건은 50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52.1%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사건의 원고 승소율 60.3%보다는 8.2%p 낮은 것이지만 정정청구사건의 원고 승소율 46.6%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이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청구빈도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96 (100.0)	50 (52.1)	46 (47.9)

※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의 다소를 살펴보았다. 빈도가 매우 낮은 최고액 또는 최저액으로 인해 평균액이 많이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평균액으로 중심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중앙액(Median)[31] 과 최빈액(Mode)[32]을 함께 조사했다.

청구액과 인용액은 원고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 각 원고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이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한 매체별 금액 기준이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언론인

30) <표 1-5> 참조
31)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액을 말함
32) 빈도수가 가장 높은 액수를 말함

이 소속된 매체에 합산했다.

분석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7억 4,617만 원이었고, 중앙액과 최빈액은 각 1억원이었으며 최저액은 1백만 원이었다. 1억 원 이상인 억대의 청구가 전체 손해배상청구 96건 중 63건을 차지해 65.6%나 되었고, 최고 청구액은 119억 9,000만원이었다. 최고 청구액은 지역 민영방송사 대표였던 원고가 미국을 위하여 국가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고와 원고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방송사 및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사건이었다.[33]

〈표 3-2〉 청구액

청구액 (원) / 빈 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96	746,169,229	100,000,000	100,000,000	1,000,000	11,99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50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은 2,340만원, 중앙액은 1,100만원으로 인용액 평균이 중앙액의 2배 이상이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이었다.

위자료 인용 최고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원고에 대해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알몸 뒷면을 담은 컬러 사진을 일간신문에 게재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알몸 사진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며 보도의 공익성을 부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34] 그 외 1억 원과 7천만 원이 각 1건, 6천만 원과 2,500만원이 각 2건 있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50건 중 항소심 판결은 12건이고 상고심 판결은 5건이었다. 위 상소심 17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인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7건 중 원고 원심 패소판결을 번복하여 손해배상을 새롭게 명한 2건을 제외한 15건의 경우, 원심 인용액을 감액하여 인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원심 인용액보다 증액하여 인용한 경우는 2건이 있었다. 즉, 나머지 13건의 경우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 선고 2007가합22762, 2007가합53582(병합) 판결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87 판결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사의 내용 및 게재경위, 표현방법, 언론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생활 근거지,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재판과정에 나타난 피고들의 태도, 인터뷰 장면 방송시간,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와 경력, 공개된 원고들의 사생활의 내용과 침해의 정도, 원고들의 모습이 방영된 시간 및 프로그램,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계속 보도한 점, 주로 1면에 배치된 점, 사용된 어휘에 원고를 비난하는 목적이 드러난 점,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여지가 있는 점, 원고 측이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무언가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한 점,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인용액

인용액 (원) / 빈 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50	23,400,000	11,000,000	10,000,000	1,000,000	150,000,000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48.0%로 절반에 가까웠다. 또한 배상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되 2천만 원 범위 내인 경우가 26.0%로 전체 손해배상청구 인용사건의 약 1/4을 차지했다. 인용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역시 전체의 26.0%로 1/4을 넘었다.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인용액 (원) / 빈 도	5백만 이하	5백만초과 ~1천만	1천만초과 ~2천만	2천만초과 ~3천만	3천만초과 ~5천만	5천만초과 ~7천만	7천만초과 ~1억	1억초과 ~1억5천
50 (100.0)	11 (22.0)	13 (26.0)	13 (26.0)	5 (10.0)	2 (4.0)	3 (6.0)	1 (2.0)	2 (4.0)

※ ( )안의 숫자는 %

5) 침해유형별 인용액

법원이 침해를 인정한 인격권 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을 집계해본 결과, 명예훼손 단독의 경우 평균은 2,427만 원, 중앙액은 1,000만 원이었고, 초상권 침해 단독의 경우, 평균은 약 4,467만 원, 중앙액이 6,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초상권 침해 인용 최고액은 원고들의 연주장면이 원고들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드라마에 방송된 사안으로 원고인 연주자 4인에게 모두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한 사건이었다.[35] 이 사건의 원심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4인에게 위자료로 800만 원을 인정하는데 그쳤는데 상고심에서 확정된 배상액은 원심의 7.5배에 이른다.[36]

상호권 침해가 포함된 사안으로는 원산지를 속여 홍삼 가공품을 판매한 홍삼 가공업체를 고발하는 뉴스에서 배경화면에 실제 적발된 업체가 아닌 원고 업체의 상호와 내부전경, 출입구 등을 식별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으로 법원은 원고의 명예 및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피고 방송사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37]

〈표 3-5〉 손해배상사건 침해유형별 인용액

침해유형	인용빈도	평 균(원)
명 예	33	24,272,727
사생활/명예	2	40,000,000
상호/명예	2	25,000,000
성명/사생활/명예	1	5,000,000
초 상	3	44,666,667
초상/명예	4	17,000,000
초상/사생활	1	6,000,000
초상/성명/명예	2	12,000,000
기 타	2	1,000,000
합 계	50	23,400,000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 유형별로 인용액의 평균을 보면, 개인의 경우 일반인이 약 2,436만 원으로 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산한 공인의 인용액 평균 약 1,460만 원보다 1,000만 원 가까이 많았다. 공인 중에는 공직자의 인용액 평균이 약 1,513만 원이었고, 공적인물은 1,333만 원이었다. 공적인물 중에는 기타 유명인과 정치인의 인용액 평균이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빈도가 낮아 별 의미는 없다.

35)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11059 판결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42201 판결
3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5. 23. 선고 2007가합117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4798 판결

〈표 3-6〉 손해배상사건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소송빈도	원고일부승소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개 인	공직자	11	8	72.7	15,125,000
	공적인물	13	3	23.1	13,333,333
	일 반 인	45	28	62.2	24,357,143
단 체	언론사	10	2	20.0	60,000,000
	기 업 체	7	5	71.4	15,200,000
	공공단체	1	1	100.0	10,000,000
	종교단체	3	1	33.3	70,000,000
	교육기관	1	1	100.0	50,000,000
	일반단체	4		0.0	0
	기 타	1	1	100.0	1,000,000
계		96	50	52.1	23,400,000

〈표 3-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유형	소송빈도	원고일부승소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정치인	1	1	100.0	10,000,000
기업가	1	0	0.0	
언론인	7	0	0.0	
기타 유명인	4	2	50.0	15,000,000
계	13	3	23.1	1,333,333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승소율은(빈도가 2건 이하는 제외) 월간지가 75.0%로 가장 높았고, 지방종합일간지가 66.7%, 인터넷매체가 62.5%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중앙방송은 61.5%, 중앙종합일간지는 50.0%, 주간신문은 33.3% 등이었다.

인용액 평균 현황은 인터넷매체가 3,610만원(중앙액 1,550만원, 최빈액 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가 3,000만원, 중앙종합일간지가 2,800만원, 중앙방송이 약 2,269만원 순이었다.

참고로, 매체유형별 인용액은 언론사 단독의 부담액뿐만 아니라 소속 언론인에게 명한 부담액까지를 합산한 액수 또는 연대하여 지게 되는 부진정연대채무 금액을 포함한 액수이다.

〈표 3-8〉 손해배상사건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 인용액		빈도	원고승소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일 간	중앙종합	16	8(50.0)	28,000,000	10,000,000	10,000,000	3,000,000	150,000,000
	지방종합	6	4(66.7)	8,000,000	8,000,000	10,000,000	6,000,000	10,000,000
	경 제 지	1	1(100.0)	20,000,000				
	외 국 어	2	1(50.0)	10,000,000				
	소 계	25	14(56.0)	20,428,571	10,000,000	10,000,000	3,000,000	150,000,000
방 송	중 앙	26	16(61.5)	22,678,500	13,000,000	1,000,000	1,000,000	70,000,000
	지 방	4	1(25.0)	25,000,000				
	민 방	1	0(0.0)					
	라 디 오	1	0(0.0)					
	케 이 블	1	0(0.0)					
	소 계	33	17(51.5)	22,823,529	14,000,000	1,000,000	1,000,000	70,000,000
주 간		12	4(33.3)	575,000	5,000,000	5,000,000	3,000,000	10,000,000
월 간		4	3(75.0)	3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	50,000,000
뉴스통신		6	2(33.3)	11,000,000				
인 터 넷		16	10(62.5)	36,100,000	15,500,000	20,000,000	5,000,000	150,000,000
합 계		96	50(52.1)	23,400,000	11,000,000	10,000,000	1,000,000	150,000,000

※ ( )안의 숫자는 %

8)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 96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51건(53.1%)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언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건수는 26건으로 언론인 승소율은 51.0%였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사건 전체 피고 승소율 47.9%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 3-9〉 손해배상사건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청구빈도	언론인 피고 사건	처 리 결 과	
		언론인 승	언론인 패
96	51 (100.0)	26 (51.0)	25 (49.0)

※ ( )안의 숫자는 %

9) 손해배상 기각 사유

언론사건에서는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판례와 학설에 의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공익성과 진실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각 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이다.

2008년 손해배상청구 중 기각된 사건의 기각사유를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은 사유 즉, 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상당성을 인정해 기각한 경우가 27건(58.7%) 이었고, 기각 사유에 진실성 또는 진실상당성이 포함된 것까지 합산할 경우 30건(65.2%)에 이르렀다.

또, 기각 사유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포함된 경우가 모두 6건(13.0%)을 차지해 그 비율이 적지않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각한 경우도 모두 합할 경우 3건 있었다.

기타사유를 살펴보면, 정정보도를 하는 것만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전보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기각한 것이 2건,[38]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기각한 것이 4건,[39]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나 의견을 보도하지 않았다하여 기각한 것 1건[40] 등이 있었다.

〈표 3-10〉 손해배상 기각사유

손해배상 기각사유	빈 도	비 율(%)
진실상당성	23	50.0
진 실 성	4	8.7
불 특 정	4	8.7
시 효 소 멸	2	4.3
진실상당성/기타	1	2.2
불특정/적법의견	1	2.2
불특정/진실상당성	1	2.2
적 법 의 견	1	2.2
적법의견/진실성	1	2.2
기 타	8	17.4
합 계	46	100.0

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419 판결
3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나43008 판결
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13. 선고 2007가합15678 판결

4.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1)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급별 처리결과

분석대상 판결 중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58건으로 조사되었다. 처리결과 원고 승소율이 46.6%로 전체 사건의 원고 승소율 60.3%보다 13.7%p 낮게 나타났다. 1심 원고 승소율만 보면 이보다 높은 54.3%이지만 이것 역시 전체 사건의 1심 원고 승소율 58.2%보다 3.9%p 낮은 것이다. 한편, 정정보도가 청구된 항소심 사건과 상고심 사건의 경우, 원고 승소율이 각각 20.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정정보도청구사건 심급별 처리결과

구 분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1 심	46	25	54.3
항 소 심	5	1	20.0
상 고 심	5	1	20.0
환송후심	2	0	0.0
합 계	58	27	46.6

2)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급별 처리결과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사건은 13건으로 조사되었다. 처리결과 원고 승소율이 76.9%로 전체 사건의 원고 승소율 60.3%에 비해 16.6%p 높게 나타났다. 1심 원고 승소율의 경우도 72.7%로 전체 사건의 1심 원고 승소율 58.2%에 비해 14.5%p 높았다. 항소심 사건은 2건이었는데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표 4-2〉 반론보도청구사건 심급별 처리결과

구 분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1 심	11	8	72.7
항소심	2	2	100.0
상고심/환송후심			
합 계	13	10	76.9

3)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결하게 된다. 분석대상 반론보도청구 13건 중 기각된 3건의 경우 모두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한편, 법원은 신청인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낸 청구를 기각하면서 부가적으로 "자체적인 정책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개별적인 언론보도에 대하여 일일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판시해 정부기관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의 일단을 피력했다.[41]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7카기5982 판결

5.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신청 비율

매체별 소송건 116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178건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2008년 분석대상판결의 언론조정신청 비율을 산정해보았다.

2008년 분석대상판결 중 우리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은 25.3%로 4건에 1건 꼴로 우리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42] 이를 청구권별로 보면, 반론보도청구가 38.5%로 가장 높았고, 정정보도청구가 32.8%, 손해배상청구사건이 21.9%로 각각 나타났다.

〈표 5-1〉 언론조정신청 비율

청 구 명	소송빈도	조정신청건수	조정신청비율(%)
정 정	58	19	32.8
반 론	13	5	38.5
손해배상	96	21	21.9
기사삭제	1		
금지가처분	2		
기타 손해배상	5		
기 타	3		
계	178	45	25.3

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분석대상 판결 중 우리 위원회 조정를 거친 사건 45건을 대상으로 조정결과와 판결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위원회가 조정결정한 21건의 경우, 16건은 원고 일부 승소했고 5건은 원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자가 이의신청한 경우는 모두 원고 일부승소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도 원고 일부승소가 80.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오히려 신청인이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의 경우 빈도는 적지만 모두 원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던 18건의 경우 10건이 원고 일부승소하였고, 8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

42) 조정신청을 제기한 시기는 대부분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있었지만 상고심의 경우 2006년에 신청된 경우도 있었다.

났다. 그밖에 위원회의 조정 시에는 조정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되었으나 법원에서 1,200만원의 배상액을 인용 받은 경우가 있었으며, 조정당시 취하된 5건의 경우, 1건만 인용되었다.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 조정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2	0	2
	피신청인 이의신청	15	12	3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4	4	0
조정불성립		18	10	8
각 하		1	1	0
취 하		5	1	4
합 계		45	28	17

3) 조정을 거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 비교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모두 21건이었는데 법원은 이중 13건을 인용하고 8건을 기각했다. 이를 위원회의 조정결과별로 살펴보면, 위원회가 조정결정한 10건의 경우 3건을 제외한 7건(70%)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불성립된 6건의 경우 4건은 인용되고 2건은 기각되었으며, 취하된 4건은 3건이 기각되었고 1건만 인용되었다. 그밖에 기간도과로 각하된 1건은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표 5-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조정처리결과별 법원처리결과

구 분	합 계		조정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취 하		각 하	
청구건수	21		10		6		4		1	
법원 처리결과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13	8	7	3	4	2	1	3	1	0

4)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비교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모두 19건이었는데 법원은 이중 12건을 인용하고 7건을 기각했다. 이를 위원회의 조정결과별로 살펴보면, 위원회가 조정결정한 9건의 경우 2건을 제외한 7건(77.8%)이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정청구에 대해 위원회가 내린 조정결정의 대다수가 법원에 의해 받

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원에 자동 소제기 간주된 후 정정보도가 인용된 위원회의 조정결정 7건에 대해 조정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결정한 사례는 3건에 그쳤고, 나머지 4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한 사례였다. 특이한 점은 위원회가 정정청구에 대해 반론보도로 조정결정한 위 4건 모두 이의신청의 주체가 피신청인이라는 점이다.

한편,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2건의 정정청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각사례의 경우, 위원회는 정정청구에 대해 반론보도로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자동 소 제기된 사건으로 법원은 해당 사건보도에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정정청구를 기각했다.[43] 다음 사례의 경우, 위원회는 정정 및 반론보도로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법원은 기사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반론보도만 인용했다.[44]

조정불성립결정의 경우는 9건 중 5건이 법원에서 인용되고 4건은 기각되어 인용률이 55.6%였다. 그 밖에 원고가 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취하한 뒤 법원에 제소했으나 적법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도 있었다.[45]

〈표 5-4〉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조정처리결과별 법원처리결과

구 분	합 계		조정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취 하		각 하	
청구건수	19		9		9		1		0	
법 원 처리결과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12	7	7	2	5	4	0	1	0	0

5) 조정을 거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비교

우리 위원회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법원에 제소된 사건은 2건이다. 이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린 반론청구사건 3건의 경우 2건은 기각되고 한 건은 인용되었다.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가합52401 판결
44) 서울고등법원 2008. 2. 13. 선고 2007나41852 판결
4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가합12799 판결

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했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에 제소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송 프르그램의 말미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을 내린 사안이 법원에서는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한 것도 있었고,[46] 위원회의 조정결정보다 2배 이상의 긴 내용을 방송하라고 판결한 경우[47]도 있었다.

6)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2008년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인용액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 위원회 조정액 평균은 약 333만 원으로 법원 인용액 평균 2,340만 원의 14.2%로 법원의 인용액에 비해 약 1/7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조정액의 중앙액은 275만 원으로 법원 인용액의 중앙액 1,100만 원의 1/4 수준이었다.

참고로, 2008년 한 해 위원회가 중재결정을 한 9건의 손해배상청구사건 중재액을 법원 인용액과 비교해 본 결과, 위원회 중재액의 평균 약 232만 원은 법원 인용액의 평균 대비 약 9.9% 수준이었고, 중재액의 중앙액 200만원은 법원 인용액 중앙액의 약 1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원회의 중재액 평균은 법원 인용액 평균의 약 1/10, 중재액 중앙액은 법원 인용액 중앙액의 약 1/5.5 수준임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법원 인용액에 대비한 위원회 중재액의 평균액이나 중앙액은 법원 인용액에 대비한 위원회 조정액의 그것들보다 더 낮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은 사안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변인들이 개입하므로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을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전체적인 추이를 참고할 수 있다.

〈표 5-5〉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법원 인용액과 위원회 조정액 및 중재액 비교

구분	빈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인용액	50	23,400,000	11,000,000	10,000,000	1,000,000	150,000,000
조정액	32	3,331,250	2,750,000	1,000,000	300,000	10,000,000
중재액	9	2,322,222	2,000,000	2,000,000	900,000	4,000,000

4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7가합24153 판결
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6. 판결에 나타난 사건의 특성

명예훼손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법리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판결문에 직접 언급되고 있는 경우 그 사례들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보도의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가 7건, 원고를 공인 또는 공직자로 판단한 사례가 5건, 피의사실 보도가 13건, '단정표현'이 언급된 사례가 3건, '의혹제기'가 언급된 사례가 6건, '인신공격'이 언급된 사례가 2건, '악의성'이 언급된 사례가 3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가 1건 등이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로는 한 일간지가 성로비 의혹을 받고 있던 원고의 알몸 뒷면 사진을 게재한 사안에 대해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48] 그 외 한 기업의 이중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안에서 그 기초사실이 허위인 점에다 표현방법 등을 보태어 볼 때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사례도 있었다.[49]

판결에서 공인 또는 공직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례로는 지역 방송사의 보도국장, 대형교회의 대표, 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계 경제팀장 등이 있었다.

'피의사실 공표'나 '단정표현'과 관련해서 법원은 "'검찰은 …… 밝혀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검찰의 기소사실이 확연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며 진실 상당성을 부정했다.[50]

그 밖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공개수배 프로그램에서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 등 신원을 공개했으나, 피의자가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51] 경찰의 공식브리핑을 토대로 뉴스에서 범죄혐의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했다 허위사실로 밝혀져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52] 등도 있었다.

판결에서 '악의성'을 언급한 경우로는 항소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승소한 1심 판결을 확정판결인 것처럼 보도한 사안에 대해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53]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취재기자의 확인의무 소홀의 정도에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54] 등이 있었다.

---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87 판결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7가합15845 판결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가단15443 판결
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가합23884 판결
5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7가합14910 판결
53)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4나45761 판결
5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또한, '원고와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등의 기사에 대해 원고를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인신공격'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55]가 있는가 하면 반면, 원고에 대하여 '독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56]도 있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판결도 한 건 있었는데 제주 4 · 3사건의 희생자 또는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제주 4 · 3사건의 희생자나 유족으로 확정된 사람이 무려 9,860명에 이르므로 제주 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제주 4.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57]

그 밖에, 드라마에 삽입된 연주장면에서 원고들의 연주회 연주행위가 공연으로서 갖는 의미가 완전히 무시된 경우에 관한 판결,[58]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59]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오기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보도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60] 등도 주목을 요하는 사례들이다.

55) 광주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가합4775 판결
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가합12799 판결
57) 제주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2가합560 판결
58)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11059 판결
5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가합1300 판결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가합48297 판결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96건)

(선고일 순)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 급	사건청구명	사건피고명	결 과
2008-01-04	2006가단448780	서울중앙	1심	손배	㈜조선일보사 외 1명	인용
2008-01-08	2005가단49587	창원지방	1심	손배	㈜경남신문사 외 2명	인용
2008-01-09	2007가합7035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서울신문사 외 1명	인용
2008-01-10	2002가합560	제주지방	1심	손배	㈜월간조선사	기각
2008-01-16	2006나92006	서울고등	2심	손배	엔에이치엔㈜ 외 1명	인용
2008-01-16	2006가합91440 (2006가합100136과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2008-01-17	200다59912	대법원	3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2명	인용
2008-01-18	2007가합7693	수원지방	1심	정정	㈜신경인매일	인용
2008-01-18	2007가합7709	수원지방	1심	정정	㈜신경인매일	인용
2008-01-23	2007가합52978	서울중앙	1심	손배	홍준표 외 2명	기각
2008-01-23	2007카기5982	서울중앙	1심	반론	㈜동아일보사	기각
2008-01-23	2007가합2913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문화일보 외 3명	기각
2008-01-30	2004나45761	서울고등	2심	손배	고○○	인용
2008-01-31	2007가합9390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에스비에스	인용
2008-02-01	2005다8262	대법원	3심	손배	㈜조선일보사 외 9명	기각
2008-02-13	2007나41852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동아일보사	기각/인용
2008-02-13	2007가합90741	서울중앙	1심	정정	㈜문화일보	인용
2008-02-13	2007가합3913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매일경제TV㈜ 외 1명	기각
2008-02-13	2007나2178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일요신문사	기각/인용
2008-02-14	2005다7573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외 7명	기각
2008-02-14	2008카합415	서울남부	1심	방송금지가처분	(재)씨비에스	기각
2008-02-14	2007가합6512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조○○	인용
2008-02-14	2007가단5109	창원지방	1심	손배	㈜연합뉴스 외 1명	인용
2008-02-28	2005다28365	대법원	3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7명	기각/인용
2008-02-28	2007가단443737	서울중앙	1심	손배	이○○, 백○○	인용
2008-03-13	2007다87252	대법원	3심	손배	(주)대전방송 외 1명	기각
2008-03-13	2008다4063	대법원	3심	손배	(주)대전문화방송 외 1명	기각
2008-03-13	2007가합15678	서울남부	1심	손배	㈜문화방송	기각
2008-03-19	2007가합8077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동아일보 외 3명	기각
2008-03-26	2007나71266	서울고등	2심	손배	㈜뉴시스 외 4명	인용
2008-03-26	2007나71235	서울고등	2심	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각
2008-03-26	2007가단40534	서울중앙	1심	손배	㈜문화방송	인용
2008-04-03	2007나11033	부산고등	2심	손배	김○○ 외 2명	인용
2008-04-03	2007가합14910	서울남부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명	인용
2008-04-24	2006다53214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2008-05-01	2007가단303037	서울중앙	1심	손배	㈜헤럴드미디어 외 1명	기각
2008-05-07	2007가합104626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경향신문사 외 3명	인용
2008-05-08	2007가합15845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아시아경제신문사 외 2명	인용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 급	사건청구명	사건피고명	결 과
2008-05-08	2007가합24153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사	인용
2008-05-14	2007나75541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겨레신문㈜ 외 2명	기각
2008-05-15	2007가합686	대전지방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2008-05-15	2007가합2388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에스비에스	기각/인용
2008-05-23	2007가합1170	대구지방안동지원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인용
2008-05-27	2007나11059	서울고등	2심	손배	㈜문화방송 외 1명	인용
2008-06-05	2007가합2304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상조뉴스㈜	인용
2008-06-05	2007가합11560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인용
2008-06-12	2007다35695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월간조선사 외 4명	인용
2008-06-19	2007가합21635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문화방송	인용
2008-06-19	2007가합21659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인용
2008-06-25	2007가합4913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씨비에스아이 외 4명	인용
2008-07-02	2007나60990	서울고등	2심	손배	엔에이치엔㈜ 외 3명	인용
2008-07-02	2007나61870	서울고등	2심	손배	㈜프런티어타임스	인용
2008-07-03	2008카기1197	서울남부	1심	반론	㈜문화방송	인용
2008-07-10	2008가합4775	광주지방	1심	정정/손배	○○신문(유)	인용
2008-07-16	2007나66769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조선일보사 외 1명	인용
2008-07-23	2007가단448343	서울중앙	1심	손배	㈜문화방송	기각
2008-07-24	2007가합11548	수원지방	1심	정정/손배	㈜신경인매일	인용
2008-07-24	2007가합21642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인용
2008-07-24	2008나43008	서울고등	환송후심	정정/손배	㈜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2008-07-30	2007나106858	서울고등	2심	손배	백○○ 외 3명	인용
2008-07-31	2008가합10694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문화방송	인용
2008-08-12	2008가소17113	대전지방천안지원	1심	손배	㈜문화방송	인용
2008-08-12	2008가소17106	대전지방 천안지원	1심	손배	㈜문화방송	인용
2008-08-13	2008카기2967	서울중앙	1심	반론	㈜조선일보사	인용
2008-08-13	2008카기2968	서울중앙	1심	반론	㈜문화일보	인용
2008-08-14	2008가합1300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강원민방	기각
2008-08-27	2007가합57072	서울중앙	1심	손배/기타	㈜에스비에스	각하
2008-08-27	2007가합57089	서울중앙	1심	손배	㈜에스비에스 외 2명	기각
2008-09-10	2007가합90956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문화방송 외 8명	인용
2008-09-11	2008다42201	대법원	3심	손배	㈜문화방송 외 1명	인용
2008-09-16	2008카합1501	의정부지방고양지원	1심	배포등금지가처분	㈜창작과비평사	기각
2008-09-16	2008가소174816	서울남부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2008-09-16	2008가소174823	서울남부	1심	손배	㈜연합뉴스	기각
2008-09-19	2008가합252	춘천지방	1심	정정/손배	㈜강원도민일보 외 2명	기각
2008-09-24	2008가합4511	서울동부	1심	정정/손배	김○ 외 2명	인용
2008-10-01	2007나117599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손배	㈜경인일보 외 2명	기각/인용/기각
2008-10-10	2008나19484	서울중앙	2심	손배	㈜혜럴드미디어 외 1명	인용
2008-10-23	2008다31263	대법원	3심	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각
2008-10-29	2008가합5240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연합뉴스	기각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 급	사건청구명	사건피고명	결 과
2008-10-31	2008가합2419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문화방송 외 1명	인용/기각/기각/기각
2008-11-04	2008가단15443	서울중앙	1심	손배	㈜중앙일보사	인용
2008-11-07	2008나24356	서울중앙	2심	손배	㈜문화방송	기각
2008-11-13	2008다53805	대법원	3심	손배	㈜프런티어타임스	인용
2008-11-26	2008카기5818	서울중앙	1심	반론	㈜참언론	인용
2008-12-03	2008가합5362	전주지방	1심	정정/손배	㈜전주방송 외 3명	기각
2008-12-03	2007가합10123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일요신문사 외 1명	기각
2008-12-03	2007가합22762 2007가합53582(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13명	기각
2008-12-03	2007가합3013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독립신문사 외 4명	기각
2008-12-03	2006가합10948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3명	기각
2008-12-04	2008나4798	대구고등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인용
2008-12-05	2008가합12799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피쉬어리뉴스 외 1명	기각
2008-12-05	2007가합961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2명	기각
2008-12-12	2008가합9625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8명	기각
2008-12-17	2008가합48297	서울중앙	1심	손배	(주)중앙일보사 외 3명	인용
2008-12-17	2007가합96787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문화일보 외 1명	인용
2008-12-24	2008나55247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에스비에스	기각/인용

제2부 언론관련판결 사례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 ·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반론보도청구 사례

반론보도청구 사례 1

이 사건 기사로 인해 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악화되거나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라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3.자 판결 (2007카기5982)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23일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7년 7월 3일 주간동아 제592호 중 『대한민국 弱軍』이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란에서 『주적 없는 군대, 편히 쉬는 군기, 병사들 전투력 녹슨다』 제목으로 국방부가 추진하는 병영문화개선사업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전투력 약화를 야기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 분석해 보면, 이는 크게 ① '병영문화개선사업이 실시된 이후 훈련병들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 등 가혹행위가 줄어들어 훈련병들이 밝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병사들의 병영생활에 있어서도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일과 후 자유시간에 다양한 취미생활이 보장되는 등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등 병영문화개선사업 이후 달라진 병영생활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과, ② '병사들의 군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여 기자의 느낌을 표현하거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옮겨놓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서 "①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으나(이하 ①부분을 사실적 주장 부분이라 한다), ②부분은 위 사실적 주장 부분에서 나타난 병사들의 자유스럽고 명랑해진 모습을 근거로 하여 '이같은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병사들의 군기가 지나치게 해이해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기자의 의견을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빌어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하 ②부분을 의견표명 부분이라 한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위 사실적 주장 부분에서는 병영문화개선사업이 실시된 이후 달라진 병영생활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위 사실적시로 인해 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악화되거나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위 기사에서 위와 같은 병영생활의 변화를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묘사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영생활의 변화 모습이 상당히 구체적

으로 묘사된 이상,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위 사실들에 기초하여 군대문화의 변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독자들이 위 기사의 관점에 매몰되어 일률적으로 병영문화개선사업에 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자체적인 정책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개별적인 언론보도에 대하여 일일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신청인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사　　건 : 2007카기5982 반론보도

신 청 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 성 진

소송수행자 법무관 전 종 호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구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변론종결 : 2008. 1. 9.

판결선고 : 2008. 1. 23.

주　　문 :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주간동아의 「차례」란에 "<반론보도문> 본지 제592호 '대한민국 弱軍' 기사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을 고딕체 24급 포인트 활자로 게재하고, 「커버스토리」란 제1면에 박스형태의 기사로 별지1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을 제목은 본 기사 부제의 서체 및 크기의 활자로, 내용은 본문의 서체 및 크기의 활자로 각 게재하라.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안에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2007. 7. 3. 주간동아 제592호 중 “대한민국 弱軍”이라는 제목의「커버스토리」란에서 "주적 없는 군대, 편히 쉬는 군기, 병사들 전투력 녹슨다“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국방부가 추진하는 병영문화개선사업의 역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일부에 국한된 사실을 지나치게 일반화시켜 마치 병영문화개선사업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전투력 약화를 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별지1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신청인은 정정보도요구문을 통해 이 사건 기사 이외에 “북 재래식 공격에 눈 뜨고 당할라”라는 제목의 기사도 문제삼고 있으나,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로 병영문화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 단

가. 반론보도청구의 일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는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 · 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지

⑴ 이 사건 기사의 구성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 분석해 보면, 이는 크게 ① '병영문화개선사업이 실시된 이후 훈련병들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 등 가혹행위가 줄어들어 훈련병들이 밝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병사들의 병영생활에 있어서도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일과 후 자유시간에 다양한 취미생활이 보장되는 등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등 병영문화개선사업 이후 달라진 병영생활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과, ② '병사들의 군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여 기자의 느낌을 표현하거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옮겨놓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부분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 중 위 ①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으나(이하 ① 부분을 사실적 주장 부분이라 한다), 위 ② 부분은 위 사실적 주장 부분에서 나타난 병사들의 자유스럽고 명랑해진 모습을 근거로 하여 '이같은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병사들의 군기가 지나치게 해이해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기자의 의견을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빌어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하 ② 부분을 의견표명 부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병영운영실태가 충분히 적시된 위 사실적 주장 부분과 함께 위 의견표명 부분이 실린 이상, 위 의견표명 부분이 달리 위 사실적 주장 부분 이외의 별개의 전제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의견표명 부분과 같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고, 아래에서는 위 사실적 주장 부분에 의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만 판단하기로 한다.

⑵ 위 사실적 주장 부분에 의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실적 주장 부분에서는 병영문화개선사업이 실시된 이후 달라진 병영생활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육군훈련소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이 사라지고 교관들도 훈련병들에게 존대어를 쓰며, 특히 화생방 훈련에 있어서도 교관들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가스실 안에서 방독면을 벗은 채 군가를 부르게 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가혹행위를 강요하지 않고 있는 사실, 훈련병들이 쓰는 화장실 변기에 비데가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군부대 내의 PC방,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병사들이 일과 후 여가시간에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된 사실, 병영문화개선사업의 시행 후 전국 군부대 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사실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병영문화개선사업으로 인해 병영생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병영문화도 민주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그에 대한 병사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위 사실을 접한 독자들의 대다수는 과거 열악했던 군대 내의 물적 설비가 개선되고 억압적이었던 병영문화도 많이 민주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고, 달리 위 사실적시로 인해 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악화되거나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위 기사에서 위와 같은 병영생활의 변화를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묘사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영생활의 변화 모습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된 이상,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위 사실들에 기초하여 군대문화의 변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독자들이 위 기사의 관점에 매몰되어 일률적으로 병영문화개선사업에 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자체적인 정책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개별적인 언론보도에 대하여 일일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점 및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로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 창 호
판사 노 태 홍
판사 이 종 훈

〈별지 1〉 반론보도 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기사내용 생략 – 편집자 주

반론보도청구 사례 2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후 맥락, 화면의 구성방식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방송이 일반적인 주의를 가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신청인이 돈으로 상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3.자 판결 (2008카기1197)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3일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8년 3월 27일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21세기 신소재 맥섬석의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맥섬석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신청인이 돈으로 홍보용 상장을 매수했으며 제품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마치 신청인이 돈으로 상장을 매수한 것처럼 방송하였으나 신청인의 직원이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사칭한 피신청인의 취재팀에게 상장에 관해 말한 내용은 이와 관련하여 접수비, 검사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는 취지일 뿐 상장을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뜻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상을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내용을 직접 방송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후 맥락, 화면의 구성방식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방송이 일반적인 주의를 가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신청인이 돈으로 상을 매수하였다(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로 인해 신청인이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반론보도는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8년 4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8서울조정114)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판결문

사　　건 : 2008카기1197 반론보도

신 청 인 : ○○○○○ 주식회사

○○시 ○○면 ○○리

대표이사 곽 ○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구

대표이사 엄 기 영

변 론 종 결 : 2008. 6. 19.

판 결 선 고 : 2008. 7. 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하는 '불만제로'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맥섬석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오백만(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신청인이, 나머지 1/5은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젼(MBC-TV)의 '불만제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맥섬석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자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자로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신청인에게 매주 1억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신청인은 원적외선 방사 세라믹스수지 개발 및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맥섬석'이라

는 상표로 온열기 매트 등을 제조 · 판매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맥섬석'에 관한 방송

피신청인은 2008. 3. 27. 18:50경부터 약 24분간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21세기 신소재 맥섬석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제조 · 판매하는 맥섬석 제품에 관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 중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⑴ 신청인이 제조 · 판매하는 맥섬석 온열 매트기에 내장된 맥섬석 또는 맥섬석 덮개 부분은 실험 결과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없다. 전자파는 매트기에 내장된 열선과 차폐제에 의해 차단될 뿐이다(전문가 인터뷰).

⑵ 신청인은 '맥섬석 이용방법'이라는 안내문에서 '맥섬석을 어항에 넣어두면 물고기가 산소 없이도 오래 산다'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조 · 판매하는 맥섬석을 금붕어가 든 어항에 넣고 금붕어의 생존 여부를 맥섬석을 넣지 않은 금붕어 어항과 비교 · 확인하는 실험(이하, '금붕어 실험'이라 한다)을 한 결과 3일 후 오히려 맥섬석을 넣은 어항에서만 금붕어 한 마리가 죽었고 그 이틀 후 같은 어항에서만 세 마리가 더 죽었다.

⑶ 신청인은 '맥섬석 이용방법'이라는 안내문에서 '쉰 두부를 맥섬석이 든 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면 먹을 수 있는 두부로 재생된다'고 설명하였다.

⑷ 일반돌, 맥반석, 맥섬석, 맥섬석 가공석에 대해 한국원적외선협회에 의뢰하여 40℃에서 원적외선 방사율 검사를 해 보았더니 맥섬석이 인체 파장과 유사하다는 8~11㎛ 대에서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을 나타냈으나 이러한 결과는 일반 돌, 맥반석 등에서도 동일하였다.

⑸ 신청인이 홍보한 수많은 상장들에 관하여 신청인의 직원은 이러한 상 한 장을 받는 데에 100만 원 정도 들었고 많게는 1,000만 원이 들었다고 말하였다(직원 인터뷰).

⑹ 신청인이 맥섬석을 채광한다는 광산을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광산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광산을 찾아가 보니 약 2년 전에 채광한 후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였다.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불성립 등

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 5. 8. 당사자 간의 합의불능을 이유로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소갑 2 내지 4, 소을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전자파 차단에 관한 부분

⑴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제조 · 판매하는 맥섬석 온열매트기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시청자로 하여금 맥섬석 온열매트기는 전자파를 차단하지 못한다고 오해하도록 방송하였다.

⑵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제조 · 판매하는 맥섬석 온열매트기 제품이 전자파를 차단하지 못한다고 방송한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포함된 맥섬석 또는 맥섬석 덮개 부분이 전자파를 차단하지 못한다고 방송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자파는 열선 등 다른 구조물을 통해 차단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등 이 부분 방송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취지, 화면 구성방식과 사용된 어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방송이 시청자로 하여금 맥섬석 뿐만 아니라 맥섬석 온열매트기 제품도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붕어 실험에 관한 부분

⑴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금붕어 실험을 통해 마치 맥섬석이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이 ○○대학교 부설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한 같은 실험(4주간)에서도 처음 9일간 맥섬석을 넣은 어항의 금붕어가 죽지 않은 등 맥섬석을 넣은 어항의 금붕어 폐사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적었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맥섬석을 넣은 어항이 용존산소, pH,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에서 더 유익한 결과를 나타냈다.

⑵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방송은 금붕어 실험을 통해 신청인의 맥섬석 효능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영업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반론보도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방송은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맥섬석의 효능에 관하여 홍보하는 여러 사례 중 하나, 즉 '맥섬석을 어항에 넣어두면 물고기가 산소 없이 오래 산다'는 부분을 특정하여 이를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내용과 취지이고, 더 나아가 맥섬석이 아무런

유익한 효능이 없거나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기하는 반론도 금붕어 실험 결과 금붕어 생존에 관하여 맥섬석이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홍보한 바와 같이 실제로 맥섬석이 어항 속 물고기의 생존에 관하여 더 유익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반론보도로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용존산소 등 반론부분은 이 사건 방송의 대상과 범위를 넘는 새로운 사실적 주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반론보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두부 재생 등에 관한 부분

⑴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부분 방송에서 맥섬석이 쉰 두부를 재생할 수 있다는 홍보내용이 황당하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미 2004. 4. 28. "6㎜세상탐험" 프로그램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사실로 확인하여 방송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자신의 기존 방송내용과 정반대로 맥섬석의 효능을 허위로 몰아세움은 부당하다.

⑵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맥섬석의 효능에 관하여 홍보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쉰 두부 재생 효능 주장을 보도한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이 신청인의 이러한 홍보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부분 방송이 시청자에게 신청인의 위 홍보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인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적외선 방출에 관한 부분

⑴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의 간이한 시험결과를 인용해 맥섬석과 일반 돌의 원적외선 방출량이 별반 다르지 않아 효능이 없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한 신뢰할 만한 원적외선 분광분포 시험 결과 맥섬석이 인체 흡수 파장대인 9~11㎛에서 원적외선 방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결과에서도 맥섬석 분말이 대장균 등 세균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고 탈취효능도 있음이 밝혀졌다.

⑵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맥섬석이 인체에 유익한 파장을 가진 원적외선의 방사율이 일반 돌 등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적 주장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영업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반론보도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인의 반론은 맥섬석이 인체에 유익한 9~11㎛ 파장대에서 원적외선 방사율이 가장 높다는 취지인데, 이는 이 사건 방송에서도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어 이미 방송된 내용이므로, 새삼 반론보도를 통해 원 보도를 반복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과 취지는 이러한 원적외선 방사율이 맥섬석에 특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 정작 신청인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실적 주장(반론)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자신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한 시험 결과 맥섬석의 9~11㎛ 파장대 원적외선의 방사율이 "(다른 돌에 비해) 가장 높게" 나왔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그러한 시험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각 시험검사성적서(소갑 9, 10)는 정작 ○○○○공업 주식회사가 시료로 제공한 "HBC 세라믹", 주식회사 ○○세라믹스가 시료로 제공한 "원석"에 대해 별도로 개별적으로 시행한 원적외선 방사량 시험결과만 나타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시험들이 설령 맥섬석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과 같이 맥섬석과 다른 돌들을 비교한 시험이 아님은 분명하고, 또한 이러한 점은 신청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소을5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에서 원적외선 방출에 관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실험을 의뢰했고 5월 말쯤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험결과에 관한 이 부분 반론은 신청인이 허위임을 알고 청구한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

그 밖의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등 반론부분은 이 사건 방송의 대상과 범위를 넘는 새로운 사실적 주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반론보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상장 등에 관한 부분

⑴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마치 신청인이 돈으로 상장을 매수한 것처럼 방송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직원이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사칭한 피신청인의 취재팀에게 상장에 관해 말한 내용은 이와 관련하여 접수비, 검사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는 취지일 뿐 상장을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뜻이 아님이 분명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상을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내용을 직접 방송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후 맥락, 화면의 구성방식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방송이 일반적인 주의를 가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신청인이 돈으로 상을 매수하였다(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로 인해 신청인이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반론보도는 허용되어야 한다.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은 아래에서 따로 정하기로 한다.

바. 광산에 관한 부분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마치 신청인이 채광하는 광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폐광이라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분명히 맥섬석 광산을 갖고 있고(단지 광산등록번호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다), 최근인 2007. 4.-5.경에도 상당한 양을 채광하였으며, 다만 상시적으로 채광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 채광한 후 산림보호법에 따라 일시복구해 두었을 뿐, 방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광산을 실제 찾아가 그 현황을 방송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자신이 맥섬석을 채광하는 광산이 실제로 있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할 이익은 없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광산등록번호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러한 번호로 등록된 광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앞에 방송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방송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맥섬석을 채광한다는 광산이 실제로는 장기간 방치된 채 채광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취지로 방송하였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신청인이 반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 말미에 신청인의 부사장 김○○이 인터뷰를 통해 맥섬석은 신청인만이 사용하므로 그 소요량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광산에서 채광할 뿐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방송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광산 채광에 관해서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의 반론보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간접강제

이 사건 방송의 시간대와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하는 '불만제로' 프로그램의 마지막(단, 엔딩 크레디트 전)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맥섬석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오백만(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 성 근
판사 이 창 경
판사 박 가 현

〈별지 1〉 반론보도문

문화방송은 2008년 3월 27일 방송한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맥섬석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가 돈으로 상을 매수한 것처럼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에서는 '자신은 각종 특허나 인증을 받기 위해 검사비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을 뿐이고 돈으로 상을 매수하는 것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의견을 밝혀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반론보도청구 사례 3

신청인이 "교감과 교장을 모두 자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반론보도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3.자 판결 (2008카기2967)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13일 전 국회의원 정청래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선일보 2008년 4월 5일자 A11면에 『정청래 의원, 초등교 교감에 '폭언' 논란』 제하의 기사를, 2008년 4월 7일자 A35면 사설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상전인 줄 아는가』 제하의 기사를, 2008년 4월 7일자 A10면에 『정청래 의원 '폭언 사건' 직후 교육청 간부에 전화』 제하의 기사를, 2008년 4월 9일자 A10면에 『'정청래 의원 폭언 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를 각 게재하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게재한 위 기사는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일선학교의 교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사과를 강요하였다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응 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의 반론보도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보도된 당사자인 ○○초등학교 교감 김○○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신청인이 "교감이 건방지게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건방지고 거만하다", "바지에 손 넣고 있는 것도 거만하고, 작년에도 나만 홀대하고 안 부르고 올해도 안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문 중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부분, 즉 신청인이 "교감과 교장을 모두 자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 신청인이 자신을 찾아온 ○○초등학교 교장에게 '김 교감이 직접 오지 않았으니 사과를 받지 않겠다' 고 말하는 등 교감의 직접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부분, 신청인이 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바 없다는 부분, 신청인이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비를 삭감하겠다' 또는 '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고 말한 바 없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들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들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판결문

사　　건 : 2008카기2967 반론보도

신 청 인 : 정 청 래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구

대표이사 방 ○ ○, 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8. 7. 16.

판결선고 : 2008. 8. 1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조선일보 A10면 상단부분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게재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안에 위 반론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위 의무이행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1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1반론보도 요구문을, 그 반론보도 게재일 이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35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반론보도 요구문을, 그 반론보도 게재일 이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10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3반론보도 요구문을, 그 반론보도 게재일 이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10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4반론보도 요구문을 각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체로, 본문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각 게재하라. 만일 피신청인이 위 각 반론보도 요구문을 하나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 각 반론보도 요구문 게재의무일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각 3,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2008. 4. 5.자 A11면에 별지 제1기사를, 2008. 4. 7.자 A35면 사설에 별지 제2기사를, 같은 날 A10면에 별지 제3기사를, 2008. 4. 9. A10면에 별지 제4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위 각 기사들의 주요한 내용은 '신청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구 소재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 학교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하고 이후 김 모 교감의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축소 ·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소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위 각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초등학교 행사장에서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하거나 사과를 강요한 바 없고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위 각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반론보도 요구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⑵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 요구문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판 단

가. 반론보도청구의 일반론

⑴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로써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 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

회의 중재절차나 법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독자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⑵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및 제한에 대한 법률의 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5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②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④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라고 규정하면서 제16조 제3항에서는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반론보도에 준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⑴ 반론보도의무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게재한 위 기사는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일선학교의 교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사과를 강요하였다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응 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의 반론보도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⑵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기사에서 신청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보도된 당사자인 ○○초등학교 교감 김○○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신청인이 "교감이 건방지게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건방지고 거만하다", "바지에 손 넣고 있는 것도 거만하고, 작년에도 나만 홀대하고 안 부르고 올해도 안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문 중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부분, 즉 신청인이 "교감과 교장을 모두 자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 신청인이 자신을 찾아온 ○○초등학교 교장에게 '김 교감이 직접 오지 않았으니 사과를 받지 않겠다' 고 말하는 등 교감의 직접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부분, 신청인이 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바 없다는 부분, 신청인이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비를 삭감하겠다' 또는 '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고 말한 바 없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소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부분들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들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론보도문의 내용 및 게재회수 등의 변경

언론중재법 제27조 제3항은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라고 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 게재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비록 피신청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반론보도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반론보도가 반드시 당해 기사의 게재회수와 동일한 회수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는 점, 신청인이 4회에 걸쳐 게재를 요구하는 반론보도 요구문이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언론사인 피신청인의 지면편집사정을 고려할 때 유사한 반론보도문을 4회나 게재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신청인으로서는 이후 정정보도청구를 통해 다시 명예회복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기재 각 반론보도 요구문을 종합하여 별지 반론보도문과 같이 고쳐서 게재하고 그 게재회수, 게재지면, 게재시기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한 호 형

판사 이 종 훈

판사 박 기 쁨

〈별지 1〉 반론보도문

우리 신문은 2008. 4. 5.부터 2008. 4. 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정청래 전 국회의원(당시 통합민주당 · 서울 마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구 소재 S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 학교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하고 이후 김 모 교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당시 김 모 교감에게 '교장, 교감 다 모가지를 자르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바 없고, 사과를 위해 방문한 위 학교 교장에게 '김 모 교감이 직접 오지 않았으니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김 모 교감의 직접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이후 위 사건을 축소 · 은폐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단체를 통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비를 삭감하겠다' 또는 '○○초등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없다"고 밝혀왔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끝.

〈별지 2〉 기사내용 생략 – 편집자 주

제2장
정정보도청구 사례

정정보도청구 사례 1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서울고등법원 2008. 2. 13.자 판결 (2007나41852)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8년 2월 13일 문화관광부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2006년 5월 19일자 1면 『대표팀 격려는 못할망정…황당한 태클』 제하의 기사에서 '문화관광부가 월드컵 축구 선수들 격려보다는 장 · 차관의 홍보에 더 관심을 두고 월드컵을 정부부처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 는 내용을 보도하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4집 70~75면 참조).

이후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정정보도를, 제1예비적 청구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제2예비적 청구로 반론보도를 각각 청구하였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한 사실과 다름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그 전체적 취지가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면서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가 구체적으로 게재된 방식과 그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아일보의 2면에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16급 고딕체로, 내용은 동아일보 본문활자로 하여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의 반론보도를 명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5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201)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결정(정정 · 반론)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7나41852

원고, 항소인 : 문화관광부

서울 ○○구

대표자 김 종 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전 태 진, 신 봉 철, 김 기 천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구

대표자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 용 현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가합75462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12. 26.

판 결 선 고 : 2008. 2. 13.

주　　문 :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아일보 신문의 2면에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16급 고딕체로, 내용은 동아일보 본문활자로 하여 1회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1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1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 크기로 하여 1회 게재하라. 피고가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1면에 별지 2.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 크기로 하여 1회 게재하라. 피고가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1면에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활자 크기로 하여 1회 게재하라. 피고가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 · 예술 · 영상 · 광고 · 출판 · 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 · 판매,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신문사로서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보도 내용 및 보도 경위

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대표팀은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참가하게 되어 2006. 5. 27.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2006. 6. 5.부터 독일 쾰른에 머물며 2006. 6. 13.부터 약 한 달간 경기를 치렀다.

⑵ 피고 소속 양○○ 기자는 2006년 5월 초순경 파주시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NFC)에서 월드컵 축구 대표팀 훈련을 취재하던 중 당시 대표팀 미디어담당관으로 대표팀 일정을 관리하던 대한축구협회 ○○국 이○○ 부장이 하루종일 정부 각 부처의 전화에 시달리는 광경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이○○와 독일 파견 기자단 간사인 국민일보 조○○ 기자를 취재한 후, [이참에 한 건... 황당한 태클]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기사는 동아일보 2006. 5. 19.자 1면에 보도되었다.

장관과 차관이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 중 독일 현지로 격려차 가는데 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문화관광부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고 당혹감을 느꼈다.

월드컵 대회가 시작되면 대표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불문율. 그러나 2006 독일 월드컵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 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문화부는 물론 국정홍보처, 국가정보원 등이 월드컵을 앞두고 자기 부처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축구협회에 각종 문의와 협조 공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

문화부는 특히 언제 어디로 가야 한국 기자단을 만날 수 있는지와 현지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축구협회에 요청해 대표팀 격려보다는 장차관 홍보에 더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취재 기자단 명단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수들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격려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중략)

⑶ 한편, 2006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을 초청하여 각종 행사를 하겠다는 기업인, 공무원, 정치인과 방송인 등의 요청이 매우 많아 대표팀 훈련에 차질이 생길 정도여서, 2006. 5. 22.자 서울신문에는 '월드컵 선수들 그만 놓아주라'는 제목 아래 '각종 홍보성 행사로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없으므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는 내용의 사설이 실리고, 2006. 6. 24.자 경향신문에는 '국회의원들이 독일 현지에 와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불가능한 것을 많이 요구해 빈축을 샀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2. 정정보도청구(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대한축구협회에 장관 및 차관의 독일 방문시에 대표팀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대한축구협회에 한국기자단 신상명세서를 요청한 이유는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이 원고에게 독일 지자체의 한국 기자단 유치 제의에 대한 입장 및 기자단 현황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일 뿐 장·차관의 홍보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대한축구협회에 장관과 차관이 독일 월드컵 기간 중 독일 현지에 가는데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한국기자단을 만날 수 있는지와 현지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⑵ 따라서 피고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재·보도한 이 사건 기사를 정정하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또는 별지2.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의 요건'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 본문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한 사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그 전체적 취지가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⑵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기자단 간사인 조○○은 2006. 5. 3.경 원고 소속 ○○○○과의 김◇◇ 사무관으로부터 '독일 월드컵 때 원고의 장관과 차관께서 독일 현지를 방문하는데 선수단 격려를 겸해서 기자님들도 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독일 월드컵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명단을 우리가 받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기자단 명단은 축구협회에서 파악하고 있으니 축구협회 이○○ 부장과 협의하면 명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장·차관의 독일 방문 때 격려 자리를 갖는 것은 독일 현지에 오시거든 경기일정이나 선수들의 스케줄을 감안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

하자' 고 답한 사실, 이○○는 2006년 5월 초순경 원고 소속의 남자 직원으로부터 '장 · 차관이 선수단을 격려차 방문하러 가니, 쾰른의 선수단 숙소 주소 및 파견기자단 숙소 주소를 알려달라' 는 요청을 받고 ○○○○협회 ○○국의 오○○ 대리로 하여금 쾰른의 선수단 및 파견기자단 숙소 주소를 보내게 한 사실, 또 이○○는 원고 소속의 ○○○○부 직원임을 자칭하는 사람들과 장 · 차관의 독일 현지 방문 및 기자단 명단 제공문제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으며, 그 통화 중에는 '장 · 차관이 선수들을 언제 만나는게 좋겠느냐' 는 내용도 있었던 사실, 양○○ 기자는 이○○와 조○○ 기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후 2006. 5. 17. 김◇◇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취재한 결과 '장 · 차관이 독일 월드컵에 갈 계획이 있으나, 선수들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⑶ 우선 '원고가 대한축구협회에 장 · 차관이 독일 월드컵 기간 중 독일 현지에 가는데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는 부분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의 소속 직원이 '장 · 차관이 대표팀 선수들을 만나게 해 달라' 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장 · 차관이 선수들을 격려하러 독일에 가는데, 선수단 숙소 주소를 알려 달라' 고 요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장 · 차관이 독일에 가서 대표팀 선수들을 방문하려고 하니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주기 바란다' 는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기사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쓰이기는 하였어도, 전체적 취지가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진실에 반하는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⑷ 다음으로 '언제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지와 현지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고 보도한 부분이 진실과 다른 보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Bonn) 분관이 2006. 5. 6.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독일지방자치단체가 한국기자단을 유치하여 자기 지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면서, 한국기자단의 규모 및 독일 지자체의 유치 제의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원고 소속 정○○ 사무관은 2006. 5. 12.경 이○○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기자단 명단제공을 요청한 사실, 대한축구협회는 원고에게 '대부분의 기자들이 경기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동하므로 특정도시에서 한국기자단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는 내용과 함께 축구협회 경유 등록 기자 명단을 첨부한 공문을 보내, 정○○ 사무관은 2006. 5. 15. 이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이○

○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 사무관은 이○○, 조○○ 기자 등과의 통화 당시 기자명단 요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나 주독일 대사관의 요청 또는 독일 지자체에 관련된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이○○도 정○○ 또는 김◇◇ 사무관으로부터 기자명단 요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등과 관련된 언급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이○○가 원고 측의 요청을 받고 대한축구협회 송○○ 부장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송부한 기자단 명단에는 기자의 이름, 소속 매체명 외에 인터넷 매체인지 여부, 숙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 사무관이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의 요청에 의해 외교통상부에 보낸 기자단 명단(갑 제3호증의 2)에는 매체명과 기자이름, 취재기자인지 사진기자인지 여부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 기자는 원고가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문을 받기 전인 2006. 5. 3. 김◇◇ 사무관으로부터 "독일 월드컵 때 장관과 차관께서 독일 현지를 방문하는데 선수단 격려를 겸해서 기자님들도 뵈었으면 하고, 월드컵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명단을 받아 볼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기자단 명단 요청은 주독 대사관의 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 · 차관의 독일 방문에서의 기자단을 면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⑸ 결국,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론보도청구(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를 청구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가 구체적으로 게재된 방식과 그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아일보 신문의 2면에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16급 고딕체로, 내용은 동아일보 본문활자로 하여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위 반론보도문의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 사건 제2예비적 청구(반론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용 구
판사 김 진 현
판사 이 우 철

〈별지 1〉 정정보도문

본보는 2006년 5월 19일자 1면 [이참에 한건... 황당한 태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화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장관과 차관이 독일 월드컵 기간 중 독일 현지에 가는데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한국기자단을 만날 수 있는지와 현지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문화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장관 및 차관의 독일 방문시에 대표팀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문화관광부의 한국기자단 신상명세서 요청은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이 문화관광부에 독일 지자체의 한국 기자단 유치 제의에 대한 입장 및 기자단 현황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와 대한축구협회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였던 것으로서 기자단 간사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2006년 5월 19일자 1면 [이참에 한건... 황당한 태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화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장관과 차관이 독일 월드컵 기간 중 독일 현지에 가는데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고 요청하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한국기자단을 만날 수 있는지와 현지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문화관광부의 기자단 명단 요청은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이 문화관광부에 독일 지자체의 한국 기자단 유치 제의에 대한 입장 및 기자단 현황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고, 문화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에 장관 및 차관의 독일 방문시에 대표팀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별지 3〉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2006년 5월 19일자 1면 [이참에 한건... 황당한 태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화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장관과 차관이 독일 월드컵 기간 중 독일 현지에 가는데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고 요청하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한국기자단을 만날 수 있는지와 현지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에 장관 및 차관의 독일 방문시에 대표팀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기자단 명단 요청은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이 문화관광부에 독일 지자체의 한국 기자단 유치 제의에 대한 입장 및 기자단 현황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별지 4〉 기 사

[월드컵 D-21] 대표팀 격려는 못할망정… 황당한 태클

'장관과 차관이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 중 독일 현지로 격려차 가는데 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문화관광부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고 당혹감을 느꼈다.

월드컵 대회가 시작되면 대표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불문율. 그러나 2006 독일 월드컵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 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문화부는 물론 국정홍보처, 국가정보원 등이 월드컵을 앞두고 자기 부처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축구협회에 각종 문의와 협조 공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

문화부는 특히 언제 어디로 가야 한국 기자단을 만날 수 있는지와 현지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축구협회에 요청해 대표팀 격려보다는 장차관 홍보에 더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취재 기자단 명단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수들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격려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홍보처는 독일 쾰른의 대표팀 숙소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홍보 부스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축구협회에 했다. 대표팀 숙소는 선수단과 축구협회, 국제축구연맹(FIFA)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국정홍보처의 관계자는 한 술 더 떠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은 협회가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난감해하자 홍보처 관계자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는 일인데 협회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를 했다고 한다. 이 홍보처 관계자는 또 "어디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야 한국 기자들이 많이 오겠느냐"고 해 역시 대표팀 격려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음을 보여 줬다.

이에 대해 홍보처는 "우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축구협회에 협조 요청을 했는지 사실 확인이 안 되지만 축구협회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며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3부 요인급 고위 관계자의 한국 경기 관전을 둘러싸고도 말이 많다. 고위 관계자가 월드컵 기간 중 독일 현지에 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국정원과 주독일 대사관은 축구협회로 연락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선수들을 만나려면 언제가 좋겠느냐. 취재진은 어떻게 하면 많이 오느냐"고 연일 문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 관계자는 "한국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최고의 국가이미지 제고라고 생각한다. 대표팀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월드컵을 놓고 벌이는 정부 부처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한 원로 체육인은 "과거 독재정권 때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지도자가 스포츠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현 정부는 스포츠에 전혀 관심도 없고 투자도 하지 않다가 국민이 열광하는 행사만 다가오면 뭔가 한 건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정보도청구 사례 2

황토팩 가루 중 자석에 반응한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볼밀이 마모되면서 유입된 탄소강 하이망간(방송상 '쇳가루')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Fe3O4) 등 산화철이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8.자 판결 (2007가합24153) (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2008년 5월 8일 주식회사 ○○○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가 2007년 10월 5일 22:00경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이라는 제목으로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고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자 주위적 청구취지로 정정보도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보도내용을 ①중금속 검출 관련 부분 ②중금속 흡수 관련 부분 ③쇳가루 유입 관련 부분 ④가처분 신청 승소 관련 부분으로 구분하면서, ①중금속 검출 관련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황토팩 제품 자체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화장품 원료 기준' 이 아닌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적용하였다거나 황토팩 제품 자체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 보다 높은 중금속이 검출된 것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②중금속 흡수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내용의 중요부분은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인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한편, 재판부는 ③쇳가루 유입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는 "황토 분쇄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밀의 성분은 탄소강 하이망간인 사실, 탄소강 하이망간은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사실, 자연산 황토도 채취장소에 따라 자성을 띤 자철석(Fe3O4)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산화철은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의 원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토팩 가루 중 자석에 반응한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볼밀이 마모되면서 유입된 탄소강 하이망간(방송상 '쇳가루')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

(Fe3O4) 등 산화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그 밖에 재판부는 ④가처분 신청 승소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853호로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10. 5. '피고는 2007. 10. 5. 22:00경 방송 예정인 케이비에스 제1텔레비전의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일부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10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402)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결정(반론보도)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7가합24153 정정 · 반론청구

원　　고 : 주식회사 ○○○

서울 ○○구

대표이사 박 ○ ○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구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변론종결 : 2008. 4. 17.

판결선고 : 2008. 5. 8.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되는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만일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1,0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1,0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황토화장품을 제조 ·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2007. 10. 5. 22:00경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2. 22:00경 같은 프로그램에서 위 방송보도 후의 정황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2) 방송 보도의 내용

피고는 별지 4 방송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일컫는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금속 검출 관련 부분

피고는 2007. 5. 3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6개 회사의 황토팩 제품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였

다. 그 검사 결과에 의하면 납의 경우 6개사 제품 모두 관련 법규상의 '일반 화장품 기준'인 20.0ppm을 초과하였고 비소의 경우 4개사의 제품이 '일반 화장품 기준'인 10.0ppm을 초과하였다.

피고는 2007. 8. 29.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그 중 3개 회사의 황토팩 제품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다시 의뢰하였다. 그 검사 결과에 의하면 납의 경우 모두 '일반 화장품 기준'인 20.0ppm을 초과하였고 비소의 경우 2개사의 제품이 '일반 화장품 기준'인 10.0ppm을 초과하였다.

나) 중금속 흡수 관련 부분

피고는 황토팩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피부 흡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쥐를 상대로 3주 동안 아침, 저녁에 하루 두 번씩 황토팩을 바르고 15분 뒤 닦아내는 방법으로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을 하였다.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 황토팩을 바른 쥐의 피부, 간, 혈액에서 납과 비소 등 중금속 수치가 많이 증가하였다.

다) 쇳가루 유입 관련 부분

피고가 3개 회사의 황토팩 가루와 자연산 황토에 자석을 대보니 그 중 2개사의 제품만이 자석에 반응하였다. 이는 자연산 황토에는 쇳가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자석에 반응한 황토팩 제품의 경우 황토 분쇄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밀(Ball-Mill)이 마모되어 쇳가루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황토에 들어있는 산화철은 자석에 붙지 않는다.

라) 가처분 신청 승소 관련 부분

일부 황토팩 제조 회사가 2007. 10. 5.자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 이 사건 보도 후의 정황

1) 원고는 2007. 10.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도 중 ① 황토팩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부분, ②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부분, ③ 황토 분쇄 과정에서 쇳가루가 황토 제품에 유입되었다는 부분, ④ 황토팩 제조 회사가 방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였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 11. 9. '피고는 별지 5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문'을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후 10시에 방송하는 KBS-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프로그램의 방영 화면을 배경으로 하여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원 진행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읽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07. 11. 9. 22:00경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 방송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원고의 해명과 반박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4) 피고는 2007. 11. 15.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의 피해 발생

피고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도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 많이 감소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9, 21,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중금속 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 황토팩 제품은 분말 형태로 판매되어 물과 1:1의 비율로 섞은 크림 상태에서 피부에 도포되므로, 제품 자체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할 때는 관련 법규상의 '일반 화장품 기준'이 아닌 '화장품 원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일반 화장품 기준'을 적용하려면 피부에 도포하기 직전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크림 상태에서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반 화장품 기준'을 적용하여 분말 형태인 황토팩 제품 자체를 검사한 뒤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중 정정사항 ①의 ㉮ 부분과 같은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 중 반론사항 ①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 보도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일컫는다)에 정해진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보도는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기준에 대하여 '화장품 원료 기준'이 아닌 '일반 화장품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은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적 주장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갑3, 14, 15, 20, 을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황토팩 제품 자체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화장품 원료 기준'이 아닌 '일반 화장품 기준'을 적용하였다거나 황토팩 제품 자체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보다 높은 중금속이 검출된 것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중금속 흡수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황토팩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피부 흡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실험은 사람에 비해 피부흡수율이 현저히 큰 쥐(사람 피부두께의 1/7)를 실험대상으로 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쥐는 대조군별로 1마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었으므로 실험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실험을 근거로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정정보도요구문 중 정정사항 ①의 ㉮ 부분과 같은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쥐는 피부두께가 사람의 1/7에 불과하여 피부를 통한 중금속 흡수율이 사람에 비하여 현저히 크고, 실험에 사용된 쥐는 대조군별로 1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툼 없음, 갑1-1, 7).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쥐를 대상으로 한 위 실험은 그 방법에 있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내용의 중요부분은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갑6, 7, 3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인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 쇳가루 유입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황토팩 가루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로서, 산화철은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의 원료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밀이 마모되어 원료인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

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으며, 이것이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중 정정사항 ②와 같은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 중 반론사항 ②와 같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황토 분쇄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밀의 성분은 탄소강 하이망간인 사실, 탄소강 하이망간은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사실, 자연산 황토도 채취장소에 따라 자성을 띤 자철석(Fe3O4)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산화철은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의 원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 내지 12, 16, 20, 25, 26, 29).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토팩 가루 중 자석에 반응한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볼밀이 마모되면서 유입된 탄소강 하이망간(방송상 '쇳가루')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Fe3O4) 등 산화철임을 알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라. 가처분 신청 승소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7. 10. 5.자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중 정정사항 ③과 같은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 반론사항 ③과 같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853호로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10. 5. '피고는 2007. 10. 5. 22:00경 방송 예정인 KBS-1TV의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별지 6 방영금지목록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갑2).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정정 및 반론 보도의 내용과 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시간대 및 그 비

중, 그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위에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4. 간접강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본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정정 및 반론 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성 곤
판사 이 종 문
판사 권 기 백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

• 한국방송공사는 2007. 10. 5.과 2007. 10. 12. 각 방송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으며, 자연산 황토에 포함된 산화철은 자석에 붙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로서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의 원료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는 2007. 10. 12. 방송한 본 프로그램에서 일부 황토팩 제조 회사가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식회사 ○○○이 2007. 10. 5.자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10. 5.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한국방송공사는 2007. 10. 5. 방송한 본 프로그램에서 일반 화장품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은 황토팩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물이나 화장수와 섞어 크림 형태로 사용할 경우, 자사의 황토팩은 위 일반 화장품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4〉 방송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5〉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6〉 방영금지목록 생략 – 편집자 주

정정보도청구 사례 3

원고에 대하여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는 등 원고가 평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는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 2008. 7. 10.자 판결 (2008가합4775) (확정)

사실개요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10일 김○○가 ○○신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신문 ○○회사가 2008년 4월 17일자 1면 『◇◇군서 4 · 9 총선 선거법 위반 발생』 제하의 기사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신청인에 대해 평소 언행과 행실이 좋지 못한 자이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정정보도 및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읍 ◇◇리 공용터미널 옆에 거주하는 김 모씨", "최초 조사요구에 김 씨가 겁을 먹고 지역을 떠나버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위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이 지역 주민 또는 적어도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위 기사에서 말하는 김 모씨가 원고라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명예가 훼손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시한 뒤, ""○○읍 K씨는 '김 씨의 거짓말은 선거법 위반 행위 중 가장 저급하고 추잡한 행위다, 김 씨는 평소 언행과 행실이 좋지 못한 자(者)로 알려졌고 ◇◇군 지역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는 자(者)이다, 김 씨는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므로 꼭 ◇◇을 떠나야 할 사람이다,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부끄럽다' 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부분은 그 표현의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가 실제로 평소 언행이 좋지 아니하여 주민들과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점을 암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문구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 내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표현도 포함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원고에 대하여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는 등 원고가 평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8년 4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8광주조정11)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결정(손해배상 1천만원)을 내렸으나 양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4775 정정보도

원　　고 : 김 ○ ○

피　　고 : ○○신문 ○○회사

전남 ◇◇군 ○○읍 □□리

대표이사 김 연 준

변론종결 : 2008. 6. 26.

판결선고 : 2008. 7. 10.

주　　문 : 1. 가. 피고는 이 판결확정일 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신문 제1면에 별지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위 신문의 기사 부제목 활자로, 본문은 위 신문의 기사 본문 활자로 게재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다툼 없는 사실

4 · 9 총선과 관련해 ◇◇군에서 금품 · 음식물 제공, 비방 · 흑색선전, 인쇄물 배부, 신문 · 방송 등 부정이용, 호별 방문, 사이버 이용 등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 가운데 ◇◇군 선관위가 단속을 실시한 것은 모두 8건이고 1건은 고발, 7건은 경고 조치를 취했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 음식물 제공 1건, 비방 · 흑색선전 1건, 인쇄물 배부 등 2건, 신문 · 방송 등 부정이용 1건, 호별 방문 1건, 사이버 이용 1건, 기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선거법 위반 행위자는 선거사무원 2명, 정당인 1명, 후보자의 기타 가족 1명, 일반인 4명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읍 ◇◇리 공용터미널 옆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특정 후보가 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악의적 거짓말을 퍼뜨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읍 선관위 관계자는 "최초 조사요구에 김 씨가 겁을 먹고 지역을 떠나버려 조사에 큰 애로를 겪었다. 갖은 설득과 회유 끝에 선관위에 자진 출두한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읍 K 씨는 "김 씨의 거짓말은 선거법 위반 행위 중 가장 저급하고 추잡한 행위다. 김 씨는 평소 언행과 행실이 좋지 못한 자(者)로 알려졌고 ◇◇군 지역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는 자(者)이다"고 말했다.

또 "김 씨는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므로 꼭 ◇◇을 떠나야 할 사람이다.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부끄럽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피고는 ○○신문을 주간으로 발행하는 신문사인데, 2008. 4. 17. ○○신문 제1면에 "◇◇군서 4 · 9 총선 선거법 위반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읍 ◇◇리 공용터미널 옆에 거주하는 김 모씨", "최초 조사요구에 김 씨가 겁을 먹고 지역을 떠나버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위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이 지역 주민 또는 적어도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위 기사에서 말하는 김 모씨가 원고라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명예가 훼손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4. 9.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읍 K씨는 '김 씨의 거짓말은 선거법 위반 행위 중 가장 저급하고 추잡한 행위다, 김 씨는 평소 언행과 행실이 좋지 못한 자(者)로 알려졌고 ◇◇군 지역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는 자(者)이다, 김 씨는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므로 꼭 ◇◇을 떠나야 할 사람이다,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부끄럽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은 그 표현의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가 실제로 평소 언행이 좋지 아니하여 주민들과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점을 암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문구는 위와 같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 내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보다는 원고에 대하여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는 등 원고가 평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문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피고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에 관한 이 사건 문구가 허위임을 정정한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개재하고,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이를 이행할 때까지 주간지임을 감안하여 매주 1,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한다.

한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문구의 비중과 내용의 구체성, 피고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신문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에게 위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 준 필
판사 이 재 욱
판사 노 연 주

〈별지〉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08. 4. 17.자 신문에서 "◇◇군서 4 · 9 총선 선거법 위반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읍 K씨는 '김 씨의 거짓말은 선거법 위반 행위 중 가장 저급하고 추잡한 행위다, 김 씨는 평소 언행과 행실이 좋지 못한 자(者)로 알려졌고 ◇◇군 지역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는 자(者)이다, 김 씨는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므로 꼭 ◇◇을 떠나야 할 사람이다,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부끄럽다' 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위와 같이 평소 언행과 행실이 좋지 못한 자이거나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사는 법원으로부터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정정보도청구 사례 4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 등에 의하면 방송의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31.자 판결 (2008가합10694)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가 2008년 4월 29일 23:00경부터 24:00경까지 60분 동안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년 4월 18일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주위적 청구취지로 정정보도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①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 ·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사실,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방송의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②아레사 ○○의 사망원인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아레사 ○○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미국 농무부는 2008. 5. 5.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아레사 ○○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중간발표를 하였고, 미국질병통제센터는 2008. 6. 12.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가 아레사 ○○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 중 아레사 ○○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③특정위험물질의 수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일의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이 부분 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이 아닌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를 곧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도 "정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언론사로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분류기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였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등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④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⑤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는 부분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종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와는 달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 즉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원고의 정정 내지 반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또한, 재판부는 ⑥라면 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 부분과 관련해서도"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종전에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당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등뼈 같은 특정위험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위 보도 내용은 그 같은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 밖에, 재판부는 ⑦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판단으로는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협상준비나 능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8년 5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8서울조정123)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결정(정정 및 반론)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10694 정정, 반론

원　　고 : 농림수산식품부

과천시 ○○동

대표자 장관 정 운 천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구

대표이사 엄 기 영

변론종결 : 2008. 7. 25.

판결선고 : 2008. 7. 31.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다툼 없음)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농산 · 수산 · 축산, 식량 · 농지 · 수리, 식품산업 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60분 동안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일컫는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그 내용 중 원고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하였으나, 일부 도축장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 downer cow)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였다.

② 미국 여성 아레사 ○○이 2008. 4. 16. 사망하였는데 가족들과 주치의는 그 사망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을 의심하고 있다.

③ 우리 정부는 2008. 4. 18. 미국 정부와 사이에,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라고 일컫는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 결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이전에는 뼈 없는 살코기의 수입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다.

④ 이러한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다.

⑤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⑥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⑦ 우리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나, 직접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다. 이 사건 방송 후의 정황

1)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원고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6.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 5. 15. '피고는 별지 4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을 이 결정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MBC-TV "PD 수첩" 프로그램에 보도한다.'라는 요지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08. 5. 26.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2.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일반론

가. 관계 법률(발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요건

1)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 · 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일컫는다)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당해 언론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름을 주장 · 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할 수도 있다.

2)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 · 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언론사를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 또는 반론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제①주장(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①주장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 ·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주저앉은 소가 도축 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위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의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

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방송하고, 위 동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 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에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 이어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아레사 ○○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한 사실, 이어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이 "(미국산)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뒤, 송○○ 프로듀서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 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①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①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 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①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갑5,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 ·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사실,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①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 13.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송○○ 프로듀서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왔습니다만, 일어서지 못하는 소, 이른바 다우너가, 일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우병에 걸린 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라고 묻자, 오○○ 프로듀서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다우너 소들을 여러 번 보시게 됐는데요, 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뿐만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 ·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8. 7. 15.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송○○ 프로듀서가 "4월 29일 생방송 중에 저의 말실수 즉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라고 해야 할 것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후속방송에서 정정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정하며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12, 47). 그러나 이 부분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하므로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에 나타난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임에 비하여, 위 후속보도의 주요 내용은 주저앉은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광우병도 분명히 그 원인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후속 보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충분하게 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①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제②주장(아레사 ○○의 사망원인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②주장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2008. 6. 12. 아레사 ○○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레사 ○○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WAVY TV가 2008. 4. 8.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트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광우병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한 사실, 아레사 ○○의 어머니 ○○ ○○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MRI 검사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

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 아레사 ○○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 바롯이 "일반 크로이펠트 야곱병(CJD)은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인간광우병)면 뇌의 양쪽 시상베게(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②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②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현재 미국 보건 당국이 아레사 ○○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②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아레사 ○○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갑8의 1, 9의 1,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국 농무부는 2008. 5. 5.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아레사 ○○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중간발표를 하였고, 미국질병통제센터는 2008. 6. 12.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가 아레사 ○○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②보도 중 아레사 ○○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 13.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오○○ 프로듀서가 "지난 5월 5일 미국 농무부 레이먼드 차관은 아레사 ○○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8. 6. 17.자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송○○ 프로듀서가 "지난 12일 CDC, 즉 미국질병통제센터가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아레사 ○○의 사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CDC에 의하면 이 의심사례가 국제적인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지만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는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 때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12, 13). 그리고 이 부분 보도와 관련하여 원

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2008. 6. 12.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아레사 ○○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의 위 2008. 5. 13.자 및 2008. 6. 17.자 방송을 통하여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②보도 중 아레사 ○○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의 후속보도로 인하여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보도에 대하여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제③주장(특정위험물질의 수입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③주장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정의에 의하면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가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모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예전과 달리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대로 수입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고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다섯 가지는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③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③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가 월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5가지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갑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제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의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이 동물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로 인정된 사실,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하여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하여는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미국이 2007. 5. 2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4,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은 월령 12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두개골,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장 전체, 편도,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지만, 월령 12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장 전체, 편도, 장간막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일본은 모든 소의 두부(혀, 볼살 제외),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우리 정부도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일의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이 아닌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를 곧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정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언론사로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분류기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였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등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4)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고,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월령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전인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더라도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반론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제④주장(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④주장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예단할 수 없는 바,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인의 경우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이므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④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갑1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는 사실,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7. 15.자 "PD 수첩" 프로그램 끝 부분에서 송○○ 프로듀서가 "지난 4월 29일 PD 수첩은 한국인의 특정유전자형인 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에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후속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47). 그러나 이 부분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거나 그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임에 비하여, 위 후속보도의 주요 내용은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MM형 유전자의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단 1회, 그것도 프로그램 끝 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위 후속 보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충분하게 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의 제⑤주장(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⑤주장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정부는 관세 · 무역일반협정(GATT)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 PD! 과연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특히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라는 송○○ 프로듀서의 질문에, 이○○ 프로듀서가 "그전에는 등뼈 같은 광우병 위험 물질이 들어오면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두 차례나 등뼈가 나와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⑤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⑤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 제⑤보도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종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와는 달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 즉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⑤보도 중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바. 원고의 제⑥주장(라면 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⑥주장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이 전부 제거된 상태에서 국내에 수입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 그런데 피고는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섭취함으로써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 PD! 쇠고기만 또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라는 송○○ 프로듀서의 질문에, 이○○ 프로듀서가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쇠고기뿐만 아니라 라면 스프, 알약캡슐, 심지어는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⑥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⑥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제⑥보도의 내용은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라면 스프, 알약캡슐 등을 통하여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투는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때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종전에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당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등뼈 같은 특정위험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던 점(갑1, 2, 을4)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위 보도 내용은 그 같은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⑥보도 중 쟁점 부분인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부분은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결국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역시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한 라면 스프 등을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의 제⑦주장(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 부분) 및 판단

1) 원고의 제⑦주장

원고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앞두고서 2007년경 3차례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현지 도축장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 우리 정부 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제대로 알았는지, 알려고 하였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방송 내용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미국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가 억지로 일으켜 세워지는 장면, 아레사 ○○의 사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민○○ 농업통상정책관의 인터뷰 내용, 미국에서 도축 되는 4천만 마리 내외의 소 중 광우병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불과하고 미국 농무부 조사관의 소에 대한 검역은 형식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다음, "김○○ PD! 쭉 보면 말이지요,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라는 송○○ 프로듀서의 질문에, 김○○ 프로듀서가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⑦보도'라고 일컫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은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판단으로는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협상준비나 능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⑦보도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⑦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정 및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시간대 및 그 비중, 그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 방송되는 "PD 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위에서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언론사인 피고는 언론의 비판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판단이나 평가도 보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피고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는 기회에 그에 관한 반론이나 비판적인 견해 등을 방송한다면 정정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 경우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간접강제

원고의 지위,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하여 정정하는 취지의 후속보도를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본 작위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성 곤

판사 이 종 문

판사 권 기 백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8. 4. 29. 방송한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할 수 있어서, 위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인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미국 등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부위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 본 방송은 지난 4월 29일 방영한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동영상의 주저앉은 소들과 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 아레사 ○○(Aretha ○○)의 사례를 다루면서 진행자가 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고 이 여성도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단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보도에서 다룬 여성도 지난 6월 12일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

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본 방송은 또한 SRM(특정위험물질)을 소의 월령과 무관하게 7가지 부위로 정의하면서, 30개월령 미만인 소의 경우에는 이 중 2가지만 제거한 나머지 SRM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30개월 미만의 경우 현재 국제적인 정의에 의한 SRM은 2가지 부위로서 이번 미국과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이를 모두 제거한 후 수입되도록 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 본 방송은 또한,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형(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이고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높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발할 확률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본 방송은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 B항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 본 방송은 또한, 라면 스프, 알약캡슐, 그리고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므로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때 SRM이 제거되고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통해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은 매우 낮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본 방송은 또한 우리 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 미국의 위험성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점과 함께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수입위생조건 체결에 이르기까지 지난해에 3차례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고 2007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두 개 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별지3〉 반론보도요구문

• 본 방송이 지난 4월 29일 방영한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주저앉은 소들과 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 아레사 ○○의 사례를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방송에서 다룬 여성도 지난 6월 12일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본 방송이 30개월령 미만인 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의 SRM(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현재 국제적인 정의에 의하면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 부위만이 SRM에 해당하고 나머지 5가지 부위는 SRM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한,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형(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이고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높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94%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 B항)"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교역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본 방송이 라면 스프, 알약캡슐, 그리고 화장품 등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때 SRM이 제거되며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통해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위 방송에서 우리 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 미국의 위험성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점과 함께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수입위생조건 체결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고 2007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두 개 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를 밝혀 왔습니다.

〈별지 4〉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본 방송이 지난 4월 29일 방영한 <PD 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하의 보도 중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에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발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7년 6, 7월에 두 개 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제3장 손해배상청구 사례

손해배상청구 사례 1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4.자 판결 (2006가단44878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태수 판사는 2008년 1월 4일 구○○ 외 2명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조선일보 2006년 10월 27일자 A4면에 『드러난 간첩혐의 이○○이 베이징서 북공작원 만나는 사진도 확보』 제하의 기사와 『추가체포 최○○ 부인 · 처남까지도 94년 간첩 유죄』 제하의 기사와 『간첩에 돈까지 주는 정부?』 제하의 기사를, 2006년 10월 31일자 A8면에 『이○○의 영어교재 회사, 외국인강사 10여명 고용, 일주일에 2~3번만 들러』 제하의 기사와 『손○○의 논술학원, 지난 2년간 매출 7억 넘어, 사업자금 출처 알려지지 않아』 제하의 기사를, 2006년 10월 30일자 A5면에 『북, 주요 현안마다 개입시도』 제하의 기사를,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중앙일보 2006년 10월 28일자 A5면에 『운동권 연루 비밀조직 ○○회 수사』 제하의 기사를, 2006년 10월 27일자 A10면에 『운동권 출신 반국가단체 활동 수사 현 정권 ○○○ 타격 가능성』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등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각 기사에 피의자들의 동의 없이 피의자들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게재하고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 직업이나 영업내용 등 사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피의자들이 간첩단의 일원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함께 나열함으로써 피의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뒤, 피의자들 또는 원고 김○○가 공적인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

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중앙일보는 위 오보를 함으로써 위법하게 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선일보는 원고 김○○의 간첩 유죄판결 전력 등 최○○의 간첩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적인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최○○, 원고 김○○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피고들은 각 손○○의 실명과 얼굴 사진, 직장의 사진 및 영업활동의 내용에 대한 위법한 보도로 인하여 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의 피의자들에 대한 위 각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피의자들의 처인 원고들 또는 원고 김○○가 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선일보는 원고 김○○에게, 피고 중앙일보는 원고 구○○에게,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 김□□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자 원고 김□□에게 그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사　　건 : 2006가단448780 손해배상금(기)등

원　　고 : 1. 구○○

2. 김□□

3. 김○○

피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

2. 주식회사 중앙일보

변론종결 : 2007. 10. 12.

판결선고 : 2008. 1. 4.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2008. 1.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원고 김○○에게 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는 원고 구○○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0. 27.부터 2008. 1.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구○○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김□□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김○○의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구○○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가, 원고 구○○과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30을 같은 피고가, 나머지를 같은 원고가, 원고 김□□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0을 피고들이, 나머지를 같은 원고가, 원고 김○○와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가, 원고 김○○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10을 같은 피고가, 나머지를 같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 구○○은 이른바 '○○○ ○○○ ○○○'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출판사 ○○○○의 사장이자 전 ○○○○당 중앙위원, 전 ○○대학교 ○○○ 위원장이었고 이른바 미 문화원 점거사건의 참여자)의 처이고, 원고 김□□는 같은 사건 및 혐의로 구속된 손○○(서울 ○○구 ○○동에서 논술학원을 운영)의 처이며, 원고 김○○는 같은 사건 및 혐의로 구속된 최○○(○○○○당 창당멤버이자 사무부총장)의 처이다.

⑵ 피고들은 각각 발행부수 200만 부 정도의 '조선일보'와 발행부수 180만 내지 200만 정도의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주요 언론사이다.

나. 피고들의 보도내용

피고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6. 10. 26. 이○○, 손○○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되고 최○○이 추가로 체포된 후 이○○, 손○○이 그 혐의를 부인하고, 최○○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이하 이○○, 손○○, 최○○을 총칭할 때는 '피의자들'이라고 한다).

⑴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이하 '피고 조선일보'라고 한다)의 기사 내용

(가) 2006. 10. 27.자 A04면 전체(갑 제1호증의 1)

① '드러난 간첩혐의'라는 제목아래 기사내용보다 큰 글씨로 '이○○이 베이징서 북공작원 만나는 사진도 확보', 기사내용과 같은 크기의 굵은 글씨로 '□□당 최○○ · 이○○씨가 핵심'이라고 게재. 아울러 '○○○ ○○○ 출신 간첩혐의사건 흐름도'라는 소제목으로 표(상단 중앙에 위치, 크기 가로 11㎝, 세로8㎝)를 작성하여 피의자들의 출신대학교 및 나이, 학번을 공개하고, 이○○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상단 우측에 위치, 크기 가로 7.5㎝, 세로15㎝)을 게재.

② '추가체포 최○○ 부인 · 처남까지도 94년 간첩 유죄'라는 제목으로『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최○○ ○○○○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은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김○○씨이다』라고 원고 김○○의 실명과 유죄판결 전력을 공개(상단 우측 위치, 크기 가로 51㎝, 세로20㎝).

③ '간첩에 돈까지 주는 정부?'라는 제목으로『간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당 전 중앙위원과 같은 당의 최○○ 사무부총장이 정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 조치와 함께 생활지원금 수천 만 원을 받은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국가기밀을 북한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생활비까지 지원해줬다는 지적을...』이라고 보도(하단 우측에 위치, 크기 가로 16.5㎝, 세로11㎝).

(나) 2006. 10. 31.자 A08면 좌측(갑제1호증의 2, 크기 가로 20.5㎝, 세로31㎝)

① 중앙부분 기사내용 보다 굵은 글씨로 '이○○의 영어교재 회사, 외국인 강사 10여명 고용, 일주일에 2~3번만 들러'라는 제목으로『실평수 25평의 사무실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가 120~130만 원 정도로, 올 3월 이○○이 들어오기 전에는 임대료가 비싸 6개월가량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작 본인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들렀다 가는 정도였다...』라며 회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게재하고 영어교재 회사 입구 사진을 게재.

② 기사내용 보다 굵은 글씨로 '손○○의 논술학원, 지난 2년간 매출 7억 넘어, 사업자금 출처 알려지지 않아'라는 제목으로『...이 정도 규모의 학원을 열 경우 적어도 2억 원 정도 필요한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였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매달 3,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로 보면 지잔 2년간 7억 원이 넘는 규모다...』라며 학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게재하고, 손○○이 운영하던 논술학원 입구 사진을 게재.

(다) 2006. 10. 30.자 A5면 좌측(갑제4호증)

① 굵은 글씨로 '북, 주요 현안마다 개입시도'라는 제목으로『○○회 회원이자 ○○당 간부인 최○○은 윤 장관 해임안이 부결된 뒤 경위를 대북보고문으로 작성, 손○○ 등을 통해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라고 보도(상단에 위치, 크기 가로 21㎝, 세로18㎝).

② '베이징 비밀아지트 ○○○○서 북 공작원 접촉한 ○○회 멤버'라는 제목으로 피의자들의 실명, 얼굴사진, 나이, 직업을 게재(중단에 위치, 크기 가로 20.5㎝, 세로9㎝).

⑵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이하 '피고 중앙일보'라고 한다)의 기사 내용

(가) 2006. 10. 28. A5면 상단(갑제2호증의 1)

① '○○회 조직과 ○○○ 간첩의혹사건 흐름도'라는 제목으로 피의자들의 실명, 얼굴사진, 출신대학교, 학번, 나이 직업을 게재(우측에 위치, 크기 가로 15.5㎝, 세로19㎝).

② '운동권 연루 비밀조직 ○○회 수사'라는 큰 제목 아래 '역할 분담에 따른 정보 수집' 소제목으로 『1997년부터 2003년 사이 ○○회에 가입한 이○○씨 등은 당시 출판사 운영과 인터넷업체 근무, 정치권 활동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장씨에게 전달했다....2000년 ○○회에 가입한 이○○씨는 ○○당 중앙위원으로 ○○당 서울시당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고 한다....손씨는 국내의 일반정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장씨는 최씨에게 ○○당을 비롯한 사회단체에 단순한 정보수집 이상의 비선 조직을 구성하게 했다....』라고 보도(좌측에 위치, 크기 가로 21㎝, 세로20㎝).

(나) 2006. 10. 26. A10면 중단(갑제2호증의 2 : 크기 가로 11㎝, 세로1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당국의 허가없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당 전 중앙위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또 통발어선 선원으로 일하던 99년 5월 독도근해에서 조업하다 동료선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뒤 월북을 시도한 혐의(보안법상 잠입탈출)로 구속돼....』라고 보도.

(다) 2006. 10. 27. A10면 좌측 상단(갑제2호증의 3 : 크기 가로 20.7㎝, 세로23㎝)

'운동권 출신 반국가단체 활동 수사 현 정권 ○○○ 타격 가능성'이라는 제목아래 '주요 혐의자 어떤 사람인가'의 소제목으로 도표(크기 가로 9.5㎝, 세로4.5㎝)를 작성하여 피의자들의 실명, 나이, 출신대학 및 학번, 사회경력을 보도.

다. 피고들의 취재경위

⑴ 피고들은 2006. 10. 26.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를 통하여 피의자들이 연루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이 발표되자 수사기관의 발표와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기초로 위 보도에 관한 취재를 하였다. 국가안보 및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수사당국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바람에 피고들이 다른 방법으로 취재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피고 조선일보는 이○○, 손○○의 사업과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내용 등이 그들의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그들이 운영하는 출판사와 학원을 취재하여 위와 같이 보도하였다. 다만, 그 업체의 명칭은 이

니셜로 표기하여 익명성을 유지하였고,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하여 특정이 어렵도록 하였다.

⑵ 한편, 피고 중앙일보의 김◇◇ 기자는 위와 같은 수사보안으로 이○○의 인적 사항을 취재하기 어렵던 중 마침 ◇◇뉴스로 전해받은 관련뉴스 2보에 국가보안법위반자에 대한 판결문검색에서 이○○의 이름을 찾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국가정보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통신에서 그렇게 썼으면 사실 아니겠느냐? 그 시기에 그런 행위를 하였으면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최종마감시간이 임박하여 더 이상 확인할 시간이 없어 이○○에 관한 위 1.나.⑵.(나) 기사(월북시도로 처벌받은 전력 보도)의 오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중앙일보는 ◇◇통신의 명의가 아닌 김◇◇ 기자의 명의로 위 보도를 하였다.

라. 보도 후의 정황

⑴ 피고 중앙일보의 오보 인정 및 정정보도

그 후 피고 중앙일보는 자신의 위 보도 중 이○○에 대한 위 월북시도 처벌 전력 보도가 ◇◇뉴스의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나온 오보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06. 12. 13.자 2면 우하단 부분과 같은 달 28. 4면의 '바로잡습니다' 부분에서 각 위 오보를 인정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⑵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결과

피의자들 중 이○○은 형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07노929)에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잠입 · 탈출, 찬양 · 고무, 회합 · 통신)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손○○도 일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간첩부분과 다른 국가보안법위반(잠입 · 탈출 및 그 교사, 찬양 · 고무, 회합 · 통신의 점)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최○○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잠입 · 탈출, 찬양 · 고무, 회합 · 통신)등 혐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그 후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 갑 4호증, 갑 제8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⑴ 피고들은 피의자들이 혐의자체를 부인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간첩혐의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들이 기소되기도 전에 충분한 취재도 하지 아니한 채 '간첩', '간첩단', '○○○간첩조직 ○○회' 등 피의자들의 간첩행위 등을 암시하거나 단정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피의자들의 실명과 인적 사항 및 얼굴사진까지 게재하여 원고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간첩의 가족으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위 기사로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또한 피고 조선일보의 경우 이○○과 손○○의 직업과 회사 등의 구체적인 운영내용을, 원고 김○○의 이전 간첩죄 유죄판결 전력 등 위 사건과 무관한 부분까지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함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손해를 가하거나 원고 김○○의 성명권을 침해하였으며, 피고 중앙일보는 월북시도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보도를 하여 처인 원고 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⑴ 명예나 프라이버시, 초상권 등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보도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이 피의자들의 명예 등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⑵ 위 각 기사는 이른바 국가의 존립이나 사회안녕에 심대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간첩단' 사건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직결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당 간부로 활동하는 등 공인으로 볼 수 있는 피의자들의 사상과 행적에 관한 것이므로 공익성 판단 및 입증책임에 있어 그 기준이 완화되어야 하는바, 국정원이 수사하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였고 국정원장이 사건의 심각성을 피력한 바 있으며 사건의 성격상 보충취재가 불가능하여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한 이상 기사내용에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⑶ 그밖에 피고 중앙일보는 위 오보와 관련하여 ◇◇통신으로부터 주어진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최종판 마감이 임박하여 추가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기대가능성이 없고 이에 관한 정정보도까지 하였으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등 원고들의 권리침해 성립 여부

⑴ 피의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사생활 침해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기사에 피의자들의 동의 없이 피의자들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게재하고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 직업이나 영업내용 등 사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피의자들이 간첩단의 일원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함께 나열함으로써 피의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위 오보와 관련하여 피고 중앙일보가 허위사실로 이○○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명백하다.

⑵ 원고들에 대한 손해의 발생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생명이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판결;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간첩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간첩죄와 관련된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은 물론 그의 배우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도 함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이라는 점, 피의자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인격권의 하나로서 일신전속적인 것이기는 하나 피의자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고통은 가족들 특히 배우자도 함께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경험칙상 배우자에게도 고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의자들의 위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들뿐 아니라 원고들에게도 피의자들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조선일보가 최○○의 보도와 관련하여 굳이 그의 간첩혐의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이 밝혀진 바 없는데도 그의 처인 원고 김○○의 간첩죄 유죄판결 전력을 함께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최○○의 사생활 대한 동의 없는 보도에 해당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원고 김○○가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과거 전력이 실명과 함께 드러난 점에서 원고 김○○ 자신의 성명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⑴ 일반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⑵ 공익성

(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피고들의 위 각 기사는 국가의 존립과 사회의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려 시도하였을 가능성 등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도 목적 및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임은 명백하다.

(나) 신원 등의 명시 허용 여부 – 피의자들 또는 원고 김○○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그러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다만, 보도의 대상자가 공직자이거나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어떤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논쟁의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최○○은 피고들의 위 각 보도 당시 ○○○○당 사무부총장으로서 공식적인 정당활동을 수행하여 국가의 공적인 정책결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공적인 논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전면에 자발적으로 나선 자라는 점에서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의 경우에도 ○○대학교 □□□ 위원장의 전력이 있고 1985년의 미 문화원 점거사건에 참여하는 등 이른바 '○○○' 세대의 전면에서 이념투쟁을 주도하였던 사람이고 ○○당 중앙위원으로 공식적인 정당활동을 한 적도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영어교재를 발간하면서도 대중 앞에 자신의 위와 같은 경력을 당당히 소개할 정도로 자신의 이념적 주장과 행동을 자발적으로 대중 앞에 드러낸 사람인 점에서 공적 인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최○○과 이○○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실명보도가 허용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의 동

의 없이도 얼굴 사진의 게재와 기본적이 사회이력의 공개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의 실명 보도나 얼굴 사진의 게재 및 기본적인 사회이력의 공개에 관한 보도는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물론 공적 인물의 경우에도 사적인 영역은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 중에서도 직업활동과 같은 사회적 영역에 속한 것은 공중에 노출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공공에 대한 의식적인 지향을 가지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 공개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조선일보가 이○○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게재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의 직장이나 영업의 내용을 보도한 것 역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위 각 보도로 이○○, 최○○이나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그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이 괴로워하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이나 최○○이 공적 인물로서 자발적으로 전면에 나섰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사인보다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최○○에 대한 실명 및 사진게재, 직업활동 등 보도의 공익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손○○은 대학생시절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한 것 외에는 대외적으로 아무런 공적 활동을 한 바 없고 식당이나 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들이 적시한 간첩범죄 사실을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손○○이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물론 간첩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나 민감성에 비추어 공적 인물이 아닌 자의 범죄 혐의 신원확인 보도가 가능한 경우 즉, ①그 범죄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사에 관한 포괄적 정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여론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기사 작성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범행이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을 갖는 것이어서 그 중대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②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지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범행의 증명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사전에 보도하여야 할 특별히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그의 범행이 자의로 진술된 신빙할 만한 자백에 의해 증명되었거나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예외가 허용되는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신원보도가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사인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누구나 간첩혐의자로 지목되어 실명으로 보도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후일 무죄임이 판명되더라도 그 명예의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손○○에 대한 피고들의 보도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 김○○ 역시 사인에 불과하고 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자도 아닌 점에서, 또한 최○○이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처에 관한 사적 사항이 함부로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에서 피고 조선일보가 원고 김○○의 성명이나 과거 유죄판결 전력을 남편인 최○○의 혐의와 관련하여 함께 보도한 것 역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이와 같이 손○○과 원고 김○○와 관련된 부분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⑶ 진실성 또는 상당성

① 이○○에 대한 월북시도 처벌전력에 관한 피고 중앙일보의 보도는 스스로 오보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진실성이 없음은 자명하며, 피고 중앙일보가 ◇◇통신 기사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자 명의로 보도를 한 이상 단순히 ◇◇통신의 보도를 믿었고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통화를 한 상태에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사실확인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 보도를 한 것만으로는 피고 중앙일보가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반면, 최○○은 보도된 내용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③ 그런데 이○○의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의 간첩죄를 암시하는 듯한 피고들의 보도에는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으로 인하여 극도로 보안이 유지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달리 사실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재를 기초로 간첩혐의에 관한 보도를 하였고 나중에 이○○의 다른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유죄로 인정된 범죄내용이 통신 · 회합, 잠입 · 탈출 등 바로 간첩죄로 연결될 수 있는 외형을 가진 것들일 뿐 아니라 간첩죄에 관한 무죄는 증거부족에 따른 것일 뿐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에 대한 간첩죄 부분 보도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⑴ 그렇다면 피고 중앙일보는 위 오보를 함으로써 위법하게 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선일보는 원고 김○○의 간첩 유죄판결 전력 등 최○○의 간첩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적인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최○○, 원고 김○○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피고들은 각 손○○의 실명과 얼굴 사진, 직장의 사진 및 영업활동의 내용에 대한 위법한 보도로 인하여 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의 피의자들에 대한 위 각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피의자들의 처인 원고들 또는 원고 김○○가 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선일보는 원고 김○○에게, 피고 중앙일보는 원고 구○○에게,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 김□□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자 원고 김□□에게

그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⑵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그 표현방법, 피고들이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피의자들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피고 중앙일보의 정정보도,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결과, 이 사건 청구는 피의자들이 아닌 그 배우자들이 제기한 것인 점, 원고 김○○는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중앙일보가 원고 구○○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000원, 피고 조선일보가 원고 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3,000,000원, 피고들이 원고 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6. 10. 31.부터 피고들이 손해배상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8. 1. 4.(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원고 김○○에게 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는 원고 구○○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이거나 그 이후로서 원고 구○○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06. 10. 27.부터 위 2008. 1. 4.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구○○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김□□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김○○의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태 수

손해배상청구 사례 2

제주4 · 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의 경우, 그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제주4 · 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지방법원 2008. 1. 10.자 판결 (2002가합560) (확정)

사실개요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10일 이○○ 외 345명(제주4 · 3사건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선정자)와 조○○(선정자)와 우○○(선정당사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우○○이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통권 제259호)에 『특종 국군지휘부의 자해행위』 제하의 기사에서 소위 여순사건의 발생경위 및 역사적 평가, 여순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애기섬'의 제작과정 및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5 · 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 · 3폭동', '제주4 · 3폭동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5 · 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에 따라 발생하였다'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제주4 · 3사건의 희생자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무장폭동을 일으킨 자로 보도함으로써 제주4 · 3사건의 희생자들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사는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인 원고들의 성명 기타 원고들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제주4 · 3사건의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 중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②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하여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둘 수 있는바"라고 판시한 뒤, "제주4 · 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

도로 그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제주4 · 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그 구성원인 희생자 또는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③위법성조각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역사적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역사적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근거 자료 또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뒤, "제주4 · 3사건에 대하여 1980년대까지는 '공산계열의 사주에 의한 무장폭동'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다가 그 후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평가가 나타난 것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사　　건 : 2002가합560 손해배상(기)

원　　고 : 별지 원고 목록과 같음

피고(선정당사자) : 우 ○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송달장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월간조선사내

변 론 종 결 : 2007. 12. 13.

판 결 선 고 : 2008. 1. 10.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주4 · 3사건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법에 규정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제주4 · 3사건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로 결정된 자들이고, 선정자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월간지 '월간조선'을 발행하는 언론법인이며, 선정자 조○○는 선정자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의 대표이사이자 월간조선의 편집장이고, 피고는 '월간조선'의 취재2팀장이다.

나. 제주4 · 3사건의 개요

1) 의의

"제주4 · 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발발원인 및 진상에 대한 여러 견해

가) 제주4 · 3사건의 성질 및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제주4 · 3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① 남로당의 선동과 음모로 인하여 무고한 제주시민들이 희생당한 폭동이라는 견해, ② 좌익세력의 우익정부에 대한 반란이라고 보는 견해, ③ 제주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중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 ④ 민족해방을 위한 민중항쟁으로 파악하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나) 제주4 · 3사건에 대하여 남 · 북한의 이념적 갈등이 좌파적 시각을 말살하던 1980년대까지는 '공산계열의 사주에 의한 무장폭동'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그 후 사회적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1947. 3. 1. 봉기시 민간인 피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던가, 미군정수립을 반대하는 것이 그 직접적인 동기라던가, 육지출신 공무원들에 대한 반감과 제주도에서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고, 이러한 인자들이 종합된 민중항쟁이라고 보거나, 좌익계열의 모험적 도발과 미군정과 한국민주당의 과잉진압이 맞물려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제주4 · 3사건에 접근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경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다) 결국 해방전 · 후의 역사에 대한 인식차이와 당시 제주도의 여러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 정도에 따라 제주4 · 3사건의 발생원인 및 성격을 달리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건의 경과

가) 1948. 4. 3. 이전의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제주도에서 경제적 불안과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통치하에서도 지하조직을 유지하였던 세력은 1945. 9. 22. 이미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제주도 전역에 자치행정을 실시하여 오던 중 1995. 9. 28. 제주도에 진주한 미군정이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통제하려고 하자 소규모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47. 초경 남로당의 지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거행되었던 3 · 1절 기념 대규모 집회 후 가두시위 중 경찰의 발포에 의하여 제주도민 수명의 사상자의 발생에 대한 항의표시로 제주도내의 관공서와 학교 · 직장에서 납세거부 및 파업투쟁이 일어나자, 미군정과 경찰은 서북청년단 등 지원세력을 증원받아 이를 강경하게 제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산발적인 테러행위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의 예비검속 등 혐의자에 대한 체포, 구금이 계속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속칭 '종달리 사건'과 '2 · 7사건' 등에서 상호 피해가 속출하였고, 경찰에 연행되었던 일부 청년들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다.

나) 1948. 4. 3. 이후의 상황

⑴ 1948. 4. 3. 사건의 본격적인 발발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8. 5. 10.에 실시되는 제헌국회의원선거 및 남한단독정부수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1948. 4. 3. 02:00경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인 무장유격대를 동원하여 제주도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는데, 이 습격으로 경찰관 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 사망 8명, 부상 19명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초기 미군정과 경찰 수뇌부는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무장유격대는 투표거부운동을 주도하면서 무기로 무장하고, 기습공격을 통하여 경찰관리 등을 살해하고, 경찰지서 등에 방화하였다. 무장유격대의 이러한 공격과 투표거부운동으로 인하여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만 선거를 실시하는 등으로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⑵ 진압과정

미군정은 1948. 5. 15. 이후 진압작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무장유격대의 활동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 8. 15. 수립된 후 정부는 진압경찰과 군을 증원하여 대규모 소탕작전을 준비하였고, 이에 맞서 무장유격대는 1948. 10. 1. 소련혁명기념일을 기해 제주도 일원의 경찰지서와 진압군에 대하여 기습을 벌이는 등으로 대항하였으나, 정부는 이른바 '초토화전술'을 채택하여 무장유격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대규모 진압작전을 펼친 결과 결국 1949. 3.경에는 무장유격대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1949. 5. 15.에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를 해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토벌과정에서 쌍방 간에 적대세력, 그 가족 및 친인척들을 공격하여 상당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진압군은 단지 무장유격대와 연결되는 의심이 있다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공산주의활동을

한 자들에 대하여서까지 전력을 문제 삼거나, 그들의 친 ·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민들을 살해하고, 주민들은 이를 피하여 산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이들도 무장유격대원 또는 그 동조자들로 간주되어 진압군에 의하여 피살되는 무리한 진압이 빈발하였다.

1954. 9. 21. 마침내 한라산에 대한 입산금지가 해제됨으로써 제주도 전체가 평시체제로 환원되었다. 다만, 일부 잔존 무장유격대는 1956. 지서를 습격하는 등 간헐적으로 활동하였으나, 1957. 최후의 유격대원 오□□이 검거됨으로써 제주4 · 3사건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4) 피해상황

제주도의회 4 · 3특별위원회가 1994. 2.부터 1999. 12. 31.까지 피해신고를 받아 조사한 희생자의 수는 14,841명이고, 2000. 6. 8.부터 2001. 5. 30.까지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토벌대에 의한 희생자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764명, 모름 1,266명)이었으나,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는 잠정적으로 4 · 3사건 전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당시 제주도민의 최대 추정인구가 약 27만 명 내지 약 3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명피해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회 4 · 3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도 4 · 3피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희생자로 파악된 인원 중 적극적인 무장활동에 가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10세 미만 및 60세 이상의 유 · 노년층이 각 약 6%에 이르고 있어 민간인들의 피해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특별법의 제정

1) 제정목적

제주4 · 3사건이 발발한 지 50년이나 경과되었고, 그 원인과 억울한 희생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전개되던 중 무장유격대와 진압군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희생자의 유족들 역시 연좌제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던 점을 중시하여 제주4 · 3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뒤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억울한 희생을 신원(伸寃)하며, 화해를 통하여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화합과 민족의 단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2) 희생자의 확정

가) 자유당 정권이 몰락한 1960. 4. 19. 이전까지는 제주4 · 3사건은 남로당에 의하여 주도된 공산반란으로서 군경에 의하여 피살된 자는 모두 무장유격대원이거나 그 동조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주4 · 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결국 1996년판 고등학교 국사교과사에 '제주4 · 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다.'는 내용이 반영되었고,

1999.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도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이는 없었으며, 헌법재판소도 2000헌마238,302(병합) 사건에서 '군경의 진압과정이나 무장유격대의 공격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중 무장유격대 또는 진압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을 희생자로 보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 중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 · 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 · 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현재 헌법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제주4 · 3사건의 발발 및 전개에 책임이 있는 공산주의자 및 무장세력과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주민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나) 위원회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 중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 · 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 · 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을 제외하고 제주4 · 3사건의 발발, 전개 및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희생자로 보고, 2005. 3. 17. 현재 전체 신고자 14,373명 중 68.6%에 해당하는 9,860명을 희생자나 유족으로 심의 확정하였다.

라. 월간 조선의 기사 내용

피고는 2001. 10. 1. 발행된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통권 제259호)에 "특종 국군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대제목과 '여순 14연대 좌익 반란사건을 비호하고, 국군의 진압을 양민학살로 왜곡한 영화제작에 헬기 · 트럭 등 군장비를 지원하다.'라는 소제목으로, 약 2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본문에서 소위 여순사건의 발생경위 및 역사적 평가, 여순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애기섬'의 제작과정 및 내용, '애기섬' 제작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및 입장변화 과정, '애기섬' 감독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1) 여순14연대 반란사건은 유엔의 결의와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1948. 5. 10. 실시되었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 · 10 총선을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 · 3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 주둔 14연대 1개 대대에 제주도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14연대 내부의 일부 좌익 군인들이 1948. 10. 19.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신생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

해 일으켰다(한국전쟁사 참조).

2)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 · 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고 규정한 제주4 · 3사건을 이 영화에서는 4 · 3항쟁이라는 용어를 사용, 폭동을 의거 수준으로 미화시켰으며, 여순14연대 반란사건도 그냥 여순사건이라고 호칭했다.

3) 다큐멘터리 영화라면 사실에 접근해야지 사실과 동떨어지면 잘못된 역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순사건은 제주4 · 3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제주4 · 3폭동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5 · 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4) 진압 과정에 국군의 무리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국군이 걸음마도 떼지 못한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를 말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비겁한 선제공격으로부터 이 아기를 지켜내려는 몸부림의 결과라고 해석해야지, 반란의 성격을 바꾸고 반란군을 동정 · 비호할 성격은 아닐 것이다.

마.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는 '제주4 · 3사건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의 교란작전의 하나'로 기술된 부분을 수정하여 '제주 4 · 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 · 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며,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원회는 2003. 5. 2.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주4 · 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그 배후에는 북한과 소련이 있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한 글도 있는데,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의 근원은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의 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이후 보수적 입장에 있는 필진들에 의하여 위 글이 인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박○○이 2002. 7. 11. 그와 같은 글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남로당 전문연구가인 김○○의 증언 등과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제주4 · 3사건은 발발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 개입 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7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 김□□, 이□□, 이◇◇의 각 증언, 이 법원의 2007. 6. 1.자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기사 중 '5 · 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 · 3폭동', '제주4 · 3항쟁이라는 용어를 사용, 폭동을 의거 수준으로 미화', '제주4 · 3폭동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5 · 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에 따라 발생하였다.' 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제주4 · 3사건의 희생자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무장폭동을 일으킨 자로 보도함으로써 제주4 · 3사건의 희생자들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애기섬'의 제작에 헬기 등 군장비를 지원한 군수뇌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서 제주4 · 3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논평 혹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가사 이 사건 기사에서 제주4 · 3사건과 관련된 사실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이 아니므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에 따라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내용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취재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 및 선정자들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특정 여부

1) 사실 적시 여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역시 피고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들이 문제로 삼는 부분인 '5 · 10 총선을 반대하

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 · 3무장폭동', '제주4 · 3폭동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5 · 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에 따라 발생하였다.'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기사 부분을 그 기사의 전체적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제주4 · 3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평가한 '의견표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산주의자 등이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인 점 및 그 의견표명에 전제된 사실과 단정적 표현방법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는 위 기사부분을 통하여 '5 · 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제주4 · 3사건을 일으켰다.', '5 · 10 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무장폭도들이 제주4 · 3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지적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의 영역을 넘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중 위 기사 부분은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혹은 무장폭도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함으로써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혹은 무장폭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제주4 · 3사건의 희생자들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인 원고들의 성명 기타 원고들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오□□, 김□□, 이◇◇의 증언만으로는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인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무장폭도'에 대한 언급이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인 원고들을 의미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을 다루면서 군의 민간인 학살을 부각시킨 다큐멘터리 영화 '애기섬'의 제작에 헬기 등 군장비를 지원한 군수뇌부를 비판하면서 영화의 소재가 된 여순사건에 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모티브가 된 제주 4 · 3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한 이 사건 기사를 기술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제주4 · 3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점, 제주4 · 3사건은 1960. 4. 19. 이전까지는 남로당에 의하여 주도된 공산반란이고, 군경에 의하여 피살된 자는 모두 무장유격대원이거나 그 동조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으나, 1961. 이후 제주4 · 3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진상규명의 논의로 인하여 1999. 특별법 제정당시 제주4 · 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주민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제주4 · 3사건의 관련자로는 무장유격대 또는 진압군 또는 희생자로 구분하게 된 점 등을 종합

하면,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란 1947. 3. 1.을 기점으로 하여 1954. 9. 21.까지 계속된 제주4 · 3사건 기간 중에서 1948. 4. 3. 무장소요사태를 일으킬 당시 관여한 공산주의자 등으로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제주4 · 3사건의 전개 및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자들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주4 · 3사건의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 중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가사 이 사건 기사 중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를 '제주4 · 3사건의 희생자'까지 포함한 제주4 · 3사건의 관련자 모두로 본다고 할지라도,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집단만을 표시한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지 또한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는바(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4 · 3사건의 관련자로는 무장유격대 또는 진압군 또는 희생자로 구분되는데, 제주4 · 3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무장유격대가 아니라 희생자들이고, 위원회에 2005. 3. 17. 현재 신고된 전체 희생자만 하여도 무려 14,373명에 이르고, 그 중 68.6%에 해당하는 9,860명이 희생자나 유족으로 확정되어(위 위원회는 제주4 · 3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25,000명~30,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제주4 · 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라는 표현이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제주4 · 3사건 관련자 중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그 구성원인 희생자 또는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위법성조각 여부

가사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적인 인물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의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안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해석에 의한 보완과 어느 정도의 추측이 가하여질 수밖에 없는 점, 망인에 대한 유족의 경애 · 추모의 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감되어 가는 반면 망인에 관한 사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이행하여 간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호되어야 하는 점, 망인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역사적 사실에 관한 재조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과 같이 역사적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역사적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근거 자료 또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위법성 판단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제주4 · 3사건에 대하여 1980년대까지는 '공산계열의 사주에 의한 무장폭동'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다가 그 후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평가가 나타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2 내지 3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4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와 증인 박□□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건국 초기의 국내정세에 대하여 북한에서 사실상의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 이들까지도 이용하려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5 · 10총선거를 전후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남한 각지에서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제주4 · 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

킨 무장폭동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었고, 학계 일각에도 '제주4 · 3사건이 북한 또는 소련과의 연계하에 일어난 유혈폭동'이라고 보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제주4 · 3사건 당시 무장봉기를 일으킨 무장유격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1948. 3. 15. 전남도당 조직지도원까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남로당 제주도상위(常委)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무장투쟁 결행방침에 따라 조직되었고, 무장유격대를 총괄하는 군사부 책임자이자 무장봉기를 주도하였던 김△△은 무장봉기 직후인 1948. 8. 북한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일명 해주대회)에 참석하여 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을 지지하였으며, 무장유격대가 무장봉기를 일으키면서 주창한 남한만의 단독선거 · 단독정부 반대, 반미구국투쟁은 당시 북한의 입장과 일치한 사실,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였는데, 위 기획단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주4 · 3사건의 발생원인으로 남로당 중앙당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 일부가 사퇴한 사실, 진상조사보고서에 제주4 · 3사건을 한국전쟁 다음 가는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건임에도 실체를 규명할 공문서가 별로 없고, 반세기 동안 구체적인 종합적인 진상조사 작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억제돼 왔으며, 사건의 성격에 대해 아직도 보는 시각에 따라 첨예한 대립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그 특징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국사교과서의 기재된 내용의 흐름을 종합하면 공산주의자를 북한에 수립된 공산주의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제주4 · 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당시 주된 논의대상은 제주4 · 3사건의 발발원인 자체에 대한 진상 규명보다는 제주4 · 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무장유격대와 진압군의 틈바구니에서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으로 인하여 발발원인의 북한연계설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어 피고가 제주4 · 3사건이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원회에서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4 · 3사건의 발생 당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상보고서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19개월이 지난 후에 발간되었으며, 발간 당시에도 제주4 · 3사건의 성격에 대해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고 기재하여 발생원인에 대하여도 북한과의 연계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기획단 위원들 중에서도 남로당 중앙당의 관여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며,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북한과의 연계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의 근거가 된 자료로 특정한 박○○의 글에 대한 사실진위를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02. 7. 11. 박○○으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으므로, 피고가 2001. 10. 경 이 사건 기사를 쓸 때 북한과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인 위 박○○의 글이나 이를 기초한 제주4 · 3사건의 발생에 북한이 연계되었다는 자료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 현 주
판사 곽 정 한
판사 차 진 석

〈별지 1〉 원 고 목 록

1. 이 ○ ○ 외 345명
제주시 ○○동 ○○○

〈별지 2〉 선 정 자 목 록

1. 우 ○ ○
서울 ○○구
2.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서울 ○○구
3. 조 ○ ○
서울 ○○구

손해배상청구 사례 3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8. 1. 16.자 판결 (2006나92006)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16일 국회의원 전여옥이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는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노컷뉴스팀 소속 기자가 2005년 3월 8일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시장이 기자와 대화 도중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김현미 대변인'을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 기사는 곧바로 피고 씨비에스아이와 뉴스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피고 엔에이치엔의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 시사분야란에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4집 192~196면 참조).

2심 재판부는 먼저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네이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인 피고 CBSi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위법성 조각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판결문

사　　건 : 2006나9200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전 여 옥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1.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성남시 ○○구

대표이사 최 ○ ○

2.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서울 ○○구

대표이사 이 ○ ○, 정 ○ ○

제 1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11. 28.

판 결 선 고 : 2008. 1. 16.

주　　문 :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 민○○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래의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⑵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NHN'이라 한다)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뉴스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⑶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CBSi'라 한다)는 CBS 방송국 계열의 인터넷콘텐츠업체로서 '인터넷씨비에스노컷뉴스'(이하 '노컷뉴스'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운영 개요 및 피고들 간의 기사제공 체계

⑴ 피고 NHN은 피고 CBSi 등 100여 개의 유수한 언론사들과 사이에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언론사들이 작성 · 생산한 뉴스를 1일 평균 1만 건 정도 전송받고 있는데, 그 중 2004. 9. 30.자로 피고 CBSi와 사이에 체결된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그밖의 언론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저작물이라 함은 피고 CBSi가 피고 NHN에게 제공하는 노컷뉴스의 모든 기사를 말한다(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서 제2조).

② 피고 NHN은 위 피고의 홈페이지나 위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내에서 노컷뉴스의 저작물을 서비스할 수 있다(제5조).

③ 피고 NHN은 피고 CBSi가 제공하는 저작물을 고의로 왜곡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제10조).

④ 노컷뉴스 저작물의 제공주기는 실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 CBSi는 자신이 피고 NHN에게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피고 CBSi가 제공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모든 저작물의 내용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피고 CBSi는 이로부터 피고 NHN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자기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제11조).

⑤ 피고 CBSi가 피고 NHN에 제공하는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전적으로 피고 CBSi에 귀속한다(제12조).

⑵ 피고 NHN이 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공급받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① 언론사 시스템이 뉴스를 네이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자동전송하여 네이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방식 및 ② 네이버 시스템이 언론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뉴스를 가져와 이를 네이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피고 CBSi로부터 기사를 공급받는 방식은 그 중 ②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즉, 노컷뉴스팀의 기자가 노컷뉴스 사

이트에 접속하여 기사를 등록하면 노컷뉴스팀의 편집자가 편집한 후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위와 같이 올려진 기사는 1분 간격을 두고 자동으로 네이버의 서버에 전송된다.

⑶ 피고 NHN은 자체 취재인력은 두지 않고 20여 명의 직원으로 뉴스팀을 구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치 · 사회 · 연예 등 담당분야별로, 피고 CBSi 등 언론사들로부터 매일 공급되는 기사들 가운데 속보성 · 화제성 · 정보성 등을 고려하여 가치가 있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선별하게 한 뒤, 언론사들이 작성한 기사에서 제목만을 추출하여 네이버의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게 함으로써 네이버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원래 기사를 보내온 언론사의 표시와 함께 송고된 기사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위 주요뉴스란에 표기하는 제목은 언론사들이 작성한 기사의 제목을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제목을 다소 달리하는 언론사들의 기사가 다수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스란의 공간적인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정이 이루어지곤 한다.

⑷ 네이버에 송고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이 해당 언론사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란의 기사제목까지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이 그 기사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수정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열람하게 된다. 이에 피고 NHN은 2005. 1. 31. 피고 CBSi를 비롯한 언론사들에게 네이버로 전송한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시 반드시 피고 NHN의 네이버 뉴스팀 대표 메일로 소정 양식을 갖추어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러한 연락이 없을 경우 네이버 뉴스 메인 페이지 등에 노출된 내용이 수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해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게재 경위

⑴ 노컷뉴스팀 기자인 송○○은 서울시청을 담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5. 3. 8.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을 인사차 방문하여 대화하던 도중, 열린우리당의 대변인 김현미가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이명박 시장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노컷뉴스에 기사로 등록하면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부분을 '한나라당 전여옥'으로 잘못 입력하여,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마치 원고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하여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하였던 것처럼 기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기사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⑵ 이 사건 기사가 2005. 3. 8. 18:50경 네이버에 이명박의 사진과 함께 자동 전송되자, 피고 NHN의 뉴스팀은 그날 19:00경 그 제목을 '이명박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라고 축약하여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배치하였다.

⑶ 그 후 CBS의 청취자로부터 이 사건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제보가 있자, 피고 CBSi는 같은 날 19:51경

위 기사 중 '한나라당 전여옥' 부분을 '열린우리당 김현미'로 수정하였고, 그 즉시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에 링크된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내용도 자동으로 수정되었으나, 피고 NHN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정사실을 통보하지는 아니하였다.

⑷ 피고 NHN은 같은 날 21:00경 원고의 보좌관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 CBSi에게 이 사건 기사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같은 날 21:10경 피고 CBSi로부터 위와 같은 수정사실을 통지받고 나서야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의 링크제목을 '이명박 "김현미, 말을 그리 함부로.."'로 수정하였다.

⑸ 피고 CBSi의 당시 노컷뉴스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민○○은 같은 날 21:30경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기사가 오보임을 사과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형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터이므로,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하게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그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는 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가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이로 인하여 이명박과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의 대변인인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하여 원고의 명예 그 자체를 훼손하였거나, 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하게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나.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배포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네이버는 100여 개의 유수한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1만 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에게나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네이버는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편집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네이버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 · 사회 · 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 · 화제성 · 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네이버는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취재의 면에서 살피건대, 네이버가 자체 취재인력 없이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을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한편,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네이버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이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들과 사이에 송고된 기사내용 그 자체에 대하여 수정 · 변경을 가할 수 없는 대신 그 기사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네이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인 피고 CBSi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결국, 위법성조각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NHN이 이 사건 기사에 달린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둔 것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항시적으로 일반 국민의 지지나 비난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정치인이라는 점과 보도내용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욕설과 비속어로 점철된 댓글을 다는 소위 악성 리플러들도 다수 존재하는 점, 더욱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지 무려 2년 8개월 남짓이 지난 당심 변론 종결일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댓글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하여 원고가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 NHN의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과 진실상당성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이 사건 기사가 오보로서 진실성을 결여하고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진실성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정치인 사이의 설전에 대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의 정치와 관련된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공익성은 인정된다(원고도 이 점을 다투고 있지는 않다).

나. 진실상당성

(1) 피고 NHN은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정평있는 언론사로부터 송고된 기사를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설령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도 송고된 기사의 문면상 일견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있는 때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

자 자신이 오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진실성을 의심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고된 기사에 대한 독자적인 확인작업까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확인작업 없이도 자신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BSi는 국내의 정평있는 언론사 중 하나인 CBS의 계열사이고, 피고 NHN이 피고 CBSi 등 언론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에 따르면, 언론사들이 송고하는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이 오로지 그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NHN의 확인작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기사공급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체제는 인적 · 물적 취재수단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로 하여금 세계적 · 전국적 사건을 보도할 수 있게 하여주는 한편,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직접 언론사들의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그러한 뉴스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사회적 효용이 극히 높은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정보통신사회에서 국내외의 뉴스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현상에 비추어 인터넷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송신기사 모두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중요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해하게 될 우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에 비추어,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내지 이에 관련된 사실의 보도는 물론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일반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취재시간의 제한이나 언론매체 간의 경쟁 과열 등의 사정으로 취재에 신중을 결하여 진실이 아닌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비록 정평있는 언론사로부터의 송신기사라 하더라도 당해 기사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포털사이트가 기존의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기능을 갖추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언론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일단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송신기사가 게재되면 그 해당 인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NHN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면책을 허용한다면, 피해자가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하여서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용한 정정보도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

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 NHN이 네이버 상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그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거쳤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NHN이 이 사건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기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진실에 반하고 피고 NHN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도 없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NHN의 위법성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책임 범위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기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게재되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다만, 피고들이 원고를 비난할 의도 없이 단순한 실수로 이 사건 기사를 잘못 작성하여 게재한 데 불과하고, 피고 CBSi가 기사 작성 후 50여 분만에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직접 사과하기까지 하였고, 피고 NHN 또한 원고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링크제목을 수정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용 구

판사 김 진 현

판사 이 우 철

〈별지〉 기사내용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

(CBS 전국부 정보보고)

이병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여의도 상주' 발언에 '불쾌'

이명박 서울시장이 최근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상주하고 있다' 고 말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보임.

8일 오후 이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이 너무 어수선하다"고 운을 뗀 뒤 대뜸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최근 자신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 고 말했다"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며 불쾌한 심경을 피력. (이하 생략) 끝

손해배상청구 사례 4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가 방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립적 판단하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 17.자 판결 (2007다59912) (확정)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7년 7월 25일 신생아 김○○과 친권자 부 김□□, 모 오○○가 한국방송공사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5년 10월 4일 KBS "병원 24시" 프로그램에서 『1,000g 아가들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라는 제목으로 세쌍둥이 미숙아와 그들의 부모 그리고 건국대학교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을 주요 출연진으로 하여 약 보름간에 걸쳐서 위 미숙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로 구성된 내용을 방영하였다.

한편 원고 오○○도 세쌍둥이를 출산하였으나 원고 김○○을 제외한 2명이 죽어서 주위에 그러한 사정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므로 자신과 김○○에 대한 촬영은 삼가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재판부는 외주제작사와 소속PD에게만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재판부는 더 나아가 한국방송공사와 소속PD에게도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1,2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5집 187~205면 참조).

3심재판부는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가 방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립적 판단하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뒤,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외주제작사의 제작현장에 수시로 입회하는 등 "병원 24시"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여할 수 있고 제작이 완료된 "병원 24시" 프로그램을 검수하여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 24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병원 24시"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어, 피고 오◇◇으로서는 "병원 24시"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이상 그 프로그램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프

로그램을 방영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오◇◇과 그 사용자인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로 인한 원고 김○○, 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외주제작사 ○○○○ 및 피고 박○○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사　　건 : 2007다5991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1. 김 ○ ○

2. 오 ○ ○

3. 김 □ □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 모 오 ○ ○

피고, 상고인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구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2. 오 ◇ ◇

고양시 ○○○구

3. 박 ○ ○

서울 ○○○구동 1105호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판 결 선 고 : 2008. 1. 17.

주　　문 : 피고들의 원고 김○○, 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오◇◇의 원고 김□□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한국방송공사, 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방송사업자에게 강제되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주제작사와 체결한 제작계약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하고 납품된 방송프로그램의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유보된 사정 아래에서 방송사업자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의하여 무단촬영된 장면에 관하여 피촬영자로부터 그 방송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그대로 방송하게 되면 외주제작사와 공동하여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가 방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립적 판단하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당사자의 지위와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매주 화요일 방송한 "병원 24시" 프로그램 중 "1,000g 아가들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 편(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정, 피고 한국방송공사와 외주제작사인 원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외주제작계약의 내용, 원고 김○○, 오○○에 대한 촬영 경위, 이 사건 프로그램에 포함된 위 원고들 촬영장면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방영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을 기초로 피고 박○○은 원고 김○○의 친권자인 원고 오○○, 김□□의 동의 없이 원심 판시 제1, 2장면을, 원고 오○○의 동의 없이 원심 판시 제3장면을 각 촬영하여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게 함으로써 원고 김○○, 오○○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피고 박○○과 그 사용자인 ○○○○은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 김○○, 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원심은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의 제작현장에 수시로 입회하는 등 "병원 24시"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여할 수 있고 제작이 완료된 "병원 24시" 프로그램을 검수하여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 24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병원 24시"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어, 피고 오◇◇으로서는 "병원 24시"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이상 그 프로그램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원심 판시 제1, 2, 3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오◇◇과 그 사용자인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로 인한 원고 김○○, 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 및 피고 박○○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김□□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박○○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초상권 침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에 도급과 고용의 구

별 내지 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과 관련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상고이유는, 외주제작사에 의하여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있어서 초상권 침해에 관한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외주제작사를 피용자로 하는 사용자책임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한국방송공사, 오◇◇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오◇◇이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과 관련하여 피촬영자의 승낙 등 초상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이러한 과실책임은 피촬영자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편집권에 기하여 문제될 수 있는 장면을 삭제하거나 피촬영자의 동일성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화면조작 등으로 초상권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피고 한국방송공사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서 피고 오◇◇에게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방송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을 규정한 방송법 제72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요건인 과실의 존재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와 관련한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원고 김○○, 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오◇◇의 원고 김□□에 대한 상고는 위 원고가 원심에서 전부패소하여 상고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 대 희
대법관 김 영 란
주 심 대법관 김 황 식
대법관 이 홍 훈

손해배상청구 사례 5

원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제한 채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범인이라는 인상을 줄 단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를 게재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창원지방법원 2008. 2. 14.자 판결 (2007가단5109) (확정)

사실개요

창원지방법원(박성윤 판사)은 2008년 2월 14일 이○○ 외 2명이 주식회사 연합뉴스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연합뉴스가 ○○○○년 ○월 ○일 『빚독촉 친동생 살해유기 40대 체포』 제하의 기사와 『1천500만원 빚에 친동생 엽기살해』 제하의 기사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피고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을 맺은 언론사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독자로서는 보도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의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 범죄혐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작성의 기초자료가 된 이 사건 검거보고서에 따르면 검거경위부분에서 원고를 변사사건의 혐의자로서 긴급체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검거경위 마지막 부분에 원고가 범행사실을 '부인' 하고 있다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망 이△△을 살해하였다는 직접증거는 당시까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피고들로서는 원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제한 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범인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단정적인 내용

으로 구성된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및 게재, 제공하기에 앞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언론인의 입장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위와 같은 취재가 어려웠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위 각 기사에서 원고를 범인으로 전제한 표현을 삼가고 원고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사　　건 : 2007가단5109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 이 ○ ○

피　　고 : 1.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구

대표이사 김 기 서

2. 황 ○ ○

변 론 종 결 : 2007. 10. 11.

판 결 선 고 : 2008. 2. 14.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원, 선정자 이□□, 이◇◇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2008.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5,000,000원, 선정자 이□□에게 24,984,000원, 선정자 이◇◇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20년 정도 기술계통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7.경부터 기업기술정보제공, 선물거래 및 상품권매매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선정자 이□□(○○○○. ○. ○.생), 이◇◇(○○○○. ○. ○.생)은 원고의 딸들인데, 2003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소지는 김해시 ○○동 ○○ ○○아파트 ○○동 ○○호이다.

⑵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이하 '연합뉴스'라고 한다)는 소속 기자와 특파원들이 취재하거나 해외 통신사가 제공한 국내외 기사를 국내 신문, 방송사에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황○○는 별지 2 내지 4 기재 기사를 작성한 피고 연합뉴스의 기자이다.

나. 원고의 긴급체포경위 및 이에 따른 피고들의 보도

⑴ 원고의 동생으로서 안산시에서 세탁소를 경영하던 망 이△△은 ○○○○. ○. ○. ○:○경 경남 ○○군 ○○리 ○○주유소 앞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심하게 부패된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망 이△△은 두개골이 둔기 등으로 수 회 가격당하여 함몰된 상태였고 양쪽 손가락 첫마디가 모두 절단된 상태였다.

⑵ ○○경찰서 담당경찰관은 원고가 망인의 청바지와 양말만을 보고 자신의 동생임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사체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원고를 용의자로 의심하고 원고와 망 이△△의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많은 부채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점, 망 이△△은 ○○○○. ○. ○. ○:○경 원고로부터 부친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 1,500만 원을 받기 위해 □□시에 있는 식당에서 원고를 만나 저녁식사를 마치고 헤어진 후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원고는 망 이△△을 만난 당일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원고의 전화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 ○. ○. ○:○경 원고에게 범행사실을 추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자 ○○○○. ○. ○. ○:○경 원고를 긴급체포하였다.

⑶ ○○경찰서 담당경찰관은 원고를 긴급체포한 후 경남지방경찰청에 '살인 · 사체유기 피의자 검거보고'라는 표제로 사건개요와 검거경위에 관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검거보고서'라고 한다)를 보내 원고에 대한 검거보고를 하였고, 경남지방경찰청은 ○○○○. ○. ○. 오전 이 사건 검거보고서에 "사건관계인 보도시 가명, 가주소 사용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무인을 찍은 후 기자들에게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⑷ 피고 황○○는 이 사건 검거보고서를 토대로 "빚독촉 친동생 살해유기 40대 체포"라는 제목의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뒤이어 "1천 500만 원 빚에 친동생 엽기살해"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연합뉴스에 송고하였고, 이 사건 제1, 2기사는 ○○○○. ○. ○. 피고 연합뉴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을 물론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피고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을 맺은 언론사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다. 원고의 형사재판과정 및 이에 따른 피고들의 보도

⑴ 원고는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후 2003. 8. 30. 구속되었다.

⑵ 원고는 망 이△△에 대한 살인죄, 사체유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고합26)에서 2004. 1. 30.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고,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4노112)에서 2005. 7. 7.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검사의 상고에 따른 상고심(대법원 2005도5440)에서 2005. 10. 7.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⑶ 한편 피고 황○○는 ○○○○. ○. ○. "친동생 살인 사형구형 40대에 무죄"라는 제목의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 연합뉴스에 송고하였고, 피고 연합뉴스는 위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자사와 전재계약을 맺은 언론사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호증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12호증, 15호증, 19호증 내지 21호증, 을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황○○는 ○○○○. ○. ○. 이 사건 검거보고서에 원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망 이△△을 살해한 범인으로 단정한 내용의 이 사건 제1, 2기사를 작성하였고, ○○○○. ○. ○. 원고가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항소사실에 편승하여 원고를 명백한 범인으로 단정한 이 사건 제3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 연합뉴스는 피고 황○○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각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재계약을 맺은 언론사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도시일용노임상당의 일실수익을 얻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원고의 딸들인 선정자 이□□, 이◇◇ 역시 정식적 고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기사가 보도된 ○○○○. ○. ○. 당시 재수생이던 선정자 이□□는 정신적 충격으로 그 해 대학입시를 포기하고 2005년도 대학입시에 합격함에 따라 미성년자이던 2004. 9.까지 재수(再修)비용 4,200,000원을 지출하고 성년이 된 시점부터

2005. 2.까지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일실수익 5,784,000원 상당을 얻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재산상 손해액 중 일부 5,000,000원 + 위자료 60,000,000원), 선정자 이□□에게 24,984,000원(재산산 손해액 합계 9,984,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선정자 이◇◇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제1, 2기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제1, 2기사에서 원고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는 대부분 당시 경찰의 입장을 인용하는 내용이므로, 위 기사를 접한 일반인들이 원고를 범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1, 2기사로 말미암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 2기사로 말미암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는 피고 황○○가 경찰의 보도자료인 이 사건 검거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제1, 2기사로 말미암은 피고들의 원고와 선정자 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정자 이□□가 ○○○○. ○. ○. 이 사건 제1, 2기사를 인터넷에서 접하였다면 그 무렵 원고와 위 선정자들 모두 이 사건 제1, 2기사로 말미암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기사로 말미암은 원고와 위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⑵ 이 사건 제3기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제3기사는 전체적인 내용상 원고가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원고를 위한 기사이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2기사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기사에서 원고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이모(○○. 김해시 ○○동)씨'로 지칭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지칭만으로도 원고의 성씨, 나이, 주소지의 상위 행정구역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기사의 내용 중에 ○○세인 동생이 열손가락 첫마디가 절단된 상태의 사체로 발견된 점, 동생이 경기도에 살고 있었다는 점, 동생이 실종신고된 상태였다는 점 등 망인과의 관계, 망인의 거주지와 나이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고, 망 이△△의 변사체가 발견된 이후 경찰이 원고를 용의자로 의심하면서 원고와 망 이△△의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변사람들로서는 위 '이모(○○. 김해시 ○○동)씨'가 원고를 말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기사를 통해 원고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명예훼손사실의 적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기사는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문장에서는 ○○경찰서가 동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원고로 특정되는 이모씨를 긴급체포했다는 사실을, 둘째, 셋째 문장에서는 경찰이 밝힌 이모씨에 대한 살인혐의와 사체유기혐의의 내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듯하나, 넷째 문장에서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카드 이용대금 등 1억 9천여만 원의 빚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동생이 빚을 독촉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위 넷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를 조합하여 볼 때 경찰수사과정에서 원고의 범행이 모두 입증되었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그러한 단정적인 표현이 결론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장에서 기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충분히 원고가 동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범인이라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2기사는 '1천500만 원 빚에 친동생 엽기살해'라는 제목과 '카드 빚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40대가 빚을 독촉하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의 손가락을 자르고 유기한 엽기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이씨는 사건 당일 경기도에 사는 동생을 □□으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동생을 살해한 뒤 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

하지 못하도록 사체의 양쪽 손가락 첫마디를 모두 잘라냈으며 이달 초 동생이 가출한 뒤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씨는 사체 유기 이후 동생이 아버지를 수급자로 하는 수천만 원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고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체유기장소 인근 주유소에 사체를 찾아보라는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카드빚 4천여만 원을 비롯 주식 및 아파트 매입 등으로 1억 9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생활고 때문에 동생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동생보험금까지 노리다 덜미를 잡혔다'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원고로 특정되는 '이씨'가 범인임을 전제로 범행 동기, 범행 과정, 범행 후 행적 등을 '충격', '엽기', '참혹' 등 다소 감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충분히 원고가 동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범인이라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2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⑵ 피고의 위법성조각항변에 관한 판단

⑺ 공익성

망 이△△의 변사사건은 범인이 사체유기장소 인근 주유소로 보낸 편지에 의해 양손가락 첫마디가 모두 절단된 상태의 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인바, 그 범죄의 잔혹성, 중대성에 비추어 경찰이 범죄혐의자를 긴급체포하였다는 이 사건 제1, 2기사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⑷ 상당성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의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 범죄혐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등 참조).

망 이△△의 변사사건에 관련된 원고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를 범인으로 단정한 이 사건 제1, 2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기사를 작성 또는 게재 및 제공할 당시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2기사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 이 사건 검거보고서에 따르면 검거경위부분에서 별지 1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간접증거, 정황증거를 근거로 원고를 망 이△△ 변사사건의 혐의자로서 긴급체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검거경위 마지막 부분에 원고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고, 조치부분에서 향후 긴급체포한 원고를 구속하여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검거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망 이△△을 살해하였다는 직접증거는 당시까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검거보고서는 원고를 긴급체포한 직후 경찰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기소 전 종국적인 수사결과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검거보고서상 경찰이 원고를 혐의자로 지목한 근거나 자료가 확실성 또는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원고에 대한 혐의내용이 친동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흉악한 범죄였기 때문에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제한 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범인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단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이 사건 제1, 2기사를 작성 및 게재, 제공하기에 앞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언론인의 입장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위와 같은 취재가 어려웠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위 각 기사에서 원고를 범인으로 전제한 표현을 삼가고 원고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⑶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또는 모 일방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선정자 이□□가 ○○○○. ○. ○. ○:○경 인터넷 포털 싸이트인 '○○○'를 통해 피고 연합뉴스로부터 전재된 점이 표시되고 피고 황○○의 이메일주소가 명시된 이 사건 제2기사를 처음 접한 후 피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위 기사를 다시 확인하였고, 당시 선정자 이□□가 미년성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실과 이 법원의 ○○경찰서, △△경찰서에 관한 사실조회회보결과만으로는 선정자 이□□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원고 또는 원고의 처가 당시 이 사건 제1, 2기사가 위와 같이 게재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3기사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별지 4 기재 이 사건 제3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친동생 살인 사형구형 40대에 무죄'라는 제목 아래 주된 본문 내용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부가 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판결을 하였다는 것이고, 다만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한편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이번 판결과 관련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나 번복하고 사건 목격자가 없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명백한 범인이라며 2일 항소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에 항소한 검찰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3기사와 관련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황○○는 원고를 동생의 살해범으로 단정한 내용의 이 사건 제1, 2기사를 작성하고, 피고 연합뉴스는 피고 황○○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제1, 2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자사와 전재계약을 맺은 여러 언론사 등에게 제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경험칙상 원고 딸들인 선정자 이□□, 이◇◇ 역시 이 사건 제1, 2기사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와 위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제1, 2기사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가 언론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다.

피고 황○○가 작성하고 피고 연합뉴스가 게재, 제공한 이 사건 제1, 2기사로 말미암아, 원고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도시일용노임상당의 일실수익을 얻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선정자 이□□가 2004년도 대학입시를 포기하고 2005년도 대학입시에 응시하여 합격함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재수(再修)비용 4,200,000원을 지출하고 5,784,000원 상당 도시일용노임을 얻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선정자 이□□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2기사의 보도로 말미암아 원고와 그 딸들인 선정자 이□□, 이◇◇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사의 내용, 피고들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피고들이 통신사 소속 기자 또는 통신사로서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 위 각 기사가 전재된 언론사의 범위, 원고가 피고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을 맺은 언론사로부터 받은 피해회복의 정도, 원고와 선정자 이□□, 이◇◇의 나이, 재산, 학력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각자 배상할 위자료는 원고에 대하여 10,000,000원, 선정자 이□□, 이◇◇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제1, 2기사에 따른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 선정자 이□□, 이◇◇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3. 8.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마지막 시기로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 성 윤

〈별지〉 살인 · 사체유기 피의자 검거보고, 기사 생략 – 편집자 주

손해배상청구 사례 6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진실상당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3.자 판결 (2007가합14910) (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2008년 4월 3일 한○○외 3명이 한국방송공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7년 3월 1일 20:00경 「KBS2 TV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는 폭행치사 혐의로 지명수배된 50살 한○○ 씨가 빌린 것을 밝혀내고 한씨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재기자 피고 곽○○의 말과 함께 원고 한○○의 사진을 내보내는 등 이 사건 보도를 방송하였고, 같은 날 23:00경 "KBS1 TV 뉴스라인"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방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명예훼손과 ②초상권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방송과 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의사실과 함께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특히 그 공개가 잘못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의 공개가 용인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또 피의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수사기록을 검토하거나 기타의 사실확인절차를 통하여 더욱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의 경우 인천공항경찰대가 2007년 2월 28일 및 2007년 3월 1일 수사상황 브리핑 당시 언론에 원고 한○○의 사진과 실명을 발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한△△의 일부 증언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수사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수사 발표 외에 더 이상의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②초상권침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납치범행의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공항경찰대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원고 한○○의 사진과 실명을 밝히면서 그의 공개수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사　　건 : 2007가합14910 손해배상금

원　　고 : 1. 한 ○ ○

2. 김 ○ ○

3. 한 □ □

4. 강 ○ ○

원고들 주소 대전 ○○구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정 ○ ○

2. 곽 ○ ○

피고들 주소 서울 ○○○구

변 론 종 결 : 2008. 3. 13.

판 결 선 고 : 2008. 4. 3.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한○○에게 20,000,000원, 원고 김○○, 한□□, 강○○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08.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한○○에게 170,000,000원, 원고 김○○, 한□□, 강○○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한○○은 2007. 3.경 폭행치사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자이고, 원고 김○○은 그의 아내, 원고 한□□는 그의 아들, 원고 강○○은 그의 어머니이다.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뉴스타임', '뉴스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곽○○은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기자로서 위 프로그램들에서 사건 · 사고 등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도의 경위

1) ○○ CC 대표 강○○ 등 3명은 2007. 2. 26. 19:43경 인천공항 출국장 3번 출입문 앞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범인들에 의하여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져 납치되었다(이하 '이 사건 납치범행'이라고 일컫는다).

2) 인천공항경찰대는 이 사건 납치범행을 수사하여 2007. 2. 28.경 위 카니발 승합차의 차량번호가 ○○허○○호로서 서울 송파구 소재 렌터카 회사에서 원고 한○○의 이름으로 빌려졌음을 확인하였다.

3) 인천공항경찰대장 가세로는 2007. 3. 1. 피고 곽○○ 등 기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위 승합차를 빌린 한 모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의 내용

1)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7. 3. 1. 20:00경 'KBS2 TV 뉴스타임'에서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는 폭행치사 혐의로 지명수배된 50살 한○○ 씨가 빌린 것을 밝혀내고 한 씨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재기자 피고 곽○○의 말과 함께 원고 한○○의 사진을 내보내는 등 별지 목록 기재 보도를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일컫는다)하였고, 같은 날 23:00경 'KBS1 TV 뉴스라인'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방송하였다.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그 무렵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bs.co.kr)에 이 사건 방송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방송 이후의 정황

1) 수사기관은 2007. 3. 13.경 변호사 김◇◇ 등이 원고 한○○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카니발승합차를 빌

렸으며, 원고 한○○은 위 납치 사건과 무관함을 밝혀냈다. 이에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7. 3. 13. 21:00경 'KBS1 TV 뉴스9'에서 "이 사건 납치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빌린 명의자를 지명수배자 한 모씨로 조작한 사람은 김변호사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7. 8. 5.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bs.co.kr)에 게재한 이 사건 방송을 삭제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10, 을3(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한○○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이 사건 납치범행에 관련된 사람으로 지목하는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 한○○의 아내인 원고 김○○, 아들인 원고 한□□, 어머니인 원고 강○○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인천공항경찰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과 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의사실과 함께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특히 그 공개가 잘못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의 공개가 용인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또 피의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수사기록을 검토하거나 기타의 사실확인절차를 통하여 더욱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인천공항경찰대가 2007. 2. 28. 및 2007. 3. 1. 수사상황 브리핑 당시 언론에 원고 한○○의 사진과 실명을 발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한△△의 일부 증언은 갑7, 8, 을1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수사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수사 발표 외에 더 이상의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초상권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납치범행의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공항경찰대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원고 한○○의 사진과 실명을 밝히면서 그의 공개수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나이, 직업,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을 하게 된 경위, 언론기관으로서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지위 및 영향력,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대, 이 사건 방송의 형식과 내용, 원고 한○○이 이 사건 납치범행과 무관함이 밝혀진 후로도 5개월 남짓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방송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각기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한○○에 대하여 20,000,000원, 원고 김○○, 한□□, 강○○에 대하여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한○○에게 20,000,000원, 원고 김○○, 한□□, 강○○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이 보도된 2007. 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 성 곤

판사 김 영 하

판사 권 기 백

〈별지〉 기사내용

'골프장 사장 납치' 친 · 인척 조사

〈앵커 멘트〉 :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강모사장의 친인척을 비롯한 주변인물들이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리포트〉 : 강사장 일행의 공항 도착 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모두 5명, 회사 직원들과 가족 뿐입니다.

경찰은 강 사장이 납치된 다음날 납치범들이 외삼촌 윤모 씨와 전화 통화를 연결해 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강 사장 주변 인물들이 범행에 깊이 관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세로(공항경찰대장) : "전화 받아봐라 해서 받으니까 자기 큰삼촌 목소리였다."

하지만 윤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범행 관련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납치범들이 최소 7명에서 1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세로(공항경찰대장) : "국정원에서 나왔는데 간첩 혐의로 체포한다면서 7명이 차에 태우고 눈을 가리고 … "

〈리포트〉 : 특히 범행에 사용된 랜터카는 폭행치사 혐의로 지명수배된 50살 한○○ 씨가 빌린 것을 밝혀내고 한 씨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사장과 통화한 윤 씨 등 주변인물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피해자 들이 납치돼 있던 펜션에서 발견된 지문 20여 개와 모발 등을 수거해 감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석 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사례 7

기자가 검찰에 고발사실 등을 확인한 바는 있으나 정작 고발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취재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진실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 2007. 6. 7.자 판결 (2006가합4359)
부산고등법원 2008. 4. 3.자 판결 (2007나11033)

사실개요

부산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2008년 4월 3일 이○○이 주식회사 경남신문사와 소속 기자 및 제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김○○(제보자)만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고 명한 1심 판결에 더해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고 1천만 원의 추가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제보자인 피고 김○○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고된 데 악의를 품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위 피고는 원고가 속칭 브로커들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서도 검찰에 고발하거나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하도록 한 점,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그 명예나 신용훼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 위에서 살핀 사건의 경위, 위 피고의 행위 및 그 내용, 원고와 위 피고의 직업, 사후의 경과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 경남신문사와 소속기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은, 피고 김○○이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위 김○○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여 허탈해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김□□이 제보를 받은 뒤 검찰 등 관계기관과 원고에게 그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점도 인정되는 바이어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진실이거나 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는바, 2심 재판부는 피고 경남신문사와 소속기자에 대하여 "피고 김□□이 피고 김○○로부터 제보를 받고 검찰 민원실 등에 고발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정작 피고 김○○의 고발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점을 확인학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취재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의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은 피고 김○○의 제보 직후 그 자리에서 간단히 전화로 고발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고의 발언을 청취하는 절차를 취하였을 뿐, 고발내용과 전혀 배치되는 원고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고 김○○의 제보내용을 주로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 보도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발내용의 보도가 원고의 명예나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 그 보도가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속보를 요할 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보면, 피고 김□□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피고 김○○의 고발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 경남신문사,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제보자인 피고 김○○의 손해배상액도 2천만 원으로 원심에 비해 1천만 원을 증액 판결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 결과 파기환송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후심이 계속중이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6가합4359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 ○

피　　고 : 1. 김 ○ ○

2.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대표이사 이 순 복

3. 김 □ □

변론종결 : 2007. 4. 19.

판결선고 : 2007. 6. 7.

주　　문 : 1. 피고 김○○은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7. 6.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90%를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1. 피고 김○○은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피고 김□□은 피고 김○○과 각자 위 돈 중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 내지 8, 10, 12 내지 15, 17, 18호증, 갑9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2, 을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와 증인 이□□의 일부 증언, KT 영남고객센터장,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5. 5.경부터 창원시 ○○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피고 김○○은 1997.경부터 2004. 7. 31.까지 원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다시 2005. 8. 1.부터 같은 직위로 근무하다가 2006. 2. 24. 해고되었다.

(나) 피고 김○○은 2006. 2. 24. 23:03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사이에 약 5회에 걸쳐 원고의 집 전화 및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어~이 이○○이, 너 죽어", "변호사를 못하도록 매장을 시키고야 말겠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여 망신을 주고 변호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다) 1) 피고 김○○은 2006. 3. 13. 이 법원 2006가단1869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가)항의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등 합계 93,480,80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이 소는 2006. 10. 24.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에, '원고가 1997. 3.경부터 2001. 10.경까지 강○○, 김△△ 등을, 2002. 3.경부터 2003. 초경까지 양○○ 및 경찰관 출신 서 모 씨를, 2005. 8. 1.경부터 현재까지 김◎◎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건을 유치하게 하고 소개비로 수임료의 20%를 지급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원고가 소속된 경남지방변호사회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

2) 피고 김○○은 위 고발장 등을 접수한 같은 날 16:50경 창원지방법원 기자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고 주식회사 경남신문사(이하 '피고 경남신문사'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김□□에게 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내보이면서, "나를 고용한 변호사가 나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검찰에 고발하고 경남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사건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기사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김□□은 피고 김○○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기사화하여 피고 경남신문사가 발행하는 경남신문 2006. 3. 14.자 사회면에, "변호사 사무장이 변호사 고발", "불법 브로커 고용 · 부당해고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 김□□은 그 다음날인 2006. 3. 15.에도, "전직 변호사 사무장, 변호사 고발 사건", "검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마) 피고 김○○은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시작되자 2006. 3. 29.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는데, 피고 김□□은 이를 기사화하여 2006. 3. 30.자 경남신문에 「전직 사무장 변호사 고발 취소, 검찰 "결정적 정보 못 얻어 허탈"」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바) 피고 김○○은 원고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사무실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위 피고는 원고 사무실에 자신 외에도 하○○ 외 3명이 더 근무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이 된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2006. 4. 25. 18:30경 원고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원시 ○○동 ○○-○○ ○○빌딩 ○층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원인 하○○ 등과 대화를 나누는 척 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06. 6. 14. 원고가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사) 원고는 2006. 5. 17. 피고 김○○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같은 피고가 사무장으로 재직시 횡령 · 배임 · 사기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같은 날 23:01경 원고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이○○이 너 끝까지 갈거냐? 끝까지 가면 너 죽어", "너 끝까지 가면 검찰에 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다면, 위 피고의 위 (1)(나) 및 (사)항의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면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1)(바)항의 행위는 원고의 허락 없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의 사무실에 들어가 몰래 녹음까지 한 것이어서 무단 방실침입에 해당한다. 또한, 위 (1)(다)2)의 행위는 원고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가치를 침해할 의사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로 인해 주장과 같은 사실이 보도되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그와 같은 제보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데 영향이 없다), 그러한 내용이 실제 기사화된 이상 이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1) 이와 같이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협박, 무단방실침입, 명예훼손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는 자신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는 나아가, 2005. 3. 14.경 위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에, "이○○이, 이제 너는 죽었다", "너 같은 놈은 변호사를 하면 안 돼", "곧 당신의 □□□□에 대한 수임료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아울러 구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 하였고 그 사이 자식과 같은 원고로부터 온갖 모욕과 배신을 당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위자료 채권으로 상계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민법 제496조 참조), 원고가 위 피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고된 데 악의를 품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위 피고는 원고가 속칭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서도 검찰에 고발하거나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하도록 한 점,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그 명예나 신용훼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 위에서 살핀 사건의 경위, 위 피고의 행위 및 그 내용, 원고와 위 피고의 직업, 사후의 경과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6. 2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6.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위 피고들은 원고에 관한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 사무실의 규모 및 수임건수 등을 확인하여 피고 김○○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였다.

(나) 위 피고들이 기사에서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 지칭하긴 하였으나 변호사업계 등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확인된다. 그런데도 위 피고들은 1차보도 이후에도 다시 연이어 기사를 내보내는 등 위법한 기사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피고 김○○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금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 피고들의 주장

(가) 2006. 3. 14.자 보도는 '피고 김○○이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그 다음날 보도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 2006. 3. 31.자 보도는 '피고 김○○이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는 내용 등에 불과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보도내용 중 원고의 실명을 거론함이 없이 단순히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만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그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다) 피고 김○○의 제보 이후 법원, 검찰, 지방변호사회 등에 확인을 거쳐 위 김○○이 원고를 고발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도 의견을 들은 후 별지 1, 2, 3 기재와 같이 보도(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하였고, 이러한 보도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 단

(1)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사는 위 피고들이 비록 피고 김○○이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위 고발을 취하하였다는 내용의 것이기는 하나, 그 보도내용에 원고가 피고 김○○을 부당해고 하고 브로커를 고용해 수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앞세움으로써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그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사내용상,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 익명처리를 하고 있긴 하나, 그들의 직업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 김○○의 나이 및 민사사무장으로 근무한 시기 등을 적시해 놓고 있어 변호사업계 종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A변호사'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피해자 또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공공성 여부

변호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고발하였다는 내용 등은 변호사업의 특수성과 수임비리에 따른 폐해를 척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고 인정된다.

(나) 진실성 여부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피고 김○○이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원고를 검찰

에 고발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위 김○○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여 허탈해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김□□이 제보를 받은 뒤 검찰 등 관계기관과 원고에게 그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점도 인정되는 바이어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진실이거나 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기사 중 2006. 3. 31.자 보도에서 "그러나 법조주변에서는 'A씨가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가 이제 와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발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행동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라고 보도한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 등이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⑷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 남 수

판사 문 춘 언

판사 이 규 영

2심 판결문

사 건 : 2007나1103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이 ○ ○

창원시 ○○동

피고, 피항소인 : 1. 김 ○ ○

마산시 ○○동

2.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대표이사 이 순 복

3. 김□□

피고 2, 3의 주소 창원시 ○○동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대 영, 김 종 철

피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 주 환

제 1 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4359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3. 20.

판 결 선 고 : 2008. 4. 3.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8.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김□□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은 1억 원, 피고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김□□은 피고 김○○과 각자 그 중 9,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2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제1심의 KT 영남고객센터장, (주)케이티프리텔 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5.경부터 창원시 ○○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피고 김○○은 1997.경부터 2004. 7. 31.까지 원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다시 2005. 8. 1.부터 같은 직위로 근무하다가 2006. 2. 24. 해고되었다.

나. 피고 김○○은 2006. 2. 24. 23:03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사이에 약 6회에 걸쳐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어~이 이○○이, 너 죽어", "변호사를 못하도록 매장을 시키고야 말겠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여 망신을 주고 변호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다. 피고 김○○은 2006. 3. 13.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1869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가.항의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등 합계 93,480,80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이 소송은 2006. 10. 24.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에, 아무런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원고가 1997. 3.경부터 2001. 10.경까지 강○○, 김△△ 등을, 2002. 3.경부터 2003. 초경까지 양○○ 및 경찰관 출신 서모 씨를, 2005. 8. 1.경부터 현재까지 김◎◎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건을 유치하게 하고 소개비로 수임료의 20%를 지급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2006. 3. 15.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

라. 피고 김○○은 검찰에 위 고발장 등을 접수한 2006. 3. 13. 16:50경 창원지방법원 기자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고 (주)경남신문사(이하 '피고 경남신문사'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김□□에게 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내보이면서, "나를 고용한 변호사가 나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검찰에 고발하고 경남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사건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기사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 김□□은 피고 김○○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검찰 민원실 등에 전화하여 그 고발장 등 접수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브로커' 고용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그 고발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한 더 이상의 사실확인 없이 피고 김○○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경남신문사 발행의 경남신문 2006. 3. 14.자 사회면에, "변호사 사무장이 변호사 고발", "불법 브로커 고용 · 부당해고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심 판결의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 김□□은 그 다음날인 2006. 3. 15.에도, "전직 변호사 사무장, 변호사 고발 사건", "검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심 판결의 별지 2 기재와 같다.

바. 피고 김○○은 검찰 고발 후 원고의 '불법 브로커' 고용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원고의 사무장들을 '브로커'라고 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서 2006. 3. 29.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는데, 피고 김□□은 이를 기사화하여 2006. 3. 30.자 경남신문에 「전직 사무장 변호사 고발 취소, 검찰 "결정적 정보 못 얻어 허탈"」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였으며, 그 내용은 제1심 판결의 별지 3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김○○의 원고에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피고 김○○의 추측 진술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사. 피고 김○○은 원고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사무실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위 피고는 원고 사무실에 자신 외에도 하○○ 외 3명이 더 근무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이 된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2006. 4. 25. 18:30경 원고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원시 ○○동 ○○-○○ ○○빌딩 ○층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원인 하○○ 등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06. 6. 14. 원고가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아. 원고는 2006. 5. 17. 피고 김○○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같은 피고가 사무장으로 재직시 횡령 · 배임 · 사기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같은 날 23:01경 원고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이○○이 너 끝까지 갈거냐? 끝까지 가면 너 죽어", "너 끝까지 가면 검찰에 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의 위 제1의 나. 및 아.항의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면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제1의 바.항의 행위는 원고의 허락 없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의 사무실에 들어가 몰래 녹음까지 한 것이어서 무단 방실침입에 해당하여 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위 제1의 라.항의 행위는 원고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기에 충분한 일방적인 고발사실 등을 제보하여 이를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그와 같은 제보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 김○○은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원고는 나아가, 2005. 3. 14.경 피고 김○○이 원고의 휴대폰에, "이○○이, 이제 너는 죽었다", "너 같은 놈은 변호사를 하면 안 돼", "곧 당신의 □□□□에 대한 수임료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모욕 ·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아울러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김○○이 원고로부터 해고된 데 악의를 품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위 피고는 원고가 속칭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서도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 고발내용을 전파력이 큰 언론기관을 통해 이를 보도되도록 한 점,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 및 신용 훼손, 모욕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는 점, 특히 변호사라는 원고의 직업 성격상 '불법 브로커 고용'이라는 제보내용에 의한 원고의 명예나 신용 훼손의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이고 그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김○○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 김○○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김○○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고 그 사이 원고로부터 온갖 모욕과 배신을 당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위자료 채권으로 상계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해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민법 제496조 참조), 원고가 위 피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경남신문사, 김□□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경남신문사, 김□□은 위와 같은 원고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 사무실의 규모 및 수임건수, 브로커로 지칭된 사무장들의 변호사협회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고 김○○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나) 위 피고들이 기사에서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 지칭하긴 하였으나 변호사업계 등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1차 보도 이후에도 다시 연이어 기사를 내보내는 등 위법한 기사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피고 김○○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경남신문사, 김□□의 주장

(가) 2006. 3. 14.자 보도는 '피고 김○○이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그 다음날 보도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 2006. 3. 31.자 보도는 '피고 김○○이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는 내용 등에 불과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보도내용 중 원고의 실명을 거론함이 없이 단순히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만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그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다) 피고 김○○의 제보 이후 법원, 검찰, 지방변호사회 등에 확인을 거쳐 위 김○○이 원고를 고발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도 의견을 들은 후 위 별지 1, 2, 3 기재와 같이 보도(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하였고, 이러한 보도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 단

⑴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는 비록 피고 김○○로부터 들은 고발내용 등을 피고 김○○의 입을 빌어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후속 보도로 검찰 수사 착수, 고발 취하 등의 객관적 사실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그 기사내용에는 원고가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여 수임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피고 김○○의 고발내용과 그에 대한 수사 착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고발 취하 후에 보도된 기사에는 "검찰이 결정적 정보 못 얻어 허탈해 하고 있다" 등의 다분히 주관적인 내용까지 추가되어 있어,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그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⑵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내용을 보면,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 익명처리를 하고 있긴 하나, 그들의 직업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 김○○의 나이 및 민사사무장으로 근무한 시기 등을 적시해 놓고 있어 변호사업계 종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A변호사'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피해자 또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⑶ 위법성 조각 여부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하에 아래에서 피고 경남신문사, 김□□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사실의 공익성 여부

변호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고발하였다는 내용 등은 변호사업의 특수성과 수임비리에 따른 폐해를 척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고 인정된다.

(나) 사실의 진실성 여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 김○○이 원고를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가 위 김○○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여 허탈해 하고 있다는 것인바, 피고 김○○의 원고에 대한 고발 및 그로 인한 검찰의 수사 착수, 피고 김○○의 고발 취하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피고 김○○의 고발내용, 즉 "원고가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다"는 피고 김○○의 고발내용 그 자체는 피고 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발장 등 외에는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은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원고의 사무장들을 '브로커'라고 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서 2006. 3. 29.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고, 검찰은 피고 김○○의 추측 진술 이외에는 그 고발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에도, 이 사건 기사 중 피고 김○○의 고발 취하 후에 보도된 내용 중에는 "검찰이 결정적 정보를 못 얻어 허탈해 하고 있다", "창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고발 취소로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여 아쉬워하고 있다", "법조 주변에서는 'A씨가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가 이제 와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발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행동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으로서 그러한 발언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나아가 고발내용이 마치 진실한 사실인 듯한 인상을 불러 일으키는 위 발언들의 뉘앙스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한편, 이 사건 기사에는 '불법 브로커' 고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원고의 반론을 함께 싣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나 주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 김○○의 고발내용을 부각시킨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진실성에 관한 평가를 뒤바꾸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 김□□이 피고 김○○로부터 제보를 받고 검찰 민원실 등에 고발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정작 피고 김○○의 고발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취재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의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은 피고 김○○의 제보 직후 그 자리에서 간단히 전화로 고발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고의 발언을 청취하는 절차를 취하였을 뿐, 고발내용과 전혀 배치되는 원고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고 김○○의 제보내용을 주로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 보도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발내용의 보도가 원고의 명예나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 그 보도가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속보를 요할 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보면, 피고 김□□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피고 김○○의 고발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 경남신문사,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경남신문사, 김□□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여 그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피고들 주장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김○○과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김□□이 주로 피고 김○○의 일방적인 고발내용 및 그 주장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다는 점, 피고 김□□은 피고 김○○의 고발이 취하된 후에도 위 고발내용이 진실일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주관적이고 추측성의 발언을 실어 후속보도를 한 점, 위 고발내용에 관한 피고 경남신문사의 보

도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는 점, 이로 인한 원고의 명예나 신용 훼손의 정도가 크고 그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경남신문사, 김□□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김○○에 대하여 인정된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김○○은 위자료 2,0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인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6. 2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6.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000만 원(= 2,000만 원 -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06. 6. 2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4. 3.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경남신문사, 김□□은 피고 김○○과 각자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6. 6. 29.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4. 3. 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 범 수

판사 성 창 익

판사 권 재 창

손해배상청구 사례 8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세무소송 대리인과 함께 조정에 의한 이 사건 세무소송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2008. 4. 10.자 판결 (2007다81032)
서울고등법원 2008. 7. 24.자 판결 (2008나44186)
대법원 2008. 10. 23.자 판결 (2008다64447) (확정)

사실개요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8년 4월 10일 한국방송공사 전 직원이 한국방송공사와 소속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원고는,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언론사에 피고 공사의 세금소송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피고 공사에 대하여 세금소송 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고용과 성과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가 거절되자 세무소송이 종결될 때에는 수신료 징수근거가 없어진다거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가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자,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2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5집 261~277면 참조).

3심 재판부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재고용과 성과보상을 요구했다는 보도내용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이 사건 보도자료상의 내용들은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그 내용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앞서 본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후 환송후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자료상의 내용들은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그 내용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 배포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 후 원고가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내렸다. .

3심 판결문

사　　건 : 2007다8103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조 ○ ○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피고, 상고인 : 1. 정 연 주

서울 ○○구

송달장소 서울 ○○구 (한국방송공사 사장실)

2. 조 ○ ○

서울 ○○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 창 훈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6나103531 판결

판 결 선 고 : 2008. 4. 10.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진행중이던 세무소송(이하 '이 사건 세무소송'이라고 한다)을 조정으로 종결하려는 한국방송

공사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동아일보 2005. 9. 6. 및 같은 달 7.자 기사에 대하여 피고들이 작성한 반박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한다) 중 "원고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소송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봉계약 형태로 재고용하고 최종 승소시에는 환급액의 일정률을 성과보상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 요구가 거절되자 세무소송이 조정될 때에는 수신료 징수근거가 없어진다거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한국방송공사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가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방해함으로써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볼모로 비이성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보도자료상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소송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봉계약 형태로 재고용하고 최종 승소시에는 환급액의 일정률을 성과보상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원심은, 한국방송공사가 2004. 4. 2. 피고 조○○의 기안으로 원고를 그의 전문성과 재직 동안 기여도를 참작하여 2004. 4. 1.부터 2006. 3. 31.까지 2년간 기본연봉 6,000만 원과 세금소송으로 인한 환급세액의 0.7%의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장인 피고 정연주가 이를 결재까지 하였다가 위 재고용방안이 백지화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재고용방안이 원고의 요구로 마련되었다거나 이에 앞서 원고가 현직 때의 연봉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든지 세금소송의 승소 확정시 환급세액의 1.5% 정도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정책기획센

터장 이○○의 증언이나 진술서는 그 작성자 내지 진술자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보도자료상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원고스스로의 주장을 보더라도, 자신의 정년퇴직 무렵 피고 조○○로부터 한국방송공사가 원고를 재고용하려 한다는 내용과 그 재고용조건을 이야기 듣고 그에 대해 성과보상은 0.7% 정도가 좋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2006. 3. 12.자 준비서면), 위 피고와 사이에 계속 절충 끝에 재고용조건을 월 보수 500만 원에 성과보상 0.7%로 하기로 하였고(을 제42호증), 재고용조건에 관하여 퇴직 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재고용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등(2007. 8. 20.자 준비서면), 한국방송공사와 재고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협의과정에서 상호간의 요구조건이 개진되었을 것임은 당연하고 종국적으로 그 재고용방안이 백지화됨으로써 원고의 요구조건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므로, 결국 원고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재고용과 성과보상을 요구했다는 위 보도내용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협의는 한국방송공사의 내부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 이○○가 피고들이 근무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세금소송의 승소 확정시 성과급으로 환급세액의 1.5% 정도를 요구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아니므로, 그러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위 보도자료의 진실성을 판단한 것도 불합리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앞서 본 사정들을 이유로 위 보도자료상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원심은 "세무소송이 조정될 때에는 수신료 징수근거가 없어진다거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한국방송공사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가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는 논리가 원고와 세금소송대리인이 함께 만들어낸 논리라거나 원고가 피고 조○○ 등에게 공공연하게 펼쳐왔던 논리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세무소송대리인만이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부분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갑 제2호 증의 1(2005. 9. 6.자 동아일보)을 보면 위 신문은 위와 같은 논리의 주장을 이 사건 세무소송의 대리인인 변호사 경○○(이후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가 되었다, 이하 위 변호사 개인과 법무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통칭하여 '세무소송대리인'이라 한다)이 발언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세무소송이 당초 원고의 착안에서 비롯되었고, 그 세무소송 과정에서 소송대리인도 원고와 협의를 거

쳐 주장을 정리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는 바이며,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4. 2. 3. 한국방송공사의 기획예산국 제도개선부 부주간(세무개선)으로 전보된 후 이 사건 세무소송 및 관련 민사소송 업무를 전담하면서 10여 년가량 세무소송대리인과 함께 위 소송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해왔고, 2004. 3. 31. 정년퇴직한 후에도 수시로 세무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이 사건 세무소송 자료를 준비하는 등 세무소송대리인을 도와온 점, ② 한국방송공사는 2005. 3. 25.경부터 세무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세무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하고자 하니 조정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에 걸쳐 하였으나 조정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하자, 피고 조○○가 2005. 6. 말경 원고를 찾아가 세무소송대리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도록 설득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바 있는데, 이때 원고는 오히려 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그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세무소송대리인과 입장을 같이 한 점, ③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전에 발행된 2005. 9. 7.자 동아일보 기사는 세무소송대리인이 그 보도내용과 같이 한국방송공사와 맞서고 있는 중에 공사 내부에서 이 소송을 담당하던 전직 직원도 한국방송공사를 반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서 언급된 전직 직원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어 결국 원고가 세무소송대리인과 함께 한국방송공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 ④ 또한 위 2005. 9. 7.자 신문에는 원고가 한국방송공사 측 주장을 반박하고 세무소송대리인 측 주장을 옹호하면서 한국방송공사 경영진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정당하지 않은 것인데도 임금협상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크게 실려 있어 피고들로서는 동아일보의 당일자 기사는 물론 그 전날의 한국방송공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까지도 원고와 세무소송대리인이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⑤ 피고들은 일관되게 원고가 세무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으로 인한 성공보수 등을 받기 위해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세무소송대리인이 주장한 위 보도내용상의 논리가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논리로서 원고도 세무소송대리인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문기사상의 주장을 하였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동아일보 보도내용상 그 형식적인 발언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위 보도자료상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어 원고가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동아일보 보도 당시 이미 공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세금소송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공사는 동아일보 보도에

앞서 이미 사내변호사를 통하여 세금소송의 항소심에 조정요청의견서를 제출해 두고 있었으므로 동아일보 보도로 인하여 세금소송의 조정권고를 통한 해결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보도자료상의 내용은 진실이 아니며,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가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 배포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세무소송의 제1심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분쟁을 조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5. 3. 이후 수회에 걸쳐 세무소송대리인에게 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세무소송대리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그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계속 늦어지다가 결국 그 해 8월 하순에 가서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야 적극적으로 조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 점, 그 과정에서 한국방송공사 측은 원고에게 세무소송대리인을 설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오히려 세무소송대리인과 동일한 논리로서 조정에 반대하여 협조를 거부한 점, 이 사건 세무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세무소송대리인과의 유대관계, 퇴직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세무소송에 대해 관여한 정도, 동아일보 기사에 보도된 원고의 발언 내용과 수준 및 그로 인해 예상되는 파장, 기타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만 보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세무소송대리인과 함께 조정에 의한 이 사건 세무소송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위 동아일보 보도 당시 원고는 이미 퇴직한 상태이었다거나 그 보도 이후 조정절차가 실제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원심이 내세우는 사유가 있다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장애가 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원고가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볼모로 비이성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보도자료상의 내용은 원고가 앞서 본 보도자료상의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평가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보도자료상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그 사실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위 평가만을 따로 떼어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바. 결국, 이 사건 보도자료상의 내용들은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그 내용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앞서

본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 일 환
주 심 대법관 양 승 태
대법관 박 시 환
대법관 김 능 환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 건 : 2008나4418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조○○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피고, 피항소인 : 1. 정 연 주
서울 ○○구
2. 조 ○ ○
서울 ○○구1306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오 수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가단355539 판결
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6나103531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1032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6. 19.
판 결 선 고 : 2008. 7. 24.

주 문 :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1973. 6. 11.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3. 11. 23. 기획예산국 제도개선부에 전보된 이래 정책기획센터 등을 거치면서 2004. 3. 31. 정년퇴직하기까지 주로 공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세금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⑵ 피고 정연주는 아래의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당시 공사의 사장, 피고 조○○는 정책기획센터 산하 세무기획 프로젝트팀의 팀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세금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⑴ 공사의 세금 납부

공사는 종래,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총매출세액에서 광고료 수입에 의한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고 수신료 수입에 의한 일반방송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 왔고(다만, 광고방송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방송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함으로써 광고방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다는 이유로 총수입액 중 광고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상당하는 액수만을 공제하였다), 법인세는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 수입 이외에 수신료 수입까지 사업수익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 납부하여 왔다.

⑵ 민사소송

㈎ 공사는 1993년경 당시 공사 편성운영본부 편성실 부주간으로서 제작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로부터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세금 납부가 잘못이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1993년도 및 199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변호사 경○○(이후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가 되었다, 이하 위 변호사 개인과 법무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통칭하여 '세무소송 대리인'이라고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94. 11. 5. 서울지방법원(94가합97445)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1989. 7.경부터 1994. 4.경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8. 14. 위 법원

으로부터,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절차 그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법인세 등의 납부절차에 있어서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1998. 8. 21.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7나43552)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 이에 대하여 공사가 1998. 9. 29. 대법원(98다47184)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0. 2. 25.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부분에 관하여는, 공사가 징수하는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사의 방송 중 수신료 수입에 의한 일반방송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광고료 수입에 의한 광고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공사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 매입세액 중에서 광고료와 수신료를 모두 합친 총수입에 대한 광고료 수입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을 할 수는 없고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만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어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법인세 등 관련부분에 관하여는, 공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방송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광고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및 교향악단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⑶ 행정소송

㈎ 공사는 원고를 1994. 2. 3. 기획예산국 제도개선부 부주간(세무개선)으로 전보한 데 이어 1998. 4. 21.에는 정책기획실 송무관리위원으로 전보하여, 원고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공사의 세금 관련 소송을 준비하게 하였다.

㈏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인 1999. 8.경 세무소송 대리인으로부터 공사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환수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자, 이를 토대로 1999. 9. 22. 세무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1996년도 2기분 및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와 1996년도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기안을 하여 공사 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 공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기안에 터잡아 1999. 9. 29.부터 세무소송 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환급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소송내역' 기재와 같다(이하 위 행정소송을 통틀어 '세금소송'이라고 한다).

㈑ 세무소송 대리인이 공사 실무담당자인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세금소송에서 주장한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공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광고업이라는 과세사업 하나만을 영위할 뿐 달리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사의 매입세액 전부가 공제되어야 함에도, 공사가 수

익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전체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고, 법인세에 관하여는,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수신료 수입을 익금에 포함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공사는 법인세법상 광고업이라는 수익사업 하나만을 영위할 뿐 달리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사의 손금 전부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공사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체 손금 중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손금만을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 세금소송 중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6959 등 일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주문에서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① 공사가 제공하는 방송 중 수신료 수입만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를 사업상 영위하는 방송업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공사의 광고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상 영위하는 광고업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② 공사의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만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있다(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은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의 계산에서 오류가 있어 위법하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공사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 세금소송 중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4458 등 일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도 제1심 법원은 역시 주문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내지 법인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① 공사는 고유목적사업인 방송업과 함께 수익사업인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공사가 광고업이라는 수익사업 하나만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수신료를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공사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달리 각 사업연도에 광고업과 관련된 손금만을 특정하여 계산할 증빙서류도 없다, ③ 따라서 법인세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더라

도 공사에게 부과될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처분 등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⑷ 조정권고를 통한 해결의 모색

㈎ 공사는 세금소송의 제1심 판결이 대부분 선고된 이후인 2004. 10.경부터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하여 세금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2005. 3.경 세무소송 대리인에게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세무소송 대리인은 법인세 취소소송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수신료를 수익사업의 매출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남게 되어 장차 이를 징수하는 데 법적 장애가 생긴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공사는 2005. 6. 23. 세무소송 대리인에게 현재의 세금소송 진행경과를 볼 때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적인 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세금소송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시 부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 공사는 2005. 7. 11. 세무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의 경과로 보아 판결 주문상 승소하더라도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과세관청이 다시 세금을 부과할 터인데 이는 공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서 2005. 7. 15.까지 조정기일 지정신청을 완료하고 조정에 참여할지 여부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세무소송 대리인은 또다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 공사는 2005. 7. 19. 세무소송 대리인에게 공사의 사내변호사인 이○○을 세금소송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통보한 뒤, 2005. 8. 24. 이○○으로 하여금 세금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조정요청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세무소송 대리인에게, 2005. 8. 29. 법무법인 □□ 소속의 변호사 김□□을 공동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인 세금소송에 대한 조정업무를 우선적으로 담당하게 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2005. 9. 13. 세금소송의 위임계약을 모두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동아일보의 보도

⑴ 동아일보는 2005. 9. 6.자 신문 제1면에 '공사 이상한 수신료 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이래 2005. 9. 8.까지 3일간, 공사가 조정권고를 통하여 세금소송 관련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세무소송 대리인이 '조정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가운에 1,500여억 원을 포기하는 것',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공사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 '수신료는 헌법재판소에서 특별부담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만큼 수익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을 다시 할 수가 없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는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⑵ 한편, 동아일보는 2005. 9. 7.자 신문에 '임금협상중인 경영진으로선 500억 빨리 받는 게 실익일 것'이라는 제목하에 '별지2 원고 관련 동아일보 기사'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취재기자와 원고 사이의 일문일답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 · 배포

⑴ 피고 조○○는 공사 시청자센터 산하 홍보팀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반박하고 세금소송 관련 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별지3 이 사건 보도자료'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⑵ 공사 홍보팀은 2005. 9. 7. 이 사건 보도자료를 다른 언론사에 배포하는 한편,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서울신문은 2005. 9. 13. 동아일보가 세금소송 관련 분쟁 해결방식과 관련하여 세무소송 대리인과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그 밖의 다른 언론사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마. 조정권고를 통한 분쟁의 해결

공사는, 영등포세무서장이 세금소송 항소심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1996 내지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약 459억 원을 감액경정하자, 영등포세무서장과 사이에, 앞으로 법인세는 공사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질의하고 위 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회시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의 계산에 있어 공사의 과세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사유에 따른 매입세액과 공사가 수신료 징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으로 하기로(1996년부터 2005년까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등도 이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 합의한 뒤, 2006. 1. 5. 당시 계속 중이던 세금소송 15건 중 다른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상급심의 판결을 받기로 한 1건('별지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소송내역' 중 순번 8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4건의 소(같은 별지 순번 2, 3, 5, 6, 7, 9부터 17사건)를 모두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부터 18호증, 을 제1, 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14, 17호증, 을 제23부터 31호증, 을 제36,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 · 배포자인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 충분한데도 굳이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오로지 피고들을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공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그 직원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가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할 정도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형평 ·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 ① 원고가 언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정이 성립되면 수신료 징수 근거가 없어진다거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KBS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사실을 언급하였고, ② 원고는 공사에게 정년 퇴직 이후 소송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봉계약 형태로 재고용하고 최종 승소시에는 환급액의 일정률을 성과보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재고용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사의 정책기획센터가 퇴직예정자인 원고를 정년 이후에도 일정기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음에도 마치 원고가 공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③ 원고의 반발 때문에 분쟁해결이 지연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고, ④ 원고가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볼모로 비이성적 행동을 하고 있는 '전 KBS 직원' 조○○이라고 인신공격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자료는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가 정년퇴직에 임하여 공사에 세금소송 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봉계약형태로 자신을 재고용하고 그 승소 확정시에는 환급세액의 일정률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성과보상에 대한 기대와 미련 때문에, 세무소송 대리인과 함께, 조정권고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면 수신료 징수근거가 없어진다거나 앞으로 공사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발하여 세금소송 관련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배신적이고 파

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⑴ 공익성

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신료를 그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납부 문제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자료가 주로 위와 같은 세금에 대한 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원고나 세무소송 대리인의 논리를 비판하고 공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인 이상, 그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된다.

⑵ 진실성

㈎ 세금소송이 조정될 때에는 수신료 징수근거가 없어진다거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공사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가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2005. 9. 6.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위 신문이 위와 같은 논리의 주장을 이 사건 세무소송 대리인이 발언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세금소송이 당초 원고의 착안에서 비롯되었고, 그 세금소송 과정에서 소송대리인도 원고와 협의를 거쳐 주장을 정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1,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1994. 2. 3. 한국방송공사의 기획예산국 제도개선부 부주간(세무개선)으로 전보된 후 이 사건 세무소송 및 관련 민사소송 업무를 전담하면서 10여 년가량 세무소송대리인과 함께 위 소송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해왔고, 2004. 3. 31. 정년퇴직한 후에도 수시로 세무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이 사건 세무소송 자료를 준비하는 등 세무소송대리인을 도와온 점, ② 한국방송공사는 2005. 3. 25.경부터 세무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세무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하고자 하니 조정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에 걸쳐 하였으나 조정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하자, 피고 조○○가 2005. 6. 말경 원고를 찾아가 세무소송대리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도록 설득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바 있는데, 이때 원고는 오히려 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그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세무소송대리인과 입장을 같이한 점, ③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전에 발행된 2005. 9. 7.자 동아일보 기사는 세무소송대리인이 그 보도내용과 같이 한국방송공사와 맞서고 있는 중에 공사 내부에서 이 소송을 담당하던 전직 직원도 한국방송공사를 반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서 언급된 전직 직원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어 결국 원고가 세무소송대리인과 함께 한국방송공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 ④ 또한 위 2005. 9. 7.자 신문에는 원고가 한국방송공사 측 주장

을 반박하고 세무소송대리인 측 주장을 옹호하면서 한국방송공사 경영진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정당하지 않은 것인데도 임금협상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크게 실려 있어 피고들로서는 동아일보의 당일자 기사는 물론 그 전날의 한국방송공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까지도 원고와 세무소송대리인이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⑤ 피고들은 일관되게 원고가 세무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으로 인한 성공보수 등을 받기 위해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세무소송대리인이 주장한 위 보도내용상의 논리가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논리로서 원고도 세무소송대리인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문기사상의 주장을 하였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원고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소송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봉계약 형태로 재고용하고 최종 승소시에는 환급액의 일정률을 성과보상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사가 2004. 4. 2. 피고 조○○의 기안으로 원고를 그의 전문성과 재직 동안 기여도를 참작하여 2004. 4. 1.부터 2006. 3. 31.까지 2년간 기본연봉 6,000만 원과 세금소송으로 인한 환급세액의 0.7%의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장인 피고 정연주가 이를 결재까지 하였다가 위 재고용방안이 백지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자신의 정년퇴직 무렵 피고 조○○로부터 한국방송공사가 원고를 재고용하려 한다는 내용과 그 재고용조건을 이야기 듣고 그에 대해 성과보상은 0.7% 정도가 좋겠다고 말한바 있으며(2006. 3. 12.자 준비서면), 위 피고와 사이에 계속 절충 끝에 재고용조건을 월 보수 500만 원에 성과보상 0.7%로 하기로 하였고(을 제42호증), 재고용조건에 관하여 퇴직 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재고용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등(2007. 8. 20.자 준비서면), 공사와 재고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 협의과정에서 상호간의 요구조건이 개진되었을 것임은 당연하고 종국적으로 그 재고용방안이 백지화됨으로써 원고의 요구조건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므로, 결국 원고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공사에 대하여 재고용과 성과보상을 요구했다는 위 보도내용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원고가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 배포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공사는 이 사건 세무소

송의 제1심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분쟁을 조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5. 3. 이후 수회에 걸쳐 세무소송대리인에게 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세무소송대리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그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계속 늦어지다가 결국 그 해 8월 하순에 가서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야 적극적으로 조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 점, ② 그 과정에서 한국방송공사 측은 원고에게 세무소송대리인을 설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오히려 세무소송대리인과 동일한 논리로서 조정에 반대하여 협조를 거부한 점, ③ 이 사건 세무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세무소송대리인과의 유대관계, 퇴직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세무소송에 대해 관여한 정도, 동아일보 기사에 보도된 원고의 발언 내용과 수준 및 그로 인해 예상되는 파장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세무소송대리인과 함께 조정에 의한 이 사건 세무소송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위 동아일보 보도 당시 원고는 이미 퇴직한 상태이었다거나 그 보도 이후 조정절차가 실제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장애가 될 것은 아니다.

㈑ 원고가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볼모로 비이성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도자료상의 내용은 원고가 앞서 본 보도자료상의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평가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보도자료상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그 사실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위 평가만을 따로 떼어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결국, 이 사건 보도자료상의 내용들은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그 내용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 배포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 재 형

판사 문 정 일

판사 임 태 혁

재상고심

사　　건 : 2008다6444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조○○

서울 ○○구

피고, 피상고인 : 1. 정 연 주

서울 ○○구

2. 조○○

서울 ○○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 창 훈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1032 판결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나44186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 창 수

대법관 김 영 란

주　심 대법관 이 홍 훈

대법관 안 대 희

손해배상청구 사례 9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4. 24.자 판결 (2006다53214)
서울고등법원 2008. 7. 24.자 판결 (2008나43008) (확정)

사실개요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8년 4월 24일 주식회사 오마이뉴스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2004년 4월 1일자 A12면에서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험』이라는 제목 및 『진□□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부제목 아래, 「인터넷언론 등 진보적 언론에 대해서도 진씨는 “오연호 기자(오마이뉴스 대표이사)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 · 한겨레 · 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2004년 4월 1일 17:00경 조선닷컴 초기화면(www.chosun.com) 메인톱 기사목록 최상단 및 사회면(www.chosun.com/national) 메인톱 기사목록 최상단에 「진□□ “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기사 제목을 게재하고, 사회면에 「진□□ “오마이뉴스는 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집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조선일보와 같은 내용의 본문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재판부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하였고, 2심재판부는 이에 더해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2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4집 94~110면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 중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언론집단’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고 이를 대변하면서 당파적이고 선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3심 판결문

사　　건 : 2006다5321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피고, 상고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판 결 선 고 : 2008. 4. 24.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2004. 3. 31.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진보정치 실천단 2004 총선 정치강연회에서 초청연사로서 진□□이 ① '진보누리'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게시한 글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이를 재인용하여 '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더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오연호 기자(오마이뉴스 대표이사)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보도하였고, ② 그동안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보여 온 행태가 편파적이고 파시스트적인 등 매우 나쁜 것인데 최근 오마이뉴스를 보면 조선일보의 행태와 비슷한 일부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 이를 닮아가서는 안 됨을 지적하였을 뿐임에도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보도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 가공하여 게시 ·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진□□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傳聞)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오연호가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나아가 '오연호 기자가 ……라고 하더라.'라는 형식으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보도하면서, 위 문장에 곧바로 이어서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는 문장을 붙여 적어, 결과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소위 진보논객인 진□□이 바라본 오마이뉴스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는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기록상 진□□의 발언 이외에는 오연호가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진□□의 발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게시한 글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이를 재인용 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그러한 인터넷 게시물이 실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오연호의 발언사실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오연호의 발언이 가지는 의미와 그 중요성 및 사회에 미치는 파장, 인터넷 게시물이 가지는 신빙성의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표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진□□의 발언을 듣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최○○으로서는 응당 진□□이나 오연호에게 문의하거나 위 인터넷 게시물과 그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오연호의 발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오연호 또는 진□□의 반론을 함께 게재하여 원고가 부당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였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최○○은 위와 같은 사실확인절차 없이(최○○은 제1심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오연호에게 이를 확인한 바 없고, 다만 강연장에 함께 갔던 수습기자 신○○이 작성된 기사를 검토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진□□이 언급한 오연호의 발언의 출처마저 생략한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운 인터넷 게시물에 근거한 진□□의 발언만으로 위 오연호의 발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이어서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이 자신의 강연에서 진보언론에도 보수언론처럼 언론조작적, 당파적 부분이 나타남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인터넷 게시물에서 본 위 오연호의 발언사실을 인용한 것은 그 자체로 위 오연호의 발언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들려질 수 있는 점, 진보논객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진□□이 진보언론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기사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진□□이 공개적인 강연에서 위 오연호의 발언 사실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기사의 전체 취지는 진□□의 강연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위 오연호의 발언의 출처를 생략하는 것은 강연내용의 발췌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고, 진□□의 강연에서 위 오연호의 발언이 언급된 이상 일반 독자들은 "...더라"라는 표현과 "...했다더라"라는 표현에 따라 오연호의 발언 사실

을 암시받는 정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사가 가판과 인터넷판에 나간 이후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들은 이를 반영하여 "...더라" 부분을 "...했다더라"고 고치고, 원고를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지칭한 부분을 자진해서 삭제한 점, 언론사인 피고들이 진□□의 강연을 통해 나타난 진보언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소개하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위 오연호의 발언에 대한 의혹을 별다른 검증 없이 제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사인 원고가 스스로 가진 매체를 통하여 반박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기사 중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고 이를 대변하면서 당파적이고 선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의 명예훼손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진실에 반하며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 및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 시 환
대법관 양 승 태
대법관 박 일 환
주 심 대법관 김 능 환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　　건 : 2008나4300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 ○○구

대표이사 오 연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전 태 진, 최 정 민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구

대표이사 방 상 훈

2.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서울 ○○구

대표이사 김 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4가합30267 판결

환 송 전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6. 26.

판 결 선 고 : 2008. 7. 24.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선일보 A12면 오른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제목은 사진 식자 24급 고딕체, 본문은 본문활자 크기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시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 조선닷컴 인터넷 사이트(www.chosun.com) 중 초기화면(http://www.chosun.com/) 메인 톱기사 목록 및 사회면(http://www.chosun.com/national) 메인 톱기사 목록의 각 최상단에 각 제목은 붉은색 11포인트 굴림체, 본문은 10포인트 크기의 [별지2] 기재 정정보도공고문 및 이에 각 하이퍼 링크하여 제목은 16포인트 굴림체, 본문은 10포인트 크기의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라. 만약에 피고들이 위 나. 다.항 기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를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라고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 · 배포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라고 한다)는 조선닷컴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진□□은 2004. 3. 31.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진보정치 실천단 2004 총선 정치강연회(이하 '이 사건 강연회'라고 한다)에서 초청연사로서 '그리스의 폴리스와 동성애'라는 주제로 약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하고, 이어 30분 정도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강연을 하면서 다가오는 총선(2004. 4. 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기존 정치세력들이 서민의 정치적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우경화, 보수화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어 그 말미에 미디어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 과잉과 당파성 과잉으로 인하여

지나친 편 가르기를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조선일보, 일부 방송매체, 오마이뉴스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바, 특히 그동안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보여 온 행태가 편파적이고 파시스트적이었는데 최근 오마이뉴스를 보면 조선일보의 행태와 비슷한 일부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 이를 닮아가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진보누리'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오연호 기자가 했던 말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이를 재인용하여 '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더라.'라고 하면서 언론비평을 모든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 조선일보는 2004. 4. 1. 익일자 조선일보 가판 A12면에서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험』이라는 제목 및 『진□□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부제목 아래, 「인터넷언론 등 진보적 언론에 대해서도 진 씨는 "오연호 기자(오마이뉴스 대표이사)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주장했다」,「…"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 · 한겨레 · 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2004. 4. 1. 17:00경 조선닷컴 초기화면(www.chosun.com) 메인톱 기사목록 최상단 및 사회면(www.chosun.com/national) 메인톱 기사목록 최상단에 「진□□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기사 제목을 게재하고, 사회면에 「진□□ "오마이뉴스는 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집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조선일보와 같은 내용의 본문 기사를 보도(이하 피고 조선일보와 피고 디지틀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을 모두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다시 2004. 4. 1. 22:16경 조선닷컴 초기화면(www.chosun.com) 메인톱 기사목록 최상단 및 사회면(www.chosun.com/national) 메인 톱 기사목록 최상단에 올라간 기사 제목을 「진□□ "영상매체 이젠 견제해야"」로, 사회면에 「진□□씨 "영상매체 영향력 커져…이젠 견제해야"」로 각 변경하고, 위 다.항 기재 '조선닷컴(www.chosun.com)'의 기사 본문 내용 중 「…진씨는…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비판했다」는 기사 부분을 삭제하여 게재하였고, 피고 조선일보는 2004. 4. 2. 조선일보 배달판 A12면의 제목을 『영상매체 영향력 커져…이젠 견제해야』로 바꾸고 「…진씨는…"오연호 기자(오마이뉴스 대표이사)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더라."라고 비판했다」고 그 기사를 일부 수정하고, 종전의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주장했다」는 기사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이어「"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 · 한겨레 · 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격적인 시민참여 저널리즘으로 국내외로부터 주목받는 언론사로서의 신용과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른바 진보 논객으로 잘 알려진 진□□의 이 사건 강연회 내용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 발췌하여 특히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사회적 명예에 직결되는 내용에 관하여 진□□이 하지 않은 강연 내용을 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진□□이 이 사건 강연회에서 ①"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고 하더라", ②"오마이뉴스는 열린 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 ③"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 한겨레, 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부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 단

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진□□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傳聞)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오연호가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나아가 '오연호 기자가 ……라고 하더라.' 라는 형식으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보도하면서, 위 문장에 곧바로 이어서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 이라는 문장을 붙여 적어, 결과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소위 진보논객인 진□□이 바라본 오마이뉴스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는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다.' 라는 인상을 가지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였다.

한편 '언론비평을 모든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라는 취지의 강연 내용을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 한겨레, 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 라고 보도한 부분은 그 전반적인 취지의 왜곡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⑵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⑺ 오연호가 실제로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진□□의 발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게시

판에 어느 네티즌이 게시한 글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이를 재인용 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그러한 인터넷 게시물이 실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오연호의 발언사실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오연호의 발언이 가지는 의미와 그 중요성 및 사회에 미치는 파장, 인터넷 게시물이 가지는 신빙성의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및 표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진□□의 발언을 듣고 이 사건 보도를 작성한 최○○으로서는 응당 진□□이나 오연호에게 문의하거나 위 인터넷 게시물과 그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오연호의 발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오연호 또는 진□□의 반론을 함께 게재하여 원고가 부당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였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최○○은 위와 같은 사실확인절차 없이(최○○은 제1심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오연호에게 이를 확인한 바 없고, 다만 강연장에 함께 갔던 수습기자 신○○이 작성된 기사를 검토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진□□이 언급한 오연호의 발언의 출처마저 생략한 채 이 사건 보도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운 인터넷 게시물에 근거한 진□□의 발언만으로 위 오연호의 발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이어서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보도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태도나 역할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함이 그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한 보도로서 그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이 자신의 강연에서 진보언론에도 보수언론처럼 언론조작적, 당파적 부분이 나타남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인터넷 게시물에서 본 위 오연호의 발언사실을 인용한 것은 그 자체로 위 오연호의 발언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들려질 수 있는 점, 진보논객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진□□이 진보언론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사실 자

체가 상당한 기사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진□□이 공개적인 강연에서 위 오연호의 발언 사실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전체 취지는 진□□의 강연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위 오연호의 발언의 출처를 생략하는 것은 강연내용의 발췌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고, 진□□의 강연에서 위 오연호의 발언이 언급된 이상 일반 독자들은 "...더라"라는 표현과 "...했다더라"라는 표현에 따라 오연호의 발언 사실을 암시받는 정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도가 가판과 인터넷판에 나간 이후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들은 이를 반영하여 "...더라" 부분을 "...했다더라"고 고치고, 원고를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지칭한 부분을 자진해서 삭제한 점, 언론사인 피고들이 진□□의 강연을 통해 나타난 진보언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소개하는 이 사건 보도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위 오연호의 발언에 대한 의혹을 별다른 검증 없이 제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사인 원고가 스스로 가진 매체를 통하여 반박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보도 중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고 이를 대변하면서 당파적이고 선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보도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 재 형
판사 문 정 일
판사 임 태 혁

〈별지〉 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손해배상청구 사례 10

원고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이 사건 구인광고의 게재여부와 광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다 하지 않는 등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자 판결 (2007가단3030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자 판결 (2008나19484)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2008년 5월 1일 송○○가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코리아헤럴드 2007년 7월 11일 『Sometimes you really just have to say '18'』라는 제목으로 '분당 ○○이라는 영어학원의 원장인 원고가 외국인 강사를 모집하면서 인종 차별적 · 세대 차별적 · 국적 차별적 광고와 계약서 문구를 무시하고 의료보험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게시했다'라고 게재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구인광고의 내용이 급여, 의료보험, 휴가 등 근로조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 원장인 원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허위광고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 ○○은 이 사건 구인광고에 나와 있는 원고의 핸드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자의 신분을 밝히고, ○○을 운영하는 원장이 원고임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구인광고의 내용 특히 불법성이 있는 선택적 의료보험에 관한 원고의 생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한 점, 이 때 원고는 이 사건 구인광고가 자신이 게재한 적이 없는 광고임을 밝힌 바가 전혀 없었던 점, 또한 피고 ○○은 원고와의 통화 직후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코리아헤럴드의 Senior Associate Editor로서 원고의 이 사건 구인광고가 한국법을 위배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것이라는 전화한 용건에 관하여 재차 확인하고, 코리아헤럴드에 원고와 원고 운영의 학원 명칭을 거론하여 불법적인 노동관행에 대한 기사를 게재할 예정임을 알리고, 이에 관하여 언급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내용과 함께 연락할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위 이메일을 받고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2007. 7. 11.까지 사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 원고가 이 사건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이라고 믿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추구하는 공익의 성격에 비추어 그 보도에 있어 신속성의 요청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구인광고는 인종, 세대, 국적 차별 및 의료보험법위반 내용을 담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실명, 이메일주소 및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 이를 구직싸이트에 게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제3자가 원고를 비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인광고를 게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실제로 이 사건 구인광고는 ○○가 원고의 이름과 ○○의 명칭을 도용하여 마치 원고가 한 것인 양 광고를 게재하였다.), ③ 이 사건 기사의 주된 근거는 인터넷상의 자료인 이 사건 구인광고인데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 가공하여 게시 ·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참조), ④ 이 사건 기사는 원고와 그가 운영하는 ○○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P.K. ○○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는 인간쓰레기다.'는 등의 비난을 받은 점, ⑤ 한국인인 원고는 영어로 피고 ○○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이 전화한 이유를 ○○의 영어강사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피고 ○○의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러한 경우 피고 ○○은 통역 또는 서면질문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기사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구인광고 게재여부 및 그 광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원고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함에도 위와 같이 위 이메일만을 원고에게 보내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 ⑦ 그리고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7가단303037 손해배상(기)

원　　고 : 송 ○ ○

피　　고 : 1.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서울 ○○구

대표이사 박행환

2. ○ ○

최후주소 서울 ○○구(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내)

변 론 종 결 : 2008. 4. 3.

판 결 선 고 : 2008. 5. 1.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3.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에서 만 4세부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교육하는 '○○(□□ □□)'이라는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코리아헤럴드라는 영자 일간신문을 출판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은 코리아헤럴드의 기자로서 Senior Associate Editor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보도 경위

(1)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학원강사직을 알선하는 구직사이트인 '○○(www.○○.co.kr)'의 구인게시판에 원고가 운영하는 ○○ 및 원고의 이름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인종 차별적, 세대 차별적, 국적 차별적이고, 의료보험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구인광고(이하 '이 사건 구인광고'라 한다)가 2007. 6. 29.자로 게재되어 있었다.

(2) 피고 ○○은 이 사건 구인광고를 접한 후인 2007. 7. 3. 이 사건 구인광고에 표시된 원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코리아헤럴드의 기자임을 밝히고, 이 사건 구인광고에 관한 내용 즉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의료보험 처리 실태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이 때 원고는 의료보험에 관한 답변을 한 후 피고 ○○을 ○○의 영어강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오해하여 그를 채용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전화를 끊었다.

⑶ 피고 ○○은 원고와의 위 전화통화 후 원고에게 바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내 코리아헤럴드의 Senior Associate Editor로서 원고의 이 사건 구인광고가 한국법을 위배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것이라는 전화한 용건에 관하여 재차 확인하고, 코리아헤럴드에 원고와 원고 운영의 학원 명칭을 거론하여 불법적인 노동관행에 대한 기사를 게재할 예정임을 알리고, 이에 관하여 언급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내용과 함께 연락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⑷ 피고 ○○은 이 사건 구인광고의 내용 및 원고와의 통화내용을 기초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7. 7. 11.자 코리아헤럴드에 「Sometimes you really just have to say '18'」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날 코리아헤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다. 정정 보도

한편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원고는 2007. 7. 12. 언론중재위원회에 2007서울조정254호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 · 피고 회사는 2007. 7. 27. 피고 회사가 "코리아헤럴드는 지난 7. 11. 'Sometimes you really just have to say '18'' 제하의 기사에서 분당 ○○의 원장 송○○씨가 외국인 강사를 모집하면서 인종 차별적, 세대 차별적, 국적 차별적 광고와 계약서 문구를 무시하고 의료보험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게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그러한 광고를 게재한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송○○씨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는 내용으로 '분당 ○○' 기사관련 정정보도를 싣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 ○○은 2007. 7. 3.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할 당시 자신이 코리아헤럴드 기자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에 구직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 원고가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구인광고를 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고, 광고내용에 대하여도 언급한 적이 없다.

⑵ 즉 피고들은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 명의로 게재된 이 사건 구인광고를 원고가 게재한 것인지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광고에 기초한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원고의 실명 및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명칭을 밝혔다.

⑶ 위와 같이 피고들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⑴ 일반론

언론 ·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⑺ 살피건대, 이 사건 구인광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이름과 ○○의 명칭을 도용하여 마치 원고가 한 것인양 광고를 게재한 것인데, 이 사건 기사 내용 중에는 원고가 인종 차별적, 세대 차별적, 국적 차별적 내용과 계약서 문구를 무시하고 의료보험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명예 내지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⑷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행위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 ○○은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사의 작성 · 보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 영어강사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알리고, 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하에서는 나아가 피고 ○○이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가 이 사건 구인광고를 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인광고의 내용이 급여, 의료보험, 휴가 등 근로조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 원장인 원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허위광고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 ○○은 이 사건 구인광고에 나와 있는 원고의 핸드폰 전화번호

로 전화를 걸어 기자의 신분을 밝히고, ○○을 운영하는 원장이 원고임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구인광고의 내용 특히 불법성이 있는 선택적 의료보험에 관한 원고의 생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한 점, 이 때 원고는 이 사건 구인광고가 자신이 게재한 적이 없는 광고임을 밝힌 바가 전혀 없었던 점, 또한 피고 ○○은 원고와의 통화 직후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코리아헤럴드의 Senior Associate Editor로서 원고의 이 사건 구인광고가 한국법을 위배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것이라는 전화한 용건에 관하여 재차 확인하고, 코리아헤럴드에 원고와 원고 운영의 학원 명칭을 거론하여 불법적인 노동관행에 대한 기사를 게재할 예정임을 알리고, 이에 관하여 언급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내용과 함께 연락할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위 이메일을 받고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2007. 7. 11.까지 사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 원고가 이 사건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이라고 믿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피고들이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현 정

〈별지〉 기사내용 생략 – 편집자 주

2심 판결문

사 건 : 2008나1948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송○○

용인시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봉 기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서울 ○○구

대표이사 박 행 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지성

담당변호사 이 태 현

2. ○ ○

최후주소 서울 ○○구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내)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가단303037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9. 19.

판 결 선 고 : 2008. 10. 10.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2008.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3년 3월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에서 만 4세부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교육하는 '○○(□□ □□)'이라는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⑵ 피고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코리아헤럴드라는 영자 일간신문을 출판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은 코리아헤럴드의 기자로서 Senior Associate Editor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보도 경위

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학원강사직을 알선하는 구직사이트인 '○○(www.○○.co.kr)'의 구인게시판에 원고가 운영하는 ○○ 및 원고의 이름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인종 차별적, 세대 차별적, 국적 차별적이고, 의료보험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구인광고(이하 '이 사건 구인광고'라 한다.)가 2007. 6. 29.자로 게재되어 있었다.

⑵ 피고 ○○은 이 사건 구인광고를 접한 후인 2007. 7. 3. 이 사건 구인광고에 표시된 원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영어로 코리아헤럴드의 기자임을 밝히고, 이 사건 구인광고에 관한 내용 즉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의료보험 처리 실태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이 때 원고는 의료보험에 관한 답변을 한 후 피고 ○○을 ○○의 영어강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오해하여 그를 채용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전화를 끊었다.

⑶ 피고 ○○은 원고와의 위 전화통화 후 원고에게 바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즉 자신은 코리아헤럴드의 Senior Associate Editor로서 원고의 이 사건 구인광고가 한국법을 위배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것이라는 전화한 용건에 관하여 재차 확인하고, 코리아헤럴드에 원고와 원고 운영의 학원 명칭을 거론하여 불법적인 노동관행에 대한 기사를 게재할 예정임을 알리고, 이에 관하여 언급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내용과 함께 연락할 전화번호가 기재된 이메일(전자우편)을 보냈다. 원고가 위 이메일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⑷ 피고 ○○은 이 사건 구인광고의 내용 및 원고와의 통화내용을 기초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7. 7. 11.자 코리아헤럴드에 「Sometimes you really just have to say '18'」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날 코리아헤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다. 사실 확인 및 정정 보도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원고는 2007. 7. 12. 언론중재위원회에 2007서울조정254호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7. 7. 27. 피고 회사가 "코리아헤럴드는 지난 7. 11. 'Sometimes you really just have to say '18'' 제하의 기사에서 분당 ○○의 원장 송○○씨가 외국인 강사를 모집하면서 인종 차별적, 세대 차별적, 국적 차별적 광고와 계약서 문구를 무시하고 의료보험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게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아이디 ○○, 이름 ○○, 메일 ○○@yahoo.com이라는 회원정보를 가진 자가 이 사건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한 광고를 게재한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송○○씨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는

내용으로 '분당 ○○' 기사관련 정정보도를 싣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 8호증, 을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 ○○은 2007. 7. 3.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할 당시 자신이 코리아헤럴드 기자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에 구직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 원고가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구인광고를 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고, 광고내용에 대하여도 언급한 적이 없다.

⑵ 즉 피고들은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 명의로 게재된 이 사건 구인광고를 원고가 게재한 것인지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광고에 기초한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원고의 실명 및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명칭을 밝혔다.

⑶ 위와 같이 피고들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⑴ 법리

언론 ·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사 내용대로 ○○을 운영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기사 내용 중에는 원고가 인종 차별적, 세대 차별적, 국적 차별적 내용과 계약서 문구를 무시하고 의료

보험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명예 내지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행위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 ○○은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사의 작성 · 보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 영어강사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알리고, 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갑제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추구하는 공익의 성격에 비추어 그 보도에 있어 신속성의 요청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구인광고는 인종, 세대, 국적 차별 및 의료보험법 위반 내용을 담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실명, 이메일주소 및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 이를 구직싸이트에 게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제3자가 원고를 비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인광고를 게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실제로 이 사건 구인광고는 ○○가 원고의 이름과 ○○의 명칭을 도용하여 마치 원고가 한 것인 양 광고를 게재하였다.), ③ 이 사건 기사의 주된 근거는 인터넷상의 자료인 이 사건 구인광고인데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 가공하여 게시 ·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참조), ④ 이 사건 기사는 원고와 그가 운영하는 ○○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P.K. ○○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는 인간쓰레기다.'는 등의 비난을 받은 점, ⑤ 한국인인 원고는 영어로 피고 ○○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이 전화한 이유를 ○○의 영어강사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피고 ○○의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러한 경우 피고 ○○은 통역 또는 서면질문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기사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구인광고 게재여부 및 그 광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원고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함에도 위와 같이 위 이메일만을 원고에게 보내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 ⑦ 그리고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표현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으면 위법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언론 ·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여론의 형성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여야 하고 부득이 사익을 희생시키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설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적존재임에 고려할 때 국내 외국인 영어강사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처우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당국에 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고의 실명과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명을 거론하고 'Sometimes you really just have to say 18(일반적인 한국인이라면 여기서 18의 의미를 욕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라는 욕설을 넣어 기사제목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 ○○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게재경위, 그 표현방법,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코리아헤럴드의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생활근거지,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⑷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7. 7. 11.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 종 문

판사 남 인 수

판사 임 수 연

〈별지〉 기사내용

Sometimes you really just have to say '18'

By Chris Gelken

Despite the best efforts of The Korea Herald to highlight the problem — and initiatives by the Korean government to stamp out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 it seems that some people just don't get the message.

[redacted] of [redacted] is a case in point.

She was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advertisement for teachers: "If you are young and white, you are alright with us." Really, about the only thing you can do is sigh, and laugh out loud at how ridiculous this situation really is.

The advertisement went on to say, "Average weight (or thin) people are preferred. Also please, no Australians/New Zealanders/Irish etc. Brits may be considered under special circumstances. Of course, no non-native English speakers or ethnic minorities."

[redacted] in a rare example of honesty, warned any potential applicants that the contract they sign with them is probably not worth the paper it is written on.

"One year contract required by law. Please note, however, that cultural differences exist with respect to contracts."

The hagwon then reproduced this alarming message: "English teachers in Korea occasionally have contract disputes with their employers. In the Korean context, a contract is simply a rough working agreement,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Most Koreans do not view deviations from a contract as a breach of contract, and few Koreans would consider taking an employer to court over a contract dispute — we don't think you will take us to court either!"

Really? Well, Bundang [redacted] probably covered its bases with the following: "Salary negotiable. Paid vacation. Optional medical insurance. Year-end bonus — if you complete one year."

The "optional medical insurance" is required by law and is absolutely non-negotiable. When The Korea Herald called Ms. [redacted] she cheerfully agreed, but suggested, "Some teachers want to save money so they decide not to have the medical insurance."

It saves the school money, too, a detail she conveniently left out along with the fact that non-payment of medical insurance is illegal.

When it was pointed out to Ms. [redacted] that she was breaking multiple Korean laws with her advertisement, she cut the conversation short with: "I am hanging up,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and you will not be considered for this job."

That is a great pity because the advertisement was so tempting. An e-mail to Ms. [redacted] went unanswered.

(chrisgelken@heraldm.com)

〈기사번역문〉

"직장 내 차별의 폐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이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코리아헤럴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분당 ○○○○의 송○○ 씨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녀는 교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였다. '만일 젊은 백인이라면, 우리와 함께 일하기에 적합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에 대해 한숨을 쉬고, 크게 비웃는 일 밖에 없을 것이다.

광고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평균 몸무게(또는 날씬한)의 사람 선호. 또한 호주인, 뉴질랜드인, 아일랜드인 사절. 특별한 경우 영국인은 고려할 수 있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소수인종도 사양.'

아주 드물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 학원 담당자는 직원자들에게 실질적인 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서의 내용과는 다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1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에 관하여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후 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을 하였다. '가끔 한국의 영어 강사들은 고용주와 계약관련 분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약이란 단순히 근로에 관한 대략적인 합의 정도이고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계약서와 실제 근로환경간의 차이를 위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고용주와의 계약 분쟁으로 법정에 가지 않는다. 당신도 우리를 법원으로 끌고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그럴까? 분당 ○○○○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한 셈이다. '급여는 협의 가능. 유급 휴가. 선택적 의료보험. 연말 보너스 – 만일 일년간 있는다면.'

'선택적 의료보험'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코리아헤럴드에서 전화했을 때 송○○ 씨는 이 점에 동의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 몇 강사들은 의료보험을 들지 않고 돈을 절약하고 싶어 한다.'

이로써 학원측에서도 돈을 아낄 수 있지만, 그녀는 의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편의상 언급하지 않았다.

송○○ 씨에게 그 광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대화를 중단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끊어야겠군요. 당신과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 일자리에 고용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 광고가 아주 매력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슬픈 일이었다. 송○○ 씨에게 보낸 email에 대하여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손해배상청구 사례 11

피고는 경찰청의 설명 및 수사결과만을 믿고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였을 뿐, 달리 피고가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5.자 판결 (2007가합23884) (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2008년 5월 15일 신○○외 5명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에스비에스는 1997년 12월 20일 「추적 사건과 사람들」 프로그램에서 '97 긴급수배' 라는 제목으로 유○○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사체를 유기한 사건의 용의자로 원고 신○○을 지목하며 공개 수배하는 방송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가 신○○을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지목하여 공개수배하는 왜곡된 내용의 방송을 함으로써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가족인 다른 원고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방송과 같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의사실을 다소 극화하여 방송하면서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경우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방송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방송된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방송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방송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로 지목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피고로서는 그 방송에 앞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공개수배 방송을 할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뒤, "피고는 경찰청의 설명 및 수사결과만을 믿고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항변(이 사건 보도가 경찰청의 설명 및 수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은 이유 없다"며 '피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②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무죄 사유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것이므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그 동안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10년이 경과한 지금 다시 방송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명예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

사　　건 : 2007가합23884 손해배상(기)

원　　고 : 1. 신○○
2. 신□□
3. 이○○
4. 신◇◇
5. 신△△
6. 신◎◎

피　　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구
대표이사 김 수 웅, 하 금 열

변론종결 : 2008. 4. 17.

판결선고 : 2008. 5. 15.

주　　문 : 1. 피고는 원고 신○○에게 5,000,000원, 원고 신□□, 이○○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신◇◇, 신△△, 신◎◎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12. 20.부터 2008.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 신○○에게 50,000,000원, 원고 신□□, 이○○에게 각 13,000,000원, 원고 신◇◇, 신△△, 신◎◎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12. 20.부터 2007.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저녁뉴스(20:00)가 끝난 직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상단화면에 '강도살인범 신○○에 대한 공개수배사건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글자는 통상 '추적, 사건과 사람들'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 '추적, 사건과 사람들'과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적 사건과 사람들(85회)'이라는 방송을 통하여 공개수배된 자이다. 원고 신□□은 원고 신○○의 아버지이고, 원고 이○○은 원고 신○○의 계모(원고 신□□과 1971. 8. 28. 혼인하였다)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신○○의 형제자매들이다.

2)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피고는 각종 사건 · 사고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추적, 사건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다)을 방송하고 있던 중,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용의자가 포착되었지만 검거되지 아니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용의자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여 수배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는 경찰청의 수사결과 및 설명에 따라 1997. 12. 20.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97긴급수배'라는 주제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방송내용과 같이 1996. 6. 13. 소외 망 유○○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사체를 유기한 사건의 용의자로 원고 신○○을 지목하며 공개 수배하는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일컫는다)을 하였다.

다. 원고 신○○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등

1) 원고 신○○의 도주 및 귀국

원고 신○○은 위 유○○의 납치용의자로 지목되어 1996. 6. 18.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면

서 처음에는 위 살인사건 당일 피해자 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다음날 원고 신○○을 데리고 국민은행 및 제일은행에서 위 원고가 예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녹화되었다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필름을 가지고 왔다. 그 후 원고 신○○은 같은 날 아침 무렵 경찰관과 같이 사우나를 하던 중 몰래 도망하였다. 원고 신○○은 같은 날 15:00경 후배인 조□□에게 자신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장안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위 승용차를 730만원에 매각한 다음 1996. 6. 21.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원고 신○○은 자신이 위 유○○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후에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귀국하지 아니하다가 수사기관의 범죄인 인도신청에 따라 2003. 9. 4.경 강제추방 형식으로 귀국하였다.

2) 형사재판 결과

가) 원고 신○○은 2003. 9. 26. 위 유○○에 대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원고 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고, 원고 신○○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모습과 그 다음날 새벽 무렵 가방과 흰색 비닐에 포장된 물건 등을 철제 손수레(손수레에서 피해자의 혈액형과 같은 A형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를 이용하여 옮기는 모습이 녹화되었으며, 원고 신○○이 과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청옥산 부근에 다녀 온 적이 있는 등의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고합 9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4노57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964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신○○의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그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범한 범죄자로 지목(이 사건 방송에서는 원고 신○○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원고 신○○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는 사체가 들어있던 그 가방을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한 남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까지 한 이 끔찍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나 원고 신○○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다)하는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신○○의 아버지인 원고 신□□과 계모인 원고 이○○, 형제자매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범죄자의 가족으로 멸시를 받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은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라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원고 신○○을 단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을 뿐이어서 방송 내용이 진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의 설명 및 수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우선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원고 신○○을 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 역시 원고 신○○이 위 살인사건을 실제로 범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방송과 같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의사실을 다소 극화하여 방송하면서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경우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방송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방송된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방송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방송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로 지목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피고로서는 그 방송에 앞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공개수배 방송을 할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경찰청의 설명 및 수사결과만을 믿고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이 진실하다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송의 내용, 방송사로서의 피고의 지위 및 영향력, 원고들의 나이 및 지위, 이 사건 보도 후의 정황 및 원고 신○○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원고 신○○이 위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가 도망하여 1996. 6. 21. 일본으로 출국한 후 자신이 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음에도 2003. 9. 4.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신○○에 대하여 5,000,000원, 원고 신□□, 이○○에 대하여 각 2,000,000원, 원고 신◇◇, 신△△, 신◎◎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신○○을 위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지목하여 공개수배하는 왜곡된 내용의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 신○○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의 요지는 '원고 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고, 원고 신○○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모습과 그 다음날 새벽 무렵 가방과 흰색 비닐에 포장된 물건 등을 철제 손수레(손수레에서 피해자의 혈액형과 같은 A형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를 이용하여 옮기는 모습이 녹화되었으며, 원고 신○○이 과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청옥산 부근에 다녀 온 적이 있는 등의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일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 신○○은 위 살인사건 직후 피해자의 납치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말없이 경찰관의 지배를 벗어나 외국으로 도주하였고, 자신이 위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방송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다시 한 번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원고 신○○의 명예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이 원고 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신○○에게 5,000,000원, 원고 신□□, 이○○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신◇◇, 신△△, 신◎◎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이 사건 방송일)인 1997. 1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성 곤

판사 이 종 문

판사 권 기 백

〈별지 1〉 정정보도문 생략 –편집자 주

〈별지 2〉 방송내용 생략 –편집자 주

손해배상청구 사례 12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단골고객 등 적어도 이 사건 홍삼원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홍삼원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5. 23.자 판결 (2007가합1170) (확정)

사실개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2008년 5월 23일 유○○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고는,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2007년 7월 10일 「KBS 안동방송 저녁 9시 뉴스」 프로그램과 2007년 7월 11일 「뉴스광장 1부, 2부」 프로그램에서 ○○의 한 인삼가공업체에서 중국산 인삼액의 원액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건강원의 모습을 배경화면으로 내보내자 '원고가 운영하는 ○○○○건강원이 중국산 인삼액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 중 하나로 오인하게 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보도에 나타난 부분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이 홍삼원임을 식별하기 어려워서 이 사건 보도에서 홍삼원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에서 홍삼원의 상호나 전화번호,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홍삼액 상품포장용 박스 등이 직접 방영된 것은 아니고, 배경화면으로 보도되면서 어느 정도 불투명 처리된 점은 인정되나, ① 홍삼원의 출입구를 보도하면서 주변의 지형 · 지물이 일부 노출된 점, ② 홍삼원 내부의 장면은 불투명 처리되지도 않은 점, ③ 원고가 사용하는 홍삼액 상품포장용 박스를 클로즈업한 화면의 경우, 어느 정도 불투명 처리하였다고는 하나 그 처리 정도가 미흡하여, 화면상으로도 위 박스 중앙의 '蔘'이라는 글자 자체와 글자의 형태, 위치 등 그 독자적인 디자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도를 시청한 사람 중 적어도 홍삼원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그것이 홍삼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

사　　건 : 2007가합1170 손해배상(기)

원　　고 : 유○○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구

변론종결 : 2008. 4. 25.

판결선고 : 2008. 5. 23.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2.부터 2008.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07.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증인 이○○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방송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출장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 ○○읍 ○○리에서 '○○○○건강원'이라는 상호로 인삼제품 즉석판매가공제조업(이하, '이 사건 홍삼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KBS 안동방송 저녁 7시뉴스',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및 '뉴스광장 1, 2부'라는 프로그램을 각 제작 · 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취재과정

(1) 피고는 2007. 7.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포한 ○○지역의 중국산 홍미삼 부정유통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접하자 이를 취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의 취재기자는 2007. 7.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이루어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 ○○읍 소재 홍삼가공업체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하였다.

⑵ 그 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 직원은 이 사건 홍삼원을 방문하여 위 홍삼원에서 가공, 판매 중인 홍삼액의 원료인 홍미삼의 원산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홍삼원에서는 위반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⑶ 한편 피고 소속의 취재기자는 위 동행 취재과정에서 실제 부정유통을 한 위반업체를 취재하고자 하였으나 위 업체가 문을 열지 않아 취재하지 못하였고, 대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 사건 홍삼원에 대한 위 현장 점검 과정을 촬영하였다.

⑷ 취재 후 피고는 중국산 홍미삼의 부정유통문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뉴스를 정리 · 편집하면서 실제 부정유통을 한 위반업체 대신 이 사건 홍삼원의 현장 점검 과정을 촬영하였던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일부 구성하여 아래 다.항의 내용으로 각 보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도내용

⑴ 2007. 7. 10.자 'KBS 안동방송 저녁 7시뉴스'의 보도내용

피고는 2005. 7. 10. 19:20경 자신의 'KBS 안동방송 저녁 7시뉴스' 시간에 이 사건 홍삼원의 현장 점검 촬영장면을 배경으로 하여 별지 1 기재 내용으로 25초가량 보도하였다.

⑵ 2007. 7. 10.자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2007. 7. 11.자 '뉴스광장 1부 및 2부'의 각 보도내용

⑺ 피고는 2005. 7. 10. 19:38경 자신의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시간과 2005. 7. 11. 06:40경 '뉴스광장 1부' 시간, 같은 날 07:17경 '뉴스광장 2부' 시간 등 총 3회 동안 별지 2 기재 내용으로 1분 13초가량 보도하였다.

⑷ 위 각 보도의 도입부 무렵 별지 2 기재 앵커 멘트가 나오면서 화면 우측 상단에 '중국산 국산 둔갑'이라는 자막(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또는 화면 하단에 '중국산 홍삼액 국산으로 둔갑시켜'라는 자막(뉴스광장 1부 및 2부)이 나왔다.

⑸ 별지 2 기재 취재기자 멘트 1이 연속되면서 초반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및 내부가 배경화면으로 나오다가 위 취재기자 멘트 1 중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홍미삼으로 만든 홍삼액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했습니다' 부분부터 이 사건 홍삼원 내부 장면(위 화면의 하단에 '중국산 홍미삼으로 만든 홍삼액 국산 둔갑'이라는 자막이 기재) 및 이 사건 홍삼원에서 가공, 판매하고 있는 홍삼액의 상품포장용 박스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장면(상품포장용 박스 외관에 기재된 문구가 어느 정도 불투명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박스 중앙에 크게 새겨진 '蔘'이라는 문자 및 도안 자체는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이 각 배경화면으로 나왔다.

(라) 이후 별지 2 기재 취재기자 멘트 1의 후반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처럼 중국산 인삼의 국산 둔갑 판매가…' 부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의 출입구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 직원 등이 들어가는 장면을 방영하였는데, 출입구 주변의 도로에 놓여진 물건, 주변 상점의 구조물 등이 함께 나왔다. 다만, 위 출입구 유리에 부착된 상호와 전화번호 자체는 불투명 처리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에 가리는 등으로 인해 화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다.

(마)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김○○ 소장의 인터뷰 내용이 이어진 다음 별지 2 기재 취재기자 멘트 2인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장면이 불투명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영되었다.

2.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홍삼원이 위 기초사실 중 다.항 기재와 같이 배경화면으로 방영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속여 홍삼액을 가공하여 부정유통, 판매하는 업체 중 하나라고 오인하게 하여 이 사건 홍삼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 당시 이 사건 홍삼원의 상호 등을 직접 방영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보도의 배경화면으로 방영된 부분(이 사건 홍삼원의 출입구, 원고가 사용 중인 상품포장용 박스)도 화면 전체를 불투명하게 처리(핀-아웃, 일종의 모자이크 효과)하였으며, 불투명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장면은 다른 홍삼원의 내부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등, 위 각 보도에 나타난 부분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홍삼원임을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가사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홍삼원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도 직후인 2007. 7. 11. 'KBS 안동지역 저녁 9시뉴스'에서 이 사건 홍삼원이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허위 판매한 업체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추후보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업체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홍삼원의 경우에도 그 특정을 위해서 반드시 상호나 전화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이 사건 홍삼원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써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홍삼원의 상호나 전화번호,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홍삼액 상품포장용 박스 등이 직접 방영된 것은 아니고, 배경화면으로 보도되면서 어느 정도 불투명 처리된 점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홍삼원의 출입구를 보도하면서 주변의 지형, 지물이 일부 노출된 점, ② 이 사건 홍삼원 내부의 장면은 불투명 처리되지도 않은 점, ③ 원고가 사용하는 홍삼액 상품포장용 박스(원고 이외의 업체는 위 박스를 사용하지 아니한다)을 클로즈업한 화면의 경우, 어느 정도 불투명 처리하였다고는 하나 그 처리 정도가 미흡하여, 화면상으로도 위 박스 중앙의 '蔘'이라는 글자 자체와 글자의 형태, 위치 등 그 독자적인 디자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보도를 시청한 사람 중 적어도 이 사건 홍삼원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특히, 단골고객)이라면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그것이 이 사건 홍삼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 중 이 사건 홍삼원의 방영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홍삼원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중국산 홍미삼을 원료로 홍삼액을 즉석 가공한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자를 단속한 사실을 주로 전달하면서, 이와 같은 부정유통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중국산 홍삼을 국산으로 허위 판매한 홍삼가공업체를 적발하였다'라는 내용의 취재기자 멘트와 동시에 그 배경화면으로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직원이 원고가 사용하는 홍삼액 상품포장용 박스를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이 방송된 점, ② 위 화면의 하단에 '중국산 홍미삼으로 만든 홍삼액 국산 둔갑'이라는 자막이 나간 점, ③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의 취재기자 멘트의 배경화면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직원이 이 사건 홍삼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사용된 점, ④ 마지막으로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지역 인삼 산업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한다'는 내용의 취재기자 멘트 배경화면으로 불투명 처리되지 않은 이 사건 홍삼원의 내부장면이 방송된 점, ⑤ 이 사건 각 보도 자체에서 이 사

건 홍삼원 장면은 이 사건 보도내용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각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청자들, 특히 이 사건 홍삼원의 단골고객들이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보도를 접한다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홍삼원이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속여 홍삼액으로 가공하여 팔아 오다 적발된 홍삼가공업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홍삼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가공 · 판매하고 있다고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를 방영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추후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홍삼원이 중국산 홍미삼을 국산으로 허위 가공, 판매한 업체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추후보도를 통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가 추후보도를 하였다는 사정은 아래에서 볼 위자료 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홍삼원의 영업규모, 피고의 지위와 영향력,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내용, 방송시간, 이 사건 각 보도 후 피고가 2007. 7. 11.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에서 이 사건 홍삼원과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전혀 무관함이 밝혀져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그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 근 욱
판사 이 은 정
판사 이 지 민

〈별지 1〉 보도내용

2005. 7. 10.자 'KBS 안동방송 저녁 7시 뉴스'의 보도 내용

(앵커 멘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홍미삼을 ◇◇ 홍삼액으로 속여 가공한 ○○시 ○○읍의 모 인삼 가공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국산의 1/3 가격인 중국산 홍미삼 48킬로그램으로 홍삼액 천4백여 킬로그램을 만들어 원산지를 ○○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차 가공제품은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여 가공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끝.

〈별지 2〉 보도내용

2005. 7. 10.자 'KBS 안동방송 저녁 9시뉴스',

2005. 7. 11.자 KBS '뉴스타임 1부' 및 '뉴스타임 2부'의 각 보도 내용

(앵커 멘트)

중국산 홍미삼으로 홍삼액을 만들어 국산으로 둔갑시킨 가공업체를 적발됐습니다.

가공품은 원삼에 비해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멘트 1)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의 한 인삼가공업체에서 압수한 중국산 홍미삼입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중국산 홍미삼은 48킬로그램, 홍삼액 천4백 상자, 천2백만 원어치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홍미삼으로 만든 홍삼액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했습니다.

중국산 홍미삼의 가격은 킬로그램 당 3만 5천 원 선으로 국산 홍미삼에 비해 1/5 수준입니다.

원삼은 중국산과 국산이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이 되지만 2차 가공한 홍삼액은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처럼 중국산 인삼의 국산 둔갑 판매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김○○ 소장 인터뷰 내용 개요)

전체 인삼 재배농가와 가공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 표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

(취재기자 멘트 2)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지역 인삼 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끝.

손해배상청구 사례 13

드라마 전개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촬영의 의도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하고, 이후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편집 · 방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를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2008. 5. 27.자 판결 (2007나11059)
대법원 2008. 9. 11.자 판결 (2008다42201)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2008년 5월 27일 박○○ 외 3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 고 명한 1심 판결에 더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300만 원을 지급하라' 고 1300만 원의 추가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이 제작해 피고 문화방송에 공급 · 방영하는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 2006년 4월 4일 8회 방영분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영분에서는 원고들의 얼굴이 공개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4집 260~266면 참조).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다년간 국내외에서 수학하며 연주자로서 노력하여 젊은 음악가로서 상당한 명성을 획득한 사람들인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예술가로서 갖는 위와 같은 자부심과 명예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드라마 전개상 연주회 장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촬영의 의도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실연과정을 촬영하고, 이후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편집 · 방송한 점, 연주회 당시 원고들은 이○○이 창작한 현악4중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제작하고 방영한 드라마의 연주회 장면에서는 원고들과 전혀 무관한 피아노곡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됨으로써 원고들의 연주행위가 공연으로서 갖는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 일체성이 해체되어 단지 드라마의 시각적 효과만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점, 이 사건 드라마와 같이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는 인기 드라마의 국내외 전파력은 다른 인쇄매체에 비하여 현저히 커서 그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이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방송으로 침해된 원고들의 명예감정을 위로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를 사소한 일로 치

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피고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고, 그 금액은 원고별로 각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에 3심 재판부는 2008년 9월 11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문

사　　건 : 2007나11059 초상권침해금지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박 ○ ○

2. 김 ○ ○

3. 배 ○ ○

4. 한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선 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주식회사 김종학 프로덕션

서울 ○○구

대표이사 김 종 학

2.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구

대표이사 최 문 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이 도 형, 장 정 애, 안 혁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손 석 봉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3. 11.

판 결 선 고 : 2008. 5. 27.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5.부터 2008.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에 대한 재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보기 다운로드 제공, 비디오 및 디비디 제작 · 반포 · 판매 · 공여, 드라마의 반포 · 판매 · 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과 이에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제6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들은 다년간 국내외에서 수학하며 연주자로서 노력하여 젊은 음악가로서 상당한 명성을 획득한 사람들인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예술가로서 갖는 위와 같은 자부심과 명예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드라마 전개상 연주회 장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촬영의 의도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실연과정을 촬영하고, 이후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편집 · 방송한 점, 연주회 당시 원고들은 이○○이 창작한 현악4중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제작하고 방영한 드라마의 연주회 장면에서는 원고들과 전혀 무관한 피아노곡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됨으로써 원고들의 연주행위가 공연으로서 갖는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 일체성이 해체되어 단지 드라마의 시각적 효과만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점, 이 사건 드라마와 같이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는 인기 드라마의 국 · 내외 전파력은 다른 인쇄매체에 비하여 현저히 커서 그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이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방송으로 침해된 원고들의 명예감정을 위로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주분량이 7초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이나 피고들이 원고들의 항의 후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나 재방송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고, 그 금액은 원고별로 각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6. 4. 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위 금액 중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2,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9. 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7.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광 범

판사 김 성 수

판사 임 성 철

3심 판결문

사　　건 : 2008다42201 초상권침해금지등

원고, 피상고인 : 1. 박 ○ ○

2. 김 ○ ○

3. 배 ○ ○

4. 한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선 호

피고, 상고인 : 1. 주식회사 김종학 프로덕션

서울 ○○구

대표이사 김 종 학, 송 성 호

2.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구

대표이사 엄기영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 정 환, 강 호 성, 이 도 형, 안 혁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11059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 시 환

대법관 양 승 태

대법관 박 일 환

주 심 대법관 김 능 환

손해배상청구 사례 14

공적 존재인 원고의 보도성향을 '친북적', '좌익적'이라고 평가한 것 등은 다소의 수사적 과장은 있지만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2008. 6. 12.자 판결 (2007다35695)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8년 6월 12일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전 안기부 간부인 권○○ 및 박○○과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와 소속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권○○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원고 한겨레신문은 피고 월간조선이 월간조선 2001년 4월호『특종 – 안기부가 1997년 4월 5일 작성한「한겨레신문 종합분석」입수』제하의 기사에서 ①원고가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친북 · 좌익 성향의 보도를 하여 왔고 ②광고수주를 위해 에버랜드 안전사고 등에 대해 축소 보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전 안기부 간부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해 원고가 언론기관으로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당하고 법인으로서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월간조선사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원고를 '로동신문 서울지국'으로 비유한 부분은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으나 원고가 에버랜드 안전사고 관련 기사를 축소 보도함으로써 광고를 수주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월간조선사와 소속기자에게 2천만 원의 손배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전 안기부 간부들에 대해 내린 7천만 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취소했다(1심 판결문은『국내언론관계판결집』제12집 240~261면, 2심 판결문은『국내언론관계판결집』제14집 321~329면 참조).

이에 3심 재판부는 피고 권○○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조○○, 조□□이 이 사건 문건은 안기부에서 작성된 것을 취득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건에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의 신문 · 방송 날짜와 제목을 적시하여 한겨레의 기사 내용과 비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건은 국가기관 중 특히 '안기부에 대한 시각'이나 '안기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독립적인 항

목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건은 안기부에서 작성하여 그 내용의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피고 권○○는 1994년 12월 4일부터 1998년 3월 4일까지 안기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기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의 원고와 안기부의 갈등관계, 안기부 조직의 특성과 지휘체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권○○는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권○○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3심 재판부는 월간조선과 소속기자들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보도성향을 '친북적', '좌익적'이라고 평가하고 원고를 '로동신문 서울지국'으로 비유한 것은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위 의견 또는 논평의 목적이 공적 존재인 원고에 관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위 의견 또는 논평은 안기부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의 기사 내용 · 제목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3심 판결문

사　　건 : 2007다35695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구

대표이사 서 형 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 형 태, 이 정 희, 윤 영 환, 탁 경 국, 송 상 교

피 고 , 피 상 고 인 : 1. 권 ○ ○

2. 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3.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대표이사 이상철

4. 조○○

5. 조□□

피고 3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률, 김 태 수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4나83398 판결

판 결 선 고 : 2008. 6. 12.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 권○○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조○○, 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권○○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조○○, 조□□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권○○, 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국가안전기획부(1999. 1. 21.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안기부'라 한다)가 '한겨레신문 종합분석'이라는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문건 내용에 담긴 대책 중 일부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심과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 위 피고들이 안기부의 부장이나 제1차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하여 부하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이하 '월간조선사'라 한다), 조○○, 조□□이 이 사건 문건은 안기부에서 작성된 것을 취득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건에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의 신문 · 방송 날짜와 제목을 적시하여 한겨레의 기사 내용과 비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사세확장 등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문건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에 대해 광고중단 등의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 점, 이 사건 문건은 국가기관 중 특히 '안기부에 대한 시각'이나 '안기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건은 안기부에서 작성하여 그 내용의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권○○는 1994. 12. 4.부터 1998. 3. 4.까지 안기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기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의 원고와 안기부의 갈등관계, 안기부 조직의 특성과 지휘체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권○○는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권○○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권○○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박○○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1996. 12. 21.부터 안기부 제1차장으로 근무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 박○○이 안기부 제1차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안기부 사이의 갈등관계가 심화되어 이 사건 문건의 내부적 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광고중단 등의 조치가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당시 안기부 제1차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월간조선사, 조○○,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보도성향을 '친북적', '좌익

적'이라고 평가하고 원고를 '로동신문 서울지국'으로 비유한 것은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지언정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위 의견 또는 논평의 목적이 공적 존재인 원고에 관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위 의견 또는 논평은 안기부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의 기사 내용 · 제목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월간조선사, 조○○, 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 안전사고 관련 기사를 축소 보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였다는 부분은 단순히 위 피고들이 안기부의 원고 사찰 내용을 독자들에게 폭로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고, 위 기사 부분이 진실하다고 할 수 없으며, 별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피고들로서는 안기부가 작성한 이 사건 문건 내용에 그와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기사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기사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을 입수한 경위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권○○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 월간조선사, 조○○,

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권○○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월간조선사, 조○○, 조□□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영 란

대법관 김 황 식

주 심 대법관 이 홍 훈

대법관 안 대 희

손해배상청구 사례 15

원고 일행이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원고 측 해명을 들었음에도 제대로 취재를 하지도 않은 채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08. 7. 2.자 판결 (2007나61870)
대법원 2008. 11. 13.자 판결 (2008다53805)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2일 전 국무총리 이해찬이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인터넷신문 프런티어타임스가 2005년 12월 27일 13:10경 『이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5집 145~149면 참조).

재판부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기사는 보도 대상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무려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1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12)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결정(손해배상 1천만 원)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2심 판결문

사　　건 : 2007나6187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이 해 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82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5. 14.

판 결 선 고 : 2008. 7. 2.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1) 피고는 2005. 12. 27. 13:10경 피고 운영의 인터넷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李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위 기사는 네이트, 드림위즈 등 여러 포털사이트에까지 게재되었고 위 기사에 수백 개의 원고에 대한

비난성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다.

나. 기사 게재 이후 피고의 대응

그 후 피고는 원고 측의 국무총리실 관계자로부터 당시 '양주파티'를 한 적이 없다는 항의를 받고 위 기사가 게재된 지 약 3시간 후에 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하고 같은 날 17:00경에는 "프런티어타임스 27일자, <李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북 정읍의 폭설피해 현장 확인차 정읍 ㅊ식당에서 피해보고를 받은 뒤 시, 군, 경 관계자들과 '양주파티'를 벌인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 날 식탁에 오른 술은 양주가 아니라 복분자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실 측에 따르면, 이총리는 정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주를 마신 사실이 없으며 저녁식사 자리에 놓여있는 병은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주와 음료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다. 보도대상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⑴ 원고는 2005. 12. 21. 당시 국무총리로서 호남지역 폭설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현황을 보고받기로 하였는데, 당초 일정에는 16:20경 나주지역 폭설현장을 방문한 다음 17:10경에는 나주시청에서 전남지역의 피해현황을, 18:40경에는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피해현황을 각 보고받고 19:30경 정읍시 소재 초원식당(기사 속 ㅊ식당)에서 지역관계자들과 만찬간담회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⑵ 그러나, 당시 원고 일행은 나주지역 폭설현장과 나주시청을 방문한 후 정읍 쪽으로 이동하다가 폭설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당초 계획보다 50분 늦은 19:20경에야 정읍역에 도착하게 되어 도로사정 및 시간관계상 정읍시청까지 가서 피해현황을 보고받기 어렵게 되자, 현장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바로 만찬간담회 장소인 초원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정읍시 관계자, 피해농민, 총리실 출입기자와 지역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정읍역을 출발하여 23:55경 용산역에 도착하였다.

⑶ 저녁식사 당시 식탁 위에는 정읍시 측에서 준비한 지방특산물인 복분자주가 놓여 있어 원고 일행은 이를 반주로 한 두잔 정도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폭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예정된

피해현장 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공익성 및 상당성 인정 여부

피고는 위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위 기사는 보도대상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무려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② 2005. 12. 21.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각급 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리실 출입기자, 해당지역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석한 행사였으므로 만약 원고 일행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양주파티를 벌였다면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없었으므로 취재 기자로서는 제보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③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취재활동을 하였더라면 당초 일정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초원식당에서 폭설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 불과 1시간 30분 정도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공직자에 대한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 측에 의해서 그러한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성립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다만, 원고도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비록 여러 사정상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술병이 놓인 식사 장소에서 공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측의 항의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위 기사를 삭제하였고 그 후 정정보도문까지 게재를 한 점, 피고 회사의 규모나 재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용 구
판사 김 성 수
판사 은 택

〈별지〉 기사내용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일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 총리는 이날 폭설피해현장 확인차 전라북도 정읍을 방문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시내의 ㅊ식당에서 시장, 건설국장 등 시 관계자들의 브리핑만을 받은 뒤 '양주파티'를 가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7시경 정읍에 도착했지만 폭설피해현장 방문과 당초 예정돼 있던 정읍시청에서의 피해상황보고를 생략한 채 정읍시 수성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한 식당에서 시, 군, 경 관계자들과 '양주파티'를 벌인 것.

이와 관련,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 두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

며 "'양주파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이 총리의 피해지역 방문을 학수고대하던 한 시민은 "눈이 산처럼 쌓여진 무너진 집과 축사들을 총리가 돌아보게 되면 제대로 보상을 해달라고 간청하려고 했으나 식당에서 보고만 받고 돌아갔다"며 원망했다.

이날 이 총리 일행을 마중하기 위해 길에서 2시간 넘게 추위에 떨던 정읍 시청의 한 관계자는 "10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 식당에서 보고받고 식사만 한 채 돌아갔다"며 아쉬워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의 '양주파티'와 관련, "이 총리가 지난해 10월 유럽순방 중에 폭탄주를 마시고 '조선, 동아일보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날은 폭탄주를 마시지 않아 '폭탄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4월 5일 강원 양양군 산불이 낙산사를 덮치고 있는 중에도 골프를 치고, 7월 3일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에도 제주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끝.

3심 판결문

사　　건 : 2008다5380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이 해 찬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1870 판결
판 결 선 고 : 2008. 11. 13.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인터넷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과 달리 2005. 12. 21.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폭설피해현황을 보고받기로 예정하고 있었을 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 방문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언론이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21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회의 목탁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 · 신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임을 생각할 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오늘날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폐단으로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출처 불명의 정보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고 개인의 인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이 나날이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의 옥석을 가려 독자로 하여금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는 다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어떠한 정보에 접한 언론이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그 의문점을 해소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손쉬운 몇 가지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하였다면 그 후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위 기사는 보도대상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주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무려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② 2005. 12. 21.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각급 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리실 출입기자, 해당지역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석하였으므로 만약 원고 일행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양주파티를 벌였다면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없었으므로 취재 기자로서는 제보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③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취재활동을 하였더라면 당초 일정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초원식당에서 폭설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 불과 1시간 30분 정도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위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고, 나아가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수인의 범위 및 그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 일 환
주 심 대법관 양 승 태
대법관 박 시 환
대법관 김 능 환

손해배상청구 사례 16

피고들은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 및 부작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삭제 또는 검색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뉴스기사나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8. 7. 2.자 판결 (2007나60990)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2일 김○○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와 야후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는 각 5백만 원,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3백만 원, 피고 야후코리아 주식회사는 1백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망인 서○○의 어머니는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운영의 싸이월드 내에 있는 망인의 미니홈피에 원고가 망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첫 유산 이후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하고, "내 애가 맞느냐? 임신을 했다 해도 그저 정자 덩어리일 뿐이다" 등의 극언을 하였으며,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망인의 합의 간청을 매정하게 거절하여 망인이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망인의 미니홈피에 접속자수가 폭주하고, 그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 또는 카페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전파 하였다. 또한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응징하자는 취지의 카페가 개설되고, 서명 운동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들은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란을 통하여 위와 같이 네티즌들이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현상을 전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에는 망인의 실명을 밝히거나 망인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포함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원고를 비난하는 기사도 있으며, 위 기사들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을 통해서 원고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①피고들이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피고들이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들과 사이에 송고된 기사내용 그 자체에 대하여 수정 · 변경을 가할

수 없는 대신 그 기사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과 위 언론사들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송고된 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 가능한 상태로 두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피고들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②게시물 등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원고 관련 게시물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여 피고들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고,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려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도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 및 부작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삭제 또는 검색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뉴스 기사나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하거나 일정 부분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유○○ 등 원고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 관련 게시물 작성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는 5백만원,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피고 야후 코리아 주식회사는 각 4백만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는 3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1심 판결문은『국내언론관계판결집』제15집 103~124면 참조).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문

사　　건 : 2007나60990 손해배상(기)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성남시 ○○구

대표이사 최 휘 영

2.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 ○○구

대표이사 이 재 웅

3.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서울 ○○구

대표이사 유 현 오

4. 야후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구

대표이사 김 진 수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4. 23.

판 결 선 고 : 2008. 7. 2.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는 각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3,000,000원, 피고 야후코리아 주식회사는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9. 27.부터 2008.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4, 갑 2, 15, 17, 32호증, 갑 12호증의 1~6, 갑 14, 16호증의 각 1~3, 갑 20, 21호증의 각 1, 2, 갑 30호증의 1~4, 을가 1호증의 1~4, 을가 4호증의 1~8, 을가 5~7호증, 을나 1, 4, 6호증, 을다 1호증의 1, 2, 을다 5~8호증, 을라 1,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신동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망 서○○의 교제, 그리고 서○○의 자살

⑴ 원고는 1976년생으로 1994. 2. 서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3. 9.부터 1995. 12.까지 주식회사 ○○○○ ○○부에서 근무하였고, 1997. 9.부터 1999. 12.까지 군복무를 마쳤으며, 2000. 3.부터 2005. 5.까지 주식회사 □□ □□□□부문 □□□□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5. 3. ◎◎대학교 ◇◇학부에 입학하였다.

⑵ 원고는 2004. 4. 17.경 친구의 소개로 서○○를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 4.경 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의 어머니 유○○은 원고가 임신한 상태인 서○○를 학대하고 버리려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세 차례 때리고 원고의 회사와 학교생활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⑶ 서○○는 2005. 4. 16. 자신의 거주지에서 원고, 유○○, 원고가 다니던 회사 등에 여러 통의 편지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여, 같은 달 22. 원고, 유○○ 등에 의해 발견되었다.

⑷ 원고는 2005. 4. 24. 01:00경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유○○ 등의 요구로 "다니는 학교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유○○의 망인 유서 등 게재

⑴ 유○○은 2005. 5. 5.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운영의 싸이월드 내에 있는 사망한 딸 서○○의 미니홈피(http://www.cyworld.com/○○○, '故 서○○님의 홈페이지 '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에 '지난 1년간의 일들' 이라는 제목의 글(작성자는 망인의 동생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 모씨는 2004. 4. 17. 서○○를 친구의 소개로 만나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서○○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2004. 8.경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서○○로 하여금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살도록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서○○가

'김' 모씨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자연유산하게 되자, '김' 모씨는 태도를 돌변하여 서○○를 무시하고 만나는 횟수도 뜸해졌다.

(나) '김' 모씨의 태도에 실망한 서○○는 2005. 3.경 헤어지기를 요구하였으나 그가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잘 지낼 것을 다짐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러나 서○○가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김' 모씨는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단절하였다.

(다) 서○○는 '김' 모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다니는 야간대학으로 찾아가기까지 하였으나, '김' 모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서○○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개 값 물어주기 싫다"면서 서○○를 차에서 밀쳤고, 그 과정에서 서○○의 구두 굽이 부러지기도 하였다.

(라) 유○○은 2005. 4. 12. '김' 모씨를 만나 서○○가 임신 중인 사실을 전하였으나 '김' 모씨는 "그 애가 내 애가 맞느냐? 임신을 했다 해도 그저 정자 덩어리일 뿐이다. 임신은 어차피 당사자의 일이고 성인 남녀로서 가질 수 있는 성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대꾸하였다. 이에 충격을 받은 유○○은 '김' 모씨의 뺨을 세 대 때렸고 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서○○는 경찰서에서 '김' 모씨에게 합의를 해 주기를 간청하였고, 조사하던 경찰도 매정한 '김' 모씨를 나무랐으나 '김' 모씨는 "법대로 하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유○○은 이 때 받은 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마) 서○○는 2005. 4. 16. 유○○, 원고, 원고의 회사 등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혼자 살던 방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였고, 6일 후 원고와 유○○에 의해 발견되었다.

(2) 유○○은 위 미니홈피에 "김씨가 딸의 장례식장에서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원고가 다니던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서○○의 위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과 '서○○의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3) 이후 위 서○○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가 급증(2005. 5. 11. 23:00까지 11만 4,000명의 네티즌이 방문하였다고 보도되었음)하고, 그 게시판에는 서○○의 명복을 빌고 '김' 모씨를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김' 모씨의 실명이 '김○○(원고)'이고 학교와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는 글들도 있었다.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다. 피고들의 지위 및 사업 내용

(1) 피고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엔이라고 한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1] '네이버(www.naver.com)'를,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을,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이라고 한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www.nate.com)' 및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싸이월드(cyworld.nate.com)'를, 피고 야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야후코리아라고 한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www.yahoo.co.kr)'를 각 운영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이하 네티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이메일 서비스를 비롯하여 뉴스, 블로그[2], 카페[3], 쇼핑몰,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고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피고들은 자신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 뉴스 서비스란을 두고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으로부터 뉴스 기사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받아 이를 배치하여 네티즌이 열람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검색사이트상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테넷상의 정보자원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4]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그 공간 안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이미 만들어 놓은 형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문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게시함으로써 회원들 상호간에 이를 자유로이 교환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이트 홈페이지 및 서브페이지 상에 광고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

1) portal site, PS. 이용자가 웹 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들어가는 사이트(곳). 허브, 관문국(게이트웨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길라잡이 사이트로 설계된 페이지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속하도록 분야별 연결 주소나 최신 뉴스, 일기 예보, 스포츠 정보 등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화제가 게재되어 있다.

2) 인터넷을 의미하는 web와 기록일지를 뜻하는 log의 합성어로 <인터넷일기장>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메모장, 스케치북, 스크랩북, 수필집, 자서전, 사진첩, 신문 등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개인사이트의 일종이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에서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 공유,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회원들이 결성하여 폐쇄적 또는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동호회를 뜻한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가 카페 또는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동호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의 회원에 가입하면 그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형식에 따라 카페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4) 홈피는 홈페이지(homepage)의 줄임말로서, 웹 사이트의 URL{웹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버들에 있는 파일들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접속해야 될 서비스의 종류, 서버의 위치(도메인 네임), 파일의 위치를 포함한다}로 접속했을 때 가장 처음에 보여지는 페이지를 의미하며, 그 사이트를 대표하는 페이지이다.

라. 피고들의 포털사이트 서비스 제공 방식

(1) 회원제 운영 방식

피고들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네티즌은 피고들이 정한 양식에 따른 가입신청을 하고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뉴스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뉴스 기사와 다른 게시물을 검색하여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댓글[5]을 달거나 게시물을 게시할 수는 없다. 회원 약관은 이용자들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뉴스 서비스 운영 방식

(가) 피고들은 그 운영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 신문사 등과 뉴스 기사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공자들로부터 유, 무상으로 뉴스 기사를 제공받는다. 위 계약에 의하면, 정보제공자들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보장하고, 피고들은 정보제공자의 요청 없이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전송된 뉴스 기사는 실시간으로 피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어 네티즌들이 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 피고들은 전송받은 기사들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시의성, 속보성, 영향성 등의 자체 기준에 따라 뉴스 기사를 선별하여 뉴스 서비스 초기화면에 배치하는데, 이때 노출되는 기사의 수를 늘리거나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라) 피고들은 뉴스 기사의 하단에 댓글 창을 열어 네티즌들이 짧은 의견을 덧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검색 서비스 운영 방식

(가) 피고들은 자료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어와 관련된 웹문서, 이미지, 뉴스 기사 등 인터넷상의 자료들이 현출되도록 하되, 네티즌들이 원하는 검색결과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검색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자료에 차등을 두는 등 검색방법과 관련하여 일정한 검색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6]

---

5) 웹 문서의 형식으로 된 글에 붙는 독자의 의견으로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묻고답하기(Q&A) 상에서 올려진 글에 대한 답변 내지 의견 형식으로 올리는 글을 이르는 신조어. 리플레이 · 답글이라고도 하며, 리플레이를 줄여 리플이라고도 쓴다.

6) 예를 들어, 성인 대상의 검색시스템에서는 검색어 '바다'는 가수 '바다'와 더 많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나, 미성년 대상의 그것에서는 일반명사인 '바다'가 더 우수한 검색결과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 피고들이 제공하는 지식검색 서비스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네티즌이 지식검색 서비스란에 질의를 게재하면 다른 네티즌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댓글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방식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회원은 카페, 클럽,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포털사이트들은 포털사이트 이용약관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커뮤니티 이용약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가) 회원은 자유롭게 카페, 클럽 등의 동우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고,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커뮤니티가 음란물 게시, 타인비방, 범죄행위 등 불법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설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나) 커뮤니티 운영은 자율이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서 커뮤니티 서비스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커뮤니티 서비스의 개설자 및 이용자가 부담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커뮤니티 서비스 내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부정기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 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 회원 약관 또는 커뮤니티 약관 및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 커뮤니티 이용 금지, 강제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다)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 회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를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피고들 포털사이트의 이용 현황

(가) 피고 엔에이치엔의 경우 2006. 8.말 기준으로 2,300만 명의 회원이 있고, 위 피고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된 블로그는 700만 개, 신규 블로그의 수는 하루 2만 개 가량이며, 200만 개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매일 4,000여 개의 카페가 생성되고 있다. 2005. 11.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 수는 1,250만 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 수는 470만 명이다.

(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2006. 7.경 약 3,80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고, 1일당 300만 개의 게시물이 새로 생성되고 있으며, 625만 개의 카페에 4,3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위 피고의 커뮤니티 서비스 내에 150만 개의 블로그가 존재한다. 2005. 11.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 수는 1,050만 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 수는 330만 명이다.

(다)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닷컴의 경우 2006. 8. 31. 회원 수(미니 홈피)는 1,876만 여명이고, 108만 개 클럽이 있다. 네이트의 경우 2005. 11.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 수는 950만 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 수는 100만 명이다.

(라) 2005. 5. 31.을 기준으로 피고 야후코리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된 클럽수는 100,271개이고 순이용자는 1,042,124명이다. 한편, 2006. 7.경 위 피고의 포털사이트 내에 개설된 블로그는 3,312,441개이고, 2,737,467명의 회원이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05. 11.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 수는 450만 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 수는 140만 명이다.

2. 관련 기사 게재로 인한 불법행위

가. 인정 사실

갑 3호증의 1~4, 6호증, 갑 4호증의 1~5, 갑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와 관련된 기사(이하 '원고 관련 기사'라고 한다)를 자신들의 뉴스 서비스란에 게재하거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엔에이치엔

(가) 브레이크뉴스 기자 정□□이 작성한 '현대판 베르테르, 서모양의 죽음에 슬퍼하는 네티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2005. 5. 11. 02:47경에, 위 기자가 작성한 '현대판 베르테르, S양죽음과 네티즌 추모열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같은 날 10:59경에 각 게재되었는데, 위 기사는,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의 요지를 소개하고, 네티즌들이 남자의 변명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한 여자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남자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현상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기사에 대하여 "기자이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시길", "당장 기사 지우시지. 가끔 올라오는 김○○ 두둔하는 모습 다 김○○ 측근으로밖에 안 보임" 등 정□□ 기자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나) 같은 달 12. 09:48경 "[쉼표,]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 최□□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을 소개하면서, '위 사연으로 인하여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5. 11. 오후 현재 서○○의 미니홈피에 무려 11만 4,000명의 네티즌이 방문하여 서씨를 추모하고 비정한 김씨를 성토하고 있다.'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에는 서씨를 추모하는 카페가 5곳이 개설되었는데, 회원 수가 1만여 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씨가 숨진 서울 화곡동에서 촛불집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는 내용을 싣고 있는데, 기사 중간에 서○○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서○○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싣고 있다. 위 기사에 "짐승만도 못한 개자식 김○○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김○○씨는 주소 지웠구요 http://cyworld.nate.com/○○○ 여기 추모게시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네티즌이 도웁시

다" 등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다) 같은 날 13:28경 게시된 '자살한 내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는 김모씨가 서모씨를 사귀던 중 배신하였고, 서모씨의 어머니는 이에 대하여 김씨를 나무라던 중 고소를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으나, 김씨는 서씨의 합의를 차갑게 거절하여, 결국 서씨가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 및 위 사연이 인터넷상으로 급속히 퍼져 피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집계한 급상승 검색어 2위에 오르고 12일 8만여 명의 네티즌들이 서씨의 미니홈피를 방문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 위 기사에도 원고를 비난하는 많은 댓글들이 달렸다.

(라) 같은 달 14. 09:54경 제공된 '딸 자살 억울함 호소한 미니홈피,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기자 김△△의 기사는 이 사건 게시물의 요지와 함께 네티즌들의 인터넷 댓글 폭력문제를 지적한 한국방송의 '뉴스타임' 프로그램(2005. 5. 12. 방영)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가) 2005. 5. 8. 14:56경 '자살한 딸 유서 인터넷공개 파문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 김◇◇의 기사가 뉴스면 사회란에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서는 '김모씨', '서모씨'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을 유서 일부의 사진과 함께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하루 34,400명에 이르는 많은 네티즌들이 서씨의 미니홈피를 방문하여 서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함께 눈물을 흘리거나 비정한 김씨의 행각을 성토하고 있다' '혼인을 빙자해 서씨에게 자살을 택하게 한 김씨를 찾아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는 글도 연달아 오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씨의 실명 등 신상을 퍼뜨리고 있으며,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생을 마감한 한 여성을 위해서 반드시 김씨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기사의 첫머리에는 서○○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주소가 나타나 있는 위 서○○의 미니홈피 초기화면의 사진이 실려 있고, 원래 기사에는 없는 "[인터넷팀 2급 정보]"라는 문구도 부가되어 있다.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 기사에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자 댓글을 삭제하고 댓글창을 폐쇄하였다.

(나) 같은 날 15:02경 '서○○의 자살사건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 이□□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데 위 기사의 첫머리에는 원래 기사에는 없는 "[블로그팀 2급 정보]"라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다. 이 기사는 "싸가지라고는 1g만큼도 없는 김모씨라는 인간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온 여자(서○○씨)와 결혼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어왔고, 임신을 하자 여자를 버렸다. 두 번째 임신 때는 '자기 아이가 맞느냐' '단순히 정자 덩어리일 뿐'이라는 극언까지 해댔다. 한편, 그 싸가지 없는 김모씨의 실명과 인적사항이 벌써 공개되어 유포되고 있는 중이다. 공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는 싸가지 없는 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짓

밟히게 되어 있는 게 …. 인터넷의 속성이다. 막을 수도 없고 … . 인터넷은 그렇게 민중적이고 감정적인 매체다. 어떨 땐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서○○씨 사건의 싸가지 없는 김모씨처럼 … 그렇게 짓밟혀도 싸다는 생각이 든다. 김모씨의 변명이 궁금해진다. 그런데 만약 그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면? 인터넷은 참 무섭다. 침묵하는 자는 매장당하는 곳이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게시물의 전문을 옮겨 실은 다음, 끝 부분에 서○○의 생전 사진을 덧붙였다. 이 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고(2005. 5. 11.경 출력한 증거자료에는 댓글이 존재하지만 2005. 7. 16.경 출력한 증거자료에는 댓글이 삭제되고 남아있지 않다), 관련 카페가 링크(연결)되어 있다.

(다) 같은 달 11. 20:04경 '[쉼표,]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 최□□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라) 같은 달 12. 13:32경 '자살한 내 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마) 같은 달 12. 15:52경 "[클릭! 이주일의 키워드]한국 스포츠카 자존심 씽"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위 기사에서는 검색어 순위 6위에 오른 '서○○' 사례를 미니홈페이지에 오른 사연이 네티즌들에 의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인터넷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위 기사는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검색분석 실장인 조희제가 작성하여 동아일보에 기고한 것이다.

(3)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가) 2005. 5. 13. 19:47경 '「억울하게 죽은 내 딸」미니홈피글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스타뉴스 기자 성명불상자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 사건 게시물 및 네티즌들의 인터넷 댓글 폭력문제를 지적한 한국방송의 '뉴스타임'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뉴스타임'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고, 서○○의 미니홈피에도 A씨(이 기사에서는 서○○의 남자 친구를 이렇게 표현함)를 비난하고 KBS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에도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다.

(나) 2005. 5. 31. 14:00경 '그리운 사람은 갔어도 미니홈피는 남아'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이○○ 기자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데, 서모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로부터 버림받자 뱃속의 아기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버려 사이버공간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을 미니홈피가 망자와의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로 들고 있다.

(4) 피고 야후코리아

(가) 2005. 5. 11. 18:54경 '[쉼표,]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 최□□의 기사가 '야후'의 뉴스서비스를 통하여 네티즌들에게 제공되었다.

(나) 같은 달 12. 02:53경 '자살한 내 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가 네티즌에게 제공되었다.

나. 피고 엔에이치엔,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1) 원고 관련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들은, '원고가 망인과 사귀던 중 혼인을 전제로 망인과 성관계를 맺어 망인으로 하여금 2번이나 임신을 하도록 하고도 무책임하게 연락을 끊었고,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에게도 매몰차게 대해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위 기사들은 그 내용의 진실 여부[7]와 관계없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기사들 중에는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원고의 신원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이를 전재하였다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기사들이 비록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최□□의 기사와 김◇◇의 기사에는 서○○의 실명, 사진,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미니홈피의 초기화면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와 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기사에서 말하는 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의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하거나 그 기사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이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피고들이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배포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5,000 내지 10,000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 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티즌들

---

7) 갑 11호증(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식회사 SBS로 하여금 "한 남성이 상대 여성을 두 번이나 임신시키고... 등으로 방송했는데, 사실확인 결과, 이 남성은 상대여성을 임신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에 나타난 서○○의 임신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에게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 교환 또는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피고들은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편집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 · 사회 · 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 · 화제성 · 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 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취재의 면에서 살피건대, 피고들이 자체 취재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처럼 취재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는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한편,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은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피고들이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들과 사이에 송고된 기사내용 그 자체에 대하여 수정 · 변경을 가할 수 없는 대신 그 기사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과 위 언론사들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송고된 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 가능한 상태로 두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피고들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들이 유사 편집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 모두가 원고 관련 기사에 대하여 제목을 붙이고 게재 여부, 위치 및 기간 등을 정하여(이하 '유사 편집행위'라고 한다)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들은 원고 관

련 기사에 대하여 유사 편집행위를 한바 없이 단순히 정보전달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다만,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5. 5. 8. 14:56경 게재한 '자살한 딸 유서 인터넷공개 파문 일파만파' 기사에 대해서는 편집판 게재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나) 피고 엔에이치엔

갑 4호증의 1~5, 을나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① 브레이크뉴스 정□□ 기자가 '현대판 베르테르, S양 죽음과 네티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2005. 5. 10. 10:46 자사의 인터넷판에 입력하였음에도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5. 11. 02:47경에 '현대판 베르테르, 서모양의 죽음에 슬퍼하는 네티즌'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10:59경에 '현대판 베르테르, S양 죽음과 네티즌 추모 열기'라는 제목으로 각 게재한 사실, ② 피고 엔에이치엔이 게재한 위 각 관련 기사들에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엔에이치엔이 원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에 의해 송고된 대로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제목 등을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쿠키뉴스 기자 김◇◇가 작성하여 2005. 5. 8. 14:49경 자사 인터넷판에 입력한 '자살한 딸 유서 인터넷공개 파문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편집판에 게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김◇◇ 기자의 '자살한 딸 유서 인터넷공개 파문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15:02경 '서○○의 자살사건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 이□□의 기사에 당초 기사에는 없는 "[인터넷팀 2급정보], [블로그팀 2급정보]"라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는 사실, ② '서○○의 자살사건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 이□□의 기사에 2005. 5. 10.~2005. 5. 11. 사이에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린 사실(위 피고는 편집판에 올리지 않은 위 기사에는 댓글 창이 열리지 않으므로 네티즌에 의한 명예훼손의 글이 게재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갑 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사에도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이를 사후에 위 피고가 삭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편집판에 올리지 않은 기사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위 기사 또한 편집판에 게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원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에 의해 송고된 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나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기사 제목을 특정 영역에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디어 다음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게재한 원고 관련 기사에도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에 의해 송고된 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제목 등을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트 뉴스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피고 야후코리아

피고 야후코리아가 2005. 5. 11. 18:54경 '[쉼표,]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 최□□의 기사(2005. 7. 16. 출력한 갑 6호증의 1에는 댓글이 없음)를, 같은 달 12. 02:53경 '자살한 내 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2005. 7. 16. 출력한 갑 6호증의 2에는 3개의 댓글만 있음)를 각 야후미디어를 통하여 네티즌이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사들에는 다른 피고들이 게시한 기사들과는 달리 댓글이 거의 달리지 않았고(따라서 을라 3호증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댓글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위 기사들을 검색한 회원이 달아놓은 것으로 보인다), 위 최□□이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게시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2005. 5. 11. 18:54)에 피고 야후코리아에도 위 기사가 게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야후코리아가 위 기사들의 제목을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야후미디어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관련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피고 엔에이치엔,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 관련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유사 편집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기사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게시물 등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

가. 인정사실

갑 3호증의 2, 5, 갑 4호증의 1~7, 갑 5호증의 1~4, 갑 6호증의 3, 갑 7호증의 1~4, 갑 18호증, 을가 2호증, 을나 2, 10, 11, 12호증, 을다 2호증의 1, 2, 을다 4호증, 을라 2, 3호증, 을라 10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엔에이치엔

(가) 네이버 뉴스에 게재한 브레이크뉴스 기자 정□□ 작성의 '현대판 베르테르, 서모양의 죽음에 슬퍼

하는 네티즌'이라는 제목의 기사, 조선일보 기자 최□□ 작성의 "[쉼표,]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작성의 '자살한 내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스타뉴스 기자 김△△ 작성의 '딸 자살 억울함 호소한 미니홈피,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에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나) '네이버지식검색' 서비스란에 '서○○가 누구에요?', '김○○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고 서○○씨를 자살로 몰고간 국민대 김○○ 아직 살아있나요' 또는 '고 서○○ 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김○○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의 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소개, 서○○의 미니홈피 주소, 원고의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의 글들이 게시되었다.

(다) 블로그 서비스에서는, '연희낭자', '백수광부', '희야뽀뽀' 등의 인터넷 가명(ID)을 쓰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건 원고 관련 뉴스기사, 동영상, 서○○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 원고의 신상명세 및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또한, 위 피고의 카페 서비스에서는 '○○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쓰레기 김○○의 사진입니다', '05학번이고 ○○○○ ○○○에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학번은 05학번인데 나이는 많다고 해요. 빠른 76년생 이름은 김○○구요. 이 남자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람의 만행을 천하에 알리고 싶어요.' 등 원고의 사직서, 사진,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이 담긴 글들이 게시되었고, 거기에 원고를 비방하는 많은 댓글들이 달리게 되었다.

⑵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가) 뉴스 서비스인 미디어다음에 게재된 '서○○의 자살사건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 이□□의 기사에 원고에 대한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고, 관련 카페가 링크되어 있었다.

(나) 검색 서비스 창에 '김○○'를 입력할 경우 '네티즌의 선택란에-1. 김○○사진, 2. 서○○, 3. 김◎◎, 4. ○○대김○○, 5. 서○○김○○, 6. 김○○채팅내용, 7. 김○○싸이 8. 개똥녀, 9. 나◎◎, 10. 김▽▽'라는 검색결과가 표시되었고, '서○○'를 입력할 경우 '네티즌의 선택-1. 서○○싸이월드, 2. 김○○, 3. 개똥녀, 4. 서○○김○○, 5. 싸이홈피, 6. 서○○의남자친구, 7. 서○○세븐데이즈, 8. 유▽▽, 9. 서○○싸이, 10. 서○○미니홈피'의 검색결과가 표시되었다.

(다) 카페 서비스란을 통하여 '故서○○님을 추모하는 모임(서울)', '서○○님을 추모하는 모임', '故'서○○씨 사랑지킴이', '김○○ 넌 장가 다갔어 각오해라' 등의 카페가 개설되어 원고의 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사진 등이 다수 게재되었고, 서○○를 추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글이 게시되어 있다.

(라)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티 서비스 중 '아고라토론방'에는 '네티즌 청원, 고 서○○님의 부모님 돕기 운동 - 김＊＊공개사과 촉구 15611명 서명 서명목표 17000명'라는 글이 게시된 후 '○○대 ○

○○○학과 김○○...', '남자이름이 김○○라네요...' 등의 많은 댓글이 게시되었다.

⑶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가) '네이트'의 뉴스 서비스란에 게시된 '「억울하게 죽은 내 딸」미니홈피글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스타뉴스 기자 성명불상자의 기사, '그리운 사람은 갔어도 미니홈피는 남아'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이○○기자의 기사에도 원고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나)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창에 '김○○'를 입력하면 검색창 아래의 '같은 생각 다른 검색' 란에 김○○를 검색한 분들은 '김◎◎, 서○○, ○○대학교' 등의 단어도 검색하였다는 안내문구가, '서○○'를 입력하면 위 '같은 생각 다른 검색' 란에 '김○○, 김◎◎, 세븐데이즈, 동아일보, 개똥녀' 등의 단어도 검색하였다는 안내문구가 검색결과로 나타났으며, 그와 함께 원고의 사진, 서○○의 유서, 영정사진, 미니홈피사진 등의 이미지, 원고의 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및 서○○의 사건을 이슈화하도록 촉구하는 네티즌 미니홈피, 클럽 등의 글들이 검색되었다.

(다) 개인 미니홈피 서비스인 '싸이월드' 내 서○○의 미니홈피에는 이 사건 게시물을 비롯하여 서○○ 명의로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못난 딸의 어머니로 부탁드립니다', '49제를 준비하며' 등 서○○ 유가족들이 게시한 글들과 방문객이 올린 원고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다수 게시되었고, 홍○○, 박○○, 최○○ 등 많은 다른 싸이월드 회원들의 미니홈피에도 위 서○○의 미니홈피에서 옮겨온 게시물들 및 원고의 사진, 이름, 학교, 전화번호, 전자메일계정, 회사 등의 정보가 게시되었다.

⑷ 피고 야후코리아

(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창에 '김○○'를 입력할 경우 원고의 사진, 사직원, 신상에 대한 정보 등과 함께 서○○를 네티즌 추천검색어로 추천한 내용이, '서○○'를 입력할 경우 서○○에 대한 기사,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유○○의 호소문, 서○○의 사진 및 영정사진, 원고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블로그 또는 클럽 주소 등의 검색결과가 표시되었고, 지식검색 서비스란에서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회사 주소 등 원고에 대한 신상 정보가 검색결과로 나타났다.

(나) 블로그 서비스란에서는 블로그 중에 원고에 대한 비난의 글과 서○○의 미니홈피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는 글 등이 다수 게재되었다.

⑸ 피고들의 일부 제한적인 자진 삭제

(가)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5. 16.경부터 원고의 실명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켰다.

(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쿠키뉴스 김◇◇ 기자의 기사를 독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편집판에 올리고 댓글 창을 개방한 지 3시간여 후 그 댓글에서 네티즌들이 싸이월드 서○○ 홈페이지에서 밝혀낸 김○○

실명을 밝히고 비판하기 시작하자, 위 기사를 편집판에서 내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삭제하였다. 이후 네티즌들이 위 피고의 토론방 서비스, 카페 서비스 등을 통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글들을 연속하여 게재하자, 위 피고는 원고 및 서○○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이 실린 글을 찾아 삭제하였다.

(다)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2005. 5. 7. 서○○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K' 군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상히 여겨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같은 달 8. 서○○ 유가족에게 위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니 위 미니홈피를 자진 폐쇄할 것을 요청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타 회원들의 미니홈피의 게시물들을 찾아 삭제하였다. 2005. 5. 21. 부터 같은 해 6. 30. 사이에 '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는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으니 이를 삭제해 달라 '는 김○○의 신고를 받고 그 중 2건을 삭제하였다.

(라) 피고 야후코리아는 2005. 5. 9.경부터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 원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인 위험이 큰 댓글들을 삭제하였다(위 피고가 자신의 뉴스 서비스란에 처음 원고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것은 2005. 5. 11.인바 그 이전에 삭제된 댓글들은 원고와 무관한 기사에 원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덧붙인 댓글들인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의 삭제 요구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미온적 대응

(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래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관련 게시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6. 27. 대리인 이○○을 통해서 피고 엔에이치엔,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피고 야후코리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면서 1.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2.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3.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하였다.

(다) 위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 고 답변하였다.

(7) 원고 관련 게시글 등의 잔존

(가) 피고 엔에이치엔

2005. 6. 25.경 출력한 지식검색 사이트에서의 검색화면에 원고 관련 게시물이 무수히 존재하였고, 2005. 7. 13., 7. 16.에 출력한 자료에도 원고를 비난하는 댓글이 그대로 남아 있다.

(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2005. 6. 하순경 출력된 갑 3호증의 5에 여전히 네티즌의 선택– 김○○사진, 서○○, 김◎◎, ○○대김◎◎, 서○○김○○ 등의 검색어가 나타나 있고, 2005. 7. 13.경에도 '아고라토론방' 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서

○○의 유가족을 돕고, 원고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취지의 서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글과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는 취지로 2005. 5. 8.부터 계속 올려진 댓글 16,800여 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2005. 7. 16. 출력한 원고 관련 뉴스기사 하단에 관련 카페가 링크되어 있었다.

(다)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05. 6.경 출력한 검색 사이트에서의 검색화면(기록 387쪽)에 원고 관련 게시물이 무수히 존재하였고, 2005. 7. 14., 7. 16.에 출력한 자료에도 원고를 비난하는 댓글이 그대로 남아 있다.

(라) 피고 야후코리아

2005. 6.경 출력한 검색 사이트에서의 검색화면에 원고 관련 게시물이 무수히 존재하였다.

(8) 원고의 제소 천명 및 피고들의 삭제 조치 등

(가) 원고는 2005. 7. 7.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임을 밝혔고, 기자회견 내용 등이 같은 날 아이뉴스 24에 보도되었다.

(나)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7. 8.경 원고와 서○○의 실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지식iN과 웹 영역에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그 일시경부터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원고와 관련한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였다.

(다)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5. 9.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카페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도 모티터링을 하여 원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라)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2005. 7. 18. 원고 관련 뉴스기사의 댓글창을 폐쇄하고, '김○○', '서○○'를 금칙어로 등록하여 검색을 차단하였으며, 2005. 8. 25. 유○○의 미니홈피 사용을 중지시켰다.

(마) 피고 야후코리아는 2005. 7. 8.경부터 커뮤니티와 지식검색 서비스 내에서 나타나는 원고의 신상에 관련한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바)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 운영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김○○'를 검색할 경우 원고와 관련된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판단 기준

피고들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게시물(편집되지 아니한 뉴스 기사,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카페 · 블로그 · 미니홈피 등에 게시된 글과 이에 대한 댓글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 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의 기술적 · 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공간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참조).

⑵ 판단

(가) 피해 발생의 인식 또는 예견 가능성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① 인터넷의 등장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영역이 확대되고 사생활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표현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공적인 관심사안과 같은 기준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원고 관련 게시물이라 한다)은 그 대부분이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하여 특정인을 비방, 공격할 목적으로 게시된 것임이 그 자체로 명백하여 누구라도 그 게시물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들은 뉴스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원고 관련 기사를 제공하였고, 피고 엔에이치엔,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기사를 재배치하기도 하여 뉴스 서비스 접속자들이 쉽게 위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기사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도록 한 점, ③ 네티즌들은 피고들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원고 관련 게시물을 검색하고 원고의 신상정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관련 게시물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여 피고들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고 댓글이 폭증한 점, ④ 블로그 ·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원고를 비방하는 글과 원고의 신상정보에 관한 글,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원고의 신상정보와 함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2005. 5. 11.에는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는 언론보도까지 있었던 점, ⑤ 피고들은 뉴스 기사를 포함한 게시물에 대한 검색 횟수와 댓글 수, 검색어 순위, 블로그 · 카페의 방문자 수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당해 게시물의 내용까지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 측의 요청이 있기 전에 위 서○○ 미니홈피의 폐쇄 요청,

뉴스 기사의 편집판 제외, 댓글 등 게시물의 삭제, 원고 실명의 검색어 순위 제외 등의 조치를 일부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늦어도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쿠키뉴스 김◇◇ 기자의 기사를 편집판에서 제외하면서 그 댓글을 삭제하고,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서○○ 유가족에게 위 미니홈피의 자진 폐쇄를 요청한 2005. 5. 8.부터 위와 같은 현상을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원고의 통지나 삭제 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련 게시물로 말미암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침해행위의 회피 가능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네티즌들과 체결한 약관에 의하여 게시물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삭제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고, 관련 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며,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커뮤니티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네티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에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비용 지출은 감수하여야 하는 점, ③ 피해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검색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른바 금칙어 설정[8](“김○○”나 “서○○”라는 한 단어로 금칙어로 설정하면 동명이인들에 대한 정보 검색도 차단될 것이므로, “김○○”로 검색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 김○○에 대한 정보 중 “김○○+서○○”, “김○○+자살”, “서○○+자살”의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는 차단되도록 조건을 설정하면 원고와 관련한 정보의 검색만이 차단될 것이고, 실제로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 운영의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김○○’를 검색할 경우 원고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등으로 편집되지 아니한 뉴스 기사를 포함하여 원고 관련 게시물의 검색을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점, ④ 그 밖의 원고 관련 게시물에 대하여도, 원고 측의 삭제 요청 이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 온 조치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를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2005. 5.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블로그 · 카페 등의 운영자 또는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피고들이 직접 이를 삭제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는 데 기술적 ·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시점에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피해 방지조치를 일거에 함으로써 피해의 추가 발생과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8) 특정 낱말을 선정하여 그 낱말로는 검색을 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낱말을 이용하여 검색하려 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성인인증 등)를 거치게 한다든지 검색결과를 제공하되 그 낱말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결과는 제공을 하지 않게 됨.

(다)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 확산에 관하여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또 그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들이 원고 관련 게시글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에서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 관련 게시글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하는 조치만을 취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5. 6. 27. 피고 엔에이치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에 대하여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게시물에 대하여 전면적인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원고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인 2005. 7. 8.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나마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입증자료를 수집한 2005. 7. 16.경에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관련 기사, 댓글, 검색결과 등이 피고들이 관리하는 영역 내에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원고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하였으므로 원고 관련 게시글 방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4, 을나 2,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다른 피고들에 비하여 이른 시점에 댓글 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는 삭제조치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6. 하순경 위 피고가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에서 여전히 '네티즌의 선택- 김○○사진, 서○○, 김◎◎, ○○대김◎◎, 서○○김○○' 등의 검색어가 나타나 있고, 2005. 7. 13.경에도 '아고라토론방'에 원고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면서 원고를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2005. 7. 16. 출력한 원고 관련 기사 하단에 관련 카페가 링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이행 가능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아래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다. 소 결

위와 같이 원고 관련 게시물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여 피고들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고,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려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도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 및 부작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삭제 또는 검색 차단 조치를 취하

지 않고, 뉴스 기사나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하거나 일정 부분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유○○ 등 원고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 관련 게시물 작성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피고들의 책임 범위

가. 피고들 상호간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작위 또는 부작위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네티즌들이 여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정보를 전파하는 이용현실을 고려할 때, 시간, 장소에 있어서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고 결과 발생에 있어서도 피고들의 행위가 경합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고의 · 과실에 기한 행위가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원인이 되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제각기 관리,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영역을 통하여 각자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비록 네티즌들이 피고들의 포털사이트 영역을 넘나들며 정보를 교환하였거나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시기가 근접해 있고 그 기사 내용이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 상호간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들의 책임 범위

(1)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 엔에이치엔,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원고 관련 기사 게재로 인한 불법행위와 피고들의 원고 관련 게시물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 관련 기사 · 게시물의 수와 그 내용 및 게시 기간,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규모, 피고들의 자체 삭제 노력의 정도에다가, 이 사건 게시물이 처음 게시된 서○○의 미니홈피가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싸이월드에 개설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이 처음 인터넷에 게시된 때로부터 두 달 가까이 경과하고 이미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이를 접한 이후인 2005. 6. 27.경에야 피

고들(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외)에게 원고 관련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다른 네티즌들에게 전파한 네티즌들,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거나 원고의 신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장소를 부주의하게 노출한 기사 작성자 등 원고의 명예훼손 결과가 발생 또는 확대되는 데 기여한 다른 관계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피고 엔에이치엔은 10,000,000원,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7,000,000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8,000,000원, 피고 야후코리아는 5,000,000원을 위자료로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⑵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이 널리 확산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원고나 원고의 집, 직장, 학교에 원고를 비난하는 전화를 하고, 원고의 직장이나 학교의 홈페이지에 원고를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원고가 다니는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바람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05. 5. 6.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도 한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였으며, 또한 네티즌들의 협박으로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원고의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소득으로 246,244,942원, 일실퇴직금으로 10,372,081원, 학비로 3,543,000원, 이사비용으로 1,150,000원, 치료비로 962,948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회사를 퇴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첫 뉴스 기사가 게시된 2005. 5. 8.보다 앞선 2005. 5. 6.인 점, 피고들로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뉴스 기사 등 표현물이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본 네티즌들이 원고의 회사, 학교 등에 전화하여 퇴사, 자퇴를 종용하고 원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협박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엔에이치엔은 10,000,000원,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7,000,000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8,000,000원, 피고 야후코리아는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피고 엔에이치엔은 5,000,000원,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피고 야후코리아는 각 4,000,000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3,000,000원)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05. 9. 2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5. 18.까지는 민법에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피고 엔에이치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각 5,000,000원,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3,000,000원, 피고 야후코리아 1,0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05. 9.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7. 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용 구

판사 김 성 수

판사 은 택

손해배상청구 사례 17

원고는 자신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날에야 피고의 보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의 장애가 아니므로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8. 14.자 판결 (2008가합1300) (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14일 신○○이 주식회사 강원민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강원민방이 2003년 11월 12일 20:20경 및 같은 달 13일 20:20경 「GTB 뉴스 820」 프로그램에서 '집중취재 살 썩는 뼈주사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통증 완화 주사를 남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부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방송일인 2003년 11월경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8년 1월 23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한 뒤, "원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된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2007년 10월 25일에야 비로소 피고의 허위 보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유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채권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1300 손해배상(기)등

원　　고 : 신 ○ ○

피　　고 : 주식회사 강원민방

변 론 종 결 : 2008. 7. 24.

판 결 선 고 : 2008. 8. 14.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1,496,262,621원과 그 중 100,170,687원에 대하여는 2003. 11. 14.부터, 347,183,601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320,866,67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343,487,634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384,554,029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GTB 뉴스 820" 프로그램의 초기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gtb.co.kr)에 별지 정정보도요구문을 30일간 게재하라.

3. 만일 피고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 ○○동에서 '신 ○○○○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일컫는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GTB 뉴스 820"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2003. 11. 12. 20:20경과 2003. 11. 13. 20:20경 "GTB 뉴스 820" 프로그램에서 "집중취재 살 썩

는 뼈주사 논란"이라는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일컫는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3. 11. 13. 11:20경과 2003. 11. 14. 11:20경 각 전날 방송을 다시 방송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기획 및 제작

가)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통증 완화 주사(속칭 '뼈주사')를 남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부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제보를 접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부도덕한 의료 행위 및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기획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 남용 및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조○○ 및 그 가족들, 이 사건 의원의 전 직원 백○○, 의사 김○○, 조○○ 등을 취재 · 보도하였다.

3)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03. 11. 12.자 방송

춘천시내에 있는 이 사건 의원은 환자들이 관광버스를 전세해 올 정도로 많아서, 지난 한 해 진료건수가 5만 900건에 이른다.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원고가 무릎 관절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장노년층을 상대로 시술하는 통증 제거 뼈주사 때문이다. 그러나 이 뼈주사는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여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약품이다.

실제 이 사건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이 모 할머니, 40살 김 모씨, 56살 조 모씨는 살이 갑자기 썩어들어가는 괴사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치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요인으로 위 질환이 발병한 것이라고 말한다.

나) 2003. 11. 13.자 방송

이 사건 의원의 진료건수는 규모가 비슷한 다른 정형외과 병원의 5배에 이른다. 이 사건 의원에서 통증을 완화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술하여 주기 때문이다.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한 통증 완화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함에도, 원고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환자들에게도 위 주사를 남용, 시술하고 있다. 원고는 며칠 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환자에게 위 주사를 다시 시술하고, 당뇨병 환자에게 위 주사를 시술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원고는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합의를 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방송 후의 정황

1) 이 사건 방송에 '이 모 할머니'로 표시된 이○○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1가단13047호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16. '원고는 이○○에게 27,128,773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13.부터 2004. 1.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판결 중 원고(신○○) 패소 부분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사건은 결국 이○○ 패소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춘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로부터 2006. 8. 24. 벌금 7,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죄에 대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 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11.경 "GTB 뉴스 820"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통증 완화 주사를 남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부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환자가 감소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정정보도 등을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소멸시효 완성)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방송일인 2003. 11.경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8. 1.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된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2007. 10. 25.에야 비로소 피고의 허위 보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유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채권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

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김 성 곤
판 사 이 종 문
판 사 권 기 백

〈별지〉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손해배상청구 사례 18

사건의 진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고소인이나 진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0.자 판결 (2007가합90956)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008년 9월 10일 김○○ 외 3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문화방송이 2005년 12월 14일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서울경찰청 연금매장서 불법카드깡 카메라 출동 보도 후 직원들 강압조사 물의'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5일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불법카드깡 보도 관련 경찰이 제보자 색출 위해 강압조사 검찰 전면수사'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7일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서울지방경찰청 매장 불법 카드깡 실태 제보자 강압수사 경관 기소'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 김○○가 서울경찰청 구내매점의 카드깡 사건에 대한 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손해배상과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 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 김○○의 이름을 명시한 바는 없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보도 이전에 서울지방경찰청 연금매장에서의 카드깡 사건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보도에서 "카드깡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또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위"라고 칭하며 원고 김○○가 수사하면서 문제된 사건을 언급한 이상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 또는 원고 김○○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원고 김○○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김모 경위'가 원고 김○○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김○○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 상당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보

도는 수사 경찰이 참고인 등을 조사하면서 폭행하거나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보도는 경찰인 원고 김○○의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 김○○ 개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원고 김○○가 그 진실 여부를 극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 진○○이나 이○○는 고소나 진정 당시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고 이후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낮으며 보도 내용이 진○○, 이○○를 인터뷰한 후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바로 보도를 할 만큼 촉각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들은 원고 김○○나 다른 수사관 등 관련자들에게 그 사건의 진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는 노력 없이 진○○, 이○○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위 각 기사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7가합90956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기)

원　　고 : 1. 김 ○ ○

2. 조 ○ ○

3. 김 □ □

4. 김 ◇ ◇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최 문 순

2. 최 ○ ○

3. 이 ◇ ◇

4. 박 ○ ○

5. 이 △ △

6. 장 ○ ○

7. 김 △ △

8. 박 □ □

9. 김 ☆ ☆

변 론 종 결 : 2008. 8. 27.

판 결 선 고 : 2008. 9. 10.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조○○, 김□□, 김◇◇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14.부터 2008.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1 기재 추후보도문을 위 피고의 21:00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그 제목을 화면의 상단에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본문 내용을 통상의 뉴스 보도의 내용과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고, 이를 다른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나. 만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가항 기재 기한 내에 위 추후보도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 김○○에게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위 추후보도문을 보도한 날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금 200,000,000원, 원고 조○○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별지2 기재 추후보도요구문을 위 피고의 21:00 'MBC 뉴스데스크' 시간의 시작 부분에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고, 다른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만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기한 내에 위 추후보도요구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1) 원고 김○○는 2005. 2.부터 2007. 2.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3계 경제1팀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조○○는 위 김○○의 처, 원고 김□□, 김◇◇는 위 김○○의 딸이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엠비씨(MBC)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문화방송은 2005. 12. 14.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서울경찰청 연금매장서 불법 카드깡 카메라출동 보도 후 직원들 강압조사 물의"라는 제목하에 별지3 기재 보도문(이하 '진○○ 관련 보도'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고, 그 이전인 같은 날 오전 7:17경 및 9:39경 및 2005. 12. 20. 21:40경에도 위 보도문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방송되었다.

3) 피고 문화방송은 2005. 12. 15.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불법카드깡 보도 관련 경찰이 제보자 색출 위해 강압조사 검찰 전면수사"라는 제목 하에 별지4 기재 보도문(이하 '이○○ 관련 보도'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4) 피고 문화방송은 2006. 2. 17.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매장 불법 카드깡 실태 제보자 강압수사 경관 기소"라는 제목 하에 별지5 기재 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5) 피고 문화방송은 진○○ 관련 보도를 하기 전인 2005. 11. 22. 및 2005. 12. 13.에 진○○을 취재하였고, 위 22일에는 진○○이 성추행 부분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타 신문사에서 진○○을 취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13일에 성추행 부분도 보도하도록 진○○을 설득하여 인터뷰 후 바로 다음날 그 내용을 보도하였고, 2005. 12. 15. 19:00경 이○○를 취재한 후 같은 날 21:30경 이○○ 관련 보도를 위와 같이 방송하였다.

6) 진○○이 검찰에 제출한 최초의 고소장에는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가혹행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2005. 11. 16. 남편인 정◇◇과 함께 서울지경 경무과장실에서 원고 김○○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이○○가 2005. 12. 5.경 경찰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낸 진정서에도 원고 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밀어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7) 검찰은 2006. 2. 16. 원고 김○○를 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의 혐의로 이 법원 2006고합132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에는 위 2), 3)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8) 위 법원은 2006. 10. 26. 원고 김○○의 진○○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진○○에 대한 독직가혹행위 및 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등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은 2007. 8. 30. 위 유죄의 점 중 원고 김○○가 진

○○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고 김○○만이 상고하여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김○○의 이름을 명시한 바는 없으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보도 이전에 서울지방경찰청 연금매장에서의 카드깡 사건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보도에서 "카드깡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또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위"라고 칭하며 원고 김○○가 수사하면서 문제된 사건을 언급한 이상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 또는 원고 김○○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원고 김○○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김모 경위'가 원고 김○○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김○○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위 각 보도의 허위성 여부는 원고 김○○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등에게 가혹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이 법원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 무죄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보도 내용은 일응 허위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공익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도는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경찰 간부인 원고 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2)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①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②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를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도는 수사 경찰이 참고인 등을 조사하면서 폭행하거나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보도는 경찰인 원고 김○○의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 김○○ 개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원고 김○○가 그 진실 여부를 극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 진○○이나 이○○는 고소나 진정 당시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고 이후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낮으며 보도 내용이 진○○, 이○○를 인터뷰한 후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바로 보도를 할 만큼 촉각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들은 원고 김○○나 다른 수사관 등 관련자들에게 그 사건의 진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는 노력 없이 진○○, 이○○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위 각 기사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보도는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진실이

라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한 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고 김○○는 피고들의 허위보도와 검찰의 의도적인 기소로 20개월 동안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원고 조○○는 피고들의 보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2005. 12.부터 신장내과, 류마티스,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등으로 현재까지의 병원비로만 약 25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평생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을 앓게 되었으므로 그 비용을, 원고 김□□은 피고들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호주 시드니에서 약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약 금 2,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원고 김◇◇도 정신적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여 한의원 진료를 받아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을 각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위자료

위 각 보도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 김○○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원고 김○○의 지위, 경력, 가족관계, 피고들이 언론기관 또는 기자로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그 밖에 이 사건 각 보도가 피고 문화방송의 9시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점 및 한편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 김○○를 단순히 경찰관 또는 서울 경찰청 김모 경위로만 지칭한 점, 원고 김○○도 일부 공무집행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 사건 보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2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초 불법행위일인 2005. 12.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후보도 청구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그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1 기재 추후보도문을 위 피고의 21:00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그

제목을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의 상단에,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 본문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본문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다른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만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기한 내에 위 추후보도문을 보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 김○○에게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위 추후보도문을 보도하는 날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박 종 문
판 사 남 인 수
판 사 임 수 연

〈별지 1〉 추후보도문

• 제 목 : 서울경찰청 김모 경위의 성추행 및 강압조사 사건 무죄판결 선고
• 본 문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지난 2005. 12.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0. 2006. 2. 17. MBC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울경찰청 김모 경위가 서울경찰청 구내매점의 카드깡 사건에 대한 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서 위 보도와 달리 김모 경위는 수사과정에서 여경을 동행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성추행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별지 2〉 추후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3〉 기사내용 생략 – 편집자 주

손해배상청구 사례 19

원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지 못하는 한 제3자로서는 '중국교포 조모(53,여)' 정도의 표현으로는 원고를 지칭한다고 인식하기 불가능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16.자 판결 (2008가소174816)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명호판사는 2008년 9월 16일 조○○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2008년 4월 29일 19:00경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단돈 350원으로 자녀납치 전화사기범 잡아' 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자녀납치를 미끼로 전화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도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보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방송내용을 접하는 일반인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그 방송보도만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내용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용의자가 원고임을 특징할 수 있는 내용은 '중국교포 조모(53,여)' 이고, 이 정도의 표현으로는 원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지 못하는 한 제3자로서는 위 표현이 원고를 지칭한다고 인식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원고의 지인들은 주로 조선족으로서 이 정도의 특정만으로도 조선족 사회에서는 방송내용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조선족 사회에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만으로도 원고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가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살고 있는 통상의 조선족들로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특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만일 이 사건 방송만으로 그 용의자가 원고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원고의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원고와 매우 민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이들은 이 사건 방송내용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이 문제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고 판시한 뒤, "방송내용만으로는 이 보도를 접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방송내용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인식하기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방송내용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8가소174816 손해배상(기)
원　　고 : 조○○
피　　고 : 한국방송공사
변론종결 : 2008. 9. 9.
판결선고 : 2008. 9. 16.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9.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중국에 거주하던 원고는 2008. 3. 18.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황○○은 2008. 4.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국민은행 계좌(○○-○○)에 35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나. 황○○은 위와 같은 전화를 받던 도중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경찰에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사건 신고를 한 다음 위 국민은행 계좌의 특정을 위해 2회에 걸쳐 각각 350원씩 합계 7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였고, 위 국민은행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차○○은 2008. 4. 24.경 국민은행 홍제지점에서 현금카드로 김○○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5만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국민은행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관계로 2회에 걸쳐

인출을 실패한 다음 그곳 청원경찰에게 현금인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다시 2회에 걸쳐 인출을 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체포당시 원고는 위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외에 3개의 카드, 10여 개의 카드번호,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08. 4. 29. 7시경 경찰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 용의자들이 요구한 천만원 대신 350원을 두차례 입금해 경찰이 역으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24일 서울시 홍제동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을 하려던 전화사기 용의자 53살 조모 씨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전화사기의 대부분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용의자 특정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황씨의 기지 덕분에 범행의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는 내용의 방송보도를 하였다.

마. 청주지방검찰청은 2008. 5. 22.경 원고와 차○○을 무혐의처리하면서 그 날 피고와 차○○을 석방하였다.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그 2008. 6. 5.자 조정결과에 따라 피고는 "저희 KBS는 지난 4월 29일 [단돈 350원으로 전화납치사기 용의자 검거]라는 제목으로 중국교포 조모(53, 여)씨가 자녀납치를 빌미로 전화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당사자인 조모 여인은 사기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모 여인은 지난 5월 22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급한 보도로 당사자의 명예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였다.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내용

피고는 2008. 4. 29. 7시경 뉴스광장 "단돈 350원으로 자녀납치 전화사기범 잡아"라는 제목으로 뉴스보도를 함으로써 전화사기와는 전혀 무관한 원고를 비록 이름만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씨, 년령, 주소, 성별, 중국교포라는 등으로 원고라는 것을 알게 하였고, 영락 없는 전화사기범으로 묘사했으며, 구속사실을 모르던 주변 사람으로부터 구속사실을 알게 하였으며, 뉴스 보도로 인해 시청자와 주위 사람들로 하여 범죄자라는 정확도와 깊은 인상으로 남게 하였다. 원고의 정신적인 타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시켰음으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심리상의 충격, 정신상의 타격과 심대한 명예훼손을 입은바, 금전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상당한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가 한 "홍제동의 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중국교포 조모(53,여)"라는 표현으로 본건 전화사기 범행의 용의자를 언급한 것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방송보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방송내용을 접하는 일반인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그 방송보도만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내용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용의자가 원고임을 특징할 수 있는 내용은 "중국교포 조모(53,여)"이고, 이 정도의 표현으로는 원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지 못하는 한 제3자로서는 위 표현이 원고를 지칭한다고 인식하기는 불가능하다.

원고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원고의 지인들은 주로 조선족으로서 이 정도의 특정만으로도 조선족 사회에서는 위 방송내용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조선족 사회에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만으로도 원고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가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살고 있는 통상의 조선족들로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특정만으로는 위 기사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만일 위 방송만으로 그 용의자가 원고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원고의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원고와 매우 민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이들은 위 방송내용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위 문제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위 방송내용만으로는 위 보도를 접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 방송내용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인식하기는 부족하므로, 위 방송내용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 명 호

손해배상청구 사례 20

원고는 다수의 교인들이 속해있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적 인물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원고의 얼굴이 방송되도록 한 것에는 위법성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31.자 판결 (2008가합2419)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08년 10월 31일 ○○교회 외 1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를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2007년 5월 8일 23:10경 「PD수첩」 프로그램 '○○○의 수상한 비밀'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5일 23:10경 「PD수첩」 프로그램 '○○○ 사그러들지 않는 파문'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①해머로 문을 부수는 장면과 관련하여 "만약 ◇◇◇◇의 직원이 원고 교회 교인의 지시에 따라 시정장치를 부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정장치를 부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위 화면과 함께 '폭행'이라는 자막이 방송된 점,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상당수가 가출, 이혼하거나 부모를 고소하는 등 자신의 가족들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인바 '폭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한다'라는 자막과 함께 방송된 위 화면은 원고 교회의 교인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폭행하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부수고 있는 장면으로 오인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위 방송부분은 허위방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②식물인간이 된 교인과 벚꽃놀이 부분과 관련하여 "반론보도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구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들이 정○○가 병실에 입원한 모습과 원고 이○○의 벚꽃놀이 모습을 교차로 편집하여 방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부정적 평가나 의견의 전달일 뿐 이로써 어떠한 사실적 주장을 한 것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③가출, 이혼, 고소 부분과 관련하여 "방송에서 '대부분'의 원고 교회 교인들이 학교, 직장, 가정을 버리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전체 교인 중 어느 정도 숫자에 이르

러야 '대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명확치 않는 등 피고들의 가치판단이 담긴 주관적 표현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방송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④김○○ 인터뷰 부분과 관련하여 "김○○이 원고 교회의 전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교인인 것처럼 방송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김○○이 피고 문화방송의 강○○ PD에게 원고 교회의 전 교인인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인데 딸의 신변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원고 교회의 전 교인인 것처럼 방송하여 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피고들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김○○의 인터뷰장면을 '전 ○○○ 교인'이라는 자막과 함께 내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⑤교회건물 매입 관련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이 15억 원 정도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 스스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실수로 위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40억 원으로 방송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입대금 부분에 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⑥파출소 CCTV 부분과 관련하여 "방송의 화면과 성우의 나레이션을 종합하여 보면 화면에서 이□□로 보여지는 여자를 파출소 밖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은 오빠인 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이□□를 끌고 가려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며, 피고들은 이◇◇의 인터뷰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역시 허위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⑦영생권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이○○가 새해 인사를 하러 온 다른 교인들에게 '축보화', '축천국', '축발전'이라고 각 기재한 수첩을 건네면서 덕담을 함에 있어 김△△에게는 '축영생'이라고 기재한 수첩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는 자신을 믿는 김△△ 역시 영생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수첩을 건네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방송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실이라고 할 것이며, 위 방송부분에서 영생 '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⑧'사이비' 언급 부분과 관련하여 "이 방송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원고 교회에 대한 비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⑨출입통제 부분과 관련하여 "방송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는데, 제1차 방송 이후 원고 교회의 신입 교인들의 수가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갑 제30호증의 기재는 제1차 방송이 있기 이전인 2006년 9월 하순경 원고 교회가 이미 지문인식장치를 출입문에 설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원고 교회가 제1차 방송 이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호를 더 강화하거나 불침번을 세운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방송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⑩헌금 관련 부분과 관련하여 "이 방송부분을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원고 교회의 모든 헌금은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 헌금액의 부서별 통계에 따라 등수를 매긴 다음 시상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교회는 헌금납부를 경쟁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재진의 의견을 원고 교회의 전 교인들의 인터뷰를 빌어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위

의견의 근거가 되는 위 사실들을 허위라고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만으로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 밖에, 재판부는 ⑪서울일보 보도 및 문화관광부 담당자 인터뷰 부분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원고 교회의 위법행위 인정여부에 대하여 정식으로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통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한 적이 없는 사실, 서울일보의 취재진은 피고들의 제1차 방송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교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서 기사를 작성하였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후 피고 문화방송 측의 반론보도를 게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 교회가 '말도 안되는 거짓들로 신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취재진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의견의 근거가 되는 위 사실들을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만으로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⑫원고 이○○의 초상권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원고 이○○는 다수의 교인들이 속해있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써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적 인물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교육용 동영상 및 벚꽃놀이 장면을 통해 원고 이○○의 얼굴이 방송되도록 한 것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⑬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방송 중 정정방송의 범위에 포함되는 허위부분은 위법하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나, 위와 같은 허위방송 부분은 이 사건 방송 전체의 내용을 보아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정정방송을 하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여지고 별도의 금전적 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손해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2419 손해배상등

원　　고 : 1. ○○교회

2. 이 ○ ○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송 ○ ○

변론종결 : 2008. 10. 7.

판결선고 : 2008. 10. 31.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가.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 PD수첩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방송"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방송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나. 인터넷상 주소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의 PD수첩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PD수첩 방송내용에 덧붙여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 정정방송을 함께 게시하도록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1의 가, 나 항 각 기재 기한 내에 위 정정방송을 방송 또는 게시하지 않을 경우 원고 ○○교회에게 각 그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위 정정방송을 방송 또는 게시하는 날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만 한다)에게 9억 원, 원고 이○○에게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고만 한다)은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MBC) 텔레비전 피디(PD)수첩 프로그램(이하 'PD수첩'이라고만 한다)에 연속 5주간 위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인터넷상 주소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의 PD수첩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PD수첩 방송내용을 이 판결을 송달받은 즉시 삭제하고, 기타 테이프, 영상물의 형태로 제작, 배포, 방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피고 문화방송이 위 방송의무 및 '다시보기'란 삭제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 교회에게 위 방송의무 이행 완료시까지는 매주 1억 원씩, 위 다시보기 게시판 삭제의무의 이행완료시까지는 매일 1,00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1984년 설립된 기독교 단체로써 여러 지교회와 부속 기구를 두고 있으며, 원고 이○○는 원고 교회의 총회장으로서 대표자이다.

나. 피고 문화방송은 2007. 5. 8. 오후 11:10부터 약 1시간 동안 '○○○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제724회 PD수첩(이하 '제1차 방송'이라고 한다)을 방영하였고, 다시 2007. 12. 25. 오후 11:10부터 약 1시간 동안 '○○○ 사그러들지 않는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송년특집 제753회 PD수첩(이하 '제2차 방송'이라고 한다)을 방영(이하 위 두 방송을 총칭하여 '이 사건 방송'이라고만 한다)하였으며, 피고 송○○은 위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한 프로듀서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 교회의 교리를 접한 뒤에 가출한 자식이나 배우자를 찾아달라는 여러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원고 교회의 교리의 문제점 및 그것이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헤치고자 이 사건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 교회 내부의 교육용 동영상 '이긴자(원고 이○○를 일컫음)의 발자취'를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중 일부를 방영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송부분에는 원고 이○○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났다.

마. 원고 이○○는 피고 문화방송의 취재진의 취재요청에 응하였고 이 사건 방송 도중 원고 이○○의 인터뷰 내용도 일부 방영되었다.

바. 피고 문화방송은 인터넷상 주소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의 PD수첩의 '다시보기'(이하 "이 사건 '다시보기' 란"이라고 한다)에 제1, 2차 방송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사. 제1차 방송이 나간 이후 원고 교회 교인들의 가족들이 원고 이○○에 대하여 폭행, 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진정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처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영상,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머로 문을 부수는 장면

⑴ 방송 내용

[화면] 한 청년이 해머를 들고 문을 두들겨 부수는 장면

[자막] 폭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한다

(제1차 방송)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방송부분 중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은 과천시 ○○동 소재 ○○센터(이하 '○○센터'라고만 한다)의 건물관리 용역업체들 사이에 대립과정에서 한 관리업체가 일부 층에 승강기 운행정지 조치를 하자 다른 관리업체가 그 운행을 재개하기 위하여 승강기 기계실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장면일 뿐 원고 교회와 무관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원고 교회에 대한 전체 방송 중 일부에 삽입함으로써 원고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고, 설사 ○○센터의 관리업체간 분쟁과 원고 교회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단순히 문을 부수는 장면과 함께 '폭행'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아무런 보충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누군가를 가두어 놓거나 문을 부수면서까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⑶ 위 방송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우선, 위 방송부분 중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은 ○○센터의 기존 관리업체인 □□□□과 새로운 관리업체인 ◇◇◇◇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센터 4층의 승강기 운행을 중지시키자 ◇◇◇◇ 직원이 4층에도 승강기가 운행할 수 있도록 기계를 조작하기 위하여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망치로 부수는 모습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들은 ○○센터에 관한 관리권분쟁에 원고 교회가 개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 직원은 원고 교회 교인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시정장치를 부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화면을 '폭행'이라는 자막과 함께 방송한 것은 허위보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2호증의 1 내지 11,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문제된 ○○센터 4층은 원고 교회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 이○○의 아들인 이☆☆이 2005. 7. 경 ○○센터 4층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이☆☆이 ○○센터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로 취임한 사실, 위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기존의 관리업체인 □□□□을 더 이상 관리업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새로운 관리업체인 ◇◇◇◇의 직원들과 함께 ○○센터의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이 관리비를 체납한 점포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할 경우 배전반을 조작하여 전기공급을 재개하기도 한 사실, 위 이☆☆이 2008. 3. 경 업무방해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의 직원이 원고 교회 교인의 지시를 받고 위 방송부분의 화면과 같이 시정장치를 부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만약 ◇◇◇◇의 직원이 원고 교회 교인의 지시에 따라 시정장치를 부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정장치를 부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위 화면과 함께 '폭행'이라는 자막이 방송된 점,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상당수가 가출, 이혼하거나 부모를 고소하는 등 자신의 가족들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인바 '폭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한다'라는 자막과 함께 방송된 위 화면은 원고 교회의 교인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폭행하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부수고 있는 장면으로 오인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위 방송부분은 허위방송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⑷ 위 방송부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위 방송부분이 허위로 인정되고, 피고들은 이 부분이 원고 교회와 관련성이 있는 장면으로 생각되어서 이를 방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이것만으로 허위방송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⑸ 소결론

따라서 위 방송부분 중 한 청년이 해머를 가지고 문을 부수는 장면에 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식물인간이 된 교인과 벚꽃놀이 부분

⑴ 방송 내용

[화면] 정○○(가명)가 병원에 입원하여 누워 있는 장면

[성우] ○○○ 교회의 취재가 마무리될 즈음 우리는 지방에 있는 가족들의 동의하에 정○○씨를 면회 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그녀가 ○○○에 발을 딛었던 게 3년 전의 일이다. 28세 꽃 같은 나이의 ○○씨는 식물인간 상태였다. … (중략)

[성우] ○○○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 5층에서 뛰어내린 ○○씨. 그녀는 지금도 ○○○와 이○○를 생각하고 있을까? ○○씨의 청춘은 그렇게 병실에 갇힌 채 그렇게 기약도 없이 저물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우리는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 교회 교주 이○○씨를 목격할 수 있었다. 만개한 벚꽃이 흐드러지게 날리는데 교주와 여신도들의 즐거운 벚꽃놀이가 계속되고 있었다.

[화면] 원고 이○○가 젊은 여성들과 함께 벚꽃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

(제1, 2차 방송)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원고 교회의 교인이었던 김□□(가명 정○○, 이하 '정○○'라고 한다)은 원고 교회로 인하여 가족들과 갈등을 겪다가 5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고 개종을 강요하면서 감금하는 가족들을 피하여 탈출하다가 추락사고를 입게 된 것인데도 피고들은 정○○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처럼 허위 방송하였고, ② 피고들은 벚꽃놀이에 참여한 여신도 한 명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고 벚꽃놀이 장소에 대기하였다가 촬영을 한 것임에도 우연히 원고 이○○가 교회 여신도들과 함께 벚꽃놀이를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촬영한 것처럼 허위 방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분들에 관하여 정정을 구하고, 또한 ③ 정○○가 병실에 누워있는 장면과 원고 이○○의 벚꽃놀이 장면을 대비하여 방영함으로써 원고 이○○가 여신도들과 불륜관계에 있다거나 원고 교회 및 원고 이○○가 교인인 정○○가 다쳤다는 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몰인정한 단체 또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도록 방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분에 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⑶ 위 방송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우선 정○○의 상해원인 부분의 허위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가 위 사건으로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스스로 상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정○○가 2004. 10. 15. 주거지인 아파트 5층에서 추락한 뒤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 호송 당시 구조 · 구급증명서(갑 제9호증)에는 사고내용에 관하여 '5층에서 추락상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가 다친 것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의 자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여수경찰서에서 정○○의 사고가 자해인지 추락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다가 명백히 타인에 의한 가해 혐의는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한 사실, 정○○의 보험사인 삼성생명 주식회사 역시 사고원인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정○○가 가족들의 눈을 피해 베란다를 타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가 자해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정○○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의 상해원인을 조사한 기관은 각자 구호의 목적, 범죄혐의의 여부, 보험금지급 요건 확인 등 자신의 업무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사건을 조사한 것뿐이므로 이로써 정○○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사고로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추가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방송부분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벚꽃놀이 장면의 허위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방송부분을 보더라도 PD수첩 취재진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원고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원고 이○○의 벚꽃놀이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방송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⑷ 반론보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반론보도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구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들이 정○○가 병실에 입원한 모습과 원고 이○○의 벚꽃놀이 모습을 교차로 편집하여 방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부정적 평가나 의견의 전달일 뿐 이로써 어떠한 사실적 주장을 한 것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가출, 이혼, 고소 부분

⑴ 방송 내용

[성우] 교인 144,000명을 채우는 것이 ○○○ 교회의 목표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 교회 청년들은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포기한 채 전도에만 전력 투구한다고 했다. 그렇게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자녀들. …(중략)

[이충근 PD] 가출은 물론 이혼,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가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⑴상 제1차 방송)

[성우] ○○○에 빠진 젊은이들 상당수는 학교와 직장, 가정까지도 버리고 있다. …(중략)

[성우] ○○○와 교주 이○○씨를 믿고 인생 전부를 바치고 있는 신도들, 개인의 삶도 가정도 모두 파괴된 그들에게 ○○○는 과연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중략)

[성우] 아내와 남편, 자식들이 ○○○에 빠져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중략)

[송○○] 종교 때문에 ○○○에 빠져 아들과 딸이 가출을 하고 또 부부가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진다고 하면 참다운 의미의 종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성우] 아내와 남편, 자식들이 ○○○에 빠져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진수(가명)] 사실 부부라는 게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가 처절하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철저하게 속여 왔던 그 부분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죠.

[신수경(가명)] 제가 왜, ○○○라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사이비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자식이랑 둘이 살아야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겠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였는데. ○○○ 때문에, ○○○에서 그렇게만 안 했어도. 우리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아

프고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상 제2차 방송)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일부 교인들이 가족들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여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생활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 교회의 교사 · 방조로 인하여 교인들 중 일부가 학교, 직장을 버리거나 가출, 이혼한 사례 또는 부모를 고소 · 고발한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의 교인들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 교회로 인하여 교인들 대부분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방송하였다고 주장한다.

⑶ 위 방송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이 사건 방송의 전체 내용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가족과 연락을 끊어버린 채 집을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학교나 직장을 그만둔 사람, 원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불화가 발생하여 이혼하게 된 사람, 원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부모를 고소 · 고발한 사람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교회 측에서 가출 또는 부모에 대한 고소 · 고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것인바, 갑 제25호증의 1, 2, 제29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방송부분에서 '대부분'의 원고 교회 교인들이 학교, 직장, 가정을 버리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전체 교인 중 어느 정도 숫자에 이르러야 '대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명확치 않는 등 피고들의 가치판단이 담긴 주관적 표현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방송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김○○(가명, 이하 '김○○'이라고만 한다) 인터뷰 부분

⑴ 방송 내용

[김○○(가명)] 제가요, 서울일보 편집국장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장난친거 아니냐, 어떻게 믿겠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랬더니 아, 63빌딩에서 ○○○ 교주가 와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사실이다.

[자막] 전 ○○○ 교인

⑵ 정정방송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김○○이 원고 교회의 전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교인인 것처럼 방송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이 피고 문화방송의 강○○ PD에게 원고 교회의 전 교인인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인데 딸의 신변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원고 교회의 전 교인인 것처럼 방송하여 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피고들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김○○의 인터뷰장면을 '전 ○○○ 교인'이라는

자막과 함께 내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⑶ 소결론

따라서 위 방송부분 중 김○○이 원고 교회의 전 교인이라는 자막을 내보낸 것에 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교회건물 매입 관련 부분

⑴ 방송 내용

[성우] 교회 본부로 쓰고 있는 ○○센터 4층은 40여억 원에 매입했다.…(중략)

[성우] 우리는 ○○○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는 과천 일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조사해 봤다. 그리고 2년 전 40여억 원에 매입해 놨다는 ○○센터 4층은 교회가 아닌 이○○씨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씨의 아들은 현재 ○○○ 교회내 최고인 교육장직을 맞고 있다. 우리가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그 당시 이○○씨의 아들은 교회내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1차 방송)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교회의 건물로 사용중인 ○○센터 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입대금은 15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들이 이를 40여억 원에 이른다고 허위로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정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교회의 명의로 매입할 경우 기존 기독교 교회 측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원고 이○○의 아들인 이☆☆ 명의로 매입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 교회는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마치 원고 이○○ 또는 원고 이○○의 아들인 이☆☆이 원고 교회 교인들의 재산을 횡령한 것처럼 방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한다.

⑶ 매입대금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이 15억 원 정도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 스스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실수로 위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40억 원으로 방송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입대금 부분에 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⑷ 매입 명의자 부분에 관하여

원고 교회의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교회의 명의가 아니라 원고 이○○의 아들인 이☆☆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 교회 재정의 투명성 등의 문제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방송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방송부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불법행위 요건의 주장 · 입증 없이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은 도과되었다).

바. 파출소 CCTV 부분

⑴ 방송 내용

[화면] 남자가 여자를 파출소 밖으로 끌고 가는 장면

[성우] 이 화면은 지난 3월 25일 안산 와동 경찰서에서 촬영된 CCTV의 장면이다. 이날 □□씨 가족과 ○○○ 교인들의 대치와 몸 싸움이 있었다. ○○○를 접한 후 가출한 □□씨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어머니와 오빠를 ○○○ 교인들이 막고 나선 것이다.

[이◇◇(가명)] 울면서 어머니가 애원을 하고, 진짜. 그 사람들은....그 사람들이 □□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깐 어머니가 매달릴 것 아니에요. 어머니 질질 끌려다니셨어요, 경찰서 바닥에.

(제1, 2차 방송)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방송부분의 화면이 사실은 이□□(가명,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오빠인 이◇◇(가명, 이하 '이◇◇'라고만 한다)가 이□□를 파출소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마치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이□□를 억지로 끌고 가거나 그 과정에서 이□□의 어머니를 질질 끌고 다닌 것처럼 허위 방송하였다고 주장한다.

⑶ 위 방송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위 방송부분의 화면과 성우의 나레이션을 종합하여 보면 화면에서 이□□로 보여지는 여자를 파출소 밖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은 오빠인 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이□□를 끌고 가려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며, 피고들은 이◇◇의 인터뷰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역시 허위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영생권 부분

⑴ 방송 내용

[취재진] (이○○ 총회장을) 직접 봤어요?

[김△△(가명)] 네,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도 저한테 '영생' 그렇게

싸인을 해줬거든요.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육으로 영원히 산다고 믿잖아요. 거기 사람들은...그래서 영생을 축하한다고 저한테 영생권까지 줬어요

[취재진] 진짜 이○○ 교주님이 영생한다고 믿으세요, 그 안에서는?

[김△△(가명)] 네, 믿어요

[취재진] 영적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김△△(가명)] 네, 몸이...

[성우] 세뱃돈 5천 원과 함께 이○○씨가 직접 써주었다는 영생권.

(제1, 2차 방송)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실은 원고 이○○가 설날에 세배하러 온 백○○(가명 김△△, 이하 '김△△'이라고 한다)에게 '축영생'이라고 기재한 수첩을 건네면서 덕담을 한 것에 불과한데 피고들은 마치 원고 이○○가 김△△에게 영생권을 부여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위 방송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이 사건 방송의 전체 내용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교리 중 핵심부분은 그 대표자인 원고 이○○가 영적으로가 아닌 육체적으로 영생할 것이며 신앙심이 깊은 교인의 경우 원고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고 교회의 교인들은 이를 믿고 있다는 것인바, 갑 제13호증의 1, 2,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 이○○가 새해 인사를 하러 온 다른 교인들에게 '축보화', '축천국', '축발전'이라고 각 기재한 수첩을 건네면서 덕담을 함에 있어 김△△에게는 '축영생'이라고 기재한 수첩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는 자신을 믿는 김△△ 역시 영생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수첩을 건네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방송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실이라고 할 것이며, 위 방송부분에서 영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 '사이비' 언급 부분

(1) 방송 내용

[송○○] ○○○ 교회를 취재하면서 우리 취재팀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종교의 자유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면 청년들이 그 소중한 인생의 황금기를 내던지고 부모 형제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도 용인 될 수 있다는 얘긴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노릇입니다. {'似而非(사이비)'라고 적혀 있는 종이를 들고서} 사이비, '비슷하지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교주 이○○씨가 이끄는 ○○○는 과연 제대로 된 종교인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영생을 운운하기 전에 인간의 도

리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제1차 방송)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교회의 교리나 원고 이○○의 행적으로 보아 원고 교회를 사이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로 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⑶ 판단

살피건대, 위 방송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원고 교회에 대한 비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자. 출입통제 부분

⑴ 방송 내용

[성우] 다행스럽게도 방송(제1차 방송을 의미)을 보고 ○○○를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 (중략)

[성우] 방송 후 신입 신도들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천 ○○○ 교회는 붐볐다. 하지만 경호를 더 강화하고 신도들이 불침번까지 서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였다.

(제2차 방송)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교회의 신입 교인의 수가 감소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 교회는 교인들의 동의하에 카드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석관리를 한 것에 불과한데 이는 제1차 방송 이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위 방송으로 인한 교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행하게 된 것은 아니며, 교회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범체계를 갖추었을 뿐 위 방송 이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호를 더 강화하거나 불침번을 세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⑶ 위 방송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방송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는데, 제1차 방송 이후 원고 교회의 신입 교인들의 수가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갑 제30호증의 기재는 제1차 방송이 있기 이전인 2006. 9. 하순경 원고 교회가 이미 지문인식장치를 출입문에 설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원고 교회가 제1차 방송 이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호를 더 강화하거나 불침번을 세운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방송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차. 헌금 관련 부분

⑴ 방송 내용

[김☆☆(가명)] 모든 헌금에 봉투가 있다는 거에요, 주일 헌금까지도. 그러니깐 익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왜냐면 익명으로 하게 되면 나는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니까. 그건 강요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이상 제1차 방송)

[문◇◇(가명)] 재밌었던 건 부서별로 그거를 탁 통계를 내는 거에요. 그래서 십일조 몇 퍼센트를 한 사람을 등수를 먹이는 거에요. 부서별로 일등한 부서에게 상금 10만 원 주거나, 그렇게 경쟁 심리를 되게 유도를 했어요.

(이상 제1, 2차 방송)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부서별 통계에 의한 상금 수여는 원고 교회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개인별이 아니라 부서별 헌금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헌금납부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헌금납부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헌금납부를 경쟁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방송부분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⑶ 판단

위 방송부분을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원고 교회의 모든 헌금은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 헌금액의 부서별 통계에 따라 등수를 매긴 다음 시상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교회는 헌금납부를 경쟁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재진의 의견을 원고 교회의 전 교인들의 인터뷰를 빌어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위 의견의 근거가 되는 위 사실들을 허위라고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만으로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카. 서울일보 보도 및 문화관광부 담당자 인터뷰 부분

⑴ 방송 내용

[성우] 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PD수첩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펴며 신도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김○○(가명)] 제가요, 서울일보 편집국장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장난친거 아니냐, 어떻게 믿겠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랬더니 아, 63빌딩에서 ○○○ 교주가 와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사실이다. … (중략)

[김◇◇] PD수첩이 공개적으로는 안했지만 자기들에게 사과를 했다. 하여간 일단 사과를 했다는 거에요, MBC 방송에서 공식적으로는 안했지만 그 담당하는 PD나 이런 분들이...

[성우] 하지만 PD수첩에서는 ○○○ 측에 어떤 형식의 사과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서울일보에 실린 문화관광부의 조사와 허위보도 판명은 근거가 있는 사실일까?

[취재진] 문광부에서 뭐 혐의없음으로 뭐...

[문화관광부 종무실 담당자] 그런 말은 말 자체가 안된다니까요. 조사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데, 하도 PD수첩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실이 어떤지 한 번 봤을 뿐이지...그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뭐 살아 남을라고 아무라도 잡고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물에 빠져 있는 상태니깐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이지, 그게 뭐 우리하고 전혀 사실여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화면] 서울일보의 "○○○ 교회 'MBC PD수첩' 허위보도 판명"이라는 제목의 기사

[성우] 왜 이런 사실무근의 기사를 실었는지 서울일보를 찾아갔다.

[서울일보 대표] 이거 한달 내가 없었을거야 아마. 그래 나중에 와보니까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나갔나 좀 우려를 하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화로 문의도 오고 그러더라구요, MBC PD수첩이 그럼 허위보도냐,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이승준 PD] 문광부나 경찰이나 검찰에는 확인을 하신 겁니까?

[서울일보 대표] 상대측에게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고런것을 우리가 좀 거치지 않았다. 확인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반론을 냈죠.

[성우] 서울일보는 기사를 내고 3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PD수첩이 취재에 들어가자 잘못을 인정하는 보도문을 실었다. ○○○ 교회는 말도 안되는 거짓들로 신도들을 현혹시키고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제2차 방송)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방송부분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종무실에서 원고 교회의 위법행위 인정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분도 내린 적이 없는 점, 서울일보의 기사는 원고 이○○가 가출, 폭행, 횡령 등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점을 교인들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고 거짓으로 교인들을 현혹시킨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⑶ 판단

위 방송부분을 분석하여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원고 교회의 위법행위 인정여부에 대하여 정식으로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통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한 적이 없는 사실, 서울일보의 취재진은 피고들의 제1차 방송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교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서 기사를 작성하였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후 피고 문화방송 측의 반론보도를 게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 교회

가 '말도 안되는 거짓들로 신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취재진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의견의 근거가 되는 위 사실들을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만으로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이○○의 초상권침해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 당시 원고 교회의 내부 교육용 동영상을 임의로 방영하면서 그 동영상 중에 포함된 원고 이○○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 전체의 취지와 맞지 않는 원고 이○○의 벚꽃놀이 장면을 방영하였는바,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이○○가 피고 문화방송 취재진의 공식취재 요청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불법으로 입수한 동영상 및 벚꽃놀이 장면을 통하여 원고 이○○의 얼굴이 나가도록 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 이○○는 다수의 교인들이 속해있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써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적 인물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교육용 동영상 및 벚꽃놀이 장면을 통해 원고 이○○의 얼굴이 방송되도록 한 것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정정방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판단

가. 정정방송의 범위

위 2항의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방송 중 해머로 문을 부수는 장면, 김○○의 인터뷰 부분, 교회건물 매입가격 부분에 관하여 정정방송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정방송의 내용 및 게재방법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2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 중 위와 같이 정정방송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의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별지 1 정정방송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이 사건 방송이 나간 시간대 및 그 비중, 그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

여, 정정방송의 활자의 크기, 방송방법, 방송시기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5. '다시보기' 게시물 삭제청구 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제1, 2차 방송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 각 방송내용은 이 사건 '다시보기'란에 게시되어 이로 인한 침해가 계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위 게시물의 삭제 및 테이프나 영상물의 형태로 제작, 배포, 방영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 2차 방송의 내용 전부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인정한 정정보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들만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로 인한 침해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게시물의 삭제 및 테이프나 영상물 형태의 제작 등 금지는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다시보기'란에 제1, 2차 방송내용이 게시된 것에 덧붙여 별지 1 정정방송을 함께 게시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어서 주문 제1의 나. 항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6.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 중 정정방송의 범위에 포함되는 허위부분은 위법하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나, 위와 같은 허위방송 부분은 이 사건 방송 전체의 내용을 보아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정정방송을 하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여지고 별도의 금전적 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손해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양 현 주

판사 천 지 성

판사 배 예 선

〈별지 1〉 정정방송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7. 5. 8. 방송한 'PD수첩' '○○○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남자가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는 장면과 함께 같은 장면 하단에 '폭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한다는 자막을 내보내어, ○○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은 폭행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도록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장면은 과천시 ○○동 소재 ○○센터의 건물관리 용역 업체들 사이의 대립과정에서 기존 관리업체가 ○○교회가 입주해 있는 4층에 승강기 운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자, ○○교회 측의 다른 관리업체가 4층에도 승강기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장면이지, ○○교회의 교인이 직접 가족이나 다른 교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7. 12. 25. 방송한 'PD수첩' 프로그램 중 김○○(가명)이 ○○교회와 관련된 서울일보의 기사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위 김○○(가명)이 '전 ○○○ 교인'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김○○(가명)은 ○○교회의 전 교인이 아니고 ○○교회의 전 교인이었던 딸을 둔 아버지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7. 5. 8. 방송한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교회의 본부로 쓰고 있는 ○○센터 4층은 40여 억 원에 매입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센터 4층의 매입금액은 40여 억 원이 아니라 15여 억원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 정정 및 반론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손해배상청구 사례 21

보도내용이 검찰의 기소사실이기는 하나, "검찰은 … 사실을 밝혀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사실이 확연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자 판결 (2008가단15443)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윤섭 판사는 2008년 11월 4일 김○○이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중앙일보 2002년 6월 18일자 사회면에 『퇴직보험 등 유치 대가 150억대 리베이트 오가』 제목으로 보험회사 감사로 일했던 원고가 보험회사 전임직원들이 보험유치 대가로 조성한 비자금 중 13억여 원을 착복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횡령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보도내용이 검찰의 기소사실이기는 하나, '검찰은……사실을 밝혀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사실이 확연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표현한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는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며 상당성을 부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중이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8가단15443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 ○

피　　고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변 론 종 결 : 2008. 9. 30.

판결선고 : 2008. 11. 4.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11. 4.까지는 연 5%, 200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6. 18.자 사회면에 "퇴직보험 등 유치 대가 150억대 리베이트 오가"라는 제목 아래 원고에 관하여 "검찰은 구속된 ○○생명 전 감사 김○○(49)씨가 조성된 비자금 중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도 밝혀냈으며……"라는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검찰이 원고를 위와 같이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는 위 횡령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1심에서 2002. 12. 2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06. 3. 9.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횡령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확정사실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검찰의 기소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보도내용이 검찰의 기소사실이기는 하나, "검찰은……사실을 밝혀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사실이 확연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표현한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는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도는 ○○생명 전 임직원들이 보험유치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사 제목도 위 리베이트 관련 보도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보도에 관한 것이 아닌 사실, ② 위 리베이트 관련 보도 역시 검찰의 기소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 리베이트 관련 공소사실은 법원에서 모두 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죄]로 인정되어 원고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추후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4.자 2007카기6811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이에 따라 추후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보도내용이 비록 그 표현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식자층이라면 결국 검찰의 기소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위자금은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0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 윤 섭

손해배상청구 사례 22

간호사에 대한 인터뷰 장면을 몰래 촬영 · 방송했다 하더라도 성형수술의 의료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나 원고 병원, 인터뷰 장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3.자 판결 (2007가단4483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7.자 판결 (2008나24356)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17일 정○○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6년 9월 8일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 '죽음을 부르는 성형부작용' 이라는 제목으로 성형수술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들면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의 성형수술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몰래 촬영한 원고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인터뷰 장면을 방영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심 재판부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성형수술의 잠재적 수요자인 일반시청자들에게 많은 수의 다른 과 전문의나 비전문의들이 성형수술을 시술하는 의료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방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다는 진실을 보도한 점, 이 사건 방송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보도하여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한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이름이나, 성, 원고 병원의 명칭은 보도하지 않았고 원고 병원의 출입문 및 간호사의 진술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일반인이 이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병원에서 간호사에 대한 인터뷰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방송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년 7월 23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7가단448343 손해배상(기)

원　　고 : 정 ○ ○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성 희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구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 진 영

변 론 종 결 : 2008. 6. 18.

판 결 선 고 : 2008. 7. 23.

주　　문 :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 의원'라는 상호로 그 주소지에서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방송보도

⑴ 피고는 2006. 9. 8.경 "생방송 오늘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죽음을 부르는 성형부작용'이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보도하였다.

⑵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뷰, 성형수술 피해자를 상대로 시술한 병원 의사에 대한 인터뷰 외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실태를 보도하면서 원고 운영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인터뷰를 함께 보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에 의한 성형시술이 불법이 아님에도 이 사건 방송에서 성형시술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들면서 몰래 촬영한 원고 운영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인터뷰 장면을 삽입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취재 대상이 된 원고 직원이 우울증을 앓고 원고 또한 심적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이 사건 방송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적인 보도에 의하여 성형외과 비전문의 중 일인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그 운영의 위 의원을 다른 의원과 구별이 가능하여 원고가 피해자로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 주장 부분은 철회하였다).

나. 판 단

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⑵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이 사건 방송에 대한 녹화물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일반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취재된 위 인터뷰를 보고 다른 병원과 구별하여 그곳이 원고의 병원임을 알기 어려워 원고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와 같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이 성형시술을 하는 의사의 수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방송만으로는 위 의사들 중 원고를 개

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없이 성형시술을 하는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그 중 일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신 혁 재

2심 판결문

사 건 : 2008나24356 손해배상(기)
원 고 , 항 소 인 : 정 ○ ○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성 희
피 고 , 피 항 소 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구
대표이사 최 문 순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가단448343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10. 24.
판 결 선 고 : 2008. 11. 7.

주 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구에서 '○○○ 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의사인데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방송보도

⑴ 피고는 2006. 9. 8.경 "생방송 오늘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죽음을 부르는 성형부작용'이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보도하였다.

⑵ 이 사건 방송은 일반적인 성형수술부작용 사례, 성형수술 피해자의 다른병원 앞에서의 시위 사례와 그 수술 담당의사의 인터뷰,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를 하면서 원고 병원의 간호사와 인터뷰, 다른 병원에서의 인터뷰 순으로 되어 있다.

⑷ 피고는 원고 병원의 간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원고의 이름이나, 성, 원고 병원의 명칭은 보도하지 않았고, 원고 병원의 출입문 및 그곳 간호사의 진술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일반인이 이를 식별할 수 없게 하였다.

⑸ 당시 원고 병원의 간호사는 취재기자에게 "국내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성형외과 원장 해먹기, 우리 원장님 진짜 수술 잘 하시는데 외국에서 9년 정도 계시다가 개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연대 아니면 자리잡기 참 어려워요. 성형외과 원장님도 11년 됐거든요. 처음에는 여기 반으로 시작했지요. 3층 반. 지금 2, 3층을 쓰고 있고 우리 목표는 건물 사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형수술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들면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의 성형수술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방송에서 몰래 촬영한 원고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인터뷰 장면을 방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의사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건조물 내에서 불법적으로 타인의 침입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성형수술의 잠재적 수요자인 일반시청자들에게 많은 수의 다른과 전문의나 비전문의들이 성형수술을 시술하는 의료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방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다는 진실을 보도한 점, 이 사건 방송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보도하여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한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이름이나, 성, 원고 병원의 명칭은 보도하지 않았고 원고 병원의 출입문 및 간호사의 진술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일반인이 이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병원에서 간호사에 대한 인터뷰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방송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 종 문

판사 남 인 수

판사 임 수 연

손해배상청구 사례 23

원고에 대하여 '독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여 총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축약한 것으로서 원고가 공적인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자 판결 (2008가합12799) (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5일 ○○○○중앙회 외 1명이 주식회사 피쉬어리뉴스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피쉬어리뉴스가 2008년 4월 28일자 1면에 『지배구조 용역비 낭비 아닌가』 제하의 기사를, 2008년 5월 5일자 1면에 『중앙회 회계 편법에 회의절차도 '독재적'』 제하의 기사를, 2008년 5월 26일자 1면에 『이○○○중앙회장 감사위원장 선출기획(?)』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①연구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련 기사에 대하여 "이 기사 중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양수산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 ○○중앙회가 다시 별도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는 점, 그 연구용역의 주된 주제는 원고 ○○중앙회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 원고 ○○중앙회가 의뢰한 연구용역은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용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은 짧고 비용은 고액이었다는 점인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허위라고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밖에 위 기사 중 원고 ○○중앙회가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으로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연구용역의 주된 내용이 원고 ○○중앙회의 발전방향이 아닌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어서 문제가 많고 정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부분은 피고들의 의견표명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들어 피고들의 위 보도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②독재적 회의진행 관련 기사에 대하여 "□□법 제162조에 의하면 원고 ○○중앙회는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법 제40조에 의하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68조에 의하여 위 40조의 규정은 원고 ○○중앙회에도 준용되는바,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중앙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이의제기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예산안을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찬반토론을 거치거나 표결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해석될 수 있

어 이 부분이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데 농림부의 관계자가 위 보도부분과 같은 내용의 의견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 이○○에 대하여 '독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여 총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축약한 것으로서 원고 이○○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③감사위원장 선출 관련 기사에 대하여 "감사위원장 선출에 원고 이○○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과 '감사위원장 선출 기획(?)'이라는 표현의 제목을 붙인 것은 원고 이○○가 감사위원장 선출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거의 기획이라고 볼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피고들의 의혹제기와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밖에, 재판부는 ④원고의 사진 게재와 관련하여 "원고 이○○는 원고 ○○중앙회의 대표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원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와 함께 원고 이○○의 초상이 식별되는 사진을 실었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게재한 사진의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이 위 2장의 사진을 함께 실음으로써 원고 이○○가 윗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권위적으로 대한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12799 손해배상(기)

원　　고 : 1. ○○○○중앙회

대표자 회장 이 ○ ○

2. 이 ○ ○

원고들 주소 서울 ○○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 영 환, 김 진 영

피　　고 : 1. 주식회사 피쉬어리뉴스

대표자 이사 문 영 주

2. 문 ○ ○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34-16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송 호 창

변 론 종 결 : 2008. 11. 18.

판 결 선 고 : 2008. 12. 5.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중앙회(이하 '원고 ○○중앙회'라고만 한다)에게 2억 원, 원고 이○○에게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6.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피쉬어리뉴스(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주간 '수산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피고 회사가 위 일자에 위와 같은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게재의무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는 원고 ○○중앙회의 대표자이고, 피고 회사는 주간인 '수산신문'을 매주 발행하고 있다.

나. 피고 문○○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 ○○중앙회의 지배구조 및 원고 이○○의 경영형태에 관하여 '수산신문'의 기사들(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을 직접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원고 ○○중앙회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예산을 낭비하였다.

⑵ 원고 ○○중앙회의 임시총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원고 이○○가 회의절차를 독재적으로 진행하였다.

⑶ 원고 이○○가 원고 ○○중앙회의 감사위원장 선출에 직접 관여하였다.

⑷ 원고 이○○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과 원고 ○○중앙회의 직원들 앞에서 힘주고 있는 모습이 대조적이다(사진 2장을 함께 배치).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연구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련 기사

⑴ 기사의 내용

2008. 4. 28.자 1면 「지배구조 용역비 낭비 아닌가」를 큰 제목으로, 「정부 4달여만에 4천7백만 원, □□ 1개월에 5천만원 지출」「"회장권한 그렇게 중요한가" 의혹 많아 철저한 감사 필요」를 소제목으로 한 기사

해양수산부가 얼마 전 용역을 준 제목에 토씨 하나 안 틀리는 용역을 ○○중앙회가 석달 여만에 다시 다른 용역팀에 고액을 주고 의뢰해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이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용역은 □□발전방향 등에 관한 용역도 아니고 회장 권한 등 중앙회 지배구조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중앙회의 예산 집행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 용역은 다른 것에 비해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비싸 용역비 과다 집행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정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한국수산회에 '□□ 지배구조 개편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4천7백만 원을 들여 6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달 17일간 용역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회는 지난 2월 고대 유진희 교수팀에 이와 관련한 용역을 다시 줬다. 용역 과제는 해양수산부가 한국수산회에 용역을 준 '□□ 지배구조 개편 등에 관한 연구용역' 제목 그대로다. 토씨 하나 안 틀리는 내용이다.

석달 10여일만에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중앙회가 다시 준 것이다. 용역비는 한국수산회가 4달 17일간 용역을 해 4천7백만 원을 받은 반면 고대 연구 용역팀은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달간 용역을 하고 5천만 원(최종보고서 4월 4일 제출)을 받았다. (후략)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정부가 □□□□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을 개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산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자 원고 ○○중앙회는 위 한국수산회의 연구용역에서는 원고 ○○중앙회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여 별도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려대학교에 동일한 제목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에 불과하고, ② 그 연구용역기간이 1개월로 정부가 의뢰한 용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진 것은 당시 용역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정부의 정책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며, ③ 용역기간이 짧아지면 단시간에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용역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고, ④ 원고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의 문제는 전체 조합원 및 원고 ○○중앙회 산하 어업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고 원고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⑤ 위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 이○○가 원고 ○○중앙회의 대표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⑶ 판단

살피건대, 위 기사 중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① 해양수산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 ○○중앙회가 다시 별도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는 점, ② 그 연구용역의 주된 주제는 원고 ○○중앙회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 ③ 원고 ○○중앙회가 의뢰한 연구용역은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용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은 짧고 비용은 고액이었다는 점인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허위라고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밖에 위 기사 중 원고 ○○중앙회가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으로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연구용역의 주된 내용이 원고 ○○중앙회의 발전방향이 아닌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어서 문제가 많고 정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부분은 피고들의 의견표명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들어 피고들의 위 보도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독재적 회의진행 관련 기사

⑴ 기사의 내용

2008. 5. 5.자 1면 「중앙회 회계 편법에 회의절차도 '독재적'」을 큰 제목으로, 「이 회장 동의 안건 아닌데도 표결 없이 처리」,「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법 위반" 유권해석」을 소제목으로 한 기사

이○○ ○○중앙회장이 중앙회 회의를 독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찬반 투표를 해야 하는데도 회장이 찬반토론이나 의결없이 독선적으로 안건을 처리하여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 25일 임시총회에서 의안 제3호로 사업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인 양식보험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2억9천6백46만3천원을 마땅히 지도사업 회계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했다. 그런데 ○○중앙회는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곧바로 관리비 분담금 및 지도사업 분담금 비용으로 편성했다. 이른바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일부 조합장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찬반 토론이나 표결 없이 일부 조합장의 동의와 제청을 얻어 이를 처리했다.

□□법 제162조에는 중앙회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으며 정관 제81조에는 회장은 소관부문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확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따라서 안건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이○○ 회장은 차○○ □□ 조합장과 김○○ □□ 조합장 등 일부 조합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 회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를 받지 않고 동의 여부를 묻고 또 다른 조합장의 제청으로 이 안건을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장들은 "회장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건을 처리했다"며 "독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략)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찬반토론이나 표결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안건이 처리됐다면 의결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략)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중앙회의 경우 총회의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법이나 정관 등에 성문화된 것이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 특정안건의 발의에 대해 조합원들 중에 이의가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의장은 반드시 재청이 나오기를 기다려 동의를 성립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문제된 임시총회 당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제의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재청이 없었으므로 의장이 반드시 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부치거나 표결을 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 이○○가 회의를 비민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라고만 한다)의 관계자가 그러한 회의절차는 □□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고, 원고 이○○에 대하여 '독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의견 내지 논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위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⑶ 판단

살피건대, □□법 제162조에 의하면 원고 ○○중앙회는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법 제40조에 의하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68조에 의하여 위 40조의 규정은 원고 ○○중앙회에도 준용되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 ○○중앙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이의제기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예산안을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찬반토론을 거치거나 표결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해석될 수 있

어 이 부분이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데 농림부의 관계자가 위 보도부분과 같은 내용의 의견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 이○○에 대하여 '독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여 총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축약한 것으로서 원고 이○○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감사위원장 선출 관련 기사

⑴ 기사의 내용

2008. 5. 26.자 1면 「이○○ ○○중앙회장 감사위원장 선출기획(?)」을 큰 제목으로, 「"중앙회장이 함께 일하자 한다며 추천 부탁"」,「공적자금 받은 기관에서 감사까지 좌지우지」를 소제목으로 한 기사

○○중앙회 감사위원장 선출과 관련,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종친의 청탁을 받고 낙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감사위원장 선출에 이○○ ○○중앙회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0일 월간 신동아가 '강만수 장관, 종친 청탁받고 □□ 고위직 낙점 의혹'이라고 쓴 기사와 관련, e메일로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강○○ 씨가) □□ 회장이 함께 일하자고 한다며 추천을 부탁해 실무자에게 검토시킨 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이 답변에 따르면 이○○ 회장이 강○○ 위원장을 끌어 들였다는 것. 또 감사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한 감사위원은 "이 회장의 뜻이 강 위원장에게 있는 것 같다"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감사위원장 선출에 이 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후략)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강만수 장관의 이메일 답변은 원고 이○○가 직접 강만수 장관에게 강○○을 감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강○○이 스스로 원고 이○○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원고 이○○의 뜻이 강○○에게 있는 것 같다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풍문 역시 사실확인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 이○○가 감사위원장 선임을 기획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⑶ 판단

살피건대,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 위 기사에서 보도한 강만수 장관의 이메일 내용 및 감사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김◇◇

감사위원이 강○○과 경쟁하여 감사위원장에 출마하였다가 사퇴한 이□□에게 원고 이○○의 뜻이 강○○에게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감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감사위원장 선출에 원고 이○○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과 '감사위원장 선출 기획(?)'이라는 표현의 제목을 붙인 것은 원고 이○○가 감사위원장 선출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거의 기획이라고 볼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피고들의 의혹제기와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 이○○의 사진 게재 부분

⑴ 기사의 내용

2008. 6. 9.자 제3면 「□□ 최악의 시나리오」를 큰 제목으로, 「오죽하면 조합장들 농협과 합치자고 하겠나」,「이○○ 회장 행태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듯」을 소제목으로, 「반감 전남 이어 충청으로 점차 북상」「그를 뽑아 준 '주인' 홀대..."갈데까지 가자"」, 「편가르고 쪼개고 싸우고...통합 리더십 절실」을 다시 소제목으로 하는 기사

○○○○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이○○ □□ 회장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청도 등 타 지역 일부 조합장들이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 주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후략)

【(사진 2장 게재) 이○○ 회장의 서로 다른 두 모습. 왼쪽 사진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오른쪽은 직원들 앞에서 힘을 주는 모습이 대조를 보인다.】

⑵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본문 기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2장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대비시켜 배치하여 원고 이○○가 권력에 아첨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군림하는 부도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 이○○의 명예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⑶ 판단

살피건대, 원고 이○○는 원고 ○○중앙회의 대표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원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와 함께 원고 이○○의 초상이 식별되는 사진을 실었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게재한 사진의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이 위 2장의 사진을 함께 실음으로써 원고 이○○가 윗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권위적으로 대한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이고 어떠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원고 이○○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위 판단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보도이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양 현 주

판사 천 지 성

판사 배 예 선

〈별지〉 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손해배상청구 사례 24

원고의 알몸 사진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알몸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자 판결 (2007가합9678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17일 신○○가 주식회사 문화일보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문화일보 2007년 9월 13일자 제1면에 『신○○ 누드사진 발견』, 『원로 고위층에 '性로비' 가능성 관심』 제하의 기사 및 제3면에 『'性로비'도 처벌 가능한가』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이라며 컬러로 촬영된 나체사진 2장(몸통부분은 모자이크 처리)을 함께 공표하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사진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바 없었던 원고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사진이고, 피고들이 위 각 사진을 입수하는 과정 및 절차 또한 정당하지 못한 점, 원고에 의한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컬러로 된 알몸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은 없었던 점(피고들은 기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의 존재를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고 원고의 몸통과 배경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원고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 사건 각 사진을 컬러로까지 게재할 필요는 없었고,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대중들의 관음증적 심리를 더욱 자극하였을 가능성조차 있다), 피고들에게는 당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던 원고의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신문판매량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알몸사진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기사와 함께 원고의 알몸사진까지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96787 손해배상(기)등

원　　고 : 신○○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일보

2. 이○○

변론종결 : 2008. 12. 3.

판결선고 : 2008. 12. 17.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2008. 12. 1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일보 제1면에 1회, 문화일보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unwha.com) 초기화면에 팝업화면으로 위 기간 안에 게재를 시작하여 그 날로부터 7일 동안, 별지1 기재 보도문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은 고딕체 20포인트 활자로, 본문은 기사 본문 활자로 각 게재하라.

나. 만일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가 위 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문화일보 제1면 및 위 기간 중 게시되는 인터넷 문화일보 홈페이지(www.munwha.com)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각 게재하라. 위 피고가 위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2007. 9. 13. 당시 ○○대 교수였던 원고에 관하여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조작 및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 각종 의

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자사가 발행하는 일간지인 문화일보 제1면에 "신○○ 누드사진 발견", "원로 고위층에 '性로비' 가능성 관심"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3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 제3면에서는 " '性로비' 도 처벌 가능한가"라는 제목 하에 별지4, 5 기재 각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컬러로 촬영된 나체사진 2장(이하 '이 사건 각 사진 '이라 한다)을 몸통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함께 게재하였다(이하 위 기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 라 한다). 피고 이○○은 피고 신문사의 당시 편집국장으로서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다.

나. 위 보도가 있은 후 피고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여 한때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보도 후 약 1주일이 지난 2007. 9. 19.까지도 "신○○", "신○○ 누드사진", "신○○ 누드"라는 검색어가 위 홈페이지의 일간, 주간, 월간 인기검색어 1, 2, 3위를 각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트래픽 순위는 345위에서 122위로 급상승하였다.

다. 한편, 위 보도 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각종 언론 · 여성 ·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피고 신문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규탄기자회견을 잇달아 여는 등 위 보도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진과 같은 알몸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정 · 관계 및 종교 · 문화계 인사 등을 상대로 성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서 위 각 사진이 합성사진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원고가 실제로 위 각 사진을 촬영하였고 정 · 관계 인사 등에게 문어발식 성로비를 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 신문사는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요구문을 게재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입증책임의 문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 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

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법원에 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언론보도를 한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사진이 합성사진이라는 취지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원고의 알몸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었고, 그 사진들이 합성사진이 아니다'는 취지의 기사와 함께 이 사건 각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그와 같은 알몸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사진은 합성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사진이 원고의 알몸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원고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몸을 합성하여 만든 사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위 사진들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수사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신문기사의 보도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사진이 합성사진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김◇◇, 변◇◇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소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던 원로 사진작가인 황○○는 2008년 1, 2월경 일부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각 사진의 합성여부 및 유출경위에 관하여 "제가 찍은 게 분명합니다. 5-6년 전 서울 성북동 제 작업실에서 찍었습니다. 합성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자 누드 사진의 배경이 내 작업실과 비슷하다는 견해가 일부 등장하던데, 그게 옳습니다. 사실 '언제라도 누드를 찍고 싶으면 내가 찍어줄게'라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사석에서 신○○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작가로서 자연스러운 제안 아니던가요?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가 선뜻 응해온 겁니다.", "A여인에게 유출책임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제가 없는 내 작업실에 몰래 들어와서 사진을 뒤져 챙겨뒀던 것입니다."라고 말한 사실, 이 사건 각 사진의 원본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위 각 사진에 등장하는 나체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입체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아도 합성사진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부자연스러운 입자의 변화나 비정상적인 굴곡 또는 색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카메라 조명에 의해 벽면과 책장에 생긴 그림자의 방향 및 조명에 의해 방바닥에 반사되어 생긴 책장과 나체의 형상의 방향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위

조 · 변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사진은 원고를 그대로 촬영한 출력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나온 사실, 성형외과 의사인 감정인이 원고의 나체를 실제로 촬영하여 이를 이 사건 각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원고의 현재의 몸이 이 사건 각 사진에 나타난 몸에 비해 매우 마르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일견 양자가 서로 달라보일 수 있으나 각 사진이 촬영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 표준화의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사진이 원고의 사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은 위 황○○가 원고의 알몸을 실제로 촬영한 것으로서 황○○의 지인인 A여인을 통해 피고들에게 유출된 사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가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원로 · 고위층에 '성로비' 가능성 관심", "성로비도 처벌 가능한가", "신○○ 게이트 급속히 확산", "정 · 관 이어 종교-문화계 문어발 로비 속속 드러나"라는 제목 하에 본문 부분에서는 "몸에 내의 자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내의를 벗은 지 한참 후에 찍은 사진", "작품용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사이'의 징표 같은 느낌이 난다", "그는 영향력 있는 유력 원로작가들과 특히 관계가 좋았다", "미술 · 문화계의 대가 혹은 '마당발 인사'들과 각별한 친분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탄탄히 하는 과정에서 일부와는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각계의 원로급 또는 고위급 인사들에게 성(性)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증", "신○○ 전 ○○대 교수가 문화계와 정치권 등에 '부적절한 관계'를 포함한 전방위 로비를 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성로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여 · 35)씨가 ○○○(58)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 정 · 관계는 물론 문화계와 종교계 등에 문어발식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신○○ 스캔들'에 그치지 않고 ○○○ 정부의 '권력형 케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씨는 30대 소설가와 조각가 등 복수의 남자들과 애인으로 사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기사들을 이어가면서 이 사건 각 사진까지 함께 게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사의 제목과 본문 및 사진의 배치 등 전체적인 기사의 게재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기사들을 접한 일반 독자들로서는 마치 원고가 정 · 관계나 종교 · 문화계의 고위층 및 원로 등을 상대로 하여 문어발식으로 성관계를 수단으로 한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적 주장을 통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확인결과 신○○씨는 이른바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바, 을 제6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나타난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 이외의 정 · 관계나 종교 · 문화계의 고위층 및 원고 등을 상대로 성관계를 수단으로 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없고, 달리 원고가 성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중재법 소정의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바와 같이 정 · 관계 등 여러 인사들을 상대로 성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점 또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를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정정보도문구를 "신○○씨가 실제로 이른바 '성로비'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로 수정하여 인용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정보도요구문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해의 정도와 피고 신문사의 지면여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정보도문 게재일, 활자의 크기, 이행강제금 등도 주문과 같이 일부 조정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정 · 관계의 고위층이나 종교 · 문화계의 원로 등을 상대로 하여 문어발식으로 성관계를 수단으로 한 로비를 벌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위 보도행위는 일응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보도행위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였고 가사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⑵ 일반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⑶ 공익성 인정여부

먼저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정 · 관계나 종교 · 문화계의 인사들을 상대로 성관계 등을 수단으로 한 로비를 벌여 그 결과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조달하거나 사립대 교수직 또는 광주비엔날레의 예술총감독직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만일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일 경우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그로 인한 공적 업무 수행과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비판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기사의 보도행위가 전체적으로 공익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진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바 없었던 원고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사진이고, 피고들이 위 각 사진을 입수하는 과정 및 절차 또한 정당하지 못한 점, 원고에 의한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컬러로 된 알몸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은 없었던 점(피고들은 기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의 존재를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고 원고의 몸통과 배경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원고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 사건 각 사진을 컬

러로까지 게재할 필요는 없었고,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대중들의 관음증적 심리를 더욱 자극하였을 가능성조차 있다), 피고들에게는 당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던 원고의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신문판매량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알몸사진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기사와 함께 원고의 알몸사진까지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⑷ 진실성 인정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진이 평소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던 원로 사진작가인 황○○의 작업실에서 실제로 촬영된 사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내지 10,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년초 ○○○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수시로 미술관, 영화관, 식당, 원고의 집 등에서 빈번하게 만나는 한편, 일과시간 또는 업무관계 등으로 만나지 못할 때에는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애정관계를 유지해온 사실, 그 과정에서 ○○○은 원고가 □□건설, ◇◇그룹 등 대기업들로부터 미술관 운영을 위한 후원금을 받거나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황○○의 직업이 사진작가였음을 감안하면 원고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황○○의 작업실에서 이 사건 각 사진과 같은 알몸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와 황○○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이를 수단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과 사이에 은밀한 애정관계를 유지하고 ○○○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애초부터 어떠한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에게 접근하였다거나 ○○○을 상대로 성관계를 수단으로 한 로비를 벌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황○○나 ○○○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관계를 수단으로 한 로비를 벌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정 · 관계의 고위층이나 종교 · 문화계의 원로 등을 상대로 하여 문어발식으로 성관계를 수단으로 한 로비를 벌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⑸ 상당성 인정여부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은, 황○○의 작업실에서 이 사건 사진을 비롯한 원고의 알몸사진 12장이 발견된 점, 당시 미술계에서는 원고가 ○○○과 황○○ 등 정 · 관계 및 문화계 인사들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수시로 선물을 제공하는 등 자신이 젊은 미혼여성인 점을 활용하여 의도적인 접근을 하고 때로는 그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다는 등의 풍문이 있었던 점, 원고가 ○○ ○○○○○○○ ○ ○○○ ○○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던 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사진을 제공한 A 여인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당시의 행적을 들은 바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위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황○○의 작업실에서 원고의 알몸사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황○○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무리인 점, ② 피고들이 당시 입수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그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에 불과한 점, ③ 비록 원고가 2004. ○. ○.경 ○○○○○○○ ○ ○○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을 제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그 사실이 성로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들은 2007. 9. 13. 이 사건 각 사진을 입수하고 곧바로 같은 날 위와 같은 보도를 하였던바, 이 사건 각 기사가 이처럼 신속하게 보도되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⑤ 원고가 ○○○ 또는 황○○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도 성관계를 수단으로 한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해 원고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심대한 반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⑹ 소결론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행위는 일부 공익성이 인정되나 그 진실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결정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문어발식 성로비도 마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일반독자들에게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촬영된 자신의 알몸사진까지 공개됨으로써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된 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일간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보도내용이 인터넷 등 여러 다른 매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단시간 안에 국민적인 관심사로까지 떠올랐던 점, ③ 피고들은 신문판매량 증가 및 인지도 제고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난여론을 감수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선정적인 보도를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보도의 동기가 다분히 악의적이라 할 것인 점,

④ 피고 신문사는 가판신문의 판매량 증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자 수의 증가를 통한 광고수익의 증대 등 당초 기대했던 상업적 이익을 상당부분 실현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① 피고들이 게재한 이 사건 각 사진이 원고의 주장처럼 합성사진에 불과하거나 원고와 전혀 무관한 사진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 ②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서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행위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지는 않고 있는 점, ③ 언론보도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손해배상액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11. 29.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한 호 형
판사 이 종 훈
판사 박 기 쁨

〈별지 1〉 알려드립니다

저희 문화일보는 2007. 9. 13.자 문화일보 1면에서 "원로 · 고위층에 '성로비' 가능성 관심"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기사 본문에서는 "몸에 내의 자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내의를 벗은 지 한참 후에 찍은 사진", "작품용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사이'의 징표 같은 느낌이 난다" 등의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3면에서는 "성로비도 처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게재하고, 3면 사진 아래부분에 "신○○ 게이트 급속히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정 · 관 이어 종교-문화계 문어발 로비 속속 드러나"라는 부제목을 달고 그 내용에서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씨는 30대 소설가와 조각가 등 복수의 남자들과 애인으로 사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으로써, 신○○씨의 성로비를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한 바 있으나, 신○○씨가 실제로 이른바 '성로비'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3〉 기사내용 생략 – 편집자 주

손해배상청구 사례 25

여론조사 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자 판결 (2008가합4829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17일 김○○이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와 주식회사 ○○리서치 등 총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중앙일보 2008년 4월 2일자 제1면에 『총선 D-7 전국 245개 지역구 판세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정당별 판세 분석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제4, 5면에 8개 권역별로 1, 2위 후보 이름(소속 정당), 지지율을 게재하면서 '영도구 김형오(한나라당) 45.6%, 김◎◎(평화통일가정당) 6.6%'로 기재한 기사를 보도하자 원고의 지지율인 6.6%를 김◎◎ 후보자의 지지율로 잘못 기재하였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와 기자 등은 "① 유력여론조사업체인 피고 ○○리서치가 보낸 자료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② 여론조사결과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③ 직접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위 요건들을 모두 명시하지 않고 조사기관 정도만을 밝히는 것이 관행이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기사 보도 이전에 부산KBS에서 이미 오기되기 전의 내용을 보도한 사실, 피고 신○○은 김△△에게 2008. 4. 1.경 전화를 걸어 전달된 자료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김△△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 신○○은 그 자료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을 함께 보도하도록 하여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조사기관 정도만을 밝히는 것이 관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함께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8가합48297 손해배상

원　　고 : 김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문 성 근

피　　고 : 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구

대표이사 홍 석 현, 송 필 호

2. 김 □□

3. 신 ○ ○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황 민 철

4. 주식회사 ○○리서치

서울 ○○구

대표이사 노 익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 현 희

변 론 종 결 : 2008. 11. 12.

판 결 선 고 : 2008. 12. 17.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2008.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338,112원 및 이에 대한 2008. 5.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9.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산 영도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일간지인 중앙일보를 발행하고, 피고 김□□은 피고 신문사의 편집국장, 피고 신○○은 피고 신문사의 기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리서치(이하 '피고 ○○리서치'라 한다)는 여론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부산KBS는 2008. 3. 25. '뉴스9' 프로그램에서 ◇◇리서치의 전화 여론조사결과 부산 영도구에서 김형오 후보자의 지지율이 45.6%로 1위, 원고의 지지율이 6.6%로 2위로 조사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피고 ○○리서치의 아르바이트생인 정○○은 2008. 3. 26. 위 여론조사결과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지지율인 6.6%를 평화통일가정당 김◎◎ 후보자의 지지율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 피고 ○○리서치는 피고 신문사 및 주식회사 YTN으로부터 50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업무를 의뢰받았고 위 50개 선거구에 부산 영도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 ○○리서치의 차장 박○○은 위 선거구 외에 여론조사결과를 취합한 곳이 있으면 그 자료도 보내달라는 피고 신○○의 요청에 따라 2008. 3. 27. 위 잘못 기재된 자료(이하 '오기된 자료'라 한다)를 피고 신○○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 신○○은 위 자료에 따라 2008. 4. 2.자 중앙일보 제1면에 '총선 D-7 전국 245개 지역구 판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정당별 판세 분석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제4, 5면에 8개 권역별로 1, 2위 후보 이름(소속 정당), 지지율을 게재하면서 '영도구 김형오(한나라당) 45.6%, 김◎◎(평화통일가정당) 6.6%'로 기재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마. 피고 신○○은 위 보도 당시 각 선거구별로 지지율이 1, 2위인 후보자들의 이름과 지지율만을 기재하였을 뿐, 조사의뢰자나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게재하지 않았다가 2008. 4. 3.자 중앙일보 제6면에 '전국 245개 지역구 판세 분석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4. 2.자 위 기사는 지역구별로 각각 다른 조사기관과 조사 시기가 병기되지 않아 일부 지역구의 조사결과가 최근 여론으로 오해를 받게끔 하였다. 후보 등록 이후 출마자가 바뀐 곳도 있어 위 조사 결과는 최근 판세와 다를 수 있다'며 영도구는 ◇◇리서치가 3. 21.부터 3. 24.

사이에 조사한 것으로 후속보도를 하였다.

바.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후보자가 24,426표(43.46%)를, 원고가 23,458표(41.74%)를 득표하여 위 김형오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라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라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 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여부

피고 ○○리서치가 여론조사결과 수치를 잘못 정리하여 오기된 자료를 피고 신문사에 제공하였고, 피고 신문사 및 피고 김□□, 신○○이 이를 정확히 다시 확인해보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표본의 크기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조사기관과 그 시기만 후속보도 형식으로 수정한 것은 여론 조사 및 보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최초 보도로 독자 및 유권자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지지율이 2위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관계자들의 선거운동 방향 등에 영향을 주는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리서치의 오기된 자료의 제공과 피고 신문사의 위와 같은 잘못된 보도가 김형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한 고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나, 갑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신문사, 김□□, 신○○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신문사, 김□□, 신○○은, ① 유력여론조사업체인 피고 ○○리서치가 보낸 자료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② 여론조사결과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③ 직접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위 요건들을 모두 명시하지 않고 조사기관 정도만을 밝히는 것이 관행이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갑제1호증, 을라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보도 이전에 부산KBS에서 이미 오기되기 전의 내용을 보도한 사실, 피고 신○○은 김△△에게 2008. 4. 1.경 전화를 걸어 전달된 자료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김△△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 신○○은 그 자료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1]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을 함께 보도하도록 하여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조사기관 정도만을 밝히는 것이 관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함께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 ○○리서치의 주장 및 판단

피고 ○○리서치는 부산 영도구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자료는 박○○ 차장이 피고 신○○에게 사적으로 보내준 것일 뿐 어떤 계약관계에 따라 대가를 받고 준 것이 아니어서 업무관련성이 없고 위 자료가 보도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 ○○리서치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리서치는 피고 신문사에게 50개 선거구에 관한 여론조사업무를 수행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신○○은 다른 선거구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도 업데이트 되는 경우 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박○○이 오기된 자료를 보내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리서치가 피고 신문사에게 오기된 자료 등을 제공한 것이 50개 선거구에 관한 계약과 연관이 없다 할 수 없고, 피고 신문사는 각 선거구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기 위하여 피고 ○○리서치에게 그 조사를 의뢰한 것인 이상 피고 ○○리서치는 피고 신문사가 각 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도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전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액

1)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잘못된 보도가 없었더라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상여금, 차량유지비 등을 2008. 5. 3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및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여론조사결과 수치가 제대로 보도되었다면 원고가 반드시 당선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전 이미 부산KBS를 통해 ◇◇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가 그대로 보도되었고, 통상 총선 이전에 여론조사결과가 수차례 발표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기사 이외에도 여러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만으로 인하여 원고가 낙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선거 직전에 보도된 점,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2위로 보도되는 것과 그 순위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는 것은 선거권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선거운동원 및 지지자들의 사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실제 선거 결과 원고가 당선자와 사이에 득표율 1.72%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 피고 신문사의 영향력과 인지도 및 아울러 다른 언론기관에서 이 사건 보도를 인용하거나 확대 보도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즉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5.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 호 형

판사 이 종 훈

판사 박 기 쁨

제4장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에 의해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08. 6. 26.자 결정 (2005헌마506)

사실개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8년 6월 26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인 김○○는 ○○시에서 ○○건어물을 경영하는데, 2005년 3월 25일 ○○방송국에 ○○건어물의 방송광고를 청약하였으나 위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제32조,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청약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년 5월 23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다음날인 2005년 5월 24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전체를 심판대상에 추가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심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제정,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나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에 의해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결 정 문

사 건 : 2005헌마506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심판대상조문】

방송법(2004. 3. 22. 법률 721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 · 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략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 생략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 · 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략

방송법 시행령(2004. 9. 17. 대통령령 1854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 · 라디오방송광고 및 데이터방송광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방송광고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방송광고를 제외한 방송광고를 말한다.

1.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2. 제5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4. 밖에 공익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광고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00. 8. 28. 방송위원회규칙 제22호로 제정된 것) 제59조(심의미필 등 방송광고의 금지) 사업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가 결정을 받지 아니한 광고물, 결정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광고물 및 동 규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구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 · 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 · 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 ·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 · 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방송법 제103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생략

② 방송위원회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 · 단체에 위탁한다.

구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 생략

2의2. 제15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27. 생략

②~⑤ 생략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 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 · 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 ·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 · 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법 제103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생략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 · 단체에 위탁한다.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의2. 생략

2의3. 제3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27. 생략

②~⑤ 생략

방송법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② 생략

③ 방송위원회는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기구 ·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구 또는 단체의 방송 · 광고업계에 있어서의 대표성과 수탁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3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403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124-125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판례집 13-2, 134, 147-149
   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판례집 14-2, 856, 867-868
   헌재 2005. 2. 3. 2004헌가8, 판례집 17-1, 51, 59
   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판례집 17-2, 189, 198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

대리인 변호사 김 연 호

【주 문】

1.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721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광고' 부분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00. 8. 28. 방송위원회규칙 제22호로 제정된 것) 제5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에서 ○○건어물을 경영하는 자인바, 2005. 3. 25. ○○ 방송국에 ○○건어물의 방송광고를 청약하였으나 위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제32조,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청약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다음날인 2005. 5. 2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전체를 심판대상에 추가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한편, 방송법 제32조는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어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먼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방송법(2004. 3. 22. 법률 721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제3항과 방송법시행령(2004. 9. 17. 대통령령 1854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광고' 부분(청구인은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관련된 부분은 '텔레비전방송광고'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00. 8. 28. 방송위원회규칙 제22호로 제정된 것) 제5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하 위 심판대상 규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

다. 한편, 청구인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2000. 8. 28. 방송위원회규칙 제23호로 제정된 것) 전체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위 규정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막연히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만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위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⑵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방송법 제32조는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어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 구 방송법 규정들에 대해서만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위헌을 선언하는 경우, 그 위헌의 효력은 현행법에는 미치지 못할 것인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역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면, 방송광고 사전심의와 관련한 위헌 상태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방송법 규정도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 측면을 고려하여 구 방송법 규정들과 함께 심판대상 규정에 포함시키기로 한다.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규정】

구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 · 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략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 · 라디오방송광고 및 데이터방송광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방송광고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방송광고를 제외한 방송광고를 말한다.

1.~4. 생략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심의미필 등 방송광고의 금지) 사업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송가 결정을 받지 아니한 광고물, 결정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광고물 및 동 규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방송법'이라 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 생략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 · 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략[관계 규정]

구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 · 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 · 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 ·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 · 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3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생략

② 방송위원회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 · 단체에 위탁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 생략

2의2. 제3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27. 생략

②~⑤ 생략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 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 · 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 ·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 · 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3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생략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 · 단체에 위탁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의2. 생략

2의3. 제3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27. 생략

방송법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② 생략

③ 방송위원회는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기구 ·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구 또는 단체의 방송 · 광고업계에 있어서의 대표성과 수탁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⑴ 청구인은 ○○방송국에 방송광고 테이프를 보내 광고청약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규정들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약 거절통보를 받았는바, 이 사건 규정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⑵ 헌법 제21조 제2항은 모든 사전검열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받고 있는 광고의 경우에도 사전검열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들은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방송광고물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방송위원회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방송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위탁하여 여기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서 방송광고를 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⑶ 설령 위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의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나 사후심사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기본권 침해가 중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심의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나. 방송위원회의 의견

⑴ 이 사건 규정들은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자신이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심의를 위한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현재성 요건을 결한 것이다.

⑵ 광고물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와 방법은 일반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다른 표현물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할 것이고, 방송광고는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방송되고 난 후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인바, 방송광고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라는 민간단체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문화관광부장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

다른 표현물과 마찬가지로 광고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자율적 사후심의제도가 바람직하나, 우리 사회와 업계의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심의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것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된 광고 건수는 지상파방송의 경우만도 2004년 기준으로 8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비판적 수용자로서 광고 메시지를 수용할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업적 광고물에 대해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라. 한국광고단체연합회의 의견

⑴ 자율심의기구는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있어 독립적인 재원과 운영 권한을 가진 자율적인 기구가 아니라 방송법과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를 대행하는 기구에 불과하고, 방송위원회는 심의기구의 심의위원 선정에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뿐, 사전심의 업무를 위탁하는 심의기구를 임의로 선택하고 있으며, 심의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제반업무를 민간기구인 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⑵ 우리나라도 방송매체에 방송광고의 공익성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사업자의 등록이나 허가 조건에 방송광고의 공익성과 건전성 보장을 추가하거나 각종 광고 관련 법령을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허위, 기만 광고들을 규제한다면, 방송광고에 사후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유해한 방송광고를 시청자들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들은 위와 같은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방송광고물에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⑶ 방송법은 홈쇼핑 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광고와 받지 않아도 될 광고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후 규제를 받도록 하면서 그 기준은 방송광고 심의기준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송 전파와 동일한 TV 수상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방송광고를 훨씬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을 차별하는 것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직접성 충족 여부

법령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1. 3. 11. 91헌마21, 판례집 3, 91, 98; 헌재 1997. 7. 16. 97헌마38, 판례집 9-2, 94, 104; 헌재 2003. 12. 18., 2001헌마543, 판례집 15-2하, 581, 593).

그런데 구 방송법 제32조 제2항은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 여부를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방송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나, 제3항은,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 · 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가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방송광고의 종류를 나열함으로써 사전심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규정들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그 자체에서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들은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들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나. 자기관련성 존재 여부

헌법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1999. 4. 29. 97헌마382, 판례집 11-1, 521, 527).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있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그런데 이 사건 규정들은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주체로 방송위원회만을,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방송광고물에 대한 방송의 주체로 방송사업자만을 정하여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은 광고주를 그 법규 수범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사건 규정들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과 같은 광고주의 경우도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 결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자기관련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방송광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전심의제도

1987. 11. 28.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된 방송법은 제17조 제2항과 제20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을 두고 방송광

고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방송법은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 · 제정되었고, 사전심의에 관한 조문의 위치는 제32조 제1항과 제2항으로 옮겼으며, 이전과 달리 제103조 제2항에서, '방송위원회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 · 단체에 위탁한다' 고 규정하여 민간기구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방송법 제32조 제2항은 2004. 3. 22. 법률 제7213호 다시 개정되는데,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이 위임 규정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는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물의 종류를 텔레비전방송광고 · 라디오방송광고 및 데이터방송광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방송광고에 한한다)로 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다시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어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다.

한편, 구 방송법 제103조 제2항과 방송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2000년부터 방송위원회 고시를 통해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민간기구에 위탁해 오고 있으며, 2000. 7. '방송광고물 사전심의의 민간위탁고시' (방송위원회 고시 제2000-3호)에서 자율심의기구를 민간위탁기구로 선정하였고, 이 기구는 같은해 8. 1.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방송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맡고 있다.

나.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방송광고와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 · 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리고 의사표현 · 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광고도 사상 · 지식 ·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 ·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며(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124-125; 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판례집 14-2, 856, 867-868; 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판례집 17-2, 189, 198), 이 사건 방송광고가 언론 ·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보호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⑵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의 의미 및 요건

우리 제21조 제2항은,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

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언론 · 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한편,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한다. 사전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되는 것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 등, 판례집 8-2, 212, 223;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403;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판례집 13-2, 134, 147-149; 헌재 2005. 2. 3. 2004헌가8, 판례집 17-1, 51, 59).

⑶광고방송의 사전심의와 사전검열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해 오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할 것,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 등이 그것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3;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403;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판례집 13-2, 134, 147-149). 따라서 이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본다. 먼저 구 방송법 제32조는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국에 이에 대한 청약을 하기 전에 먼저 방송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1항은 방송광고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신청서 2부에 방송광고물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사전검열의 요건 중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구 방송법 제32조 제3항은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에 대해서 방송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 · 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고주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허가받지 않은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의2호는, 방송사업자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물을 방송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여 방송사업자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방송광고의 청약을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주가 사전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태료 처분은 사전심의절차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심의인지 여부를 본다.

(나) 이 사건 규정들은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주체를 방송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구 방송법 제21조 제1항), 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하게 된다(구 방송법 제21조 제2항).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업무는 1.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 · 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 · 재허가의 추천, 승인,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규칙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5. 방송에 관한 연구 ·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7.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8.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 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 · 의결하는 것이고, 위 제1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며,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 제7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구 방송법 제27조). 위와 같은 방송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업무내용 그리고 업무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방송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공연윤리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격을 이들 기구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 왔으며, 방송위원회라고 하여 이들과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방송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한다면 이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방송법 제103조 제2항은, '방송위원회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 · 단체에 위탁한다'고 규정하여 방송광고물의 경우 민간기구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업무를 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하였는바, 현재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한 기구로 1991년 3월 27일 8개 광고 관련 단체 연합으로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하였으며, 1993년 11월 10일 12개 광고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기구가 되어 당시 공보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현재는 20여개의 광고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자

율심의기구는 2000년 8월 1일부터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 이래 현재까지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우리나라 광고심의업무를 총괄하는 민간기구로 세 개의 광고심의위원회와 광고심의기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광고심의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방송광고심의를 주2회 개최하며, 제2광고심의위원회는 케이블 텔레비전과 전광판 광고를 대상으로 주1회 개최한다. 제3광고심의위원회는 인쇄매체 광고물에 대하여 주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 의결하고 있다.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심의는 제1광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한편, 광고심의기준위원회는 시청자 불만사항, 재심의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광고심의규정 및 심의 세칙의 제정 및 개폐 등 광고심의 관련 최고의결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는 실제 방송위원회가 행하지 않고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율심의기구가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기관이 주체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라)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심의기구의 광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정관, 이하 '정관'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1년을 임기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는데(정관 제29조, 광고자율심의운영규정 제6조 제1항), 이들을 위촉하고 위촉에 동의권을 행사하는 회장과 이사회 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중 총회에서 선임되며(정관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총회에서 선임된 이들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되어 있다.(정관 제13조 제1항 제3호) 이와 같이 광고심의위원의 선임에 관여하는 회장과 이사의 선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것은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민간에게 완전한 자율을 보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심의기구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자율심의기구는 행정주체인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공무수탁사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가 되지만, 국가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하여 위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자율심의기구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 제7조에 따르더라도 방송위원회는 위탁업무에 대해 심의기구를 지휘,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된 지시 및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행정주체는 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공권을 수여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이라 할 것이며, 공무수탁사인의 공권력 행사는 국가가 행하는 것과 법적 효과 측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이 '위원회는 법 제10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와 관련된 업무를 민간기구 ·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신청인과의 관계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결국 자율심의기구가 그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위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방송위원회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이상, 이 기구의 성격을 방송위원회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아가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상 방송광고의 심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제정,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구 방송법 제33조)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내용을 원격 조정할 수 있다. 즉, 국가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내용의 방송광고만을 내보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은 소비자 또는 시청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방송광고에서 국가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방송위원회가 아닌 이 사건 자율심의기구가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방송위원회가 행하는 것과 달리 볼 바 아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위원회와 자율심의기구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계약기간 동안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기구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나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은 방송위원회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용을 방송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있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이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구 방송법 제32조는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어 방송광고사전심의의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항)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상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주체이며(방송법 제32조 제2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방송법 제33조), 방송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민간기구 등에 위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방송법 제103조 제2항). 이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구성방법이나 임명, 업무에 있어 방송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방송광고 사전심의와 관련해서도 방송위원회가

행하던 업무들을 거의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결국 방송광고 사전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게 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역시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현행 방송법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그대로 존치시켜 위헌적인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개정된 방송법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방송법 규정과 함께 개정된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하기로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구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및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광고' 부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와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로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과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규정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를 달리한다.

가. 헌법 제21조의 "언론 · 출판"에 대한 종전의 해석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의 "언론 · 출판"은 모든 의사표현행위를 의미하고, 모든 표현수단과 매개체를 포함하며, 인간의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행정권력에 의한 허가나 검열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언론 · 출판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 해석으로서, 언론 · 출판의 자유 외에 다른 정신적 활동의 자유를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체계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언론 · 출판 외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규제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을 철저히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헌법 제21조의 "언론 · 출판"의 체계적 해석

헌법 제21조 제1항이 언론 ·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언론 · 출판이 인간의 의사와 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발현하고 증진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21조는 독일 기본법 제5조나 일본 헌법 제21조와 달리 모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표현행위 중에서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언론 · 출판 이외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일반적 표현(말하기, 글쓰기, 몸짓, 가무 등)의 자유를 헌법 제10조 및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는 언론 · 출판 이외의 표현행위를 모두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 · 출판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는 이유는 언론 · 출판이 공권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다양한 의사를 공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토론과 여론 형성을 통하여 진실되고 올바른 민주사회를 구현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언론 · 출판의 이러한 기능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 · 출판에 대한 사전허가와 사전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는 언론 · 출판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표현하고 전파하는 모든 행위와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다양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토론 및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표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 수단"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말이나 글이 아닌 다른 표현수단에 의한 표현행위, 사람의 의견이나 사상이 아니라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행위, 말이나 글에 의한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사회의 토론과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표하거나 전파하는 것이 아닌 표현행위는 헌법 제21조의 언론 ·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행위의 목적 · 방법 · 내용 등에 따라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표현의 자유(제19조), 종교표현의 자유(제20조), 학문과 예술의 표현의 자유(제22조), 일반적 표현의 자유(제10조, 제3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표현행위의 목적 · 방법 · 내용 등에 비추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나 검열이 금지되지만, 언론 · 출판에 해당되지 않는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언론 · 출판 이외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언론 · 출판 이외의 표현행위도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그처럼 중요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다.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광고는 말과 글과 영상에 의하여 광고내용을 구성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표현행위인데, 방송사업자나 광고방송 관여자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제시한 광고내용을 방송하는 것이다. 광고주의 영업이나 상품을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광고가 대부분이고, 간혹 광고주의 의견이나 사상을 공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목적과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광고주나 광고제작자의 의견이나 사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민주사회의 다양한 의사의 하나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표하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사전검열이 금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업적 방송광고는 일반 대중에게 영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구매를 유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상업적 광고는 그 내용에 따라 광고주나 광고제작자의 정신적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민주사회의 토론과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이나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 활동이므로, 전체적으로 영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업적 광고활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전검열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상업적 광고는 영업이나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 활동이므로 광고대상의 가치를 과장하기 쉽고, 동일한 영업이나 상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업적 광고활동은 영리추구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과 다른 내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적 광고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할 필요성도 적다고 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규정들의 위헌성

이 사건 규정들은 공익적 광고가 아닌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방송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받도록 하고, 사전에 심의 · 의결을 받지 아니한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

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 후에 공정성 · 공공성의 유지 여부와 공적 책임의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하면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하여 심의 · 의결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들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 · 출판"에 해당되는 방송광고도 사전심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 · 출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방송광고의 내용을 사전심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필요성과 사전심의의 한계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들은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공익적 사유와 사전심의의 최소한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한편,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상업적 광고인 경우에는 그 영리추구성으로 인하여 광고목적물의 가치를 과장하거나 유혹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쉽고,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영향력은 광범위하며, 그 방송광고의 내용이 거짓됨 · 과장 · 선정적 등의 사유로 공중방송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를 방송 후에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상업적 방송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업적 방송광고를 일률적으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특정의 구체적인 상업적 방송광고가 허위 · 과장 · 선정성 등의 사유로 공중방송으로 광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규정들을 대체하는 입법을 할 때에 고려하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저지하는 사유로 삼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규정들은 헌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7.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헌법불합치)

나는, 우리 헌법상 언론 ·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상업광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사건 규정들 중 일정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헌법불합치의견을 밝힌다.

가.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한 사전심의 대상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하여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방송광고의 범위는 구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 2 단서에

의하여 제한된다. 즉, ① 구 방송법 제73조 제4항(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② 시행령 제5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법 제73조 제5항 단서(지상파방송사업자가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방송광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송광고물, 2.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자체 행사 또는 그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물]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③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④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광고 등은 사전심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위 시행령 제21조의 2 단서만에 의하여 상업광고 이외의 모든 방송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조 제4호가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광고"를 제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는 순수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상업광고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만일 이 사건 규정들이 상업광고 이외의 방송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은 뒤에서 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전검열금지원칙과 상업광고

(1) 언론 ·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금지원칙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 · 출판의 자유와 그 내용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 · 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이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하기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8 참조).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으로 보아 사전검열에 의한 언론 · 출판의 자유의 제한은 법률로써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 판례집 8-2, 212, 222 등 참조). 따라서 사전검열의 위헌성 판단에는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물론, 헌법 제21조 제4항 스스로가 언론 · 출판의 자유의 한계로 설정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금지' 조차도 고려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언론 · 출판에 대하여 절대적이고 경직적인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 아니라 행정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여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고 무해한 여론만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법률효과의 경직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절대적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전검열행위'를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다. 즉,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할 것,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④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 등을 요구함으로써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그러므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사전검열행위' 자체의 범위만은 한정함으로써 위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다른 헌법적 법익과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대의 변천과 과학의 발달로 표현의 자유를 매개하는 수단의 범위가 종래 '언론 · 출판'의 개념으로부터 추론하거나 상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즉, 신문, 방송, 통신, 영화, 예술 등 고전적인 매체 이외에도 인터넷, 전단지,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전광광고판, 초중고등학교의 구내방송, 상품의 용기 · 포장에 표시된 광고 등 과거에는 예견할 수 없는 정도의 전파성과 파괴력을 가진 표현매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의 경직적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선례와 같이 '사전검열행위' 자체의 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표현매체와 표현행위도 우리 헌법이 언론 ·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⑵ 상업광고의 성격

광고도 사상 · 지식 ·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매체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된다(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124-125 등). 그러나 상업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점과 그것이 다른 언론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가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공권력이 개인의 의사표현행위에 대하여 법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주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으로써 그로 하여금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상업적 언론, 특히 상품과 서비스의 광고는 영리동기에 의하여 추동되기 때문에 다른 언론매체에 비하여 장래 위축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상업광고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권력의 규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위축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어 이를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판례집 17-2, 189, 198)고 판시함으로써, 상업광고에 대하여는 일반 표현행위에 비하여 그 보호정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⑶ 상업광고와 사전검열금지원칙

다수의견은, 상업광고도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고, 언론 ·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결국 상업광고에 대한 사전검열을 규정한 이 사건 규정들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과 모든 언론 · 출판행위에 대하여 그 보호의 정도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선례도 그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위와 같은 논리를 관철한다면 초등학교의 구내방송과 같이 순수하게 교육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나 인터넷에 의한 음란물배포행위 등과 같이 일단 표현되거나 유포되면 선정성, 폭력성 기타 공서양속이나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아무리 높은 경우라도 공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사전심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매우 위험한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도 적어도 '사전검열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우리 헌법 제21조의 진정한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검열행위' 자체 뿐 아니라,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에 대하여도 우리 헌법이 언론 ·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에 맞게 그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수의견과 같은 판단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상업광고에 대한 태도와 일관되지 않는다. 즉 다수의견에 의하면, 상업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위헌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에 대하여는 그 특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심사할 때 비례의 원칙조차도 완화하여 심사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일반적 언론과 상업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달리 하였다. 물론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인한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업광고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의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 및 매체의 범위는 우리 헌법 제21조의 목적에 맞게 제한되어야 하고, 상업광고는 그 특성상 위 헌법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그러나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그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로서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은 위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의 특성상 그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정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였는지를 살펴본다.

⑴ 목적의 정당성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 제21조 제4항). 그런데 텔레비전에 의한 상업광고는 매체의 특성상 그 내용이 허위 · 과장되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그 피해가 직접적이고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그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식품이나 의약품 광고의 경우 그 기능이나 효능이 허위이거나 지나치게 과장되면 그 광고를 믿고 식품이나 의약품을 섭취한 시청자들은 건강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협 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광고의 진위에 대한 판별능력이 떨어지고 광고효과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게는 허위 · 과장된 텔레비전 상업광고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상업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하여 텔레비전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⑵ 수단의 적절성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에 의한 유해 · 허위 ·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심의의 주체에 공권력적 요소를 개입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구 방송법 제32조 제2항은 상업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주체를 방송위원회로 규정하면서(2008. 2. 29.자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법 제103조 제2항과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사전심의업무를 민간기구 ·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물 사전심의의 민간위탁고시'(고시 제2000-3호)로써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민간위탁기구로 선정하여, 현재 위 자율심의기구가

상업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행하고 있다(자율심의기구는 세 개의 광고심의위원회와 광고심의기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텔레비전 상업광고의 심의는 제1광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는 점, 자율심의기구는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 점,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용을 방송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율심의기구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사업자나 광고회사의 수준을 고려할 때, 행정권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민간인만으로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하여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들은 사전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공권력을 개입시킨 점에 있어서는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⑶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

텔레비전 상업광고는 그 특성상 항상 유해 · 허위 · 과장 광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광고들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방영되면 사후에 방송을 중지시킨다 하더라도 그 파급력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미 입은 피해는 회복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방송 전에 유해 · 허위 · 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고, 비록 심의의 주체는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업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된 방영시간대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적은 경우인지 여부, 방송매체가 지상파방송인지 유선방송인지 여부 및 방송채널의 특성상 사전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전심의 대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현재도 법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이른바 홈쇼핑광고는 상업광고로 보지 않음으로써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들은 텔레비전 상업광고 전부를 일률적으로 사전심의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⑷ 법익균형성

텔레비전 상업광고가 아무런 사전심의 없이 방송됨으로 인해 시청자,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들에 따라 사전심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전심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 보니 그로 인하여 광고주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 즉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결코 위 공익보다 적다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들은 일정 부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⑸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상업광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수단

의 적합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제한의 정도 역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들의 일정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우리 헌법상 언론 · 출판에 대한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텔레비전 상업광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들의 일정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되지만, 위 규정들 내에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단순위헌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헌법불합치 선고를 함으로써 후속 입법에 의하여 이 사건 규정들 중 위헌적 부분을 제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재판관 이 강 국(재판장), 이 공 현(주심), 조 대 현, 김 희 옥, 김 종 대, 민 형 기, 이 동 흡, 목 영 준, 송 두 환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2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 방안에 따른 정책이 모두 폐지되고 종전의 상태로 환원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고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08. 6. 26.자 결정 (2007헌마775)

사실개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8년 12월 13일 폐지 전 국정홍보처가 2007. 5. 22.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위 방안에 따른 정책을 모두 폐지하고, 종전의 상태로 환원시킨 경우 이 사건 방안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내지 예외적인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적법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인 주식회사 문화일보, 문화일보 기자, 문화일보 독자는 이 사건 방안이 보도와 취재의 자유, 알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7. 7.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정부부처는 2008. 3. 11.부터 자율적으로 이 사건 방안에 따른 정책을 폐지하고 종전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이 사건 방안 발표 이전 상태로 환원하였다. 또한 2008. 3. 10.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대변인 회의'를 주관하여 청사출입증을 다시 종전의 개별 부처별 청사 출입증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방안 중 이 사건 심판대상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은 모두 폐기되고 이 사건 방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정부는 이 사건 방안에 따른 조치들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고, 입법자는 이 사건 방안을 입안하고 시행하였던 주관 정부부처인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 국정홍보처가 담당하였던 국정홍보업무의 조정 기능이 과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종래 국정홍보처의 업무를 승계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조직법상의 권한범위에 정부 내 홍보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부가 다시 이 사건 방안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특히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예외적인 심판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 정 문

사 건 : 2007헌마775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 위헌확인

【참조조문】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

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 두 아

2.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 훈 외 2인

3. 변호사 정주교

   피청구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⑴ 폐지 전 국정홍보처는 2007. 5. 22.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하 '이 사건 방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 부처 단독청사의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 폐지 및 권역별로 설치된 3개 합동 브리핑센터 설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 운영, 업무 공간 무단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강구 등이다.

⑵ 이 사건 방안의 추진배경은, 2003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 및 공평한 취재기회 제공을 위해 각 부처 청사의 출입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 및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운영하였으나, 일부 청사의 경

우 기사송고실이 사실상 기자실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당초 개방형 브리핑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 ·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⑶ 청구인들은 주식회사문화일보, 문화일보 기자, 문화일보 독자이자 일반 국민인데, 이 사건 방안이 보도와 취재의 자유, 알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7.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⑷ 그 후 정부는 이 사건 방안에 따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 새로이 합동브리핑 센터를 설치하고, 2007. 10. 12.경부터 정부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폐쇄하였다.

⑸ 폐지 전 국정홍보처 2007. 10. 29. 각 부처 출입기자들에게 종전 개별 부처별 정부청사 출입증은 같은 해 11. 5.부터 효력이 없어지므로 같은 해 11. 2.까지 새로운 기자출입증을 발급받을 것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출입증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다.

⑹ 국정홍보처는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이하, 폐지 전 국정홍보처를 '국정홍보처'라고 한다). 각 부처는 2008. 3. 11.부터 자율적으로 종전 이 사건 방안에 따른 정책을 폐지하고 종전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이 사건 방안의 발표 이전 상태로 환원하였다. 같은 해 9월말 현재 19개 부처 19개 기자실, 6개의 브리핑실이 신규설치되거나 복원되었으며, 각 부처 기자실에 송고석을 지정받지 못한 언론기관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위하여 중앙 및 과천 합동브리핑 센터 내에 각각 공용기자실이 설치되었다.

⑺ 2008. 3. 10.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대변인 회의'를 주관하여 각 부처 청사출입증을 다시 종전의 개별 부처별 청사 출입증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부처별 방식의 출입증 제도로 환원하여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피청구인의 확정 및 심판의 대상

⑴ 피청구인의 확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으로 공권력에 대하여 정당하게 책임져야 할 피청구인을 지정하여 정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헌재 1999. 11. 25. 98헌마456, 판례집 11-2, 634, 638 ;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판례집 13-2, 103, 106-107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을 '정부'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방안은 국정홍보처장이 국정홍보처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이후 이를 발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방안의 주체는 국정홍보처장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피청구

인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 기재와 달리 국정홍보처장이라고 볼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방안이 시행된 이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정홍보처가 폐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종전에 국정홍보처의 업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 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운데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승계이전되었다(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⑵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방안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방안의 내용 가운데 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① 정부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폐지하고 지역별로 합동 브리핑실 및 기사송고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부분, ② 업무공간 무단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강구 부분이고, 청구인들도 이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방안 가운데 위 ①과 ② 부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며, 이 사건 심판대상을 포함한 이 사건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브리핑실 운영 효율화

1)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① 중앙청사 : 청사별관 1층~3층에 브리핑룸(4개), 통합송고실(1개), 카메라기자실, 접견실, 취재지원실 등 설치

브리핑 기관 : 16개

-총리실, 외교부, 교육부, 통일부, 행자부, 여가부, 정통부, 해수부, 문화부, 법제처, 홍보처, 국세청, 소방청, 청소년위, 고충위, 인사위

② 과천청사

재경부 1층에 브리핑룸(4개), 통합송고실(1개), 카메라기자실, 접견실, 취재지원실 등 설치

브리핑 기관 : 10개

-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과기부, 건교부, 예산처, 통계청, 공정위

③ 대전청사 : 현행 합동브리핑실 유지

2) 단독청사

단독청사의 브리핑실 및 송고실 폐지

-브리핑은 인근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실시

※ 외교, 문화, 정통, 건교, 해수, 예산처, 국세청, 방사청, 식약청 등 브리핑 룸(송고실) 폐지

청와대 · 검찰청 · 경찰청 · 국방부 · 금감위는 업무의 특수성 및 지리적 위치를 감안 브리핑룸과 송고실 유지

-검찰청과 경찰청은 본청과 서울청의 브리핑실(송고실)을 통합 운영하고, 서울 8개 경찰서의 송고실은 폐지

-업무 공간 무단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강구

라.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

1)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 운영

브리핑내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송출하여 굳이 브리핑룸을 찾지 않아도 취재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언론의 개별적인 질의 · 답변 창구로 활용

-각 부처 '전자대변인' 제도 운영

브리핑 내용 속기 서비스 제공 추진

2) 브리핑 내실화

• 질의응답 중심의 브리핑 실시

-현재 보도자료 설명 중심의 브리핑 개선

-전자브리핑 시스템 등을 활용, Q&A 중심 브리핑 활성화

• 브리핑 실시 평가(기관평가)

-브리핑 서비스에 대해 주기적으로 여론수렴 및 개선

-우수 브리핑 사례 홍보 평가 반영

3) 취재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행자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공익 차원에서 비교형량 노력을 하도록 규정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자발적으로 공개

•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마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지원 지침으로 활용

–브리핑실 개방 확대에 따른 등록기자 기준 합리화

※ 등록기자 및 홍보공무원 간 연락체계 구축

4) 향후일정(안)

시설공사 및 전자브리핑시스템 예산 확보('07.6.5.)

업체선정 및 공사착공('07.6.30.)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워크숍 개최(6월 또는 7월)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서비스(8월)』

(3) 관련 법률조항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폐지 전 국정홍보처장)의 의견

[별지 3] 기재와 같다.

3.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구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그런데 앞의 '1. 가. 사건의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정부부처는 2008. 3. 11.부터 자율적으로 종전 이 사건 방안 중 심판대상과 그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을 모두 폐지하고 종전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이 사건 방안 발표 이전 상태로 환원하였다. 같은 해 9월말 현재 19개 부처 19개 기자실, 6개의 브리핑실이 신규 설치되거나 복원되었으며, 각 부처 기자실에 송고석을 지정받지 못한 언론기관의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위하여 중앙 및 과천 합동브리핑 센터 내에 각각 공용기자실이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9월말 현재 총

35개 부처 28개 기자실, 21개 브리핑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8. 3. 10.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대변인 회의'를 주관하여 청사출입증을 다시 종전의 개별 부처별 청사 출입증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방안 중 이 사건 심판대상과 그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은 모두 폐지되고 이 사건 방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 ;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판례집 9-1, 337, 342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는 이 사건 방안에 따른 조치들을 원상으로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입법자는 이 사건 방안을 입안하고 시행하였던 주관 정부부처인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 국정홍보처가 담당하였던 국정홍보업무의 조정 기능이 과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종래 국정홍보처의 업무를 승계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조직법상 권한범위에 정부내 홍보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였다(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부가 다시 이 사건 방안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헌법적인 해명이 긴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

구이익을 따지기 전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조치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만일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본안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청사의 일부를 기사송고실이나 브리핑룸으로 제공하거나 정부청사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활동을 위하여 정부청사 내에 있는 기사송고실이나 브리핑룸을 이용하거나 정부청사에 출입하는 것은 정부가 제공한 편의를 누리는 것에 불과하고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은 정부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하여 오던 편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시혜적 조치의 변경에 불과하고,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나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독자들의 알권리와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은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내세우는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전부 각하되어야 한다.

재판관 이 강 국(재판장), 이 공 현(주심), 조 대 현, 김 희 옥, 김 종 대, 민 형 기, 이 동 흡, 목 영 준, 송 두 환

〈별지 1〉 청구인 목록 :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관련 법률조항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국정홍보처) ①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 예술 · 영상 · 광고 · 출판 · 간행물 · 체육 · 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국정홍보처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별지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⑴ 이 사건 방안과 같은 행정규칙에 의하여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방안에 따른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의 폐쇄나 통합 등 물리적 조치는 이 사건 방안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른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법률적 집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청구는 적법하다.

⑵ 취재 및 보도의 자유에는 언론기관이나 기자가 취재활동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의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실이나 기사송고실은 정부나 특정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의 부담으로 설치 · 제공된 국민의 재산이자 공간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부처 내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방안은 언론의 취재원에의 접근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 즉 공권력 작용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기관과 언론종사자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되고 있다.

⑶ 이 사건 방안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통폐합함으로써 정부 부처 내 공무원에 대한 대면적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방안은 정부부처 내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근원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속

하는 언론기관과 기자의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방안은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실현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형성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⑷ 언론사가 기자단을 구성하여 출입처 기자실을 취재기지로 삼은 관행에 따른 취재방법 등은 90여년 가까이 이어온 우리 언론의 역사적 전통이자 관행이다. 언론기관과 기자의 취재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이 사건 방안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⑸ 정부기관 내의 각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주어진 장소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므로 그릇된 언론관에 따라 이를 강제로 폐쇄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며 권력의 수임자들이 여론의 감시와 비판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되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⑹ 이 사건 방안은 합동브리핑실을 통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정보 이외의 정부 내부의 정보에 대한 언론의 자유로운 접근을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 통폐합이나 공무원에 대한 대면취재 제한 등의 조치로써 이를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국가 정보가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집권자에게 유리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나 검열제와 같은 사전적 제한조치에 해당한다.

⑺ 정부가 이 사건 방안과 관련하여 공포한 국무총리 훈령에서 당초 논의되었던 공무원과의 대면취재 제한 관련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상당수 정부부처에서는 사실상 공무원과의 대면취재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위 국무총리 훈령에서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여도 취재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높다. 기자협회 등은 정부에 대하여 위 국무총리 훈령안을 마련하는 게재에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실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취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 그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약청, 국세청, 기획예산처 등 독립청사에 있었던 기사송고실을 존치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⑻ 국정홍보처가 2007. 10. 29. 발표하여 시행한 기존의 부처별 출입증 무효화 및 합동 브리핑 센터 출입증 발급 조치는 출입기자들이 브리핑 센터 사용을 거부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서 합동브리핑 센터에 기자를 몰아넣고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나. 피청구인(폐지 전 국정홍보처장)의 답변요지

⑴ 이 사건 방안은 그 법적 성격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힌 '비구속적인' 행정계획 또는 행정예고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방안이 행정규칙이라는 청구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상의 운영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헌재 2001. 5. 31. 99헌마413 등)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향후 집행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 방안의 발표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독자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방안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도 없다.

⑵ 이 사건 방안은 정부 기관 내 브리핑실 등 취재지원 시설의 위치, 구조, 수를 조정하는 등 취재지원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방안이 보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안에는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관여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방안은 보도의 자유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바, 청구인들의 보도의 자유 침해 주장은 보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⑶ 기자가 공무원 승인 없이도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임의출입에 의한 문서열람), 취재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무한정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임의출입에 의한 취재원 접촉)은 취재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기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기자가 무단출입에 의한 문서열람을 하는 권리가 인정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방안이 기자들의 정부부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른 출입 및 취재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를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⑷ 이 사건 방안은 정부기관 내 취재지원 시설의 위치, 구조, 수를 조정하는 등 취재지원 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앞으로 정책방향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전제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바 이유 없다.

⑸ 국정홍보처가 이 사건 출입증 교체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은 기존의 부처별 송고실을 개방형 합동 브리핑 센터로 운영되게 되면서 이에 합당한 새로운 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하는 기자들 모두에게 기존 출입증을 합동 브리핑 센터 출입증으로 갱신하여 주고 있으며, 합동 브리핑 센터 출입증이 없이도 취재를 원하는 기자들은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정부기관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장 기타사례

기타사례 1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으며,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 역시 폭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2. 14.자 결정 (2008카합415)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2008년 2월 14일 ○○○○○교회 외 1명이 재단법인 씨비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 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과 같이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으며,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 역시 폭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등을 비롯한 다수의 기독교 교단에서 신청인 교회가 '이단'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신청인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신청인 교회의 교리에 심취하여 가출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기성교회에 은밀히 침투하는 집단, 각별한 경계대상집단,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타 종교에 대한 비판행위로서 종교적 표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금지를 명할 만큼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함이 아닌 것이 명백하며 또 신청인들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

사　　건 : 2008카합415 방송금지가처분

신 청 인 : 1. ○○○○○교회

과천시 ○○동 ○-○ ○○빌딩 ○층

대표자 이 ○ ○

2. 이 ○ ○

과천시 ○○동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 재 흥

피신청인 : 재단법인 씨비에스

서울 ○○구 ○동 ○○-○

대표자 이사 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 재 중

주　　문 :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신청인 ○○○○○교회(이하 '신청인 교회'라 한다)에 대하여 이단사이비집단, 지역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집단 등이라는 취지로, 신청인 이○○에 대하여는 이단 사이비 교주, 지역교회 분열 및 가정 파탄을 조장하고, 기성교회에 은밀히 침투시키며, 각별한 경계대상자가 되고,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으며, 재림예수를 자처하는 교주 등이라는 취지로, 피신청인이 제작 · 편성하여 2008. 2. 15. 14:05부터 14:35까지 본방송을, 같은 달 16. 22:00부터 22:30까지 및 같은 달 20. 18:00부터 18:30까지 각 재방송을 각 하는 '크리스천Q'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횟수 1회당 각 5,000만(50,000,000) 원씩을 신청인들에게 각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씨비에스'라는 명칭의 유선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 이단이 진화하고 있

다'라는 제목으로 '기성교회에 침투하여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신청인 교회가 재림예수를 자처하는 교주인 신청인 이○○와 육체구원설 등 이단교리를 갖고 있음은 물론 지역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파탄을 조장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바, 신청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단 폐해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라는 내용의 '크리스천Q'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송할 예정인바, 피신청인은 언론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야할 것임에도 신청인 교회에서 탈퇴한 자들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신청인 교회를 '이단'으로 단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 이○○가 재림예수라는 취지로 자처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는 신청인 이○○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신청인의 사진 등을 노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결여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신청인들의 사회적 명예 ·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과 같이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으며,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 역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대한예수교장로회종회 등을 비롯한 다수의 기독교 교단에서 신청인 교회가 '이단'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신청인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신청인 교회의 교리에 심취하여 가출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기성교회에 은밀히 침투하는 집단, 각별한 경계대상집단,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타 종교에 대한 비판행위로서 종교적 표현행위에 해당하는 점, 비록 이 사건 프로그램의 예고편에서는 신청인 이○○에 대하여 '재림예수를 자처하는 교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방송 대본에서는 '신청인 이○○는 그런 적 없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방송에서는 신청인 교회의 교리 등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방송이 이루어질 여지가 다분하고, 신청인 이○○가 스스로를 재림예수로 자처하는 발언을 직접 하였다

는 취지로 방송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 이○○의 신청인 교회 내에서의 지명도, 영향력 등에 비추어 신청인 이○○는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미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 교회의 교리 등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신청인 이○○로서는 그 사진, 성명 등의 공표를 일정 정도 수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금지를 명할 만큼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함이 아닌 것이 명백하여 또 신청인들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 정 헌

판사 강 경 표

판사 김 지 영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6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09년 6월 25일 인쇄
2009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 권 성
편 저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의본부 조사분석팀
발 행 :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6층
TEL : 02)397-3061~4
FAX : 02)397-3069
http://www.pac.or.kr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02)397-3114 FAX : 397-3089
http://www.pac.or.kr